최종보고서

고흥군의회
Goheung-gun Council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2025. 10.

한국산업관계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Research

제 출 문

고흥군의회 귀하

본 보고서를 귀 의회에서 의뢰한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 용역」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5년 10월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이사장 임 승 택

연 구 진

연구책임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장 계 련	연 구 위 원

연구원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이 승 용	연 구 위 원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박 승 준	수석연구원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임 재 영	수석연구원

Contents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이론적 논의 ····· 4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8

제2장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제1절 고흥군 조례 현황 ····· 11

제2절 입법평가 과정 ····· 12

제3절 입법평가 결과 ····· 17

제4절 해외사례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조례 및 조례 평가 ····· 32

제3장 결론

제1절 입법평가제도 운영 개선 방안 ····· 33

제2절 고흥군 입법역량 강화 방안 ····· 36

제4장 부록

1. 통계표 ····· 41

2. 평가 결과 ····· 41

3. 평가표 ····· 44

Contents

표 목 차

<표-1> 연도별(2018~2024) 조례수 추이 ····· 1

<표-2> 조례의 양적 증가와 양 측면 ····· 2

<표-3> 자치법규 정비와 조례 입법평가 비교 ····· 5

<표-4> 고흥군 자치법규 현황 ····· 11

<표-5> 전라남도 시·군 조례수 ····· 11

<표-6> 고흥군 편별 조례 현황 ····· 11

<표-7>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 21

<표-8> 평가결과 총괄표 ····· 71

<표-9> 개정권고 조례의 평가의견 ····· 71

<표-10> 폐지권고 조례의 평가의견 ····· 91

<표-11> 일반정비 조례 목록 ····· 02

<표-12> 현행유지 조례 목록 ····· 22

<표-13> 니세코마치 마을만들기 기본조례의 내용 ····· 42

<표-14> 표준적인 평가 기준 ····· 72

<표-15> 조례에서 활용 가능한 행정 수단 일람 ····· 82

<표-16> 인구감소 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조례의 방향성 ····· 03

Contents

그 림 목 차

<그림-1> 연도별 자치법규 보유 현황('24. 12. 기준) ····· 1
<그림-2> 연도별 전국 자치기본조례 시행 현황('24. 4.) ····· 3
<그림-3> 법률과 조례 종합계획의 체계 ····· 6
<그림-4> 지방의회의 개혁방향: 행동하는 정책기관으로 ····· 6
<그림-5> 조례 평가의 기준: 우수 조례의 조건 ····· 7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이론적 논의
4.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입법권 확대에 따라 조례의 수가 증가하고 조례의 적법성, 경제성, 효율성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 대두

○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래,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국제화·기후변화·신기술의 급속한 도입 등으로 인한 정책환경 변화, 주민 참여 확대에 따른 지역에 고유한 정책 수요 증가로 인해 지방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 특히 조례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함

- 그림 1처럼 조례의 증가속도는 규칙의 증가속도에 비해 매우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24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조례는 총 118,828개이며, 광역자치단체는 15,035개, 기초자치단체는 103,793개임[1)]

- 지자체별 평균 조례 보유 개수는 광역자치단체가 884개, 기초자치단체가 459개임

〈표-1〉 연도별(2018~2024) 조례수 추이

연도	총계	광역계	기초계	전라남도 본청	전라남도 기초
2018	79,288	9,264	70,024	546	7,378
2019	85,414	10,234	75,180	614	7,807
2020	91,100	11,186	79,914	695	8,331
2021	98,933	12,405	86,528	778	8,932
2022	104,122	13,027	91,095	825	9,539
2023	111,907	13,969	97,938	903	10,562
2024	118,828	15,035	103,793	978	11,124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현황」, 각 연도 자료에서 추출·작성

〈그림-1〉 연도별 자치법규 보유 현황('24. 12. 기준)[2)]

1) 행정안전부, 「2024년도 자치법규 운영현황」, 2025
2) 행정안전부, 「2025년 자치법규 정비사례집」, 2025에 2024년 자료를 추가하여 작성

○ 조례의 양적 증가가 자동적으로 자치입법의 질적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

〈표-2〉 조례의 양적 증가의 양 측면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 강화 • 행정의 세분화로 특정 분야에 대한 규제 및 지원 체계 명확화 • 법률의 공백을 보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운영 가능 • 지역 경제 및 사회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가능 • 주민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활성화	• 지나친 규제 및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증가 • 조례 간 중복 또는 모순으로 인한 혼란 발생 가능 • 실효성이 낮은 조례의 양산으로 인해 행정력 낭비 초래 •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한 입법은 장기적인 정책 목표와 충돌할 가능성 있음 • 주민들의 법 감수성 저하 및 행정 신뢰도 저하 가능

○ 양적으로 증가한 조례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자치입법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필요 있음

❑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 후 처음으로 입법평가 실시

○ 2025년 1월 6일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제정되어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실시의 법적 근거 및 의무 발생

2. 연구의 목적

○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근거하여 고흥군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평가 실시

○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4조(입법평가의 대상)에 따라 고흥군의회가 선정한 조례의 문제점 발견 및 개선 방안 마련

○ 조례에 규정된 각종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운영개선방안 마련

○ 고흥군 의회와 연구원 간 협의에 의해 마련한 평가항목에 대한 집행기관 답변의 분석을 통해 조례의 실행 현황 및 효과를 평가, 개선방안 마련

○ 입법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해 입법평가제도 운영의 내실화 및 발전 방향, 고흥군의회의 입법역량 강화 방안 제안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전라남도 고흥군 전역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5년
- 목표연도: 2025년
- 계획연도: 2025년 ~ 2028년[3)]

○ 내용적 범위

- 고흥군 현행 조례 중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입법평가 대상 조례 중 고흥군의회가 선정한 85개 조례[4)]
-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 제6호에 규정된 사항들을 기준으로 분석·평가
- 조례에는 별도의 심사기준표가 없어서 고흥군의회가 사전에 작성한 평가항목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조례의 이행여부, 실행효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현행유지, 일반정비, 개정권고, 통합권고, 폐지권고 등' 평가 의견 제안
- 타 지자체, 해외 사례 등 선진 사례 비교를 통한 고흥군 자치입법 발전 방향 모색
- 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환류하여 고흥군 입법평가 제도 운영의 내실화 방안, 고흥군의회의 입법역량 강화 방안 등 제안

2. 연구의 방법

○ 문헌 및 자료

- 입법평가 관련 이론 검토·분석
- 타 지자체, 해외 사례 검토·분석
- 실행 효과 분석 위한 예·결산 자료, 고흥군 통계, 각종 정책 자료 수집·분석

○ (FGI) 필요시 의회 및 집행기관 공무원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 초점집단면접) 진행

3)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6조제3항에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다음 평가 시기까지를 계획연도로 정함

4) 2025. 4. 15. 기준 고흥군 조례는 총 463개로 이중 이중 시행 후 3년 미만, 단순 기술적 내용의 조례 등을 제외하고 의회에서 평가대상 조례 85개를 선정함

제3절 이론적 논의

1. 자치법규 정비와 입법평가의 구분

○ 자치법규의 급격한 양적 증가는 관리의 문제를 발생시킴

- 자치법규 수의 급속한 증가로 상위법 위반, 법률의 위임 없는 의무·벌칙 등 부과, 불필요한 규제, 상위법 제·개정 사항 미반영, 기타 오탈자, 문장, 띄어쓰기 오류 등 법체계 상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함

- 상위법령의 빈번한 제·개정으로 인해[5] 상위법령 불부합의 문제도 늘어나고 있어 법체계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 있음

- 중앙정부(행정안전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의견제시, 대법원 제소 등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입법역량 발전으로 인해 상위법 위반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는 최근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6],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비해 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한 것이 현실임

- 특히 상위법령의 잦은 제·개정에 따른 불부합 문제 및 오탈자, 띄어쓰기 등의 문제는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아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늘어난 자치법규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음

○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중앙정부(행정안전부,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는 자치법규 정비와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12년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과 정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 자치법규 일제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며,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정비를 권고하고 있음

-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경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의견제시, 상담 및 교육 제공, 기준, 지침 제공 등 지원하고 있으며, 부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시행하고 있음

- 2025년 3월 기준으로 86곳의 지방자지단체(교육청 포함)가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5월 기준으로 86곳의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가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7]

○ 이러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는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정비, 입법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자치법규 정비는 자치법규의 법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함

- 상위법령 위반, 법률상 위임 없는 의무·벌칙 등의 부과, 불필요한 규제 조항, 상위법령 제·개정

5)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매년 2,600여 건의 상위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행정안전부, 「2024년 자치법규 정비사례집」, 행정안전부, 2024, p. 3.
6) 2024년 경기도 전체에 재의, 제소 건은 13건으로 본청 1건, 기초 12건이었고, 폐기 1건, 재의결 1건, 부결 6건, 계류 5건으로 나타남. 「2024년 조례·규칙 현황」, 행정안전부, 2025.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출·작성함

사항 미반영, 기타 오탈자, 띄어쓰기, 문장오류 등을 검토하여 수정하는 것이 자치법규 정비의 주요 목적

○ 입법평가는 자치법규 중 조례를 대상으로 하고, 입법평가 대상조례는 입법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조례, 단순 기술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아닌 자치조례 등임

○ 조례의 법체계적 일관성뿐 아니라 실제 조례 시행 후 조례에 규정된 사항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어떤 정책 또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예산은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사업의 결과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따라서 자치법규 정비가 자치법규 전체의 형식적 관리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면 조례 입법평가는 입법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자치법규 정비와 입법평가의 구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재하여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8)]

〈표-3〉 자치법규 정비와 조례 입법평가 비교

구분	자치법규 정비	조례 입법평가
대상	조례 및 규칙(전수조사 원칙)	평가대상 조례로 제한
근거	조례 내에 규정 또는 규칙, 지침 등	별도 조례 제정
내용	•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되지 않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 조례 입법평가는 '제도화된 정책'의 효과성 평가 • 조례가 미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영향을 객관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평가 • 조례의 입법 목적을 기준으로 실효성 및 실현성을 평가하여 시행 중인 조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해가는 일련의 과정 • 조례의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개선방안(개정, 통·폐합 등) 제시뿐 아니라, 조례에 규정된 제도 및 사업의 시행효과를 평가하여 실질적인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제공으로 각종 의정활동에 활용 가능

○ 조례 입법평가는 형식적인 정비와 달리 조례의 효과성에 대한 양적·질적 평가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률적 정합성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예산, 정책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전제되어야 함

2. 지방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 현황

○ 2025년 5월 26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중 조례 입법평가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는 곳은 총 86곳임

- 광역자치단체 13곳, 기초자치단체 69곳, 교육청 4곳

8)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 정비를 별도로 하고, 입법평가를 시행하면서 조례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이르지 못하고, 법적 체계성 같은 형식적 문제와 수정안 제안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 경우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비라 하기 어렵고, 조례의 정책적 효과성 같은 질적 평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입법평가라 보기도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킴

- 조례 명칭별로 분류해 보면, 입법평가 65곳, 사후입법평가 13곳, 입법영향평가 5곳, 다른 조례명 2곳, 입법영향분석 1곳
- 평가 시기별로 분류해 보면, 3년마다 47곳, 2년마다 17곳, 4년마다 15곳, 정기적 3곳, 미정 3곳, 위원회 결정 1곳
- 시행주체별로 분류해 보면, 단체장(교육감 포함) 60곳, 의회(위원회 포함) 26곳
- 평가기준표가 있는 곳 36곳, 없는 곳 50곳
- 입법평가위원회가 설치된 곳 78곳, 설치되지 않은 곳 8곳

3.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분석

○ 2025년 1월 6일 제정됨

○ (구성)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

- ① 목적, ② 정의 ③ 의장의 책무, ④ 입법평가의 대상, ⑤ 입법평가 실시계획, ⑥ 입법평가의 기준 및 시기, ⑦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⑧ 위원회의 구성 등, ⑨ 위원회 운영, ⑩ 수당과 여비, ⑪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⑫ 용역, ⑬ 입법평가 결과 공표, ⑭ 입법평가 반영

○ (목적) 조례의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입법의 실효성 제고 명시

○ (정의)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

○ (대상) 고흥군 조례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기관·조직의 설치·운영, 회계·예산 등에 관한 조례
- 사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그 밖에 의장이 입법평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조례

○ (평가 기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6가지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세부 심사기준표는 없고,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의장이 정함

- 조례는 ① 입법목적의 타당성·실현성, 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③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 적합성, ④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⑤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적정성, ⑥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등 6가지 평가 기준을 통해 조례를 평가

○ (평가시기)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

○ (입법평가위원회)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입법평가위원회를 설치

-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 입법평가 결과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고흥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회의 위원은 ① 고흥군의회 의원, ② 기획실장, ③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④ 행정전문가, ⑤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입법평가 결과가 공표되는 날까지

❍ 평가결과의 반영

-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고흥군의회 누리집에 공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
- 상임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소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1. 기대효과

○ 고흥군 조례 입법의 실효성 확보

- 입법 기능의 통제·관리
- 고흥군의 행정 및 입법의 효율성 제고
- 개별 조례의 실효성 확보
-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체계 구축

-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내실화
- 차기 입법평가 기반 확보
- 개별 조례의 성과 관리 체계 마련
- 평가 결과 반영 및 입법과정에의 환류를 통해 고흥군, 고흥군의회 입법역량 강화

2. 활용 방안

○ 고흥군의 지방자치 강화 및 입법 의사결정 지원

- 예산 편성 및 심의에 활용
- 행정사무감사(조사), 5분발언, 군정질의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활용
- 공청회, 토론회, 정책연구 등에 활용
- 군정운영 방향 수립에 활용

Ⅱ.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1. 고흥군 조례 현황
2. 입법평가 과정
3. 입법평가 결과
4. 해외사례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조례 및 조례 평가

제1절 고흥군 조례 현황

1. 자치법규 현황

○ 고흥군 자치법규 현황

〈표-4〉 고흥군 자치법규 현황(2025. 4. 15. 기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구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기타	계
수	463	107	59	2	0	631

○ 고흥군 조례수 순위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3위이고, 군 중에서는 8위로 중간 정도

〈표-5〉 전라남도 시·군 조례수[9)]

연번	시군명	조례수	연번	시군명	조례수
1	강진군	461		신안군	552
2	고흥군	469		여수시	712
3	곡성군	426		영광군	464
4	광양시	557		영암군	490
5	구례군	404		완도군	521
6	나주시	737		장성군	427
7	담양군	494		장흥군	447
8	목포시	691		진도군	435
9	무안군	561		함평군	484
10	보성군	466		해남군	511
11	순천시	648		화순군	458

○ 편·장에 따른 분류

- 고흥군 자치법규는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 구분은 기관(본청과 사업소, 읍·면)과 업무·사업 성격에 따른 구분이 섞여 있는 상태

〈표-6〉 고흥군 편별 조례 현황

연번	편명	조례수(건)	비중(%)	연번	편명	조례수(건)	비중(%)
1	의회	25	5.4	8	산업	88	19.0
2	기획·예산·법무·통계	31	6.7	9	건설	23	5.0
3	문화·공보	48	10.4	10	재난관리	34	7.3
4	총무	45	9.7	11	종합민원처리	18	3.9
5	재무	15	3.2	12	사업소	10	2.2
6	주민복지·사회	80	17.3	13	읍·면	10	2.2
7	환경·보건	36	7.8	계		463	100.0

- 7%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6개 편이고, 편별 조례 수와 비중은 아래와 같음

- 산업 88개(19.0%), 주민복지·사회 80개(17.3%), 문화·공보 45개(9.7%), 총무 45개(9.7%), 환경·보건 36개(7.8%), 재난관리 34개(7.3%) 등

9)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5. 9. 26. 기준. 이 표를 제외한 조례 관련 다른 통계는 2025. 3. 12. 기준

제2절 입법평가 과정

1. 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

○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4조에 따른 평가 대상 조례 중 고흥군의회가 85개 조례 선정

제4조(입법평가의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고흥군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관·조직의 설치·운영, 회계·예산 등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4.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그 밖에 의장이 입법평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조례

2. 평가 기준표 및 기준

○ 별도의 심사기준표가 없어 의회사무과에서 작성한 질문지를 소관부서에 배부하여 답변을 얻어 평가 진행

〈표-7〉 조례 입법평가 기준표

연 번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조례명				시행일	
관계법령				조례구분	□ 위임조례 ■ 자치조례

*** 해당 □에 ✓ 표시, 모든 문항은 작성 란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연번	세부항목	평가	소관부서 의견 및 관련자료
1-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없음	▪ 충돌(모순)이 발생하는 조례명 - ▪ 충돌(모순) 내용 -
1-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없음	▪ 유사 조례명 - ▪ 조례 통합이 필요한 사유 -
1-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없음	▪ 기본계획명 또는 시행계획명 - ▪ 계획 미수립 시 사유

1-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없음	▪ 책무의 내용(해당사항 체크) □ 센터 또는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 실태조사 □ 교육이나 홍보 □ 인증기관 등 지정 □ 시설이나 장비 대여 또는 사용 승인 □ 추진실적 성과평가 □ 기관 교류 또는 협력체계 구축 □ 구매 또는 고용 실적 □ 포상 □ 허가 · 승인 □ 위탁 □ 기타(해당 내용작성)
1-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없음	▪ (조례에 부여된 책무가 있는 경우)미이행 사유 -
2-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일
2-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없음	▪ 의견 수렴 방법 - 방 식: *공청회/세미나/토론회/기타* - 개최일: - 장 소: - 대상자:
2-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없음	▪ (그렇다)일 경우 내용과 진행 상황 - 민원내용
3-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없음	▪ 재정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지원실적 - ▪ 규정이 있으나 지원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
3-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없음	▪ 해당 규정(행정 · 재정 지원 내용) - ▪ 적정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
3-3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없음	▪ 적정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
3-4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없음	▪ 적정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
4-1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없음	▪ 실정과 맞지 않는 경우 그 사유 -
4-2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없음	▪ 조례에 규정된 정식 위원회 명칭 기재 -)
4-3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없음	▪ 법정위원회의 경우 - 법정위원회 명칭: - 법령명칭 및 관련 규정:

4-4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없음	▪ 위원회 구성 현황 -
4-5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없음	▪ 위원회 개최 건수 (만약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 운영실적) - ▪ 회의록 보존여부:
4-6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없음	▪ 운영 필요가 있는 경우 사유 - ▪ 폐지 등 운영 필요가 없는 경우 사유 -
4-7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없음	▪ 유사 위원회의 명칭 - ▪ 통합이 필요한 사유 -
소관부서 종합의견			

○ 회수된 심사기준표를 바탕으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따라 분석·평가

- 제6조(입법평가의 기준 및 시기)

1. 입법목적의 타당성·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 적합성

4.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5.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적정성

6. 그 밖에 조례의 이행 여부

○ 6가지 평가기준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분류 가능

- 법적 정합성

· 상위법령 위반 여부,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여부 등 검토

· 상위법령, 인용법규 등 제·개정사항 반영 여부 검토(법령명 변경, 조항이동 등)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위배사항 검토(용어, 문장 정비, 오탈자, 띄어쓰기 등)

- 실현성

· 조례 규정의 이행 여부 검토(기본계획 등 수립,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구성, 전담기관의 설치, 행정적·재정적 지원 여부 등)

- 실효성

· 조례의 조항들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효율적인가 여부 평가(이행, 미이행 검토 및 미이행 이유

파악, 임의규정 vs. 강행규정 등)

· 조례의 사업화,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해 조례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가 평가(투입-산출(input-output) 평가, 성과(outcome) 평가 등)

3. 평가 절차

❑ 대상 조례의 1차 검토

○ 법적 정합성 검토

-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여부 등 검토
-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등 검토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사항 검토

❑ 대상 조례의 2차 검토

○ 소관부서 답변서에 기초한 평가

- 기초자료 및 추가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표 작성

○ 예·결산 자료, 타 지자체 조례와의 비교, 언론 기사 검색, 기타 정책자료, 통계 등을 조사하여 평가표 작성

❑ 대상 조례의 3차 검토

○ 답변서 등 자료에 들어 있지 않은 사항, 작성된 평가표의 내용 중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을 소관부서 담당자 문의를 통해 보완

○ 발주부서를 통해 평가표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 조회 후 불일치 사항 보완

4. 판정 종류 및 기준

○ 현행유지

- 조례의 규정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경우
- 현재 이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이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집행기관이 이행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경우
- 실제 이행되고 있지 않으나, 선언적인 의미 또는 해당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례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 일반정비

- 상위법령, 인용법규 등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위반사항(용어, 문장 정비 등)
- 현행유지를 제외한 다른 권고와 중복 가능(권고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일반정비 필요성은 유지됨)
- 신구대조문 첨부

❍ 개정권고

-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타 지자체 사례 등 정책제안 사항 반영
- 위원회, 협의회 등 위촉직 위원 구성의 성별균형 조항 미비
- 간단한 조항 개정은 신구대조문 첨부, 전부개정안 같이 방침결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 개정 방향 제안

❍ 통합권고

- 유사·중복 조례, 입법의 경제성 등을 위한 통합 권고
- 유사점, 차이점, 통합방안 등 제안
- 간단한 조항 신설을 통한 통합은 신구대조문 첨부, 전부개정안 또는 새로운 조례 제정과 같이 방침결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 개정 방향 제안

❍ 폐지권고

-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집행기관의 의지가 없는 경우 등)
- 통합대상 조례 중 폐지가 필요한 경우

제3절 입법평가 결과

1. 총괄

○ 평가대상 조례 103개를 평가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8〉 평가결과 총괄표

구분	현행유지	개정권고	통합권고	폐지권고	일반정비	계
건수	14	14	0	5	69	102*

* 정비가 필요한 조례 현황은 중복 4개를 포함하고 있음

2. 분류

❑ 개정권고(14개)

〈표-9〉 개정권고 조례의 평가의견

연번	조례명	소관 부서	평가의견
1	고흥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건설과	• 고흥군에 공공조형물이 억어 조례의 조항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건립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례 유지 •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군계획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심의내용이 디자인적 요소가 강해 경관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이 적합함 • 군계획위원회 대행 조항을 경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개정 제안
2	고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축산 정책과	•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률 저조, 시설·제도적 기반 미흡, 최신 동물복지 흐름 반영 등 부족 • 소관부서에서 개정을 준비 중으로 조례 개정은 포괄적 개정을 목표로 하되, 재정, 시설, 주민 인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입양 시 지원 근거 마련, 동물복지 문화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 시행계획 수립, 동물보호센터의 기능 확대, 반려동물 개념 도입, 길 고양이 관리, 타 시군 및 해외 유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3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재난 안전과	• 원칙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은 행정적 정당성이 부족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농촌 군 단위 지역에는 장기간 거주용으로사용되는 무허가 주택이 여전히 존재하며 주민등록도 되어 있고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음 • 이들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면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이 재난 상황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음 • 제6조제4호에 단서조항 신설하여 재산세 과세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시킴

연번	조례명	소관 부서	평가의견
4	고흥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환경산림과	•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음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 변화 대응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않아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함 • 기본계획 수립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위법소지를 방지
5	고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기획실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이나 실제 관련 사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담당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없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로결정하여 보상금을 지불하면 군에구상권을청구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 조례 자체의 실효성은 약하나 공식신고 보상금 상환, 공익신고 장려를 위해 조례는 유지할 필요 있음 •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위법소지를 방지
6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기획실	•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 균형 조항 신설
7	고흥군 명예읍면장 조례	행정과	• 2009년 이래 개정이 없었던 조례로 명예 읍면장의임무, 복무 등에 관한 조항이 출향인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아 전부개정 필요 • 조례의 목적은 "읍면행정의활성화와 주민 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위촉 활용"하는 것이었으나, 현재에는 출향인사들의 고향 홍보, 고향사랑 기부제등에 참여를 중심으로운영되고 있음
8	고흥군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인구정책실	• 시책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제2항 에 따라 성별 균형 조항 신설
9	고흥군 수입증지 조례	재무과	• 조례는 종이 수입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부터 고흥군 전부서에서전자 수입증지를 사용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이 없음 • 전부개정 제안
10	고흥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행정과	• 중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장학금 지급대상이 없어짐 • 현재 소관부서에서 대학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 지원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에 생활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안
11	고흥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행정과	•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인권교육,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조사 등 일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6조의 기본계은수립하지 않고 있음 •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 균형 조항 신설

연번	조례명	소관 부서	평가의견
12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주민 복지과	• 화장지원금이 지원되어 조례의 실효성을 충족하고 있으나 지원금이 타 지자체에비해 낮아 민원이 제기됨ü지원금의 현실화를 위한 개정 필요 • 전국 지자체의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분석 결과 조례에 지원금액을 정해 놓은 곳과 화장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한 곳으로 나뉨•조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후자를 제안함
13	고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과	• 지원대상자 14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 축소되었으나,고흥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을 위한 조례로 향후 지원대상자가 추가될 경우를 대비하여 유지할 필요 있음 •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 조항 신설
14	고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보건소	• 헌혈 권장을 위해 상시적인 홍보가 필요 •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조항에 홍보문구 추가 • 「경상남도 헌혈 권장 조례」 제14조제2항은 헌혈권장활동 홍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홍보매체, 방법 등)

❑ 통합권고(0개)

❑ 폐지권고(5개)

〈표-10〉 폐지권고 조례의 평가의견

연번	조례명	소관 부서	평가의견
1	고흥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농업기술 센터	• 4-H회 회원 고등학교, 전문학교 재학생을 지원대상으로 공납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국비 50%를 전제로 함 • 국비 미지원, 고교무상교육 실시 등으로 실효성 없는 조례로 폐지 권고 • 실효성 없는 장학금 지급 대신 현재의 4-H회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
2	고흥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건설과	• 2018년 도시재생사업 준비 과정에서 제정된 조례이나 시행된 적 없고,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고 있어 향후에도 시행될 전망이 없음 • 장기 미시행조례로 실효성 없어 폐지 제안
3	고흥군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여성가족 과	• 저소득계층 자녀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조례이나 보편적인 교복 지원 정책이 시행되어 실효성 없음
4	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 조례	행정과	• 행정여건에 부합하지 않고 시행되지 않아 실효성 없는 조례로 폐지해야 하나 기존 포인트 미사용자가 폐지 이후 사용을 하려고 할 때 문제 발생 가능 • 폐지안 부칙에 경과규정을 넣어 해결 가능
5	사단법인 고흥영상문화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획실	• 영화제 개최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2013년 이후 개최되지 않아 시행된 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

❑ 일반정비(69개)

〈표-11〉 일반정비 조례 목록

연번	조례명	소관 부서
1	고흥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농업기술센터
2	고흥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등에 관한 조례	건설과
3	고흥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건설과
4	고흥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산업과
5	고흥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경제산업과
6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관광정책실
7	고흥군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	농업기술센터
8	고흥군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지원 조례	농업기술센터
9	고흥군 농업인단체지원 조례	농업정책과
10	고흥군 농촌 신활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정책과
11	고흥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농업정책과
12	고흥만농업지원시설 관리·운영 조례	농업정책과
13	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스마트팜사업소
14	고흥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재난안전과
15	고흥군 해창오마간척사업시설사용 조례	재난안전과
16	고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축산정책과
17	고흥군 유자골고흥한우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축산정책과
18	고흥군 천 원 도선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해양수산과
19	고흥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조례	경제산업과
20	고흥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환경산림과
21	고흥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환경산림과
22	고흥군 환경 기본 조례	환경산림과
23	고흥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의회사무과
24	고흥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기획실
25	고흥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기획실
26	고흥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과
27	고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기획실
28	고흥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행정과
29	고흥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기획실
30	고흥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기획실
31	고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기획실
32	고흥군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문화체육과
33	고흥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보건소
34	고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보건소

연번	조례명	소관 부서
35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보건소
36	고흥군 명예읍면장조례	행정과
37	고흥군 교복지원 조례	여성가족과
38	고흥군 발포역사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문화체육과
39	고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40	고흥군여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여성가족과
41	고흥군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여성가족과
42	고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43	고흥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기획실
44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구정책실
45	고흥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인구정책실
46	고흥군 수입증지 조례	재무과
47	고흥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종합민원실
48	고흥군 빈집정비 및 활용 조례	종합민원실
49	고흥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주민복지과
50	고흥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행정과
51	고흥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행정과
52	고흥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복지과
53	고흥군립하늘공원 설치조례	주민복지과
54	고흥군 재향경우회육성 및 지원 조례	행정과
55	고흥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복지과
56	고흥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	주민복지과
57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주민복지과
58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나눔 연수원 운영 조례	주민복지과
59	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 조례	행정과
60	고흥군 리개발위원회조례	행정과
61	고흥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과
62	고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과
63	고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행정과
64	고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행정과
65	고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보건소
66	고흥군 홍보대사 및 명예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기획실
67	고흥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과
68	사단법인 고흥영상문화위원회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획실
69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기획실

❑ 현행유지(14개)

〈표－12〉 현행유지 조례 목록

연번	조례명	소관 부서
1	고흥군 어린이 통학로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건설과
2	고흥군 가족의 섬 우도 관리·운영 조례	관광정책실
3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관리·운영 조례	휴양공원사업소
4	고흥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농업기술센터
5	고흥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경제산업과
6	고흥군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우주항공추진단
7	고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안전과
8	고흥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관광정책실
9	고흥군 조직배양 우량씨감자관리 운영 조례	농업기술센터
10	고흥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11	고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12	고흥군 노인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주민복지과
13	고흥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과
14	고흥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행정과

제4절 해외사례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조례 및 조례 평가

1. 일본 지방자치단체 자치기본조례 개요

○ 일본 자치기본조례는 주민자치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기본원리를 정하는 조례[10)]

- 다른 조례나 조치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자치 입법제도의 최고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이라고 함
- 자치기본조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등의 명칭으로 제정
- 일본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는 분권 개혁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운영의 기본 규칙을 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자치기본조례 제정으로 이어짐

○ 2024년 4월 일본 1,788개 지자체 가운데 409개 지역에서 지정(22.9%)[11)]

- 광역인 도도부현은 3단체(홋카이도, 카나가와켄, 교토부), 기초인 시정촌은 406개 지역

<그림-2> 연도별 전국 자치기본조례 시행 현황('2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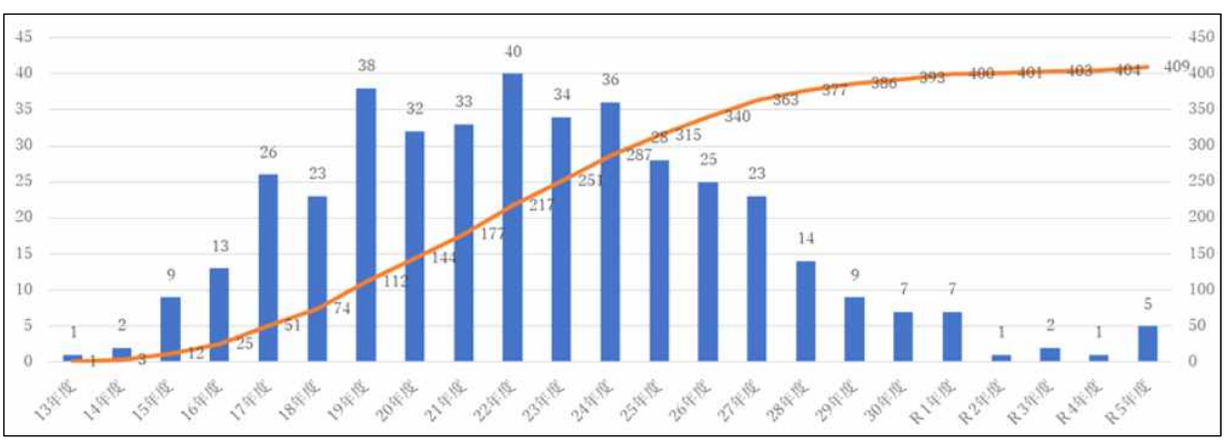

출처: 一般財団法人 地方自治研究機構, 自治基本条例: 全国の制定状況, 2024. 4.

○ 자치기본조례는 지역과제에 대한 대응, 마을만들기의 주체와 역할, 그리고 추진 방법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자체의 권능과 기본적 원칙을 정하는 조례

- 일본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정보의 공유, 시민참여 및 협업 등의 자치 기본원칙, 자치를 담당하는 시민, 단체장 및 행정 등의 역할과 책임, 정보공개, 계획·심의회 등 시민참여와 주민투표 등 자치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 등을 정함

○ 자치기본조례의 의의

- 지자체의 향후 달성해야 할 보편적인 지방정부 미래상을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고민할 기회 제공
- 제정 과정 및 제정 후의 운영에 따른 주민의 참여가 요구는 주민의 자치의식 향상을 도모

10) 公共政策研究所(ＮＰＯ法人), 全国の自治基本条例一覧, https://koukyou-seisaku.com/policy3.html
11) 公共政策研究所, 全国１７８８自治体ホームページ例規集調査・分析, 2024.

- 지자체 개별 조례 및 시책의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식을 고려함

❍ 1997년 오사카부(大阪府) 미노오시(箕面市)의 마을만들기 이념조례가 최초 시작[12)]

- 일본 지방분권법이 시행된 2000년 홋카이도(北海道) 니세코마치(ニセコ町)에서 전국 최초로 자치기본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산[13)]

<표-13> 니세코마치 마을만들기 기본조례의 내용

조번호	항목	내용
	서문	전체 15장 57개 조항으로 구성
제1조	목적	
제2조	마을만들기의 기본원칙	마을만들기의 2대 원칙은 정보 공유와 주민참여
제3조	정보 공유의 추진	
제4조	마을만들기에 대한 참여의 촉진	
제5조	지역사회(커뮤니티)	- 상기 2대 원칙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규정과 구체적인 제도 규정: 행정절차, 위원의 공모, 비영리구호기관, 기획 및 참여 절차, 퍼브릭 코멘트, 행정평가, 마을 주민 투표 등 규정 (제55조) 다른 조례, 규칙 또는 그 외의 조례에 의해 마을만들기 제도를 정하거나 실시하는 경우, 조례에 정해진 사항 최대한 존중 (제56조) 마을은 이 조례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교육, 환경, 복지, 산업 등 각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 그 외의 조례, 규칙 및 기타 조례를 체계화 (제57조) 조례 시행 후 4년이 경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이 조례가 니세코마치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제6조	의회의 역할과 책임	
제7조	마을의 역할과 책임	
제8조	기획 과정	
제9조	재정	
제10조	평가	
제11조	마을 주민 투표제	
제12조	협력	
제13조	조례 제정 절차	
제14조	마을만들기 기본조례의 포지셔닝	
제15조	조례 검토 및 수정	

❍ 자치기본조례의 종류[14)]

- (이념형 조례) 마을만들기 기본이념, 시정촌의 책무 등 추상적 규정을 정하는 조례
- (권리보호형 조례) 주민의 환경권, 생활권, 참여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례
- (주민자치형 조례) 주민의 참여 및 주민투표 등의 구조를 정하는 조례
- (행정지침형 조례) 행정시책의 방향성 및 행정운영의 지침을 정하는 조례
-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제정되고 있는 자치기본조례는 주민자치와 주민 중심의 마을만들기 원칙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주민자치형 조례에 해당

12) https://ja.wikipedia.org/wiki/%E8%87%AA%E6%B2%BB%E5%9F%BA%E6%9C%AC%E6%9D%A1%E4%BE%8B
13) https://www.town.niseko.lg.jp/chosei/keikaku/machizukuri_jorei/machizukuri_jorei/
14) 地方自治研究機構, 条例の審査と提案, 2021.

○ (자치기본조례의 내용) 지자체별로 내용의 차이를 보이나 일반적으로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

- 마을만들기(시정 운영)의 방향성 및 미래상
- 시민의 권리(생활권, 시정 참여권, 정보공개청구권 등)
- 시(단체장, 의회, 직원)의 의무 및 책무, 시민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 주민참여의 절차 구조, 주민투표 방식, 시민협력의 방식, NPO 지원 등
- 분야별 시책의 방향성, 기타 시책 및 조례와의 관계(최고규범성)
- 개정, 변경 등의 절차 및 평가

○ (자민당 의견) 자치기본조례 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15)]

- 자치기본조례는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기본질서나 기존 법률 체계와 충돌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우려
- 시민참여가 일반시민이 아닌 특정 시민단체나 활동가 의견의 과도한 반영 문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의 행정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행사 문제 발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할 것을 요구

2. 일본 조례 평가

❑ 정책법무와 의회의 역할

○ 일본의 조례 평가는 집권형 법무에서 분권형 법무인 정책 법무로 전환[16)]

- 집권형 법무란 종래 중앙집권적 체계에서 국가는 정책 수립, 지자체는 집행의 관점에서 접근
- 정책 법무란 조례를 정책 실현의 수단으로 보면서, 어떤 입법, 법집행, 분쟁해결, 평가가 필요한가를 검토하는 실무 및 이론적 접근
- 확충된 권한으로 지역만들기와 주민자치 추진
- 정책과 법무를 연계하려는 노력

15) 自民党, パンフレット“ちょっと待って！！自治基本条例”
16) 自治体法務の基礎, 市町村アカデミー, 2024. 9.

<그림-3> 법률과 조례 종합계획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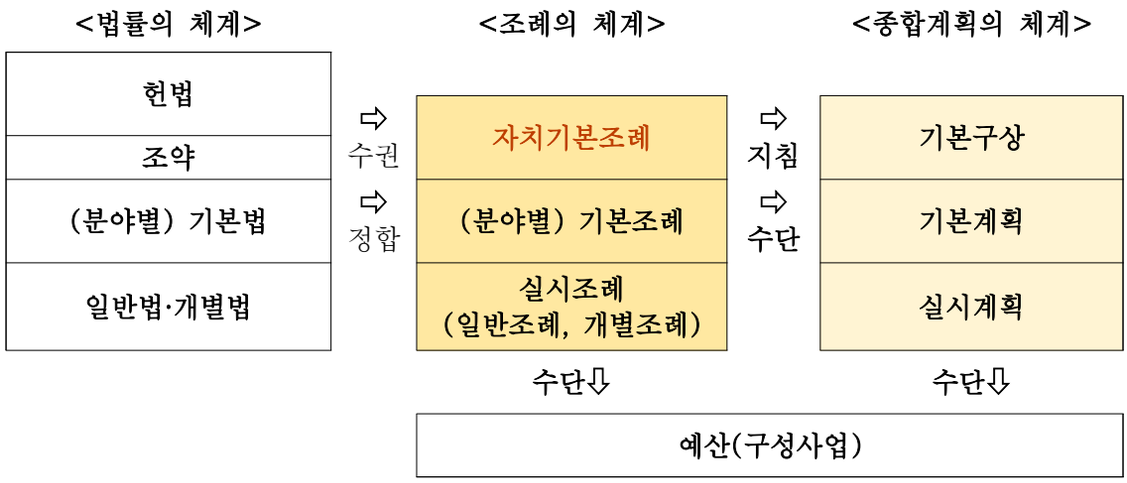

○ 의회의 기능과 개혁 방향

- 의회의 기능은 정책형성 기능과 행정 감시 기능

<그림-4> 지방의회의 개혁방향: 행동하는 정책기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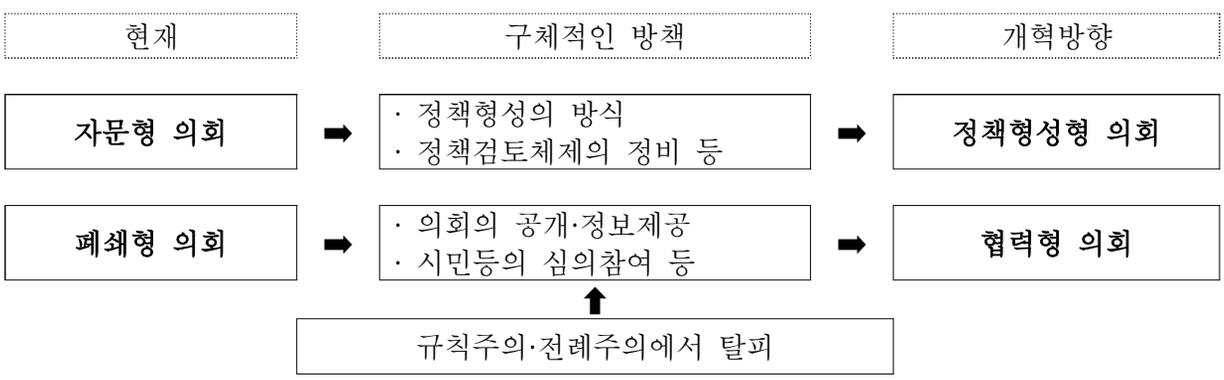

❑ 조례 제정(입법 법무)의 두 가지 축

○ (법적 검토) 적법 조례

-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일 것, 헌법에 반하지 않을 것, 법률의 범위 내에 있을 것
- 자치입법권, 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도 제정이 가능하나 법률의 범위 내라는 조건 필요
- 법률과 조례의 관계: 과거는 법률 우선 이론, 현재는 실질적 충돌 여부로 판단(판례에 따른 유연한 해석)

○ (정책적 검토) 우수 조례

- 조례 평가 이론: (우수 조례란 무엇인가) 필요성, 적법성, 유효성, 효율성, 공평성, 협력성 등
- 입법 사실 이론: 조례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사실
- 행정 수단 선택 이론: (조례 입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규제적 수단, 유도적 수단, 지원적 수단, 조정적 수단, 계획적 수단, 실효성 확보 수단, 재원 확보 수단, 협동 촉진 수단 등 다양한 행정

수단을 조례에 적용 가능

○ 위의 내용을 조례 입안의 작업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문제가 조례 입안의 실천

❑ 조례 평가의 이론: 우수 조례의 구조 및 조건

○ (정책 법무론) 정책 실현의 수단으로서 '우수한 조례'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17)]

○ '우수 조례'의 조건

cf. 중앙정부의 정책 평가법 시행,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책 평가·행정 평가

〈그림-5〉 조례 평가의 기준: 우수 조례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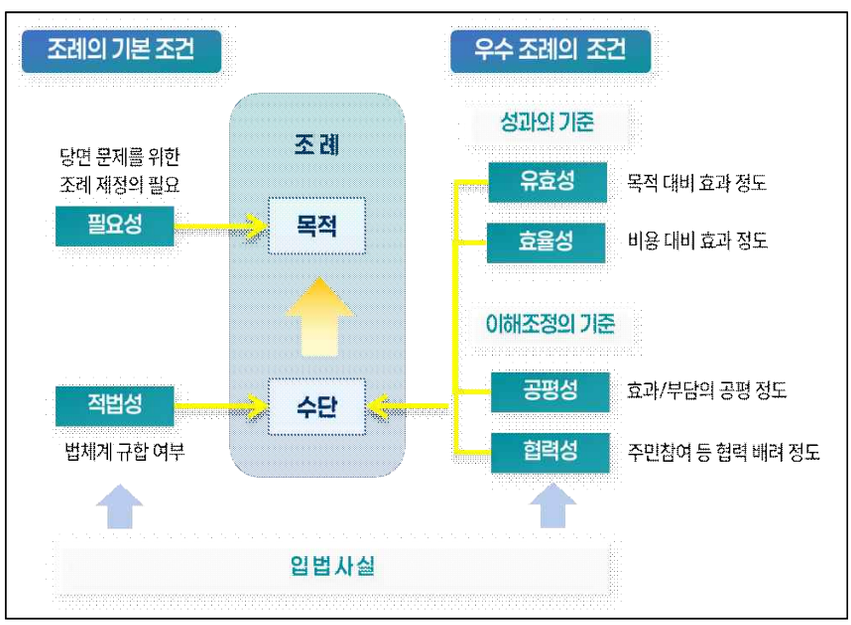

<표-14> 표준적인 평가 기준

① 필요성	당해 정책이 필요한가, 다른 수단으로 대응이 가능한가
② 유효성	목적의 실현이 어디까지 효과가 있는가
③ 효율성	어느 정도의 비용이 요구되는가
④ 공평성	주민 간의 공평 및 평등에 적합한가
⑤ 협력성	주민 참여 및 NPO 등과의 협력을 배려하고 있는가
⑥ 적법성	헌법, 법률, 조례 등에 적합한가

❑ 입법사실 이론: 조례의 합리성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 조례 평가 시 어떤 정보에 근거해 평가할 것인가 → 그 기반은 '입법 사실'[18)]

○ 입법 사실(legislative facts)이란 법률 제정의 근거가 되는 일반적 사실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사실 등을 포함 → 헌법 소송에서 입법의 합헌성 판단에도 중요한 의미[19)]

17) 地方自治研究機構, 立法法務の基礎, 2024. 9.
18) 蓮實憲太, 自治体政策法務と立法事実, 都市とガバナンス Vol. 40, 2024.

○ (예시) 간접흡연방지 조례에서의 입법 사실

- 대상 시설에서의 흡연(간접흡연) 실태
-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 및 비흡연자에게 초래하는 불이익
- 조례 상 조치로 어느 정도의 간접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가 등

❑ 행정 수단의 선택: 정책 실현 수단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 행정 수단이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수행하는 활동의 수단 또는 방법

○ 전통적으로 조례는 권고나 행정지도 등의 수단을 주로 사용

→ '우수한 조례' 제정에는 규제적 수단, 유도적 수단 등 다양한 수단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표-15> 조례에서 활용 가능한 행정 수단 일람

대분류	중분류	구체적인 행정수단
기본적 수단	규제적 수단 (행위 제한 및 억제)	① 금지제: 특정 행위를 금지
		② 허가·승인제: 사전에 허가, 승인 필수
		③ 협의·동의제: 사전 협의 필수
		④ 지정·등록제: 사전 등록 필수
		⑤ 명령제: 정지 등 명령 가능
	유도적 수단 (행위 및 상태 유도)	① 행정지도: 권고, 지시
		② 보조금제: 비용 일부 보조
		③ 정책세제: 세금 감면/부과
		④ 인증제: 인증/공표
		⑤ 홍보·계몽제: 캠페인 등
	지원적 수단 (서비스 등의 제공)	① 금전 교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 교부
		② 금전 대여: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금 대출
		③ 서비스 제공
		④ 시설 제공: 시설 이용 승인
		⑤ 상담·정보 제공
	조정적 수단 (관계자의 의견 및 이해 조정)	① 의견청취제
		② 중재·조정제
		③ 당사자 협의제
		④ 협정·계약제
		⑤ 고충처리제: 관계자의 고충에 대한 조사 및 지도

19) 渡辺千原, 法を支える事実, 立命館法学, 2010 年 5・6 号.

대분류	중분류	구체적인 행정수단
보완적 수단	계획적 수단 (목표의 명확화)	① 행정계획제: 사업 및 시책의 목표 명확화
		② 행동지침제: 행동규범의 명확화
	실효성 확보 수단 (다른 정책 수단의 실효성 확보)	① 벌칙제: 위법 행위 제재
		② 시정명령제: 위법 행위에 대한 의무 부과
		③ 처분취소제: 조건 위반에 대하여 허가 등 처분 취소
		④ 행정조사제: 위법한 행위 사실에 대한 조사(임의조사 포함)
		⑤ 명단공표제: 행위에 대한 개인정보 공표
		⑥ 급부거부제: 위반 행위에 대한 서비스 중지
	재원조달 수단	① 독자세제: 재원확보를 위한 법정외세 등을 부과
		② 기부촉진제
	협력 촉진 수단 (시책사업 실시에 대한 주민협력 촉진)	① 주민제안제: 주민 등의 제안을 모집 및 촉진
		② 주민권한부여제: 주민단체 등에 공적 권한 및 역할 부여
		③ 주민협력제: 주민과의 협력, 연대 촉진
		④ 민간위탁·지정제: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 또는 일정 지위 부여

○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조례의 방향성은 다음과 제시될 수 있음

<표-16> 인구감소 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조례의 방향성

키워드	지역의 과제	중요해지는 정책 · 조례
1) 콤팩트 (축소)	① 시가지 축소, 스펀지화(sponging) 대응 ② 도심 거주 지원, 대중교통 유지 ③ 고령자가 살기 좋은 도시	입지 적정화 계획, 빈집 활용 조례 지역교통망 형성계획, 지역교통 조례 지역포괄 지원센터, 소규모 거점(생활권 거점)
2) 리뉴얼 (재생)	① 농지 황폐화, 소유자 불명 산림에 대한 대책 ② 공공시설의 축소, 지역 교통 재편 ③ 지역 특색 · 매력의 재생	소유자 불명 토지법, 산림경영관리 조례 입지 적정화법, 교통도시조성 조례 역사도시 조성법, 마을만들기 조례
3) 커뮤니티 (협동)	① 행정기능 축소, 공무원 감축 ② 1인 가구 증가, 가족 기능 저하 ③ 자치회 · 마을회 지원과 기능 확대	커뮤니티 조직에 대한 업무 위탁 소규모 거점, 이웃의 역량강화 조례 커뮤니티 조례, 공공시설의 지역 운영화
4) 자원봉사 (자주)	① NPO · 상호부조형 사회 시스템 구축 ② 기부 촉진, 유산 활용 및 재단화 ③ 자원봉사 공무원의 증가	NPO 지원, 행정과의 협력 촉진 기부세제 개선 · 활용, 유산 활용 공무원법 재검토, 다양한 인재 활용을 위한 조례

❑ 함의

○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중심 입법권 확대로 나타났고, 조례 평가는 단순한 법적 정합성을 넘어서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어짐

○ 자치기본조례의 제정 움직임은 조례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주민자치에 관한 규범을 확립하려는 것임

○ 자치기본조례-(분야별)기본조례-실시조례(일반·개별조례) 체계 확립을 통해 입법의 일관성, 경제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음

Ⅲ. 결론

1. 입법평가제도 운영 개선 방안
2. 고흥군 입법역량 강화 방안

제1절 입법평가제도 운영 개선 방안

1.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평가

❑ 장점

○ 입법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음

- 정기 평가의무(4년), 평가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외부용역, 결과 공표, 상임위원회 통지 등 절차적 체계를 구비

○ 명확한 의회 주도-집행부 협조체계

- 의장이 정기평가를 주도하고 군수가 자료제출·협조하도록 해 감사·감독 성격보다 성과관리형 사후평가에 가깝게 설계됨

○ 평가대상주기 기준의 균형

- 시행 3년 미만, 기술적 조례, 최근 4년 내 평가 조례 제외 등 실무적 예외규정으로 과부하 저감

○ 전문기관 의뢰 근거, 위원회 심의 의결구조

- 외부전문기관 의뢰와 한시적 위원회 설치로 평가의 전문성·기동성 확보

○ 평가결과의 환류장치 명시

- 상임위원회에 통지, 상임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소관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행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음

❑ 문제점

○ 방법·지표의 불투명: 구체적인 심사기준표가 부재하여 입법평가 시기마다 일관된 지표에 의한 평가의 어려움

○ 제6조제1항제1호～제6호의 평가기준이 조례 조항들의 법 정합성, 실현성 등 위주(입법목적의 타당성·실현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여부, 법 적합성 등)로 규정되어 실효성 평가가 미흡함

○ 이행·재평가 장치 부재: 결과 공표 후 상임위원회에 통지하고, 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는 상임위원회 소관이 되어 집행기관의 이행책무, 이행독려 방안이 부재함

○ 위원회 독립성·윤리 미흡: 의회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고, 이해충돌, 겸직 제한·회피 규정, 성별규정 명문화 등 미비

2. 입법평가 제도 및 운영의 개선방안

○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표 작성을 통해 평가의 일관성과 재현성 확보

- 심사기준표는 실현가능하고, 측정가능한 지표로 구성되어야 하고,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구성되어야 함

1. 입법목적의 타당성·실현성

* 입법목적의 범위, 실현가능성, 고흥군 관련 현황, 효과측정 지표 등

* 조항의 구성이 입법 목적 실현에 효과적인지 여부 및 유사·중복 여부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 강행규정 vs. 임의규정

* 미수립 시 사유

·* 다른 계획으로 대체 시 대체의 적정성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 적합성

* 상위법령과의 관계, 위법성,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여부 등

*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준수 여부 등

4.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 차별 조항 유무

* 차별의 불가피성 또는 합리성 여부

5.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적정성

* 위원회 설치 요건 충족 여부: 「지방자치법」 제130조, 법 시행령 제78조,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설치 요건 충족 여부

* 법 시행령 제78조~제80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20]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권고규정으로 강제성이 없음

* 위의 권고는 중복을 피하여 법 경제성을 확보하고, 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무자가 관련 법령을 모두 살펴보고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조례에 관련 문구를 추가하여 현장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양성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강조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과다하거나 성별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데 조례에 직접 규정해 두면 법률과 조례의 이중 근거를 들어 성별균형 유지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음

*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여부, 미구성, 미개최 사유 등

* 기타 회의록의 작성, 공개, 보존 여부 등

---

20)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 222, 2022.

6. 그 밖에 조례의 이행 여부

*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홍보, 교육, 주민의견 수렴 등 조례의 규정 또는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의 이행 여부, 미이행 시 사유

- 여기에 추가로 실효성 평가를 위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이 추가되어야 함

*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여부, 사업규모(량), 목표 설정의 적정성, 미달시 사유 등

○ 평가결과 반영을 위한 의회-집행기관 협력체계 조항 신설

- 현재 조례에는 평가결과의 반영을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가용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현 기초의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집행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집행기관의 법무담당 부서 주관으로 각 소관부서로부터 제출받아 종합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정비를 추진

○ 평가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제2절 고흥군 입법역량 강화 방안

1.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고흥군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조례 입법평가 결과 평가대상 조례 85개 중 현행유지 14개, 개정권고 14개, 통합권고 0개, 폐지권고 5개, 일반정비 69개가 제안됨

○ 일반정비는 대부분 띄어쓰기, 맞춤법, 용어, 문장정비,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고흥군 조례가 제정된 후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는 입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나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규정은 담고 있지 않음
- 정기적인 자치법규 정비의 시행을 위해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에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자치법규 정비의 조건, 시기, 주체, 정비 프로세스 등에 관한 사항들을 상세히 규정하여 자치법규 정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자치법규 정비를 담당할 전담부서 지정과 인력 확충이 필수적임
- 자치법규 정비가 부서 BSC(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표)에 포함되어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함

○ 개정권고 14개는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되지는 않으나 시행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시행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있음

○ 폐지권고 5개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목적이 현실의 변화에 따라 사라져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장기간 이행되지 않았고, 이행할 계획도 없는 유명무실한 경우 등임

-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시부터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조례의 목적이 고흥군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규범화하여 궁극적으로 고흥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성, 현실성 등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함
- 지원대상, 규모, 예산 상황, 효과적인 정책수단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논의를 통해 힘들게 제정된 조례가 이행되지 않고 방치되는 상태를 방지해야 함
- 조례의 조항들이 현실에 부합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사업)부서－법제사무 담당부서－의회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2. 고흥군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 조례 구성 형식의 다양화[21)]

○ 현재 조례는 대체로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기본계획 등의 수립, 지원사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됨

- 조례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 포상,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이 추가되기도 하지만 비슷한 구성과 체계를 갖고 있고, 10개 내외의 조항들로 조례를 구성하고 있음

○ 조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조례의 성격을 먼저 정하고, 그에 따라 조례의 형식을 고려해야 함

○ 이 과정에서 사업화가 필요하다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사업이 어떻게 설계되어 시행될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건, 사전절차,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어떤 것일지 사전에 검토해야 함

○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사전에 소관부서와 이러한 내용을 협의하여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조례의 목적 실현을 위해 이행과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나, 조례 내에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조례의 실효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음

○ 조례 조항의 강행규정 vs. 임의규정, 모호한 규정의 명확화

- 조례의 강행규정은 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하나, 조례의 조항들이 임의규정으로만 구성된 경우 조례의 실효성은 심각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음

-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하였지만,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당장 시행이 어렵더라도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시행의 기초가 되는 사항들은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를 강제할 필요가 있음

- 조례 중 "...을 설치한다.", "..을 구성한다.", "...을 한다." 등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모호한 문구들은 명확한 표현으로 바꾸어서 자의적 해석과 정책 시행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여야 함

❑ 조례의 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 확보

○ 유사·중복 조례의 증가는 다양한 입법 수요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기존 조례와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고, 조례가 선언적이거나 형식적인 몇 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경우 기존 조례에 해당 조항 1~2개를 추가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 앞서 살펴본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주요 정책 분야에 따라 먼저 기본조례를 만들고 기본조례를 기반으로 실시조례들을 배치하는 체계를 구축하연 입법의 일관성, 경제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음

21)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용역」, pp. 58-60 참조

Ⅳ. 부록

1. 통계표
2. 평가 결과
3. 평가표

1. 통계표(평가대상 조례 85건)

구분	현행유지	일반정비	개정권고	통합권고	폐지권고	계
건수	14	69	14	0	5	102*

* 현행유지를 제외한 다른 권고사항은 일반정비와 중복될 수 있음

2. 평가결과

연번	조례명	평가 결과
1	고흥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2	고흥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3	고흥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4	고흥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5	고흥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6	고흥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7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8	고흥군 가족의 섬 우도 관리·운영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9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10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운영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11	고흥군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12	고흥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13	고흥군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14	고흥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15	고흥군 농촌 신활력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16	고흥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17	고흥만 농업지원시설 관리·운영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18	고흥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19	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20	고흥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21	고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22	고흥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23	고흥군 해창오마간척사업시설 사용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24	고흥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25	고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26	고흥군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27	고흥군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관리 운영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28	고흥군 천 원 도선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29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30	고흥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31	고흥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32	고흥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	
33	고흥군 환경 기본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34	고흥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35	고흥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36	고흥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37	고흥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38	고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39	고흥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40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41	고흥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42	고흥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43	고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44	고흥군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45	고흥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46	고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47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48	고흥군 명예읍면장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49	고흥군 교복지원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50	고흥군 발포역사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51	고흥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52	고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53	고흥군여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54	고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55	고흥군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56	고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57	고흥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58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59	고흥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60	고흥군 수입증지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61	고흥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62	고흥군 빈집정비 및 활용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63	고흥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64	고흥군 노인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65	고흥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66	고흥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67	고흥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68	고흥군립 하늘공원 설치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69	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70	고흥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71	고흥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72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73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운영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74	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75	고흥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76	고흥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77	고흥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78	고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79	고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80	고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81	고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82	고흥군 홍보대사 및 명예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83	고흥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84	고흥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85	사단법인 고흥영상문화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3. 평가표

[1] 고흥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table>
<tr><th colspan="5">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 colspan="2">소관부서</td><td>농업기술센터</td><td>시행일</td><td>2017. 12. 29.</td></tr>
<tr><td colspan="2">조례 구분</td><td colspan="3">■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colspan="2" rowspan="2">관계 법령</td><td>법령명</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해당 없음</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주요 내용</td><td colspan="3">• 구성
①목적 ②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③추천 ④선발 ⑤장학생의 정원 ⑥장학금 ⑦장학금지급 ⑧지급의 정지 ⑨시행규칙

• 목적
- 4-H회 회원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활동실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4-H장학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재학생중 학업성적의 우선순위 자
- 군단위 이상 4-H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 졸업후(군복무 제외) 정착영농을 하면서 4-H회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자
• 선발
-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 우선순위자
- 군단위 이상 4-H회 교육행사에서 모범 부원으로 표창받은 회원
- 군단위 이상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 마을단위 4-H회 임원
- 학교 4-H회 임원
-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자
- 4-H회 과제 활동에 충실한 자
• 장학생의 정원
- 연 4명 내외(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 증감 가능)
• 장학금
- 예산의 범위에서 국비 50%로 함</td></tr>
<tr><td rowspan="5">총괄평가</td><td colspan="2">종합의견</td><td colspan="2">• 현실에 맞지 않고 대상사 선정에 어려움 있어 이행되지 않고 있음</td></tr>
<tr><td colspan="2">검토결과</td><td colspan="2">□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일반정비</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colspan="2">• 미이행</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2">• 미충족</td></tr>
</table>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선발 조건을 갖춘 대상자 선정 및 4-H 학생 육성 어려움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선발 조건을 갖춘 대상자 선정 및 4-H 학생 육성 어려움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무상교육과 지자체 장학회가 확대되면서 지급 근거가 불명확하고, 형평성과 특혜성의 문제가 대두됨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타 지자체도 폐지하고 있는 실정임 - 전남 3개 시군은 조례규칙이 폐지되었고, 전남 6개 시군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사문화된 법안으로 장학금 지급 사례가 없음	
3. 입법평가 결과(용역사)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용어 - 제2조, 제2조제1호 ~ 3호: 자 → 사람 - 제3조제3항: 자 → 사람 - 제3조제3항제3호: 기타 → 그 밖에 - 제4조제3호,제6호, 제7항: 자 → 사람 • 띄어쓰기 - 제3조제2항: 기일내에 → 기일 내에 - 제4조제1항: 개시이전까지 → 개시 이전까지 - 제4조제1항 제1호: 2년이상 → 2년 이상 - 제4조제2항: 고등학교80% → 고등학교 80% - 제8조제1항: 해당학기중 → 해당학기 중 • 문장 - 제4조 제1항: 복수로 추천된자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 복수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 제4조제3항: 선발할 때에는 → 선발할 때는 - 제5조, 제6조: 예산의 범위내에서 → 예산의 범위에서	

	- 제7조제2항: 지급할 때에는 → 지급할 때는 - 제8조제1항: 발생할 때에는 → 발생할 때는 • 오탈자 - 제4조제2항: 중점 재정 → 중점 배정
실현성	□ **미이행** •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음 - 선발 조건을 갖춘 대상자 선정 및 4-H 학생 육성 어려움
실효성	□ **성과** • 미이행으로 성과 없음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 -- 사람 ----------.	용어정비
1.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재학생중 학업성적의 우선순위 자	1. ---------- ---------- ---------- ---------- 사람	용어정비
2. 군단위 이상 4-H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2. ---------- ---------- 사람	용어정비
3. 졸업후(군복무 제외) 정착영농을 하면서 4-H회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자	3. ---------- ---------- ------ 있는 사람	용어정비
제3조(추천) ①·② (생 략)	제3조(추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사람은 ---------- ---------- ---------- ----------.	용어정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선발) ① 군수는 제2조의 규	제4조(선발) ① ----------	용어정비

정에 의하여 복수로 추천된자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실시하고 학년 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추천된 사람을 ---------- ---------- ---------- 개시 이전 ----------.	띄어쓰기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군단위 이상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3. ---------- ---------- 사람	용어정비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2. 정책 제안 사항

- 폐지 권고
-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고 있지 않음

- 선발 조건을 갖춘 대상자 선정 및 4-H 학생 육성의 어려움
- 무상교육과 지자체 장학회가 확대되면서 지급 근거가 불명확하고, 형평성과 특혜성의 문제가 대두됨

- '25. 7. 기준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또는 「4에이치 장학금 지급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고흥군 외 6곳뿐임

- 전라남도 순천시, 강진군, 신안군, 여수시, 진도군, 경기도 안성시, 군산시 조례는 2015. 4. 30. 폐지되었고 시행규칙만 있음
- 사장되어 가는 제도로서, 실효성 없음

[2] 고흥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table>
<tr><th colspan="5">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소관부서</td><td colspan="2">건설과</td><td>시행일</td><td>2018. 12. 06.</td></tr>
<tr><td>조례 구분</td><td colspan="4">■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rowspan="2">관계 법령</td><td colspan="2">법령명</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해당 없음</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주요
내용</td><td colspan="4">•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적용범위 ④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⑤비용부담 ⑥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등 ⑦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⑧공공조형물의 관리 ⑨재정지원 ⑩시행규칙</td></tr>
<tr><td colspan="4">• 목적
-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군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공공조형물의 관리
-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
-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 점검
- 훼손·파손·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 재정지원
-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td></tr>
<tr><td rowspan="5">총괄평가</td><td rowspan="2">종합의견</td><td colspan="3">• 일반 정비</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3">□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colspan="3">• 일반정비</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colspan="3">• 미이행</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3">• 미충족</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th></tr>
<tr><th>분석항목</th><th>세부항목</th><th>척도, 의견 및 자료</th></tr>
<tr><td rowspan="2">조례의
실효성</td><td>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8. 09. 27 ~ 10. 16.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미구성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안건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경관위원회와 통합 필요 - 사유: 안건 없음	
종합 의견	• 해당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오탈자 - 제4조제4항제1호: 16제곱미9이하 → 16제곱미터 이하 • 띄어쓰기 - 제7조: 고흥 군 군계획위원회 → 고흥군 군계획위원회
실현성	□ **이행** • 제7조에 따라 고흥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군계획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음 • 실제 공공조형물 건립 사례가 없어서 조례의 규정들이 이행된 적 없음
실효성	□ **성과** • 이행된 적 없어 실효성 없음 • 향후 건립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할 수 없어 조례의 유지는 필요함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4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① ~ ③ (생 략)	제4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동상, 기념비 등의 건립부지 면적(기단부의 면적을 말한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④ ---------- ---------- ----------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와 마을 표지석은 제외한다)	----------	
1. 동상 : 16제곱미9 이하	1. ---- 16제곱미터 --	오탈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역할과 기능은 고흥 군 군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고흥군 ----------	띄어쓰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2. 정책 제안 사항

□ **심의위원회 대행 관련 검토**

- 소관부서에서 현행 군계획위원회 보도 경관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제출

- 조례 제7조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고흥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위원의 위촉 조항 없이 군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군계획위원회가 해당 사항 심의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의 대상과 성격 면에서 군계획위원회 보다 경관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이 타당함

- 군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주로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등 토지이용, 기반시설 계획을 심의하고 있고, 경관위원회는 「경관법」 제26조 ~ 제28조에 따라 건축물, 시설물의 외형·색채·디자인·경관 조화 여부를 심의하고 있음

- 공공조형물은 토지이용보다는 형태·미관·조형성·경관 조화성이 중요하므로, 법적으로 경관위원회 기능과 직접적으로 부합됨

- 군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토목, 교통, 토지이용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조형물의 미적·예술적 가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비해 경관위원회는 건축, 조경, 미술, 디자인 등 시각적·미학적 전문가가 포함되어 조형물의 형태, 색채, 재질, 주변 경관 조화에 대한 평가가 가능함

- 고흥군 경관 조례 제27조에는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경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경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개정 필요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7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	제7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전문성 확보 위한 개정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역할과 기능은 고흥 군 군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 ---------- 고흥군 경관위원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3] 고흥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table>
<tr><th colspan="5">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소관부서</td><td colspan="2">건설과</td><td>시행일</td><td>2019. 12. 23.</td></tr>
<tr><td>조례 구분</td><td colspan="4">■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rowspan="2">관계 법령</td><td colspan="2">법령명</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건축법</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주요
내용</td><td colspan="4">•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기본원칙 ④군수의 책무 ⑤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⑥디자인기준 ⑦우선적용 ⑧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⑨사업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⑩위원회의 설치·운영 ⑪협력체계 구축 ⑫사무의 위탁 ⑬업무협의 등 ⑭교육 및 홍보 ⑮표창 ⑯시행규칙</td></tr>
<tr><td colspan="4">• 목적
- 고흥군 주민들이 각종 범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 범죄발생 우려지역 및 취약지역 해당 사업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td></tr>
<tr><td rowspan="5">총괄평가</td><td rowspan="2">종합의견</td><td colspan="3">• 최근 추진실적 없으나 향후 추진 대비하여 유지</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2">□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일반정비</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colspan="2">• 이행</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2">• 충족</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th></tr>
<tr><th>분석항목</th><th>세부항목</th><th>척도, 의견 및 자료</th></tr>
<tr><td rowspan="2">조례의
실효성</td><td>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8. 09. 27 ~ 10. 16.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해당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용어 정비 -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 입·출구 → 입구·출구 • 띄어쓰기 - 제6조제2항: 인터넷홈페이지에 → 인터넷 홈페이지에 - 제8조의2: 필요하 다고 → 필요하다고 - 제13조제2항: 인터넷홈페이지 → 인터넷 홈페이지 • 용어통합 - 제8조의2, 제10조: '협력체제'와 '협력체계' 중복 사용 → 택1('협력체계'가 보다 적합)
실현성	□ **미이행** • 고흥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는 경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음 • 2018년도 전남도 주관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학교 가는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실시와 국토교통부 주관 '2018년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통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 - 두 사업 모두 범죄예방 디자인(CPTED)를 접목하여 추진
실효성	□ **성과** • 2020년 '반딧불 솔라 안심등' 900개 설치 - 고흥읍 및 도양읍 일원 골목길에 설치 - 낮 동안 태양광을 충전시켜 저녁이 되면 자동으로 LED 등이 켜지는 방식 • 최근 추진 실적 없으나 향후 추진 가능하여 조례는 유지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접근통제”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사람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감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3. --------- 입구·출구---------.	용어정비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6조(디자인기준) ① (생 략)	제6조(디자인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② ---------- 인터넷 홈페이지----------.	띄어쓰기
제8조의2(사업지원 및 협력체제 구축) ① 군수는 제8조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사업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① ---------- 필요하다고 ----------.	용어정비 띄어쓰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4] 고흥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건설과		시행일	2019. 12. 23.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적용범위 ④책무 등 ⑤기본계획 수립 등 ⑥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⑦어린이 안전교육 ⑧어린이 등교·하교 교통안전 지도 ⑨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⑩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⑪협력체계 구축 ⑫지원			
	• 목적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 • 기본계획 수립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충족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실태조사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9. 11. 14. ~ 11. 28.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의견 수렴 - 제출 방법: 서면 제출 - 제출 장소: 고흥군청 건설과 - 제출 기간: '19. 11. 14. ~ 11. 28. - 대상자: 기관·단체, 개인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고흥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2조(지원)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해당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충족

실현성

□ **이행**

•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함

(단위: 천원)

회계연도	세부사업명	내역	예산액
2025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45,000

• 고흥군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전라남도 경찰청, 전라남도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2025. 5. 기준)

구분	계	초등학교	일반유치원	병설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개소	36	17	2	12	0	5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및 정비

- 위치: 관내 어린이보호구역(도화초등학교)
- 소요예산: 360백만원
- 주요내용: 보호구역 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 추진실적

· 관련기관(경찰서, 초등학교, 어린이집) 의견 수렴

	·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신청 완료 - 추진계획: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 시행(‘25년 상반기)
실효성	□ **주민 수용성** • 조례 제·개정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제출 방법: 서면 제출 - 제출 장소: 고흥군청 건설과 - 제출 기간: ‘19. 11. 14. ~ 11. 28. - 대상자: 기관·단체, 개인 □ **성과** •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고흥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보도자료, 2025. 7. 10.) •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고 있음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 해당 사항 없음	

[5] 고흥군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table>
<tr><th colspan="5">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소관부서</td><td colspan="2">건설과</td><td>시행일</td><td>2018. 04. 03.</td></tr>
<tr><td>조례 구분</td><td colspan="4">■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rowspan="2">관계 법령</td><td colspan="2">법령명</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td><td colspan="2">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td></tr>
<tr><td rowspan="2">주요 내용</td><td colspan="4">•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군수의 책무 ④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⑤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⑥상생협력 상가 조성 등 ⑦상생협력상가협의체 ⑧상가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⑨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⑩위원의 해촉 ⑪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⑫위원장 등의 직무 ⑬위원회의 운영 ⑭수당 등 ⑮시행규칙</td></tr>
<tr><td colspan="4">• 목적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내 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보장과 영업보장을 통해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
• 상생협력 상가 조성 등
- 군수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상가 조성 가능
- 군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게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td></tr>
<tr><td rowspan="5">총괄평가</td><td rowspan="2">종합의견</td><td colspan="3">• 실효성 없어 폐지 권고</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2">□ 현행 유지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일반 정비</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충족</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colspan="2">• 이행</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2">• 미충족</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th></tr>
<tr><td>분석항목</td><td>세부항목</td><td>척도, 의견 및 자료</td></tr>
<tr><td rowspan="4">조례의 실효성</td><td>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8. 02. 26. ~ 03. 17.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에 따라 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미구성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충족	
실현성	□ **이행사항 없음** □ **공정성** • 상가상생협력위원회 - 제9조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고려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미구성 중에 있어 평가 사항 없음	
실효성	□ **성과** • 미이행으로 실효성 없음 •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건의 시행 실적 없어 실효성 없음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 폐지 권고 - 2018년 도시재생사업 준비 과정에서 재정된 조례이나 시행된 적 없고,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고 있어 향후에도 실행전망 없음		

[6] 고흥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table>
<tr><th colspan="5">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소관부서</td><td colspan="2">경제산업과</td><td>시행일</td><td>2020. 12. 07.</td></tr>
<tr><td>조례 구분</td><td colspan="4">■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rowspan="2">관계 법령</td><td colspan="2">법령명</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중소기업기본법</td><td colspan="2">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td></tr>
<tr><td rowspan="2">주요
내용</td><td colspan="4">•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④군수의 책무 ⑤창업 및 경영지원 등 ⑥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⑦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 ⑧기업 애로사항 해결 지원 ⑨구매촉진 ⑩기업관련 단체 지원 ⑪우수기업인 시상 ⑫모범근로자 사기 진작</td></tr>
<tr><td colspan="4">• 목적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고흥군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
-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국내외 구매단 초청 및 상담
- 중소기업제품 홍보 영상 및 책자 제작
- 중소기업제품 홍보 쇼핑몰(방송, 온라인) 참여
• 구매촉진
- 군수는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해야 함</td></tr>
<tr><td rowspan="5">총괄평가</td><td colspan="2">종합의견</td><td colspan="2">• 특이 사항 없음</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3">□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colspan="3">• 일반정비</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colspan="3">• 이행</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3">• 충족</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th></tr>
<tr><th>분석항목</th><th>세부항목</th><th>척도, 의견 및 자료</th></tr>
<tr><td rowspan="2">조례의
실효성</td><td>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0. 09. 21. ~ 10. 11.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제5조 ~ 제12조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해당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용어정비 - 제5조제3항제1호, 제8조: 애로사항 → 고충사항 □ **개정** • 조항 이동 - 제9조: 제12조제3항 → 제4조	
실현성	□ **2025년 주요업무 계획** •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 - (사업 목표) 대기업에 비해 정보 및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들에 선제적인 ESG* 경영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 ESG: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측정하는 지표 - (소요 예산) 30백만원 - (사업 내용) 수준 진단 및 평가, 공급망 실사 컨설팅, ESG 관련 인증 등 • 중소기업 기술닥터 컨설팅 지원 - (사업 목표) 제조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 (소요 예산) 30백만원 - (사업 내용) 마케팅, 기술·경영 지원, 각종 인증, R&D 등 • '24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1차) - (주요 내용)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 - (시범구매 지원 내용)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 하도록 지원하여 판로개척 및 혁신 역량 제고 • 전라남도 경영안정자금 운영 - (지원 대상)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지원 내용)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24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고흥군청)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조성하여 저리융자 및 이차보전과 같은 금융지원을 공고(전라남도) • 2025년 중소기업 경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71,136천원을 편성하였음(본예산 기준)
실효성	□ **성과** • 연도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 성과

구분	세부 사업	성과
2020-2021	성장단계별 기업 발굴 및 육성	전남 유망중소기업(13개소) → 전남형 강소기업(2개소) → 글로벌 강소기업(2개소)
	중소기업 상담 원스톱 서비스 구축	‘중소기업 대표자 초청 간담회’ 진행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54개소
2022	중소기업 기술닥터 실시	11개소
2023	중소기업 기술닥터	5개소
	ESG 컨설팅	4개소
2024	중소기업 기술닥터 컨설팅	6개소
	ESG 컨설팅	6개소

□ **언론보도**

• 고흥군,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으로 안전장치 마련(고흥군청 보도자료, 2023. 12. 6.)

- 관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은 고흥군 소재 중소기업 중 매출채권보험 보험계약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의 10% 할인, 고흥군은 매출채권 보험료의 50%를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로 소진 시까지 지원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2061&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제5조(창업 및 경영지원 등) ①·②(생 략)	제5조(창업 및 경영지원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지역 내 미래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 추진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 ---------- ---------- ---------- ---------- -----.	

1. 중소기업 애로사항(경영, 기술개발, 인력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	1. ------ 고충사항---------- ----------	용어정비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9조(구매촉진) 군수는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른다.	제9조(구매촉진) ---------- ---------- ----------. 이 경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다.	조항이동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7]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table>
<tr><th colspan="5">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 colspan="2">소관부서</td><td>경제산업과</td><td>시행일</td><td>2020. 08. 03.</td></tr>
<tr><td colspan="2">조례 구분</td><td colspan="3">■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colspan="2" rowspan="2">관계 법령</td><td>법령명</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물환경보전법</td><td colspan="2">제48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제48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8조의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td></tr>
<tr><td rowspan="2">주요
내용</td><td colspan="4">•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처리구역 ④처리시설 관리운영 ⑤폐수등의 배출 ⑥배수설비의 설치 ⑦배수설비의 구조 ⑧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⑨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측정계 등 ⑩사용개시의 신고 ⑪배수기준 ⑫배수설비의 관리 ⑬유지관리비의 부담 ⑭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⑮휴업등 비정상가동시 비용부담 ⑯오·폐수량의 산정 ⑰부담금의 추징 ⑱이의 신청 ⑲가산금 및 중가산금 ⑳독촉 ㉑체납처분 ㉒자료의 제출명령등 ㉓권리·의무의 승계 ㉔사용의 제한 ㉕배수설비등 시설설치 의무 불이행</td></tr>
<tr><td colspan="4">• 목적
-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규정에 따라 고흥군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배수설비의 설치
- 사업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함
-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함</td></tr>
<tr><td rowspan="5">총괄평가</td><td colspan="2" rowspan="2">종합의견</td><td colspan="2">• 특이 사항 없음</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2">□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일반정비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4조 별지 서식 링크 오류 정비 필요</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colspan="2">• 이행</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2">• 충족</td></tr>
<tr><th colspan="5">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th></tr>
<tr><td>분석항목</td><td colspan="2">세부항목</td><td colspan="2">척도, 의견 및 자료</td></tr>
<tr><td row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2">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td><td colspan="2">□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 colspan="2">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td><td colspan="2">□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0. 04. 06. ~ 04. 26.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해당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용어정비 -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 제6조제3항, 제17조, 제24조: 관거 → 관로, 배수관 • 어법 - 제4조제2항: 자 → 사람 - 제16조제1항: 조사토록 하되, → 조사하도록 하되 -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1조: 아니한다, 아니한 → 않는다, 않은 • 오탈자 - 제25조제2항: 제21조제2항 → 제16조제2항 □ **상위법 개정** • 상위법령명 변경 - 제8조: 「건설업법」 → 「건설산업기본법」 □ **사이트 정비** • 링크 오류 - 제14조: 별지 제3호 서식 링크 오류 수정	
실현성	□ **2023년 주요업무 계획** • 동강특화농공단지 조기 정상화 - 위치: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345-5번지 일원 - 소요 예산: 총 30,826백만원, 2023년 소요예산: 10,394백만원 - 추진현황 · 동강특화농공단지계획 승인 고시(고흥군): ‘15. 12. · 감사원 감사 실시 및 시정 요구: ’18. 12. ~ ‘19. 6. ·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재행정처분: ’20. 11. ·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일부 승소: ‘22. 1. · 행정처분 취소소송 2심 3차 변론: ’22. 9.	

	· 행정처분 취소소송 2심 4차 변론: ‘23. 1. 12. · 행정처분 취소소송 2심 선고(예정): ’23. 2. □ **이행** • 고흥청정식품단지 - 폐수종말처리장과 함께 2011. 7. 준공(2009. 1. 24. ~ 2011. 4. 25.) - 현재 21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음 • 2025년 고흥청정식품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0,720천원을 편성하였음(본예산 기준) - 사업명: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지원
실효성	□ **성과** • 수상 실적 - ‘2024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선정, 환경부 주관 - 기관 표창 및 포상금 1,500만원 지원 □ **언론보도** • 고흥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전국 최우수 기관’ 기관 표창(고흥군청 보도자료, 2024. 12. 2.)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3697&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폐수관거”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2.“폐수관로”----------관로 및 ----------.	용어정비
3.“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3.---------- 폐수관로---------- 관로 및 ----------.	용어정비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4조(처리시설 관리운영) (조이름 변경 2019.10.2.) ① (생 략)	제4조(처리시설 관리운영) (조이름 변경 2019.10.2.) ① (현행과 같음)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람에게 ----------.	용어정비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② (생 략)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③-------- 폐수관로---------.	용어정비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생 략)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공사 시공은 「건설업법」에 따라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별령명변경
제16조(오·폐수량의 산정) ①군수는 비용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오.폐수 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1회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시점에서 실측한 결과를 3월 범위내에서 계속 인정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오·폐수량의 산정) ① ---------- 조사하도록 ----.----------.	어법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사업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의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부담금의 추징) ---------- ---------- ---------- ------ 폐수관로---------- ---------- ---------- ---------- ---------- ----------.	용어정비
제18조(이의 신청) ① (생 략)	제18조(이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 되지 아니한다.	②---------- ---------- ---------- 않는다.	어법
제19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①군수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정당한 부담금 그 외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9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① -- ---------- ---------- ---------- ---------- ----------. --- ---------- ---------- ---------- ---------- 않는다.	어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된 부담금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③---------- ---------- ---------- 않는다.	어법
제20조(독촉) 군수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한다.	제20조(독촉) ---------- ---------- 않은 ---------- ---------- ---------- ---------- --.	어법

제21조(체납처분) 군수는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체납처분) ---------- ---------- ---------- 않은 ---------- ---------- ----------.	어법
제24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필요한 경우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전에 미리 사업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의 제한) ---------- ---- 폐수관로---------- ---------- ---. ---------- ---------- ---------- --.	용어정비
제25조(배수설비등 시설설치 의무불이행) ① (생 략)	제25조(배수설비등 시설설치 의무불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 ---------- -. ---------- --- 제16조 ----------.	오탈자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8] 고흥군 가족의 섬 우도 관리 · 운영 조례

<table>
<tr><th colspan="5">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 colspan="2">소관부서</td><td>관광정책실</td><td>시행일</td><td>2020. 12. 07.</td></tr>
<tr><td colspan="2">조례 구분</td><td colspan="3">■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colspan="2" rowspan="4">관계 법령</td><td>법령명</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td><td colspan="2">제3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td></tr>
<tr><td>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td><td colspan="2">「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에 있어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사무의 효율적·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td></tr>
<tr><td colspan="4"></td></tr>
<tr><td>주요 내용</td><td colspan="4">• 구성
①목적 ②위치 ③정의 ④기능 및 시설 ⑤관리·운영 ⑥사용료 ⑦사용료 감면 등 ⑧요금의 게시 등 ⑨사용의 제한·취소 ⑩사용자의 책임 ⑪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⑫위탁계약 등 ⑬위탁운영자의 의무 ⑭행위의 금지 ⑮위탁계약의 취소 ⑯준용 ⑰시행규칙

• 목적
- 고흥군 가족의 섬 우도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관리·운영
- 군수는 우도를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가능
- 군수는 우도 시설의 사용시간, 사용절차, 대피소의 숙박사용 등 우도시설 이용에 따른 반대급부 성격의 모든 사용료 또는 기타요금, 사용료 등 납입 및 환급 등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한 별도의 운영세칙이나 규정을 마련해야 함
• 사용료
- 대피소를 숙박용도로 제공할 경우의 사용요금은 규모 또는 위치적 특성에 따라 최하 30,000원부터 최고 120,000원까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그 밖에 모든 요금에 대해서는 유사시설의 요금과 형평성이 유지되게 해야 함
• 위탁계약 등</td></tr>
<tr><td rowspan="5">총괄평가</td><td rowspan="2">종합의견</td><td colspan="3">• 현행 유지</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2">■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충족</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colspan="2">• 이행</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2">• 충족</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th></tr>
<tr><td>분석항목</td><td>세부항목</td><td>척도, 의견 및 자료</td></tr>
<tr><td>조례의 실효성</td><td>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4. 11. 18. ~ 12. 08. (20일 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table>
<tr><td rowspan="3"></td><td>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종합 의견</td><td colspan="2">• 해당 없음</td></tr>
<tr><td colspan="3">3. 입법평가 결과</td></tr>
<tr><td>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충족</td></tr>
<tr><td>실현성</td><td colspan="2">□ 2025년 주요업무 계획
• 다도해 해상경관을 이용한 해상 테마관광 육성
- 위치: 4개 권역(팔영산권, 거금녹동권, 고흥만권, 북부권)
- 소요 예산: 총 사업비 90,814백만원
- 추진실적: 북부권역(1개 사업) – 남양 ~ 우도간 인도교(준공)
• 웰니스 고흥 관광 클러스터 구축
- 위치: 고흥만 선셋가든 등 3개 지구
- 추진실적: 문체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계획 검토 및 확정: ‘22. 12.
· 사업예산: 남양 우도 - 16,300백만원
• 고흥지구 선셋가든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 위치: 도덕면 용동리 산6
- 소요 예산: 총 사업비 10,600백만원, 2025년 소요예산 2,496백만원
- 추진실적: 문체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계획 수립 착수: ’22. 10.
· 사업예산: 남양 우도(163억)
• 가족의 섬 우도 관리 및 운영을 위한 2021-2025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td></tr>
</table>

회계연도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비고
2021	관광지 편의시설 보수·보강	관광지 공원 환경정비	11,713	인건비
	가족의 섬 우도 운영	우도 물때 시간표	1,100	1식
2022	관광지 편의시설 보수·보강	관광지 공원 환경정비	15,389	인건비
	가족의 섬 우도 운영	우도 물때 시간표	1,100	1식
2023	관광지 편의시설 보수·보강	관광지 공원 환경정비	16,162	인건비
	가족의 섬 우도 운영	우도 물때 시간표	1,100	1개소
2024	관광 시설물 설치·관리	우도 물때 시간표 제작	1,100	1개소
		우도 시설물 유지관리	10,000	-
	관광지 편의시설 보수·보강	관광지 공원 환경정비	16,565	인건비

<table>
<tr><td></td><td>
<table>
<tr><th>회계연도</th><th>세부사업명</th><th>통계목</th><th>예산액</th><th>비고</th></tr>
<tr><td rowspan="2">2021</td><td>관광지 편의시설 보수·보강</td><td>관광지 공원 환경정비</td><td>11,713</td><td>인건비</td></tr>
<tr><td>가족의 섬 우도 운영</td><td>우도 물때 시간표</td><td>1,100</td><td>1식</td></tr>
<tr><td rowspan="3">2025</td><td rowspan="2">관광 시설물 설치·관리</td><td>우도 물때 시간표 제작</td><td>1,100</td><td>1개소</td></tr>
<tr><td>우도 시설물 유지관리</td><td>10,000</td><td>-</td></tr>
<tr><td>관광지 편의시설 보수·보강</td><td>남양 우도 석축 설치</td><td>30,000</td><td>1개소</td></tr>
</table>
</td></tr>
<tr><td>실효성</td><td>□ 언론보도
• ‘봄바람 따라, 사람들로 북적이는 고흥 여행지’(고흥군청 보도자료, 2025. 3. 25.)
- 우도 레인보우교가 최근 인증샷 명소로 떠오름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4205&boardId=BD_00025&pageId=www102
• 고흥군, 관광인프라 조기 완성을 통한 관광객 1천만시대 준비에 잰걸음(고흥군청 보도자료, 2023. 2. 3.)
- 하루 두 번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의 섬, ‘우도’는 해상인도교를 설치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갯벌 체험과 낚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형 섬’으로 개발
- 해맞이 명소이자 갯벌체험의 명소인 선정 일원은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민간숙박시설 등을 유치해 체류형 관광상품과 연계를 도모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0711&boardId=BD_00025&pageId=www102</td></tr>
<tr><td colspan="2">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td></tr>
<tr><td colspan="2">• 현행 유지</td></tr>
</table>

[9]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table>
<tr><th colspan="5">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소관부서</td><td colspan="2">관광정책실</td><td>시행일</td><td>2020. 12. 07.</td></tr>
<tr><td>조례 구분</td><td colspan="4">■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rowspan="3">관계 법령</td><td colspan="2">법령명</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td><td colspan="2">제3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td></tr>
<tr><td colspan="2">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td><td colspan="2">「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에 있어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사무의 효율적·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td></tr>
<tr><td rowspan="2">주요 내용</td><td colspan="4">•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위치 ④관리 및 운영 ⑤운영비용 ⑥게스트하우스 사용료 ⑦게스트하우스 사용료 감면 등 ⑧게스트하우스 사용료 반환 ⑨요금의 게시 등 ⑩운영자의 책임 ⑪시설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⑫위탁계약 등 ⑬자체운영규정 ⑭위탁운영자의 의무 ⑮행위의 금지 ⑯위탁계약의 취소 ⑰준용 ⑱시행규칙</td></tr>
<tr><td colspan="4">• 목적
- 고흥군 남열해돋이 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관리 및 운영
- 군수는 관광휴게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가능
• 운영비용
- 관광휴게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 지원 가능</td></tr>
<tr><td rowspan="5">총괄평가</td><td rowspan="2">종합의견</td><td colspan="3">• 특이 사항 없음</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3">□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colspan="3">• 일반정비: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링크 오류 정비 필요</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colspan="3">• 이행</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3">• 충족</td></tr>
<tr><th colspan="5">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th></tr>
<tr><td>분석항목</td><td colspan="2">세부항목</td><td colspan="2">척도, 의견 및 자료</td></tr>
<tr><td row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2">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td><td colspan="2">□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 colspan="2">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td><td colspan="2">□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일 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해당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사이트 정비** • 별지 링크 오류 - 제6조제1항: 별지로 연결되는 링크 수정 □ **일반정비** • 띄어쓰기 - 제14조제2항: 개방하여야하며 → 개방하여야 하며
실현성	□ **이행** • 남열해돋이휴게소 운영
실효성	□ **성과** • 남열해돋이휴게소 운영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14조(위탁운영자의 의무) ① (생략)	제14조(위탁운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운영자는 공중화장실을 상시 개방하여야하며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 개방하여야 하며 ---------- .	띄어쓰기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10]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 · 운영 조례

<table>
<tr><th colspan="5">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소관부서</td><td colspan="2">휴양공원사업소</td><td>시행일</td><td>2019. 08. 01.</td></tr>
<tr><td>조례 구분</td><td colspan="4">■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rowspan="3">관계 법령</td><td colspan="2">법령명</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td><td colspan="2">「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에 있어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사무의 효율적·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td></tr>
<tr><td colspan="2">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td><td colspan="2">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td></tr>
<tr><td>주요 내용</td><td colspan="4">• 구성
①목적 ②위치 ③정의 ④기능 ⑤관리·운영 ⑥시설사용 ⑦사용료 ⑧사용료의 감면 ⑨사용료 반환 등 ⑩요금의 게시 등 ⑪사용의 제한·취소 ⑫사용자의 책임 ⑬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⑭위탁계약 등 ⑮자체운영규정 ⑯위탁운영자의 의무 ⑰행위의 금지 ⑱위탁계약의 취소 ⑲준용 ⑳시행규칙</td></tr>
<tr><td></td><td colspan="4">• 목적
-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관리·운영
- 군수는 공원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가능</td></tr>
<tr><td rowspan="5">총괄평가</td><td rowspan="2">종합의견</td><td colspan="3">• 현행 유지</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3">■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colspan="3">• 충족</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colspan="3">• 이행</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3">• 충족</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th></tr>
<tr><th>분석항목</th><th>세부항목</th><th>척도, 의견 및 자료</th></tr>
<tr><td rowspan="3">조례의 실효성</td><td>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시설이나 장비 대여 또는 사용 승인, 허가·승인, 위탁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9. 04. 18. ~ 05. 08.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table>
<tr><td rowspan="2"></td><td>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종합 의견</td><td colspan="2">• 해당 없음</td></tr>
<tr><td colspan="3">3. 입법평가 결과</td></tr>
<tr><td>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충족</td></tr>
<tr><td>실현성</td><td colspan="2">□ 이행
• 명품공원 조성으로 군민에게 만족주는 공간 제공(2024)
- 해창만 수변노을 공원: 캠핑장(42면), 야외공연장, 산책로 등 운영 계획
- 오토캠핑 21면, 하프 글램핑 7동, 글램핑 14동
• 고흥만·해창만 수변노을공원 운영관리(2025)
- (주요 내용) 공원시설 개선을 통한 공원 이용 활성화 도모
• 해창만 오토캠핑장 운영
- 버스킹 등 야외공연 진행 등
• 2025년 해창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84,200천원을 편성하였음(본예산 기준)</td></tr>
<tr><td>실효성</td><td colspan="2">□ 성과
• 연도별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 및 운영 성과
<table><tr><th>구분</th><th>세부 내용</th><th>성과</th><th>비고</th></tr><tr><td>2023</td><td>해창만 수변노을공원 관리동 및 안전난간, 수처리시설 교체</td><td>2개소</td><td>146백만원</td></tr><tr><td>2024</td><td>해창만 수변공원 배수로 설치, 화장실 리모델링</td><td>2개소</td><td>21백만원</td></tr></table></td></tr>
<tr><td colspan="3">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td></tr>
<tr><td colspan="3">• 현행 유지</td></tr>
</table>

[11] 고흥군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농업기술센터	시행일	2020. 11. 05.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해당 없음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지정 ④보조금 지원 ⑤군유시설의 사용 ⑥사업계획의 제출 ⑦결산보고 등 ⑧업무검사 등 ⑨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⑩과태료 ⑪준용		
	• 목적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고흥군 4에이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흥군 청소년과 농촌 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 • 보조금 지원 - 군수는 4에이치 활동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사업계획서 제출 • 결산보고 등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고흥군 4-H회 육성 기본계획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교육이나 홍보, 시설이나 장비 대여 또는 사용 승인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2년 40백만원 • '23년 48백만원 • '24년 32.7백만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해당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조항이동: 제1조,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3조	
실현성	□ **2025년 주요업무 계획** • 지역농업 핵심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 규모: 3개단체 1,605명(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 소요 예산: 345백만원 - 추진 계획 中 4-H회 육성: 3개회 500명 ·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10개교), 4-H 과제활동 및 교육행사(15회) □ **이행** • 고흥군 4-H회 육성 기본계획 수립 • 고흥4-H회 - 회의 및 의식활동, 봉사활동, 야영교육, 경진대회 등을 진행 • 4-H 활동 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 '22년 40백만원 - '23년 48백만원 - '24년 32.7백만원	
실효성	□ **성과** • '24년 화단 가꾸기 과제활동: 학생4-H회 10개 학교 208명 참여 • '25년 화단 및 텃밭 채소 가꾸기 과제활동: 학생 4-H회 소속 256명 참여 • 수상 내역 - '24년 포두중 4-H회 우수상, 시군 4-H본부분야에서 한국4-H 고흥군본부가 대상 수상 등 다수 수상 - 2024년 전라남도 학생4-H 과제경진대회 · 포두중학교 단체 예능 특기 분야 대상 수상, 자원봉사 성과 분야 최우수상 수상 · 동강중학교 단체 예능 특기 분야 우수상 수상 □ **언론보도** • 고흥군4-H회, '제4회 전라남도4-H대상'수상 쾌거(고흥군청 보도자료, 2023. 11. 24.)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2006&boardId=BD_0	

	0025&pageId=www102 • 고흥군 4-H회, '제5회 전라남도4-H대상'에서 다수 수상 쾌거(고흥군청 보도자료, 2024. 10. 29.)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3548&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고흥군 4에이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흥군 청소년과 농촌 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3조----------	조항이동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12] 고흥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농업기술센터		시행일	1989. 05. 16.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해당 없음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설치 및 장비 ③기능 ④관리 ⑤비용 ⑥부품대금 징수 ⑦망실 또는 훼손 ⑧시행규칙			
	• 목적 -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고흥군 농기계 순회 수리반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기능 - 고장 농기계의 순회수리 - 농기계 고장 예방 및 안전사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수리 - 기타 농기계 수리용 장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평가	종합의견	• 현행 유지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충족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계획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센터 또는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교육이나 홍보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table>
<tr><td></td><td>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종합 의견</td><td colspan="2">• 해당 없음</td></tr>
<tr><td colspan="3">3. 입법평가 결과</td></tr>
<tr><td>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충족</td></tr>
<tr><td>실현성</td><td colspan="2">□ 이행
• 2025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계획 수립
•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 임대사업소
- 임대농기계 82종 560대 보유
-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사용 교육, 농업기계 임대, 정비 및 관리 수행
• 2021-2025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table><tr><th>연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r><tr><td>예산액</td><td>15,000</td><td>12,000</td><td>12,000</td><td>12,000</td><td>12,000</td></tr></table></td></tr>
<tr><td>실효성</td><td colspan="2">□ 성과
• 농기계임대사업소 수요
- ‘19년 2,817건 → ’22년 5,418건
• ‘23. 6. 기준
-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매월 실시) 312회, 1,146명
- 농기계 순회수리 178농가 대상 무상수리 제공</td></tr>
<tr><td colspan="3">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td></tr>
<tr><td colspan="3">• 현행 유지</td></tr>
</table>

[13] 고흥군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

<table>
<tr><th colspan="4">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소관부서</td><td>농업기술센터</td><td>시행일</td><td>2013. 05. 28.</td></tr>
<tr><td>조례 구분</td><td colspan="3">■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rowspan="2">관계 법령</td><td>법령명</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해당 없음</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주요
내용</td><td colspan="3">•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지원 ④농업기술보급사업의 추진방법 등 ⑤시험연구사업 ⑥농업학습단체 연수 ⑦농업학습단체 교육·행사 ⑧농업인 교육훈련 ⑨현장교육 등 ⑩학술용역 ⑪강사의 위촉 ⑫수당 등 ⑬교육의 위탁 ⑭경비의 지원 ⑮시행규칙</td></tr>
<tr><td colspan="3">• 목적
- 「농촌진흥법」에 따라 우리군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및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 시험연구사업, 농업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지원
- 농업·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
- 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개발사업
-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국내외 연수 포함), 행사
- 농촌생활 자원분야 지원사업
- 교육훈련사업(현장교육을 포함한다)
- 농업정보·기술 보급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학술용역
• 농업기술보급사업의 추진방법 등
- 농업기술보급사업의 홍보·신청·선정·집행·관리 등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시달되는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과 고흥군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서에 따라 실시
• 시험연구사업
- 농업기초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 기초농산물, 수출유망 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 첨단 농업생물산업화에 관한 연구·개발
- 법 제5조에 따라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기술의 개발 및 현장 애로기술의 개발</td></tr>
<tr><td rowspan="4">총괄평가</td><td rowspan="2">종합의견</td><td colspan="2">• 특이 사항 없음</td></tr>
<tr><td>검토결과</td><td>□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일반정비</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이행</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충족</td></tr>
</table>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교육이나 홍보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2년 92백만원 • '23년 112백만원 • '24년 98백만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해당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개정** • 조항이동 -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 제2조제3호 - 제5조: 제5조 → 제7조 • 조항이동, 내용 변경 - 제4조: 제4조의2제1항, '매년 수립.시달되는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과 고흥군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 제5조제1항,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일반정비** • 용어정비, 띄어쓰기 - 제9조: 작목 → 재배작물	
실현성	□ **이행** •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수립 •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 '22년 92백만원 - '23년 112백만원	

	- ‘24년 98백만원 • 기술 시범사업(고흥군청) - 2025년 농촌진흥청의 ’수출용 복숭아 선도유지 신기술 적용 시범사업‘ 선정 - 2025년 농업인 농약 중독 예방 기술시범사업 • 2025년 과제 교육 실시(고흥군청) - 고흥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청 농작업안전보건 전문자지도연구회 과제 교육‘ 실시 - 농촌진흥청 주관, 농작업안전보건 전문지도연구회가 주회 - 농작업 안전 보건 관련 전문지식 향상과 현장 적용 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 • 교육(고흥군청) - ’23년 농작업 안전 재해예방 교육 - ‘24년 농촌지도직 공무원 전문능력 함양 교육 등
실효성	□ **성과** • ‘25년 농업인 농약 중독 예방 기술시범사업 - 포두면 오이작목회 농업인 22명에게 농작업 보호구 및 농약 안전 사용 장비 보급 - 농약 방제복, 농약 중독 예방 마스크 등 안전 보호장비와 쿨링조끼, 농약 보관함 등 총 8종 363개의 장비 보급 • ‘24년 수상 실적 - 전남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스마트농업 분야 우수상 -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성과확산 분야 대상 -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회 발전 유공 우수기관상 - 교육훈련 지원 우수기관상 □ **언론보도** • 고흥군, 2024년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 개최(고흥군청 보도자료, 2025. 1. 6.) - 농업인 학습단체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시범사업 농가 등 100여 명 참석 - 2024년 농촌진흥사업의 농촌지원, 기술보급, 유자연구소 등 분야별 주요성과 및 우수사례발표, 2025년 중점 사업추진계획 보고, 농업인 시상,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 - 2024년, 43개 사업 74개소에 총사업비 58억 7,900만원 지원 https://www.goheung.go.kr/farm/boardView.do?movePage=1&searchSn=159&boardId=BD_00060&pageId=farm43 • 고흥군, 전남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고흥군청 보도자료, 2023. 12. 20.) - 농촌진흥사업 성과 인정,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2021년 지역농업 특성화 분야 우수 시·군, 2022년 농가경영 개선분야 우수 시·군 선정 https://www.goheung.go.kr/farm/boardView.do?movePage=1&searchSn=97&boardId=BD_00060&pageId=farm43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업무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촌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제2조 제3호 ----------.	조항이동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4조(농업기술보급사업의 추진방법 등) 농업기술보급사업의 홍보·신청·선정·집행·관리 등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시달되는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과 고흥군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농업기술보급사업의 추진방법 등) 농업기술보급사업의 홍보·신청·선정·집행·관리 등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조항변경
제5조(시험연구사업) 법 제2조1호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제5조(시험연구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5조에 따라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기술의 개발 및 현장 애로기술의 개발	4. 법 제7조----------	조항변경
제9조(현장교육 등) ①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제9조(현장교육 등) ① 소득 재배작물 ---------- 지역특화 재배작물----------	용어정비 띄어쓰기

을 위하여 농업인·농업학습단체·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14] 고흥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table>
<tr><th colspan="5">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 colspan="2">소관부서</td><td>농업정책과</td><td>시행일</td><td>2015. 09. 30.</td></tr>
<tr><td colspan="2">조례 구분</td><td colspan="3">■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colspan="2" rowspan="2">관계 법령</td><td>법령명</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td><td colspan="2">제17조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td></tr>
<tr><td rowspan="2">주요 내용</td><td colspan="4">•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단체의 육성지원 ④지원대상 범위 ⑤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⑥위원회의 지원심의 ⑦준용 ⑧시행규칙</td></tr>
<tr><td colspan="4">• 목적
- 국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우리군의 기간산업인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단체의 육성지원
-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업경영기법 개선, 국내외 연수 및 시찰
- 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판촉·홍보 활동
-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기타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td></tr>
<tr><td rowspan="5">총괄평가</td><td rowspan="2">종합의견</td><td colspan="3">• 특이 사항 없음</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2">□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일반정비</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colspan="2">• 이행</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2">• 충족</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th></tr>
<tr><th>분석항목</th><th>세부항목</th><th>척도, 의견 및 자료</th></tr>
<tr><td rowspan="3">조례의 실효성</td><td>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5. 06. 30. ~ 07. 20. (20일 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7개 사업 77백만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 평가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해당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어법 - 제3조제4호: 아니하면 → 않으면	
실현성	□ **2025년 주요업무 계획** • 지역농업 핵심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 규모: 3개단체 1,605명(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 소요 예산: 345백만원 - 육성계획: (‘24) 1,605명 → (’25) 1,650명 → (‘26) 1,700명 □ **이행** • 고흥군 농업인단체 -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가 이에 해당 - 농촌지도자회: 1연합회, 16개 읍면회 693명으로 구성 - 생활개선회: 1연합회, 15개 읍면회, 2개 과제분과 408명으로 구성 - 4-H회: 3개회 509명으로 구성 • 7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7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구성 □ **공정성** •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 당연직 3명(남3), 위촉직 9명(남7, 여2)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 9명 중 남성 7명, 여성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평가	
실효성	□ **성과** • 농촌지도자회	

	- ‘24년 한마음대회 등 • 4-H회 - ‘22년 과제경진, 연합회 워크숍,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등 - ‘23년 선진지 현장학습, 한마음 체육행사 등 - ‘24년 의식개선교육 진행, 녹동바다 불꽃축제 부스 운영, 화원 농가일손돕기 등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3조(단체의 육성지원) 군수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단체의 육성지원)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4. ---------- ---------- ---------- 않으면 ---------- ----------	어법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15] 고흥군 농촌 신활력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table>
<tr><th colspan="5">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 colspan="2">소관부서</td><td>농업정책과</td><td>시행일</td><td>2020. 03. 23.</td></tr>
<tr><td colspan="2">조례 구분</td><td colspan="3">■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colspan="2" rowspan="2">관계 법령</td><td>법령명</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td><td colspan="2">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td></tr>
<tr><td rowspan="2">주요 내용</td><td colspan="4">•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군수의 책무 ④추진단의 권리와 책무 ⑤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⑥사업계획 수립 ⑦전담부서 설치·운영 ⑧추진단 설치·운영 ⑨추진단 기능 ⑩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⑪추진단의 임무 ⑫지원 사업 ⑬전문가 등의 지원 ⑭지도·감독 ⑮사업비의 환수 ⑯위탁계약 해제 등 ⑰형성재산의 사용 ⑱시행규칙</td></tr>
<tr><td colspan="4">• 목적
- 고흥군의 농촌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촌 신활력 지원센터 및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사업계획 수립
- 지역현황과 여건
- 기본구상
- 신활력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업과 연계·후속사업에 관한 사항. 다만,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은 로컬액션그룹 등 지역 내 민간조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투자 및 신활력 사업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계획
- 그 밖에 신활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td></tr>
<tr><td rowspan="4">총괄평가</td><td colspan="2" rowspan="2">종합의견</td><td colspan="2">• 특이 사항 없음</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2">□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일반정비</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colspan="2">• 이행</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2">• 충족</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th></tr>
<tr><td>분석항목</td><td>세부항목</td><td>척도, 의견 및 자료</td></tr>
<tr><td>조례의 실효성</td><td>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신활력 사업 및 추진단 지원 • 센터 또는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0. 01. 29. ~ 02. 18.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해당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오탈자 - 제2조제1호: 기구을 → 기구를 - 제12조제10호: 소등증대 → 소득증대 • 용어정비 - 제16조제3항: 지적재산 → 지식재산 • 띄어쓰기 - 제17조: 고흥군 물품관리 조례 →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	
실현성	□ **2025 주요업무 계획** • 고흥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 사업추진: 고흥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 - 사업비: 7,000백만원 - 사업내용 · 고흥군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 건립(43억 원) · 고흥군 지역 농업공동체 활성화 사업(27억 원) □ **이행** • 신활력 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 고흥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2020-2025) - (사업 내용) 고흥군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 건립, 고흥군 지역 농업공동체 활성화 사업 - (주요 내용)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 농산물 공유 가공센터, 청년 스타트업센터 등, 농산물 공동물류 공유시스템, 신활력 아카데미 • '24년 신활력 아카데미 실시	

- (대상) 예비 액션그룹 농업인

- (목표)

·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농업 농촌의 지속 성장

·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실행 주체인 액션그룹을 발굴하고 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농업인 스스로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고흥 로컬푸드 직매장 본격 운영(2024. 1. ~ 8.)

- (사업 내용) 고흥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고흥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 및 「고흥몰」과 연계하여 현장 판매와 더불어 온라인 등으로 판매 운영

•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구성

- '22년 4월 추진위원회 10명

- 사업단 구성: 추진단장, 사무국장, 사무원, 코디네이터

- 사무국 운영

- 코디네이터: 5개 분야 전문가

• 2021-2025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세부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1	농촌신활력플러스	68,040	인건비
2022	농촌신활력플러스 지원	2,170,800	인건비, 사업 지원 등
2023	-	-	-
2024	농촌신활력플러스 지원	80,428	사업추진단 인건비 등
2025	농촌신활력플러스 지원	2,443,048	사업추진단 인건비 등 고흥군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 부대시설 공사 및 위탁 추가사업비 등

실효성

□ **성과**

• '24년 신활력 아카데미 실시

- 8개팀 380명 대상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2485&boardId=BD_00025&pageId=www102)

• '24. 4. 기준, 농촌 신활력플러스 아카데미 교육생 100명 양성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2681&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촌 신활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농촌 신활력 사업(이하 “신활력 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구을 말한다.	1. ---------- 기구를 ----.	오탈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경비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사업)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등증대사업	10. ---------- 소득증대사업	오탈자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위탁계약 해제 등) ①·② (생 략)	제16조(위탁계약 해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추진단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과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 지식재산 ----------.	용어정비
제17조(형성재산의 사용) 고흥군의 지원으로 형성된 추진단의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고흥군 물품관리 조	제17조(형성재산의 사용) ----------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	띄어쓰기

례」에 따른다.	-----.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16] 고흥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농업정책과		시행일	2017. 06. 27.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군수의 책무 ④여성농업인 의무 ⑤지원범위 ⑥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⑦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⑧위원회 설치 ⑨위원회 회의 ⑩위원회 기능 ⑪의견청취 등 ⑫수당 등 ⑬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⑭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⑮여성농업인 복지향상 ⑯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⑱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⑲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⑳규칙			
	• 목적 - 고흥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 요청 가능 •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 군수는 군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함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3월 중 조례 개정 후 시행 예정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실태조사, 교육이나 홍보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3월 중 조례 개정 후 시행 예정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5. 02. 12. ~ 03. 04.(20일 이상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고흥군의회 전명숙의원 제7조 강행규정으로 개정 요청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9개 사업, 12.057백만원 지원 중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table>
<tr><td rowspan="7"></td><td colspan="2">• 고흥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td></tr>
<tr><td>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td><td>□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 colspan="2">• 3월 중 조례 개정 후 위원회 필요</td></tr>
<tr><td>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종합 의견</td><td colspan="2">• 해당 없음</td></tr>
<tr><td colspan="3">3. 입법평가 결과</td></tr>
<tr><td>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일반정비
• 어법
- 제15조제4호: 출산을 전·후한 → 출산 전후의</td></tr>
<tr><td>실현성</td><td colspan="2">□ 미이행
•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미수립
- 3월 개정 이후 수립 예정
•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및 교육이나 홍보 등 미이행
- 3월 개정 이후 이행 예정

□ 2025년 주요업무 계획
• 문화·복지 혜택 확대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 여성농업인 활동 거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 사업비: 140백만원
· 사업내용:여성농업인 고충상담, 교양강좌 및 문화 활동,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 사업비: 110백만원
· 사업내용: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 취약질환 건강검진 등
- 농업인 육아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아이돌봄」 지원</td></tr>
</table>

· 사업비: 12.5백만원

· 사업내용: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보육여건 개선(1개소)

- 다양한 문화·복지혜택,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 사업규모: 7,015명 / 1,430백만원

· 사업내용: 20-75세 여성 농어업인에게 행복바우처 카드(20만원권) 발급

- 농사철 식사 걱정 해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 사업규모: 190개소 / 460백만원 ※개소당 2,420천원

· 사업내용: 봄철, 가을철 영농기 반찬 및 도시락 등 공동급식비 지원

- 출산과 일을 동시에,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 사업비: 23백만원 ※1일 80,000원 기준

· 사업내용: 출산(예정) 여성농업인(남성농업인) 영농공백 농가도우미 인건비 지원(5명)

•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 여성농업인 건강지킴 맞춤형장비 지원

· 사업규모: 70대, 21백만원

· 사업내용: 충전식 분무기, 충전식 제초기 구입비 70% 지원(최대 보조 210천원)

•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1-2025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비고
2021	농업인신문 보급	여성농업인 신문 보급	21,000	300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23,500	1개소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200,000	100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900,000	5,000명
	여성농업인 건강지킴 맞춤형 장비 보급 지원	여성농업인 건강지킴 맞춤형 장비	16,000	200명
2022	농업인력 육성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전국 및 도대회 참석 및 군대회 개최 지원	15,000	1식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15,000	1식
	농업인신문 보급	여성농업인신문 보고	21,000	300부
	농가 도우미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41,037	10명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30,000	6,500 1개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350,000	7,500명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228,800	104개
	여성농업인 건강지킴 맞춤형 장비 보급 지원	여성농업인 건강지킴 맞춤형 장비	18,000	2,000

회계연도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비고
2021	농업인신문 보급	여성농업인 신문 보급	21,000	300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23,500	1개소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200,000	100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900,000	5,000명
	여성농업인 건강지킴 맞춤형 장비 보급 지원	여성농업인 건강지킴 맞춤형 장비	16,000	200명
2023	농업인력 육성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전국 및 도대회 참석 및 군대회 개최 지원	15,000	1식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15,000	1식
	농업인신문 보급	여성농업인신문 보급	21,000	300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40,000	10,000 1개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500,000	7,500명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228,800	104개소
	농가 도우미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34,479	8명
	여성농업인 건강지킴 맞춤형 장비 보급 지원	여성농업인 건강지킴 맞춤형 장비	20,000	2,000
2024	농업인력 육성	한여농고흥군연합회 전국 및 도대회 참석, 군대회 개최 지원	13,000	2회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5,000	1회
	농업인신문 보급	여성농업인신문 보급	21,000	300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40,000	1개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500,000	7,500명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496,100	205개소
	농가도우미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35,339	8명
	여성농업인 건강지킴 맞춤형 장비 보급 지원	여성농업인 건강지킴 맞춤형 장비	15,000	-
2025	농업인력 육성	한여농 전국·도대회 참여 및 군대회 개최 지원	15,000	2회
		여성농업인 창조경영 혁신리더 교육 지원	5,000	1회
		여성농업인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7,000	1회
	농업인신문 보급	여성농업인신문 보급	14,699	주210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40,000	1개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403,000	7,015명

회계연도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비고
2021	농업인신문 보급	여성농업인 신문 보급	21,000	300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23,500	1개소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200,000	100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900,000	5,000명
	여성농업인 건강지킴 맞춤형 장비 보급 지원	여성농업인 건강지킴 맞춤형 장비	16,000	200명
	농가도우미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여성농업인)	23,040	각 4명*70일
		농가도우미 지원(남성농업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99,000	500명
	농번기 돌봄지원	농번기 돌봄지원	33,156	-
	여성농업인 건강지킴 맞춤형 장비 보급 지원	여성농업인 건강지킴 맞춤형 장비	15,000	-

• 고흥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역할 대행

□ **일부 개정**

• 고흥군의회 전명숙 의원의 개정 요청으로 인해 제7조(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를 강행규정으로 개정

□ **공정성**

• 고흥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 당연직 3명(남3), 위촉직 9명(남7, 여2)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 9명 중 남성 7명, 여성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평가

- 제8조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고려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 당연직 3명(남3), 위촉직 9명(남7, 여2)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 9명 중 남성 7명, 여성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별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실효성

□ **성과**

연도별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 추진 성과

구분	세부 사업	성과
2020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개소 운영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7,287명
	농번기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마을공동급식 지원	104개소
2021	-	-
2022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개소 운영

구분	세부 사업	성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7,362명
	농번기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마을공동급식 지원	100개소
2023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개소 운영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6,934명
	농번기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마을공동급식 지원	205개소
2024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6,450명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186개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207명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15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4. 출산 전후의 ----------	어법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17] 고흥만 농업지원시설 관리 · 운영 조례

<table>
<tr><th colspan="5">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소관부서</td><td colspan="2">농업정책과</td><td>시행일</td><td>2016. 02. 05.</td></tr>
<tr><td>조례 구분</td><td colspan="4">■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rowspan="3">관계 법령</td><td colspan="2">법령명</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농지법</td><td colspan="2">제4조 국가 등의 의무</td></tr>
<tr><td colspan="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td><td colspan="2">제3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기본원칙</td></tr>
<tr><td rowspan="2">주요
내용</td><td colspan="4">• 구성
①목적 ②위치 및 규모 ③용어의 정의 ④적용범위 ⑤시설용도 ⑥농업지원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⑦심의위원회의 업무 ⑧사용자격 ⑨사용자 선정 ⑩대부기간 ⑪대부료부과 및 감면 ⑫대부료의 반환 ⑬대부계약 해지 등 ⑭사용자의 준수사항 ⑮사용자의 손해배상 ⑯시설물 감독 ⑰권한 위임 ⑱준용 ⑲시행규칙</td></tr>
<tr><td colspan="4">• 목적
- 고흥만 간척지 내 농업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같다.)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 대부기간
- 농업지원시설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 제30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 가능
• 사용자의 손해배상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농업지원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함</td></tr>
<tr><td rowspan="5">총괄평가</td><td rowspan="2">종합의견</td><td colspan="3">• 특이 사항 없음</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3">□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colspan="3">• 일반정비</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colspan="3">• 이행</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3">• 충족</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th></tr>
<tr><th>분석항목</th><th>세부항목</th><th>척도, 의견 및 자료</th></tr>
<tr><td rowspan="3">조례의
실효성</td><td>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시설이나 장비 대여 또는 사용 승인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6. 03. 09. ~ 03. 29.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제9조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해당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띄어쓰기 - 제18조: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실현성	□ **이행** • 시설이나 장비 대여 및 사용 승인 이행 중
실효성	□ **언론보도** • 고흥군, 고흥만 간척지 농업지원시설물 임대 모집(폴리뉴스, 2024. 1. 23.) - 임대기간은 임대일로부터 5년으로, 대상시설은 48동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227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준용) ----------,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띄어쓰기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18] 고흥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경제산업과		시행일	2015. 09. 30.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제19조의3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④지원대상 ⑤보조금의 지급신청 ⑥보조금의 지급결정 ⑦보조금의 지급결정 통보 ⑧지급방법 ⑨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⑩목적 외 사용금지 ⑪감독 ⑫보조금을 받는 사람에 대한 제재 ⑬준용기준 ⑭시행규칙			
	• 목적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및 제19조의 3에 따라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지원대상 - 본관, 정압기 및 공급관 설치비 - 수요가부담 시설부담금			
총괄평가	종합의견	• 현행 유지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충족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4. 12. 27. ~ 2025. 01. 14.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table>
<tr><td>종합 의견</td><td>• 해당 없음</td></tr>
<tr><td colspan="2">3. 입법평가 결과</td></tr>
<tr><td>법적
정합성</td><td>□ 충족</td></tr>
<tr><td>실현성</td><td>□ 2025년 주요업무 계획
• 고흥읍 도시가스 공급 확대
- 사업량: 35세대(385m)
- 장소: 고흥읍 서문리 215-1 등 3개소
- 사업비: 158백만원
- 보급률: 61%(2024년 7월말)
- 사업시행: 고흥군·전남도시가스(주)
- 사업내용: 고흥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추가 설치로 수용가 확대
•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
- 위치: 도양읍 소재지 일원
- 소요예산: 약 60,000백만원
- 주요내용: 천연가스 수급계획 반영 및 민간 발전사업 연계,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병행 등
- 추진실적
· 전라남도·고흥군 산자부 공동 방문 건의(‘22. 12. 28. 산업통상자원부)
· 융복합 혁신밸리 기본구상안 협의(’23. 5. 31. 전남도청)
· 미래식품·에너지 융복합센터 현장 방문(‘24. 3. 19. 하동 대송산업단지)
· 전남도시가스 방문 도시가스 공급 지원 협의(’24. 12. 16.)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예산을 2024년도부터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table><tr><th>회계연도</th><th>세부사업명</th><th>통계목</th><th>예산액</th><th>비고</th></tr><tr><td>2024</td><td>고흥 도시가스 공급</td><td>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td><td>150,000</td><td>258가구</td></tr><tr><td>2025</td><td>고흥 도시가스 공급</td><td>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td><td>47,447</td><td>35가구</td></tr></table></td></tr>
<tr><td>실효성</td><td>□ 성과
• 연도별 도시가스 공급 성과
- 2023년: 고흥읍 도시가스 45세대 공급 확대
- 2024년: 고흥읍 도시가스 62세대 추가 공급, 24. 7. 기준 보급률 61%</td></tr>
<tr><td colspan="2">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td></tr>
<tr><td colspan="2">• 현행 유지</td></tr>
</table>

[19] 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table>
<tr><th colspan="5">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소관부서</td><td colspan="2">스마트팜사업소</td><td>시행일</td><td>2019. 08. 01.</td></tr>
<tr><td>조례 구분</td><td colspan="4">■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rowspan="2">관계 법령</td><td colspan="2">법령명</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td><td colspan="2">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td></tr>
<tr><td rowspan="2">주요 내용</td><td colspan="4">•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책무 ④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⑤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⑥출연금 지원 ⑦교육 및 컨설팅 ⑧운영의 위탁 ⑨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⑩추진단 구성 ⑪추진단의 역할 ⑫수당 등 ⑬사업자금의 융자지원 ⑭지원취소 및 자금회수 등 ⑮지원 제한 ⑯시행규칙</td></tr>
<tr><td colspan="4">• 목적
- 고흥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육성
-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td></tr>
<tr><td rowspan="2">총괄평</td><td rowspan="2">종합의견</td><td colspan="3">• 특이 사항 없음</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2">□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able>

가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9. 06. 18. ~ 07. 07. (20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스마트팜 신사업 발굴육성을 위한 군 출연금('19 / 1억원/전남테크노파크) • 농작물대상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및 실증관련 군 출연금('19~'22/ 1억원/ 전남테크노파크)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table>
<tr><td></td><td colspan="2">•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기반시설 정비, 시설 설치,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추진 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 보조금 지원 가능함
• 스마트팜 혁신밸리 효율적 추진과 운영관리를 위해 전남도 출연기관 및 재단법인에 한해 출연금 지원할 수 있음</td></tr>
<tr><td></td><td>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td><td>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 rowspan="8">현실
부합성</td><td>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td><td>□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td><td></td></tr>
<tr><td>종합 의견</td><td colspan="2">• 2019년 3월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선정됨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법령으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4.7월)과 고흥군 농수축산 밸리 확장 계획에 따른 스마트 원예단지 단계별 확장 추진을 위해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필요함</td></tr>
<tr><td colspan="3">3. 입법평가 결과</td></tr>
<tr><td>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일반정비
• 용어정비
- 제6조, 제11조제5호: 스마트팜 → 스마트 농장(원격기술적용 농장)
- 제11조: 애로사항 → 고충사항
• 띄어쓰기
- 제12조: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td></tr>
<tr><td>실현성</td><td colspan="2">□ 2025년 주요업무 계획</td></tr>
</table>

	•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운영 - 위치: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실증단지 - 소요예산: 1,245백만원 - 주요내용: 스마트팜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개발과 실증, 빅데이터 수집 활용, 신품목 발굴·생육 모델 개발 등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 - 추진실적 · 운영 위·수탁 협약(도·군 ↔ (재)전남TP / ~25. 12. 31.) : '21. 11. 16. · 실증단지 준공: '23. 10. · 실증단지 인프라 구축 및 보완: '24. 5. · 실증단지 내 기업 입주 및 실증: '24. 7. : 12개 컨소시엄(17개 기관, 22개 기업) 입주 · 실증단지 운영시스템 구축: '24. 8. · 실증단지 운영위원회 개최: '24. 10. : 실증단지 운영규칙 개정, 실증장비 이용료 산정안 등 · 입주기업 중간점검 및 워크숍: '24. 11. • 혁신밸리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지원 - 소요예산: 111백만원 - 주요내용: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효율적 운영 및 청년 보육생과 기존 농업인, 임대농 등 산학연간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지원서비스를 위한 비용 지원 • 스마트팜 혁신밸리 빅데이터센터 운영 - 사업비: 532백만원 - 주요내용 · 빅데이터센터 인프라 운영 · 고흥 혁신밸리형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모델 고도화 ·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지원 및 교육 추진 · 스마트팜 Data Lake 기반 서비스 모델 발굴 • 스마트팜 영농기회 제공, 「청년임대온실」 운영 - 모집대상: 청년창업보육사업 수료생 - 모집인원: 12팀 36명(매년 4팀, 12명 선발) ❋임대기간(3년) - 임대규모: 팀별 4,800㎡(공용면적 포함, 1인당 약 1,600㎡) - 시설규모: 1.92ha × 3동(A · B · C동) - 주요시설: 유리온실, 경량철골조, 공기열, 복합환경제어시스템 • 지역주민을 위한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 대상: 고흥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 후 3년 이상인 기존농업인 중 스마트팜을 경험하지 않은 자

	- 입주인원: 6팀 15명 ※임대기간(3년, 연장불가) - 임대규모: 팀별 6,000㎡(공용면적 포함, 1인당 약 2,000㎡) □ **이행** • 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 '22년 실증장비 및 입주 희망 기업 수요조사, 실증단지 운영매뉴얼 작성 및 활용방안 모색 워크숍 개최 · 빅데이터센터 운영,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운영 등 - 스마트팜 기술보급 보육센터 운영 -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농장,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등 2동으로 구성 및 운영 • 기타 스마트농업 육성 관련 사업(고흥군 주요업무계획) - 스마트팜 기술보급 보육센터 조성 ·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실증재배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농작물 실증재배, 스마트팜 기술교육 및 컨설팅) 등 - 스마트팜 견학·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전시 및 체험시설을 활용하여 혁신밸리를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 등 - 스마트농업 분야 직무역량강화 교육 - 시설원예 소규모 스마트농업 기술 확대 보급(2024~) · 환경데이터 기반 스마트 온실 제어시스템 도입 및 농가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 첨단 시설원예 시스템 도입 및 스마트팜 활용농가 기술지원 -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2024-2025) • 2026년 시설원예 분야 예비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음(고흥군청) • 2025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7,289,000천원을 편성하였음(본예산 기준) • 스마트팜 육성 사업 관련 출연금 - 스마트팜 신사업 발굴육성을 위한 군 출연금('19 / 1억원/전남테크노파크) - 농작물대상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및 실증관련 군 출연금('19~'22/ 1억원/ 전남테크노파크) • 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청년과 기존 농업인을 중심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
실효성	□ **성과** • 2019년 3월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선정 • 연도별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추진 성과 - 2023년 · 스마트팜 견학·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스마트농업과 혁신밸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관심 제고(내방객 누적 6,000여명)

· 현장 실습중심 스마트팜 전문교육으로 청년 농업인 양성

: 2기 교육생 37명 수료 및 취·창업 95% 달성

: 3기 교육생 온실 임대를 통한 자기 주도형 농업경영 실습

- 2024년

· 전국 최대(64ha) 규모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33ha)+대규모 스마트팜창업단지(20ha)+스마트원예단지(11ha) 지정

: 전국 4개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 최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 규제 완화

·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공모 유치: 20ha/240억원(전액 국비)

· 시설원예 경쟁력 향상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6개 사업

· 빅데이터센터 운영 안정화 및 고흥 특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고도화

• 청년 농업인 양성(현장 실습중심 스마트팜 전문교육)

구분	세부내용	성과	증감	비고
5기(전남3기)	수료	52명 중 43명 수료(83%)	12% 증	직전 기수 대비 6명 증가
6기(전남4기)	실습 추진	-	-	-
7기(전남5기)	신규 교육생 선발 및 개강	52명 선발 경쟁률 3.6:1	37% 증	전년 대비 신청자 대폭 증가

• 청년보육생 임대온실 운영을 통한 전문농업인 성장 지원

구분	입주 현황	재배작물	비고
임대형온실 A동	4팀/12명	토마토 4구역	· 구역당 면적 4,800㎡ · 팀당 컨설팅 14회 실시
임대형온실 B동	4팀/11명	딸기 2·멜론 1·엽채류 1구역	
임대형온실 C동	4팀/12명	토마토 3·멜론 1구역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에 따른 성과를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따른 성과를 크게 확인할 수 있음

□ **언론보도**

• 고흥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전남 4기 교육생' 수료식 개최(고흥군청 보도자료, 2025. 7. 24.)

- 전남 고흥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전남 4기 교육생 47명의 수료식을 성황리에 개최

- 전남 고흥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는 20개월간 현장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4837&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6조(출연금 지원) 군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효율적 추진과 운	제6조(출연금 지원) ----- 스마트농장(원격기술적용 농장) ----	용어정비

영·관리를 위하여 전남도 출연기관 및 재단법인에 한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비를 출연할 수 있다.	---------- ---------- ---------- -.	
제11조(추진단의 역할)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추진단의 역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현장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	2. 현장고충사항 ---------	용어정비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스마트팜 핵심 요소기술 선점 기획	5. 스마트 농장(원격기술적용 농장) ----------	용어정비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등)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띄어쓰기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20] 고흥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우주항공추진단		시행일	2019. 08. 01.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드론산업의 지원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④군수의 책무 ⑤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⑥드론산업 육성 ⑦전문인력 양성 ⑧예산의 지원 ⑨위·수탁 관리 ⑩드론산업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 ⑪안전교육 ⑫실태조사 ⑬포상 ⑭시행규칙			
	• 목적 - 고흥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 •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 드론산업 육성 • 실태조사			
총괄평가	종합의견	• 현행 유지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충족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고흥군 드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임의규정)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실태조사, 교육이나 홍보, 포상, 위탁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9. 05. 20. ~ 06. 09. (20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공기관 위탁 사업 등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제8조(예산의 지원) -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해당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충족	
실현성	□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 고흥 드론·UAM 엑스포 개최 - 위치: 고흥항공센터 일원 - 소요예산: 1,200백만원 - 주요내용: 개막식, 드론·UAM 전시관, 컨퍼런스, UAM비행시연 및 VR체험 등 - 추진실적 · 제1회 고흥 드론·UAM 엑스포 개최: ‘23. 11. 3.(금) ~ 11. 5.(일) · 제2회 엑스포 개최 2025년으로 순연 결정: ’24. 3. 28. ※국토부, K-UAM GC-1 사업 추진에 따른 항공센터 일원 전면 사용 제한 • 녹동항 드론쇼 개최 - 위치: 녹동항, 고흥읍 일원 등 - 소요예산: 1,150백만원 - 주요내용 · 드론 700대 이상 활용, 7개월간(4-10월) 매주 토요일 1회 정기 공연 · 「군민과 하나되는 별밤 버스킹 공연」과 연계 고흥읍에서 매월 1회 정기 공연 개최 · <정기공연 종료 후> 특별공연(연말연시, 설 명절) 운영 • 고흥 드론학과 신설 및 운영 - 주요내용: 「고흥군-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 30 공동추진 업무협약」에 의거하여, 관내 드론학과 설치 및 운영 - 추진실적 · 고흥군-순천대 글로컬대학 30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23. 9. 20. · 고흥군-순천대 글로컬대학 30 사업추진 간담회 개최: ’24. 2. 14. : 고흥캠퍼스 운영방향 의견교환 및 지원책 협의 · 고흥군-순천대 글로컬대학 우주항공특화분야 실무협의체 회의(1,2차) 개최: ‘24. 5. ~ 6.	

	: 우주항공 고흥캠퍼스 24년 2학기 시범운영 및 총괄 사업계획 협의 등 · 고흥군-순천대-전남TP 고흥 드론센터 공간활용 협의: '24. 7. · 우주항공 고흥캠퍼스 구축: '24. 8. : 고흥드론센터 4개실 리모델링, 전공선택 과목 개설 및 기자재·장비구축 · 2024년도 2학기 우주항공 고흥캠퍼스 운영: '24. 9. ~ 12. • 고흥드론센터 입주기업 지원 - 소요예산: 2,500백만원 - 수탁기관: (재)전남테크노파크 - 주요내용: 고흥드론센터 입주기업 제품 상용화(시제품 제작 및 고급화), 실증·시험·분석·인증 지원,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컨설팅 지원 등 • 공공분야 드론 조종 경진대회 개최 - 참가대상: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을 보유한 공공기관 종사자 - 소요예산: 35백만원 ❋제2회 고흥 드론·UAM 엑스포 사업비에 포함 - 경기 분야; 소방, 경찰, 해양경찰 ❋ 고흥 드론·UAM 엑스포와 병행하여 개최 • 섬 지역 드론배송 서비스 상용화 - 대상지역: 도양읍 득량도(53세대 78명 거주) ❋2025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국토부 공모사업)과 연계, 상·하화도 등 확대 운영 추진 - 사업자: 제한경쟁 공모 선정(드론센터 입주기업 대상) - 사업비: 1억원(군비 100%) - 사업내용: 주문 플랫폼 및 항로 개발, 거점·배송점 구축, 드론배송 등 - 배송내용: 주 2회 이상 배송 / 택배물 · 구급용품 · 생필품 · 배달음식 · 역배송 등 • 찾아가는 드론 교실 - 대상: 관내 초·중등 학생(5개교) ❋ 초 5·6학년, 중 1·2·3학년 - 소요예산: 20백만원 - 주요내용: 드론 기초이론, 조립체험, 비행실습 등 국가자격증 4종 취득을 위한 방문교육 • 녹동항 드론쇼 사진 공모전 개최 - 소요예산: 10백만원 - 주요내용: 일반 관람객들이 찍은 드론쇼 사진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작 전시, 연 1회 개최 • 드론을 활용한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 실증 기반 구축 - 위치: 전남(고흥), 경남(사천), 부산 초광역 협력권 - 사업내용: 적조 및 환경감시, 양식장 점검, 도서간 물품배송, 해양 쓰레기 감시 등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 실증사업' - 사업비: 총 18,820백만원, 2025년: 5,033백만원 - 주관기관: 전남테크노파크(우주항공산업센터)

- 추진실적

· ‘23년 사업 지정 공모 선정: ’23. 4.

· 사업 개시 회의 개최: ‘23. 7.

· (1차년도) 장비고도화 및 신규 구축: ’23. 7. ~ 12.

: 장기체공드론, 이동형 관제차량, 통합관제시스템, 빅데이터 시스템

· (2차년도) 사업 추진: ‘24. 1. ~ 12.

: 드론 통합성능진단분석시스템 및 소음계측시스템 구축, 기업기술지원, 전문인력양성 등

□ **이행**

- 고흥군 드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소관부서)
- 고흥군은 전문 인력양성, 전시체험장 조성 및 운영, 지원단 구성 운영, 경진대회,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음
- 기타 고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론산업 관련 사업은 붙임 1 참조
- 2025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회계연도	세부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5	무인기(드론)산업 육성	153,650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
			여비
			실비보상
			지원단 출동수당
			민간이전
	드론기업 역량강화	400,000	-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500,000	-
	녹동항 드론쇼 운영	1,000,000	-
	고흥드론엑스포 지원	800,000	-
	드론·첨단항공산업 투자유치 활동 전개	20,000	-
	찾아가는 드론 교실	20,000	-
	녹동항 드론쇼 사진 공모전 개최	12,000	심사수당
			상금
			사무용품
	고흥 드론센터 운영지원	449,925	위탁 사업비
	섬 지역 드론배송 서비스 상용화	100,000	-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	360,000	운영경비
			공공요금
			공사비
	기본경비(드론산업)	74,736	급식비
			여비

- 고흥군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다방면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전문가 자문 반영, 실적 등의 평가 등을 모두 계획 및 진행하고 있음

	- 고흥 드론·UAM 엑스포 개최: 전문가 자문 - 녹동항 드론쇼 개최: 운영 및 성과 평가 - 고흥 드론학과 신설 및 운영: 입학 수요 조사 - 드론특별 자유화구역 사업: 주민의견 수렴 -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 주민설명회 등 - 고흥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 · 주민의견 청취 · 사업단지계획, 교통성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실효성	□ **성과** • 연도별 드론산업 추진 성과 - 2020년 · 고흥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시행 - 2020. 12. 10. 기준 공정률 55% · 드론 국가자격증 및 항공촬영 민간자격증 취득 지원(92명, 군민/산업고/공무원) - 2021년 · 고흥 드론센터 준공(입주공간 25실, 기숙사 14실 등) ·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단(5개 기관) 협약 체결 및 운영 ·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및 항공촬영 전문가 양성과정 지원 (82명, 군민 공직자 고흥산업과학고 학생) - 2022년 ·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진대회 수상: 블루트랜스포트(드론산업) 부문 우수 사례 선정 · 고흥드론센터 입주기업 유치: 22개 입주공간 중 15개 기관·기업 유치, 9개의 기업 지원 · 드론과 연계한 관계부처 공모사업 유치: 3개 사업, 12억원 : '22년 전남 연구개발기획 시군주도 과제(드론 부품 국산화모델 개발) 선정 : 과기부,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AI기반 새꼬막 양식어장 관리 서비스) 전국 1위 선정 : 과기부,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섬지역 치안드론 운용개발) 선정 ·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단(5개 기관) 운영: '21. ~ ·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및 항공촬영 전문가 양성과정 지원 (81명, 군만공직자고흥산업과학고 학생) - 2023년 · 제1회 고흥 드론·UAM 엑스포 개최('23. 11. 3. ~ 11. 5.) : 방문객 12,000명(추정), 지역경제 유발효과 2,384백만원 · 2023 녹동항 드론쇼 운영('23. 5. ~ '23. 11.) : 드론 500대 이상 활용, 총 23회, 관람객 18만 명 달성, 150억원 소비·지출 경제효과 : '23. 12. 정산 및 결과보고 진행 · 드론센터 기업 입주: 18개 기업(입주율 82%), 드론 분야 공모사업 선정 2개 198억원, 14개의 기업 지원 · 드론 공공서비스지원단 운영 13회,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32명 - 2024년

· 2024 녹동항 드론쇼 운영('24. 4. ~ '25. 1.)

: 드론 700대 이상 활용, 총 38회 개최, 관람객 24만여 명 달성('24년 12월 기준)

: 드론쇼 공연과 별도 부서간 협업 추진(볼거리, 즐길거리 추가 등)

: 군 주관행사와 연계 추진 10회[녹동바다불꽃축제(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고흥 분청사기 요지(1), 제50회 고흥군민의 날(1), 제4회 고흥유자축제(4)]

· 제3회 국방부장관배 드론봇챌린지 개최, 12개 팀 60여명 참여

· 고흥 드론학과 신설 및 운영(글로컬대학 30 순천대 우주항공 고흥캠퍼스)

· 드론센터 18개 기관 입주(입주율 85%), 기업 역량강화 지원(기업당 최대 40백만원)

· 전국 최초 드론 합동순찰대 운영, 섬 지역 범죄예방 및 치안 강화

• 기타 연도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성과는 붙임 2 참조

• 2024 녹동항 드론쇼 목표 달성률

확인지표	2024년도 목표		2024년도 달성도		
	단위	목표	추진실적	달성률(%)	비고
드론쇼 운영 횟수	회	연 25회 이상	38	152%	-

• '22-'24 고흥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실적

구분	성과
입주기업 자생력 마련 및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단기적) 기술 인증 27건, 특허 9건 (장기적) 기술 인증 32건, 특허 19건
드론 서비스 상업화 유도	(단기적) 매출 4,108백만원, 신규계약 27건 (장기적) 매출 66,346백만원, 신규계약 314건, 수출액 4,088백만원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단기적) 고용 유발효과 46명 (장기적) 고용 유발효과 92명

• 현재 고흥군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성과와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음

□ **정책환경 수용성**

• 전문가의 자문, 사업 대상에 대한 설문조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 **언론보도**

• 고흥군, 드론으로 물든 여름...'2025 서머비치 페스타' 열린다(고흥군청 보도자료, 2025. 7. 17.)

- 드론 축구와 낚시 대회, 드론 체험부스, 드론 라이트쇼, 축하공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 남열해돋이해수욕장 내 드론축구 전용경기장에서 (사)대한드론축구협회 소속 전국 16개 팀이 참가하는 드론 축구 예선전 개최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4796&boardId=BD_00025&pageId=www102

• 고흥군, '호남권 최대 규모 드론쇼' 녹동항에서 펼쳐진다(고흥군청 보도자료, 2025. 6. 2.)

	- 총 2025대의 드론이 고흥의 3대 미래 비전(우주,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팜)과 3대 교통인프라(고흥~광주 고속도로, 고속철도, 고흥~봉래 간 도로 확포장)를 형상화해 입체적으로 연출 - 버스킹 공연, 먹거리, 고흥 특산품을 다루는 농수산 직거래장터도 함께 운영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4547&boardId=BD_00025&pageId=www102 • “섬마을에 치킨 배달 갑니다” …고흥 드론 배송 시대 연다(매일경제, 2025. 7. 10.) - 도서지역 물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 도입 - 배송거점 4곳과 배송점 11곳을 마련 https://www.mk.co.kr/news/politics/11364481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 현행 유지	

[붙임 1] 고흥군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

추진사업	비고
드론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2021-2025
드론·첨단항공산업 투자유치 활동 전개	'25. 1. - '26. 6.
· 유치장소: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고흥드론센터 내 · 소요예산: 20백만원 · 기업유치 활동계획 수립 및 홍보, 마케팅 계획에 따른 투자유치 활동 · 투자 설명회 개최, 입주의향 기업 발굴 및 업무협약(MOU) 체결 등	
5G기반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확산	2020-2023
· 5G기반 농업 드론 운용서비스 개발·실증, 인력양성 등 · 드론상업화실증지원센터 구축	
드론 아카데미 운영	2016~
· 소요예산: 98백만원 · 위치: 2개소(이론-고흥드론센터, 실습-수덕야구장) · 대상: 군민(40명), 공직자(10명), 공공기관(5명), 고흥산업과학고 학생(10명) · 관내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드론 아카데미 운영 ·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항공촬영전문가 양성 교육, 드론 우수인재 양성 지원 등	
고흥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	2023-2026
· 위치: 고흥읍 고소리 1170번지 일원 · 소요예산: 12,800백만원 ❋폐수처리장 별도: 6,515백만원 · 농공단지 조성 A=137,044㎡(dir 41,450평) ❋산업용지: 92,001㎡(약27,830평)	
민관이 함께하는 고흥 드론봉사단 운영	2023
드론 실증도시 구축	2023-2024
드론부품 국산화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2024~2027)	2024-2027
· 드론부품국산화지원 인프라 구축 장비구축 기술표준화 및 기술개발 등	
드론 전시체험장 조성	
· 드론 전시체험장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 및 전문가 자문 : 국립중앙과학관(대전), 성동4차산업혁명체험센터(서울), 드론협회 등 ·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설문조사 실시(35개소) · 드론 전시체험장 조성 기본계획·실시계획·세부계획·운영계획 수립 : 벤치마킹 및 설문조사 실시결과, 전문가 자문 의견 반영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맞춤형 기업지원	2022~
· 입주기업 맞춤형 단계별 지원사업 공모 및 추진 · 기술·교육·홍보 지원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단 운영	2021~
· 사업비: 10백만원(출동수당, 드론 보험료 및 관리비) · 구성: 고흥군, 관내 공공기관(4개소 / 고흥결찰서, 고흥소방서, 여수해양경찰서, 육군 제7391-2대대), 수행기관(마린로보틱스)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	2023-2025
· 위치: 고흥읍 등암리 62-3번지 일원 · 사업비: 5,666백만원 · 규모: 건축 지상 2층, 연면적 869.50㎡ ❋부지면적: 2,872㎡	

· 드론 체험·전시 교육시설 및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 등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확대 운영	2021-2026
· 섬 지역 치안드론 운영통합체계 개발 · 소요예산: 2,400백만원	
드론기업 유치 지원	-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등 드론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드론산업 중심지 육성 · 전남도 블루이코노미(블루트랜스포트)에 선정된 드론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연구개발, 제작, 기업지원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투자기업 유치 · '21년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및 지원방안 수립, 투자유치 활동 전개 등을 계획	

[붙임 2] 고흥군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 성과

구분	주요성과	비고
2020	5G 기반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실증 확산 공모사업 확정	-
	고흥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지정계획 승인 고시	-
2021	드론 상업화 실증지원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착공	-
	고흥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지정계획 승인 고시(국토부)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 및 고시(국토부)
2022	드론 상업화 실증지원센터 건립사업 건축물 사용승인	'22. 8.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운영	'21. ~ '22.
	제5회 드론봇챌린지 대회 개최: 육군 협력체계 구축 및 고흥드론산업 언론 등 홍보	-
	드론박람회 참가 및 부스 운영(대한민국 드론박람회, 무인이동체 산업 엑스포)	고흥드론센터 등 고흥 드론 산업 인프라 홍보 및 기업 유치
2023	드론·UAM 산업 선점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주민체감형 사업 추진	-
	전국 유일 K-UAM 테스트베드 조성, UAM 관광항로 개설 추진	-
2024	드론 공공서비스지원단 운영 및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등	-

[21] 고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재난안전과		시행일	2020. 02. 17.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가입대상 ④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⑤보험료 납입방법 ⑥피해신고 및 조사 ⑦보험금액 신청 등 ⑧보험금액 산정 ⑨보험금 지급 ⑩보험금 지급 제외 ⑪시행규칙			
	• 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고흥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가입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하나,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 가능 •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 고흥군수는 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 가능 -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함 • 보험금 지급 - 보험기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지급			
총괄평가	종합의견	• 현행 유지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충족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0. 01. 10. ~ 01. 30.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table>
<tr><td rowspan="4"></td><td>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종합 의견</td><td colspan="2">• 해당 없음</td></tr>
<tr><td colspan="3">3. 입법평가 결과</td></tr>
<tr><td>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충족</td></tr>
<tr><td>실현성</td><td colspan="2">□ 이행
• 2025 고흥군민 안전공제·보험 가입
- (사업비) 115백만원
- (보험대상)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보장기간) 2025. 4. 1. ~ 2026. 3. 31. (매년 갱신)
- (보험료) 없음
- (보장금액) 보험가입으로 정해진 보장금액(최대 2천만원)
-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시, 증비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 (보장내역) 총 35항목(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등)
-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고흥군청 홈페이지 내 재난관련정보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
•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사업명: 안전공제 및 보험 가입 지원)
(단위: 천원)
<table>
<tr><th>구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r>
<tr><td>예산액</td><td>37,000</td><td>90,000</td><td>85,000</td><td>85,000</td><td>115,000</td></tr>
</table></td></tr>
<tr><td>실효성</td><td colspan="2">□ 성과
• 연도별 군민안전보험 시행 성과(고흥군청)
- ‘21년 ’군민안전보험‘ 보상 한도 상향: 1,000만원 → 2,000만원
- ‘22년 감염병사망(3명, 30백만원)
- ’23년 총 57건, 522,088천원 지급(2023. 12. 31. 기준)
- ’24년 총 39건, 305,452천원 지급(2024. 12. 31. 기준), ‘23년 26항목 → ’24년 32항목으로 확대 지원</td></tr>
</table>

	□ **언론보도** • 고흥군, 2025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고흥군청 보도자료, 2025. 4. 11.) - 4월부터 '군민안전보험'의 항목과 한도 확대 운영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애', '성폭력 범죄 피해' 등 항목 추가 -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4297&boardId=BD_00025&pageId=www102 • 고흥군, 겨울철 안전사고 '군민안전보험'으로 해결(고흥군청 보도자료, 2023. 12. 8.) - 2023년 총 52건의 사고접수, 총 5억2천여만원의 보험금 지급, '22년도에 비해 79% 증가한 수치 - 2022년 총 34건, 2억 9천여만원의 보험금 지급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2074&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 현행 유지	

[22] 고흥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table>
<tr><th colspan="5">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소관부서</td><td colspan="2">재난안전과</td><td>시행일</td><td>2018. 07. 25.</td></tr>
<tr><td>조례 구분</td><td colspan="4">■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rowspan="2">관계 법령</td><td colspan="2">법령명</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td><td colspan="2">제4조 국가 등의 책무</td></tr>
<tr><td rowspan="2">주요
내용</td><td colspan="4">•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적용범위 ④사전대비 실행계획 수립 ⑤안전시설 정비·확충 ⑥관리지역 전수조사 ⑦위험구역 설정·게시 ⑧안전관리요원 ⑨안전관리요원 배치 ⑩배치기준 ⑪운영시간 ⑫근무시간 ⑬임무 ⑭복제 ⑮지도·감독 ⑯자격기준 ⑰모집·선발 ⑱교육 및 훈련 ⑲대응계획 수립 ⑳비상근무 ㉑현장점검반 ㉒상황보고 ㉓유관기관과의 협조 ㉔비밀유지 ㉕안전시설 설치비 ㉖안전관리요원 운영비 ㉗홍보</td></tr>
<tr><td colspan="4">• 목적
-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사전대비 실행계획 수립
-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 대국민 홍보 계획
-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 안전시설 정비·확충
• 대응계획 수립</td></tr>
<tr><td rowspan="5">총괄평가</td><td rowspan="2">종합의견</td><td colspan="3">• 특이 사항 없음</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2">□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일반정비</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colspan="2">• 이행</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2">• 충족</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th></tr>
<tr><td>분석항목</td><td>세부항목</td><td>척도, 의견 및 자료</td></tr>
<tr><td>조례의
실효성</td><td>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계획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2. 03. 14. ~ 04. 0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해당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용어정비, 띄어쓰기 - 제6조제2항: 지역중, 이용객수, 데이터베이스 → 지역 중, 이용객 수, 데이터베이스 • 용어정비 - 제15조제4호: 부적합하다고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 제16조: 자 → 사람 • 띄어쓰기 - 제19조: 해당연도 → 해당 연도 - 제20조제1항: 대책기간내 → 대책 기간 내 - 제25조: 관리지역내 → 관리지역 내 • 오탈자 - 제22조제1항: 3근무시간 → 근무시간	
실현성	□ **이행**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 • 2022년 고흥군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2022년 6월에 여름철 물놀이 관리구역 일제조사 진행을 계획 • 안전점검(고흥군청) - ‘25. 7. 24. 민간 수영장 특별점검 진행 - 구조장비 비치 여부, 수질관리 상태, 비상시 대처요령 안내, 시설 노후 여부 등 • 홍보(고흥군청) - 이용자 대상 안전수칙 홍보(수영 전 준비운동 실시,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적신 후 천천히 입수 등) •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대상 실무 교육(고흥군청) - ’25. 7. 16. 안전관리요원 8명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안전 교육 실시 - 사고 발생 시의 상황 전파 및 신고 절차 등 기본 안전관리 요령	

	- 심폐소생술, 기도 폐쇄 및 골절 시 응급처치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실효성	□ **성과** • 매년 여름철 물놀이를 위한 물놀이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음 □ **언론보도** • 고흥군, 폭염 탈출! '고흥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개장(고흥군청 보도자료, 2025. 7. 16.) - 어린이 물놀이장 3곳을 7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운영 - 매주 월요일은 위생 및 시설점검을 위해 휴장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4784&boardId=BD_00025&pageId=www102 • 고흥군, 도심 속 오아시스 어린이 물놀이장 인기 만점(고흥군청 보도자료, 2024. 8. 6.) - 어린이 물놀이장 3곳을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무료 운영 - 아이들의 피부 보호를 위한 차광막 설치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3175&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생 략)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수조사된 지역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데이타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지역 중 -------- ---------- ---------- 이용객 수---------- ---------- 데이터베이스----------.	띄어쓰기 용어정비
제15조(지도·감독) ① (생 략)	제15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	용어정비
제16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6조(자격기준) ----------.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1. ---------- 소지한 사람	용어정비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2. ---------- 종사한 사람	용어정비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3. ---------- 이수한 사람	용어정비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등 수난구조 능력을 갖추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4. ---------- 인정하는 사람	용어정비
제19조(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대응계획 수립) ---------- 해당 연도----------.	띄어쓰기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20조(비상근무) ① 군수는 안전관리 대책기간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근무) ① ---------- 대책 기간 내 ----------.	띄어쓰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상황보고) ①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상황보고) ① ---------- 근무시간 ----------.	오탈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안전시설 설치비) 군수는 관리지역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확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시설 설치비) ----- 관리지역 내 ---------- ---------- ---------- --.	띄어쓰기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23] 고흥군 해창오마간척사업시설 사용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재난안전과	시행일	2009. 04. 10.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해당 없음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시설물등의 관리 ④사용허가 및 임대계약 ⑤사용료 부과기준 ⑥사용료 감면 ⑦사용료 납부 통지 ⑧사용료 납기 ⑨이의 신청 ⑩준용 ⑪탈루 또는 면세된 사용료의 처리 ⑫조사위원 위촉 ⑬이동신고 의무 ⑭도면 및 장부비치 ⑮규칙
	• 목적 - 고흥군수가 해창오마간척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기타용지, 시설물에 대하여 수익자로부터 점·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용허가 및 임대계약 • 이동신고 의무 - 점용할 일시 경작지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3. 09. 14. ~ 10. 03.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해당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용어정비 - 제1조, 제5조제2호, 제6조제1호, 제11조: 기타 → 그 밖의 - 제6조: 각 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어법, 띄어쓰기 - 제4조제2항: 자는 + 지체없이 → 사람은 + 지체 없이 • 오탈자 - 제7조: 납입액·납입기한 납입장소 → 납입액·납입기한·납입장소
실현성	• 2025년 예산 편성(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 사업명 / 예산액(단위: 천원) 시설물 유지관리 528,883 해창오마지구 매각대 징수 166,250 인력운영비 208,671 계 903,804
실효성	• 특별회계에 의해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 있음 • 충족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수가 해창오마간척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기타용지, 시설물에 대하여 수익자로부터 점·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그 밖의 용지---------- ---------- ---------- ----------.	용어정비
제4조(사용허가 및 임대계약) ① (생 략)	제4조(사용허가 및 임대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전항에 따라 점용 또는 사용	② ----------	어법 띄어쓰기

허가를 받는 자는 지체없이 농지기금에 의한 조성 토지의 매각 준칙에 의하여 고흥군수와 일시경작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사람은 지체 없----------.	
제5조(사용료 부과기준) 해창오마간척사업 시설물 및 간척지내 조성농지 일시경작 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제5조(사용료 부과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간척 조성농지 일시경작 사용료 부과요율은 제1호 기준 수확량의 10% 상당액을 사용료로 하고 시설물등 기타용지 점·사용료는 군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간척조성농지 일시경작 사용료는 당해연도 정부 추곡 2등품 매입가격(정조)에 따라 산정한다.	2. ---------- 그 밖의 용지 ----------. ----------.	용어정비
제6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감면) ---------- 어느 하나에 ----------.	용어정비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일시 경작지 수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1. ------ 그 밖의 ----------	용어정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납부 통지) 군수는 사용료를 결정 부과하였을 때에는 납입액·납입기한 납입장소 등을 납기 15일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허가분에 대하여는 전년도 사용액 상당액의 점·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납부 통지) ------- 납입액·납입기한·납입장소 ----------. ----------.	오탈자

제11조(탈루 또는 면세된 사용료의 처리) 탈루 또는 사기 기타 부당한 행위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2배이내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탈루 또는 면세된 사용료의 처리) ---------- 그 밖의 ---------- ----------.	용어정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24] 고흥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table>
<tr><th colspan="5">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소관부서</td><td colspan="2">관광정책실</td><td>시행일</td><td>2018. 12. 06.</td></tr>
<tr><td>조례 구분</td><td colspan="4">■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rowspan="2">관계 법령</td><td colspan="2">법령명</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해당 없음</td><td colspan="2"></td></tr>
<tr><td>주요
내용</td><td colspan="4">•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영업장소 ④제출서류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⑥준용 ⑦시행규칙

• 목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영업장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는 다음과 같음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6.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7.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신청하여 군수가 정하는 시설·장소</td></tr>
<tr><td rowspan="5">총괄
평가</td><td rowspan="2">종합의견</td><td colspan="3">• 현행 유지</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2">■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충족</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colspan="2">• 이행</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2">• 충족</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th></tr>
<tr><td>분석항목</td><td>세부항목</td><td>척도, 의견 및 자료</td></tr>
<tr><td>조례의
실효성</td><td>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허가·승인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8. 10. 02. ~ 10. 21. (20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해당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충족 • 소관부서에서는 위임조례로 분류하였으나 상위법령에 직접적인 위임 문구가 없어 자치조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도 자치조례로 분류하고 있음	
실현성	□ **2023년 주요업무계획** •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개선 및 친절서비스·위생실천을 위한 노력 강화 - 음식판매차량 구조변경 지원 5대	
실효성	•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행되고 있어 실효성 충족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 해당 사항 없음		

[25] 고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축산정책과	시행일	2025. 11. 06.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동물보호법	제4조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④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⑤등록대행자 지정 및 관리 ⑥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⑦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 ⑧유기동물의 포획 ⑨보호동물의 공고 등 ⑩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⑪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⑫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⑬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⑭업무의 지원 ⑮등록 등의 수수료 ⑯과태료		
	• 목적 -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함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 • 보호동물의 공고 등		
총괄평가	종합의견	• 고흥군 상황에 따른 단계적 개정 필요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서식 링크 오류 수정 요청 필요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센터 또는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시설이나 장비 대여 또는 사용 승인, 추진실적 성과평가, 기관 교류 또는 협력체계 구축, 허가·승인, 위탁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도 20,000천원 • 2024년도 32,720천원 • 2023년도 32,720천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 그렇다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현재 조례는 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 강화를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함. • 위원회 신설 여부, 보호조치 기간 및 절차 개선, 입양 활성화 방안, 민관 협력 강화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 개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관계 부서(축산정책과 등) 및 전문가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어법 - 제5조제1항: 자 중 → 사람 중 • 조항이동 - 제2조제4호: 「동물보호법」 제14조 → 「동물보호법」 제34조 - 제2조제6호: 법 제15조 → 「동물보호법」 제36조 - 제6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3항 →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 제6조제2항: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 제7조제1항: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 제7조제2항: 법 제15조제6항 → 「동물보호법」 제36조제4항 - 제9조: 시행령 제7조제1항 → 제16조제1항 - 제10조제1항: 법 제7조 → 「동물보호법」 제9조 - 제10조제4항: 법 제39조제1항제3호 → 「동물보호법」 제86조제1항제3호 - 제11조제4항: 법 제21조 또는 법 제22조 → 「동물보호법」 제45조 또는 제46조 - 제11조제7항: 법 제21조 → 「동물보호법」 제45조 - 제11조제7항제1호: 시행령 제5조 → 시행령 제6조 - 제11조제7항제2호: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 「동물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동물보호법」 제90조 명예동물보호관 - 제12조제1항: 법 제14조제1항제3호 →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제3호 - 제12조제2항: 시행령 제5조 → 시행령 제6조 - 제12조제3항: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시행령 제5조 → 시행규칙 제265조제2항, 시행령 제6조 - 제12조제4항: 법 제21조 또는 제22조 → 「동물보호법」 제45조 또는 제46조 - 제16조: 법 제47조, 시행령 제20조 → 「동물보호법」 101조, 시행령 제35조 • 조항삭제	

	-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6호 → 「동물보호법」 제15조 □ **사이트 정비** • 별지 서식 링크 오류 - 제3조제3항: 별지 제2호 서식 → 오류 수정 • 소관부서에서는 위임조례로 분류하였으나 상위법령에 직접적인 위임 문구가 없어 자치조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도 자치조례로 분류하고 있음
실현성	□ **2025년 주요업무계획**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지원 -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지원 · 사업비 :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지원: 20백만원 : 유기·유실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 8백만원 :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30백만원 :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750천원 : 임시보호센터 주변환경정리: 5백만원 · 사업내용: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관리 비용 및 입양비 지원 -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 사업비: 4백만원 · 사업내용: 반려견 동물등록(100두) 비용 지원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 사업비: 40백만원 · 사업내용: 길고양이(200마리) 중성화 수술비 지원 -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 사업비: 64백만원 · 사업내용: 마당에서 키우는 실외사육견(160마리) 중성화 수술비 지원 □ **이행** •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계획을 최근 3년간 마련하고 있으며, 유기·유실동물의 구조 및 보호비, 입양비 등의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동물보호 및 관리 관련하여 유기동물센터 운영비 및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음 - 2025년 예산 편성 현황(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회계연도 | 세부사업명 | 통계목 | 예산액 | 비고 2025 |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 20,000 | 133마리 2025 | 유기·유실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 | | 8,050 | 115두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750	5호*60%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40,000	200두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지원	30,000	150마리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64,000	160마리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4,000	100마리
	유기견 임시보호센터 유지관리 지원	보호시설 주변 환경정리	5,000	2명

• 반려동물 등록

- '21, '22년 각 2개소, 3개소 병원 대행
- 등록대상으로 강아지는 의무이며, 고양이는 선택
- 등록 수수료 및 행정처분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

실효성

□ **성과**

• 반려동물등록

- '21년 반려동물등록 대행 병원 2개소 운영
  · '나로동물병원', '고흥종합동물병원'
- '22년 반려동물등록 대행 병원 3개소 운영
  · '나로동물병원', '고흥종합동물병원', '미소동물병원'

□ **언론보도**

• 전남 고흥 남양면에서 래브라도 리트리버 발견 보호(펫노트, 2023. 3. 23.)

- 전남 고흥 남양면 대곡마을에서 발견한 수컷 래브라도 리트리버가 22일 동물보호소에 들어옴
- 공공기한은 4월 3일까지

https://www.notepet.co.kr/news/abandon/abandon_view/?idx=236500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유실·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	4. "유실·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	조항이동

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동물보호센터”란 군수가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위탁계약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 「동물보호법」 제36조----------.	조항이동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4조(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①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① ----------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제15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제9호에 해당하는 ----------.	조항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등록대행자 지정 및 관리)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중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무선식별장치 리더기 등을 갖추고 등록대행 업무를 신청한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등록대행자 지정 및 관리) ① -----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	어법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① 군수는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동물보호센터를 법 제15조1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① ---------- 법 제35조제1항---------- 법 제36조제1항----------.	개정으로 조항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② ----------	개정으로 조항 변경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 등으로 한다.	----------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여부 등을 연2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 ① ----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조항이동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15조제6항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 「동물보호법」 제36조 제4항----------.	조항이동
제9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 ---- 제16조제1항----------.	개정으로 조항 변경
제10조(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7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 「동물보호법」 제9조----------.	조항이동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 「동물보호법」 제86조제1항제3호----------.	조항이동

제11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 ③ (생 략)	제11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분양, 기증 및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법」 제45조 또는 제46조----------	조항이동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⑦ 「동물보호법」 제45조---------.	조항이동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1. ---- 제6조----------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2. 「동물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동물보호법」 제90조 명예동물보호관	조항이동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2조(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조항이동
② 군수는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	② ---------- 제6조----------	조항이동

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해당 단체가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 제6조----------.	조항이동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군수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 「동물보호법」 제45조 또는 제46조----------.	조항이동
제16조(과태료)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행령 제20조와 같다.	제16조(과태료)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5조--------.	조항이동

2. 정책 제안 사항

□ **소관부서 의견 검토**

- 동물호보 및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개정 고려를 제안하고 있음
- 위원회 신설, 보호조치 기간 및 절차 개선, 민관 협력 강화, 입양 활성화 등 포함 필요성 제안
- 현재 고흥군 조례는 크게 동물 등록, 동물보호센터 설치, 유기동물 및 보호동물 보호 및 관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동물복지 차원에서 동물보호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 동물복지 개념·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기본계획 수립·시행,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지원, 분양에 관한 사항,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고흥군의 경우 현재 임시보호센터만 설치·운영 중으로 수용 동물 수가 적어 정식 보호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

- 조례의 개정은 고흥군 현실(주민 인식 수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동물보호 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재정적 지원,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사항들을 설정하고,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부터 내용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제안

• 전체적으로 타 지자체 사례 검토를 통해 포괄적인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되 고흥군 현실적 여건에 맞는 단계적인 개정 전략 권고

[26] 고흥군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축산정책과	시행일	2014. 12. 30.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해당 없음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적용 ④위원회 설치 ⑤위원회 기능 ⑥회의 ⑦관리권한 ⑧사용료 ⑨사용신청 ⑩사용승인 ⑪사용기간 ⑫사용책임 ⑬사후관리 ⑭사용승인 박탈 ⑮청문 ⑯사용자에 대한 지원 ⑰준용 ⑱시행규칙		
	• 목적 - 고흥군과 고흥축협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의 차별화와 소비자 인지도 및 품질을 고급화 하고, 「상표법」 제9조에 따른 상표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사후관리 - 군수는 브랜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축사, 가공설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사용중지, 보완, 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음 - 브랜드 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상표 사용신청 불가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지 서식 링크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수정 요청 필요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유자골 고흥한우 명품 파워브랜드 육성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실태조사, 허가·승인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3년도 188,600천원 • 2024년도 637,862천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유자골 고흥한우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 홍보,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한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관련 사업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대행)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table>
<tr><td rowspan="4"></td><td>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 colspan="2">• 회의 개최 실적
- 2023년: 1건
- 2024년: 1건
• 회의록 보존 여부: 여</td></tr>
<tr><td>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종합 의견</td><td colspan="2">• 유자골 고흥한우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 홍보,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한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음.</td></tr>
<tr><td colspan="3">3. 입법평가 결과</td></tr>
<tr><td>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일반정비
• 조항이동
- 제1조: 「상표법」 제9조 → 「상표법」 제3조
- 제13조제3항: 「상표법」 제65조, 「상표법」 제66조 → 「상표법」 제107조, 「상표법」 제108조
• 용어정비
- 제9조제1항: 의하여 → 따라
• 어법
- 제9조제2항: 갖춘 자에 한한다 → 갖춘 사람으로 제한한다(한한다)
□ 사이트 정비
- 제9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링크 오류</td></tr>
<tr><td>실현성</td><td colspan="2">□ 이행
• 유자골 고흥한우 명품 파워브랜드 육성 사업
- 2023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4년간 진행 예정인 사업으로, 2023년부터 매년 「유자골 고흥 한우」 명품 파워브랜드 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 홍보 및 마케팅비, 브랜드 출하 장려금, 도축 운송비, 상표 운영비, 기계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2025년 「유자골 고흥한우」 명품 파워브랜드 육성 계획
- 소요예산: 4,983백만원
- 대상: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사업 참여 단체 및 농가
- 주요내용: 사업단 운영, 출하·유통, 농가 사양관리, 컨설팅 등
• 2025년 유자골 고흥한우 파워브랜드 육성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본예산 기준)</td></tr>
</table>

(단위: 천원)

회계연도	세부사업명	편성목	예산액	비고
2025	유자골 고흥한우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	일반운영비	27,862	홍보간판 정비
				홍보 및 안내 홍보물
				사업 설명회
				책자 제작
		민간자본이전	390,000	출하장려금 지원
				운송비 지원
				마케팅비 지원
				상표 운영비

• 재정 지원

- 유자골 고흥한우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 홍보,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음

- 2023년도 188,600천원

- 2024년도 637,862천원

•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 고흥군 유자골 브랜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

- '23년, '24년 회의 1회씩 개최

실효성

□ **성과**

• 최근 2년간 주요 성과

- 2023년

· '23. 4. 18.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사업단 법인 설립

·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설명회 진행(2회)

· '23. 6. 30. 곰탕제작(함평축산물유통센터 ↔ 브랜드사업단) OEM 계약 체결

· '23. 8. 18.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육 관내 하나로마트 입점 계약 체결

- 2024년

· 경제 형질이 우수한 한우 암소계통 조성 및 브랜드 한우 생산기반 조성

: 참여농가 305호, 27,582두

· 소규모 육가공 시스템(자동화 포장기 등 3종) 구축으로 온라인 판매 강화

· 관내 전문판매점(5개소) 및 관외식당(2개소) 판매 실시

: 유자골 고흥한우 숯불구이점 분청마루 오픈

· 홈페이지 구축 및 상세페이지 제작

·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육 출하 및 부분육 판매

: '24년 634두 → '25년 1,500두 → '26년 2,500두 브랜드육 출하

· '24. 6. 축산물 종합 가공·유통시설 지원 예산 신청

: '24. 12. 20. '25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지원사업 선정

• 2024년 계열화 추진 실적 138% 달성

사업명	세부 사항	목표		실적		비고
「유자골 고흥한우」 명품 파워브랜드 육성	참여 계열화 농가	농가(호)	소(두)	농가(호)	소(두)	138% 달성
		400호	20,000두	305호	27,582두	

-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유자골 고흥 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 진행 이후 다양한 성과와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어, 실효성을 충족한다고 판단됨

□ **언론보도**

- 고흥군, 유자골 고흥 한우 전국 최고품질 입증(스포츠서울, 2025. 2. 21.)

- 최근 축산물 평가원의 도축 성적분석 결과, 1++ 등급 출현율이 56.4%로, 2020년 대비 15.6% 증가, 1+ 등급 이상 출현율도 81.3%로, 2020년 대비 9.3% 증가하며 전국 최고 수준 기록
- 현재 우량한우 639두를 보유하여 전국 5위, 초우량한우 63두를 보유하여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음
- 2023년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사업단 출범 이후, 참여 계열화 농가 300곳을 중심으로 TMF 사료 급여 일원화, 주기적인 사양관리 교육 실시, 최적의 사육환경 조성 실시 및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496401?ref=naver

- '제15회 고흥우주항공축제' 먹거리부스 고흥 별미로 호평(고흥군청 보도자료, 2025. 5. 8.)

- 축제 메뉴 중 햄버거와 샐러드빵은 기존의 수입산 소고기 대신 유자골 고흥한우를 사용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이라는 평가를 받음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4424&boardId=BD_00025&pageId=www102

- 유자골 고흥한우, 한우산업 인정을 위한 한우 소비 촉진 할인 행사(고흥군청 보도자료, 2025. 3. 24.)

-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고기 소비가 감소할 우려에 대비하여 진행한 행사
- 유자골 고흥 한우 브랜드사업단이 운영하는 '분청마루점'에서 준비 물량 소진 시까지 진행
- 정육(구이용) 40-50%, 그 외 부산물(국거리, 꼬리, 우족 세트 등) 30% 할인, 사골곰탕 세트 1+1 할인 판매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4194&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과 고흥축협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의 차별화와 소비자 인지도 및 품질을 고급화 하고,「상표법」제9조에	제1조(목적) ---------- ---------- ---------- ---------- 하고,「상표법」제3조--------	조항이동

따른 상표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9조(사용신청) ① 유자골 고흥한우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신청) ① ---------- ---------- ---------- 따라 ---------- -.	용어정비
② 브랜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관내 거주자로써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제3조에 따른 1등급 이상 고급정육을 취득하는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② ---------- ---------- ---------- ---------- ---------- ----- 사람으로 제한한다.	어법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3조(사후관리) ①·② (생 략)	제13조(사후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 사용하거나 변형 또는 허위표시한 때는「상표법」제65조에 따른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를 즉시 청구하고,「상표법」제66조에 따른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야 하며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 ---------- ---------- ---------- 때는「상표법」제107조---------- ---------- 청구하고,「상표법」제108조---------- ---------- ---------- ---------- ----------.	조항이동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27] 고흥군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관리 운영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농업기술센터	시행일	2013. 05. 28.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해당 없음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공급대상 ④공급범위 ⑤공급가격결정 ⑥준용 ⑦시행규칙		
	• 목적 - 고흥군 자체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생산 및 공급 사업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으로 관내 감자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게 지원함 • 공급범위 - 상위단계 씨감자(원원종 및 원종) 공급 -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망사 피복의 공급 - 그 밖에 자체생산 씨감자 사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공급가격결정 - 공급단계별 가격은 정부 보급종 가격에 준하거나 분양협의회를 통하여 결정하되 분양협의회는 관계공무원 및 생산자 단체, 감자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운영		

총괄평가		
종합의견	• 현행 유지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충족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센터 또는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table>
<tr><td rowspan="2"></td><td>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종합 의견</td><td colspan="2">• 해당 없음</td></tr>
<tr><td colspan="3">3. 입법평가 결과</td></tr>
<tr><td>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충족</td></tr>
<tr><td>실현성</td><td colspan="2">□ 2025년 주요업무계획
• 과학영농 기반 정밀농업 기술지원
- 소요예산: 821.9백만원
- 주요내용: 유용미생물 보급, 토양정밀 분석,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 추진계획 中 조직배양실 운영
- 우량씨감자 생산 및 농가 공급: 500kg
- 연도별 추진목표
<table>
<tr><th>분야</th><th>2025년</th><th>2026년</th><th>2027년</th></tr>
<tr><td>조직배양실</td><td>감자 500kg
마늘 생장점 1,500점</td><td>감자 500kg
마늘 생장점 2,000점</td><td>감자 500kg
마늘 생장점 2,000점</td></tr>
</table>
□ 이행
• 과학영농 실천 기술지원 사업(고흥군 주요업무계획)
-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사업에서 조직배양실 운영 관련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농업기술센터 운영(고흥군청)
- 조직배양실, 아열대농업관, 치유농업관, 유용미생물 배양실 등 다양한 시설들이 유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조직배양실
· 조직배양실, 양액재배하우스, 망실하우스 등 3동으로 구성
· (주요업무) 우량씨감자 자급 기반 구축 및 공급, 고품질 고구마 조직배양묘 생산, 마늘 생장점 배양 우량종구 생산 및 보급
•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확대 보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table>
<tr><th>회계연도</th><th>세부사업명</th><th>예산액</th></tr>
<tr><td>2021</td><td>조직배양 우량씨감자 확대 보급</td><td>20,008</td></tr>
<tr><td>2022</td><td>조직배양 우량씨감자 확대 보급</td><td>11,006</td></tr>
<tr><td>2023</td><td>조직배양 우량씨감자 확대 보급</td><td>12,734</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
<table>
<tr><th>회계연도</th><th>세부사업명</th><th>예산액</th></tr>
<tr><td>2024</td><td>조직배양 우량씨감자 확대 보급</td><td>12,242</td></tr>
<tr><td>2025</td><td>조직배양 우량종자(감자, 마늘) 확대 보급</td><td>12,297</td></tr>
</table>
</td></tr>
<tr><td>실효성</td><td>□ 성과
• 과학영농 기술지원 기반 정밀농업 추진 성과
<table>
<tr><th>구분</th><th>추진목표</th><th>추진실적</th><th>달성율(%)</th></tr>
<tr><td>2020</td><td>-</td><td>씨감자 원종 1톤
자체 우량종 4톤</td><td>-</td></tr>
<tr><td>2021</td><td>-</td><td>씨감자 원종 2톤
자체 우량종 5.9톤</td><td>-</td></tr>
<tr><td>2022</td><td>6톤
(자체 우량종 씨감자)</td><td>6.2톤 51농가
(자체 우량종 씨감자)</td><td>103</td></tr>
<tr><td>2023</td><td>-</td><td>-</td><td>-</td></tr>
<tr><td>2024</td><td>감자 4톤
(자체 우량종 씨감자)</td><td>4.1톤
(자체 우량종 씨감자)</td><td>102</td></tr>
</table>
</td></tr>
<tr><td colspan="2">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td></tr>
<tr><td colspan="2">• 해당 사항 없음</td></tr>
</table>

[28] 고흥군 천 원 도선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해양수산과	시행일	2018. 12. 27.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 보조금의 지급 등,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보조금 지급 ④보조대상 ⑤보조금 신청 ⑥장부의 비치 등 ⑦보조금의 중단 ⑧준용 ⑨시행규칙		
	• 목적 - 섬 주민의 주 교통수단인 고흥군 운항 도선요금을 천원으로 단일화하여 섬지역 주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방문객의 비용을 경감하여 섬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섬 주민의 소득 증대 • 보조대상 - 도선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손실금 중 도선의 운항에 직접 소요된 경비 - 도선의 수리, 사고 등으로 운항 불가시 대체선박 이용에 따른 비용 - 기타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노후선 교체 안전성 검사비 등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5도서지역 적자도선 재정지원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시설이나 장비 대여 또는 사용 승인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8. 11. 05. ~ 11. 25.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1년 도선6척 적자도선 예산 800백만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table>
<tr><td rowspan="3"></td><td>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종합 의견</td><td colspan="2">• 현행 유지</td></tr>
<tr><td colspan="3">3. 입법평가 결과</td></tr>
<tr><td>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일반정비
• 용어정비
- 제9조: 관하여 → 생략</td></tr>
<tr><td>실현성</td><td colspan="2">□ 이행
• 2025 도서지역 적자도선 재정지원 계획 수립
• 도서지역 도선요금 단일요금제 적용(1,000원)(2022년 주요업무계획)
- 사업비: 540백만원
- 주요내용: 6개 도서지역에 도선요금 단일요금제 적용(시산도, 화도, 득량도, 애도, 연홍도, 죽도)
- 추진현황
· 고흥군 천원도선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8. 12. 27.
· 도서지역 도선 단일요금제(편도 1,000원) 시행: ’19. 1. 등
• 최근 5년간 적자도선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table>
<tr><th>회계연도</th><th>통계목</th><th>예산액</th><th>비고</th></tr>
<tr><td rowspan="2">2021</td><td rowspan="2">도서지방 적자도선 지원</td><td rowspan="2">540,000</td><td>보조금 지원 56,000,000원*6척</td></tr>
<tr><td>선체 보수비 지원 34,000,000원*6척</td></tr>
<tr><td rowspan="2">2022</td><td rowspan="2">도서지방 적자도선 지원</td><td rowspan="2">540,000</td><td>보조금 지원 56,000,000원*6척</td></tr>
<tr><td>선체 보수비 지원 34,000,000원*6척</td></tr>
<tr><td rowspan="2">2023</td><td rowspan="2">도서지방 적자도선 지원</td><td rowspan="2">700,000</td><td>보조금 지원 83,333,300원*6척</td></tr>
<tr><td>선체 보수비 지원 33,333,300원*6척</td></tr>
<tr><td>2024</td><td>섬 지역 적자도선 지원</td><td>800,000</td><td>보조금 지원(6척)</td></tr>
<tr><td>2025</td><td>섬 지역 적자도선 지원</td><td>800,000</td><td>보조금 지원(6척)</td></tr>
</table></td></tr>
<tr><td>실효성</td><td colspan="2">□ 성과
• ‘20년 6개 도서 적자도선 지원
- 사업비: 468백만원
- 지원내용: 유류비, 유류운반비, 유류공급용역비, 도선수리비, 인건비 등</td></tr>
</table>

	• ’21년 6개 도서 적자도선 지원 - 사업비: 690백만원 - 지원내용; 유류비, 유류운반비, 유류공급용역비, 도선수리비, 인건비 등 □ **언론보도** • 고흥군 도선요금 1000원 지속 추진...지난해 16만명 이용(뉴스핌, 2022. 2. 28.) - 도서주민들의 교통수단인 도선에 대해 1,000원 단일요금제 지속 시행 - 보도일 기준, 도선 6척 운항(득량5호, 시산페리호, 죽도호, 연흥호, 애도호, 화도호) - 2021년 한 해 도선 이용 객수는 16만명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22800051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 필요한 ---------- ---------.	용어정비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29]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table>
<tr><th colspan="5">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 colspan="2">소관부서</td><td>재난안전과</td><td>시행일</td><td>2021. 12. 06.</td></tr>
<tr><td colspan="2">조례 구분</td><td colspan="3">■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colspan="2" rowspan="2">관계 법령</td><td>법령명</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해당 없음</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주요
내용</td><td colspan="4">•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군수의 책무 ④지원 대상 ⑤지원 내용 ⑥지원 제외 ⑦지급신청 등 ⑧지급결정 ⑨처리비용 환수 ⑩시행규칙</td></tr>
<tr><td colspan="4">• 목적
-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고흥군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지원대상
- 지원 대상자는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지원 내용
- 전 소: 500만원
- 반 소: 300만원
- 부분소: 200만원</td></tr>
<tr><td rowspan="5">총괄평가</td><td rowspan="2">종합의견</td><td colspan="3">• 개정 예정</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2">□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충족</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colspan="2">• 이행</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2">• 충족</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th></tr>
<tr><th>분석항목</th><th>세부항목</th><th>척도, 의견 및 자료</th></tr>
<tr><td rowspan="4">조례의
실효성</td><td>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 colspan="2">•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추진 계획(안)</td></tr>
</table>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1. 10. 20. ~ 10. 26.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4년 지원현황: 9개소, 27,585천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전소 500만원 • 반소 300만원 • 부분소 200만원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지원 제외 항목 -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를 -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로 금년 개정 예정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충족	
실현성	□ **2023년 주요업무계획** •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신규) - 사업비: 20백만원 - 지원대상: 건축물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전군민 ※지원제외: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 폐가 등 건축물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 지원내용: 전소 500만원, 반소 300만원, 부분소 200만원 / 지원금 미만일 경우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 □ **이행** •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추진 계획(안)을 수립 • 지원 규모(제5조) - 전소: 500만원 - 반소: 300만원 - 부분소: 200만원 • 2025년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0,000천원을 편성하였음(본예산 기준)	
실효성	□ **성과** • '24년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 9개소, 27,585천원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 소관부서에 의해 개정 예정 - 제6조(지원제외)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원칙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은 행정적 정당성이 부족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농촌 군 단위 지역에는 장기간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무허가 주택이 여전히 존재하며 주민등록도 되어 있고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음

- 이들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면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이 재난 상황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음
- 화재피해 지원은 건축법적 적법성보다 실제 거주 여부와 생활안정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 단서조항 신설을 통해 세금을 내고 있는 무허가 주택 소유자에 대해 최소한 형평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음

• 신구대조문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 제외)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단서 신설>	4. ---------- ----------.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단서조항 추가

[30] 고흥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조례

<table>
<tr><th colspan="5">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소관부서</td><td colspan="2">경제산업과</td><td>시행일</td><td>2019. 12. 23.</td></tr>
<tr><td>조례 구분</td><td colspan="4">■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rowspan="2">관계 법령</td><td colspan="2">법령명</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td><td colspan="2">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td></tr>
<tr><td rowspan="2">주요 내용</td><td colspan="4">•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적용범위 ④군수의 책무 ⑤계획수립 ⑥투광기의 설치 등 ⑦협력체계 구축 ⑧예산확보</td></tr>
<tr><td colspan="4">• 목적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계획수립
- 군수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 시설물 설치·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함
- 군수는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 가능
• 투광기의 설치 등
- 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 가능
-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해야 함
-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 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td></tr>
<tr><td rowspan="4">총괄평가</td><td rowspan="2">종합의견</td><td colspan="3">• 특이 사항 없음</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2">□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일반정비</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colspan="2">• 이행</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2">• 충족</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th></tr>
<tr><th>분석항목</th><th>세부항목</th><th>척도, 의견 및 자료</th></tr>
<tr><td rowspan="2">조례의 실효성</td><td>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계획 미수립 사유 - 매년 도에서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설치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에서 확정한 사업량에 따른 보조사업을 실시(건설과)하고 있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기관 교류 또는 협력체계 구축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9. 11. 06. ~ 11. 25.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해당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띄어쓰기 - 제6조제3항: 최소화 하고 → 최소화하고 - 제7조: 구축 할 수 있다 → 구축할 수 있다	
실현성	□ **이행(소관부서 답변)** • 매년 도에서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설치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도에서 확정한 사업량에 따른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음(건설과) • 기관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하고 있음 • 예산 편성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타워 설치(2개소) 100,000천원 편성 -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에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타워 설치 50,000천원 편성	
실효성	• 충족 -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음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6조(투광기의 설치 등) ①·②(생 략)	제6조(투광기의 설치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	③ ---------- ----------	띄어쓰기

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 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 최소화하고 ---------- ----------.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 ---------- ---------- ---------- ---------- 구축할 ------.	띄어쓰기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31] 고흥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table>
<tr><th colspan="4">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소관부서</td><td>환경산림과</td><td>시행일</td><td>2016. 03. 24.</td></tr>
<tr><td>조례 구분</td><td colspan="3">■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rowspan="2">관계 법령</td><td>법령명</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해당 없음</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주요
내용</td><td colspan="3">•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적용범위 ④사전협의 ⑤책임과 의무 ⑥나무은행 수목기증 ⑦수목의 범위 ⑧수목조사 및 접수 ⑨이식수목 선정기준 ⑩수목관리 ⑪활용 ⑫사업비 지원</td></tr>
<tr><td colspan="3">• 목적
- 숲가꾸기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입목의 효율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사전협의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해야 함
1. 숲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 시
2. 산지 또는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지상에 수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3.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수목관리
-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해야 함
• 활용
- 군수는 수집된 입목에 대하여 매년 수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해야 함</td></tr>
<tr><td rowspan="5">총괄평가</td><td rowspan="2">종합의견</td><td colspan="2">• 특이 사항 없음</td></tr>
<tr><td>검토결과</td><td>□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일반정비</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이행</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충족</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th></tr>
<tr><th>분석항목</th><th>세부항목</th><th>척도, 의견 및 자료</th></tr>
<tr><td rowspan="2">조례의
실효성</td><td>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5. 11. 30. ~ 12. 20.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table>
<tr><td rowspan="3"></td><td>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종합 의견</td><td colspan="2">• 행정기관에 더 큰 재량권을 부여하여 나무은행을 탄력있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의 제정이 필요</td></tr>
<tr><td colspan="3">3. 입법평가 결과</td></tr>
<tr><td>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일반정비
• 어법
- 제2조제2호: 인·허가를 득하여 → 인·허가를 얻어
• 용어정비
- 제8조: 의거 → 의하여
• 소관부서에서는 위임조례로 분류하였으나 상위법령에 직접적인 위임 문구가 없어 자치조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도 자치조례로 분류하고 있음</td></tr>
<tr><td>실현성</td><td colspan="2">□ 2022년 주요 업무 계획
• 군민과 함께하는 「숲속의 고흥」 만들기
- 사업명: 나무은행 운영
- 사업비: 50백만원
- 사업량: 교목 300여주 이식 및 나무은행 관리
- 사업내용: 조경적 가치있는 수목활용 등

□ 최근 5년간 예산 현황(사업명: 나무은행 운영 관리, 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table><tr><td>연도</td><td>2025</td><td>2024</td><td>2023</td><td>2022</td><td>2021</td></tr><tr><td>예산액</td><td>40,000</td><td>40,000</td><td>40,000</td><td>40,000</td><td>110,000</td></tr></table></td></tr>
<tr><td>실효성</td><td colspan="2">□ 성과
•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음

□ 타 지자체 현황
• ‘25. 7. 기준, 23개 지자체에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음

□ 언론보도
• 고흥군, 나무그늘 아래 주민 쉼터 조성 ‘큰 호응’(신아일보, 2023. 8. 15.)</td></tr>
</table>

	- 주민 쉼그늘 조성사업을 통해 상반기에 12개소 쉼그늘 설치 - 2024년도에는 고흥군 나무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경수를 활용하여 더 많은 곳에 쉼 그늘을 설치할 예정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5773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시행자”라 함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2. ---------- ---------- ---------- 취득하여 ----------.	어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수목조사 및 접수) ① 군수는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수목조사 및 접수) ① -- ---------- ---------- ---------- --- 의하여 ---------- ----------.	용어정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32] 고흥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table>
<tr><th colspan="5">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 colspan="2">소관부서</td><td>환경산림과</td><td>시행일</td><td>2019. 04. 02.</td></tr>
<tr><td colspan="2">조례 구분</td><td colspan="3">■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colspan="2" rowspan="2">관계 법령</td><td>법령명</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td><td colspan="2">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td></tr>
<tr><td rowspan="2">주요 내용</td><td colspan="4">•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군수의 책무 ④사업자의 책무 ⑤군민의 책무 ⑥기본계획 수립·시행 ⑦사업비의 지원 ⑧정보제공 ⑨관계부서의 협조 ⑩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⑪시행규칙</td></tr>
<tr><td colspan="4">• 목적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감소시킴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 기본계획 수립·시행
-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함
• 관계부서의 협조
-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td></tr>
<tr><td rowspan="5">총괄평가</td><td rowspan="2">종합의견</td><td colspan="3">• 개정 권고
-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개정, 임의규정으로 완화</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2">□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일반정비</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colspan="2">• 미이행</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2">• 충족</td></tr>
<tr><th colspan="5">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th></tr>
<tr><td>분석항목</td><td colspan="2">세부항목</td><td colspan="2">척도, 의견 및 자료</td></tr>
<tr><td rowspan="4">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2">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td><td colspan="2">□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 colspan="4">•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는 조례 없음</td></tr>
<tr><td colspan="2">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td><td colspan="2">□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 colspan="4">• 유사 조례명
- 고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td></tr>
</table>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계획 미수립 사유 - 관련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중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교육이나 홍보, 기타(장비 운영 등)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9. 02. 07. ~ 02. 26. (20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조항은 「고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및 관련법에 따라 수립 및 시행되는 기본계획이 충분한 바 삭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띄어쓰기 - 제3조제1항: 발굴·시행 하여야 한다 →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제2항: 최소화 하기 위하여 →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현성	□ **2025년 주요업무계획**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 - 사업내용: 3개분야 1,214백만원 - 노후경유차(4·5등급) 및 건설기계 폐차비 지원: 334대 / 854백만원 -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9대 / 30백만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20대 / 330백만원 □ **이행** •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미수립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2025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 (사업 내용)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고흥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4·5등급 노후 경유차(정상 운행 가능, 차량 소유자 고흥군민) - (세부 내용) 조기폐차: 최대 800만원 지원(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지급) 저감장치: 장치 비용의 최대 90% 지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기 환경 개선(2023 주요업무계획)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및 확대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정보 제공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을 고흥군청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정보를 제공 및 전달하고 있음

- '23년 2회 공지

• 본 조례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

• 5년간 미세먼지 저감 등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세부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1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및 운영	58,592	4개소 설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736,960	-
2022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및 운영	32,528	2개소 설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1,145,060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50대
			DPF 부착 6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4대
2023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및 운영	68,354	5개소 설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1,892,290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500대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0대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5대
			DPF 부착 23대
			5등급 건설기계 엔진교체 10대
2024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및 운영	35,206	2개소 설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1,121,610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150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200대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5대
			DPF 부착 35대
2025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및 운영	24,524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1,162,988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186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142대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10대
			DPF 부착 9대

□ **개정 제안**

•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계획 수립은 미이행

- 「고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시행하고 있어,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 2025. 2.에 발표된 「2024 고흥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미세먼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는 못함 -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나, 유사한 내용의 기본계획이 남발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대두될 수 있음 -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조항의 삭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경우 조례의 체계가 무너지게 되어 현재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고흥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
실효성	• 2023-2024 사업 추진 성과

구분	세부 사업	성과
2023	조기폐차 경유자동차(4·5등급, 건설기계) 지원 사업	508대
	매연저감장치(DPF) 지원 사업	46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21대
	미세먼지 신호등 운영	15개소
2024	조기폐차 경유자동차(4·5등급, 건설기계) 지원 사업	456대
	매연저감장치(DPF) 지원 사업	28대
	미세먼지 신호등 운영	19개소

• '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 지원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까지 확대

□ **언론보도**

• 고흥군, 노후 경유차 폐차 시 최대 800만원 지원(고흥군청 보도자료, 2025. 7. 15.)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4777&boardId=BD_00025&pageId=www102

• 고흥군, 대기질 정보 한눈에 볼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고흥군청 보도자료, 2023. 2. 27.)

- 도덕, 풍양면에 추가 설치

-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좋음(파랑), 보통(초록), 나쁨(노랑), 매우 나쁨(빨강)의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간 안내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0821&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 하여	제3조(군수의 책무) ① ------ ---------- ---------- ---------- ---------- 발굴·시행하	띄어쓰기

야 한다.	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① (생 략)	제10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최소화하기 ---------- ---------.	띄어쓰기

2. 정책 제안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 ---------- ---------- ----------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수립하는 「고흥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변경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3] 고흥군 환경 기본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환경산림과	시행일	2015. 11. 06.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기본이념 ③정의 ④군의 책무 ⑤사업자의 책무 ⑥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⑦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⑧자연환경의 보전 ⑨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⑩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⑪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⑫해양오염방지 ⑬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⑭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등 ⑮환경교육 및 홍보 ⑯환경조사 및 연구실시 등 ⑰의회보고 ⑱시행규칙
	• 목적 - 환경보전에 관한 고흥군의 기본이념과 군과 군민·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함 •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환경단체 지원 보조금(~ '24까지)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회의 개최 실적 - 2024년: 1건 • 회의록 보존 여부: '24년 서면 개최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본 조례는 환경보전에 대한 고흥군의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의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관리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함 • 상위법(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위임조례로, 법적 의무사항인 환경계획 수립,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근거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용어정비

- 제4조제7항, 제7조제2항제5호, 제12조제4호,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제3호: 기타 → 그 밖의
- 제8조제3항, 제9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호, 제15조: 강구 → 마련
- 제10조, 제18조: 관하여 → 생략

• 띄어쓰기

- 제14조제5항: 둘수 있다 → 둘 수 있다
- 제16조제3항: 노력 하여야 한다 → 노력하여야 한다

실현성

□ **미이행**

• 고흥군 환경계획 수립 용역 착수(24. 3.)

- 환경 관련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
- 국가 환경종합계획에 맞춰 2024-2040 동안 적용되는 총괄계획
- 2018-2022 5개년 환경보전계획 수립했었음

• 환경시설 및 행정처분 현황을 정리하여 고흥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음

• 환경단체 지원 보조금(-'24까지)

• 환경보전자문위원회

- '24년 1회 회의 개최

□ **공정성**

• 환경보전자문위원회

- 당연직 7명(남7), 위촉직 8명(남8)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 8명 중, 전원이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평가 - 제14조에서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고려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실효성	□ **언론보도** • 고흥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캠페인 전개(고흥군청 보도자료, 2024. 6. 5.) - 제29회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 관련 단체 직원 30여 명이 참석하여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 캠페인 추진 - 일회용품 줄이기 광고지 배부 등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2903&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8조(자연환경의 보전) ①·② (생 략)	제8조(자연환경의 보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 마련---------.	용어정비
제9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 마련----------.	용어정비
제11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 마련---------.	용어정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해양오염방지) 군 관할 해역에 대하여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 등 폐기물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맑고 깨끗한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해양오염방지)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군은 오염물질 유입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시설 설치와 퇴적오염물질준설, 해안청소 등 해역수질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 ---------- ---------- ---------- ---------- ---------- --- 마련---------.	용어정비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5조(환경교육 및 홍보) 군은 교육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교육 및 홍보) ---- ---------- ---------- ---------- ---------- ---------

[34] 고흥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의회사무과	시행일	2016. 07. 25.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해당 없음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위촉 ③직무 ④위촉기간 ⑤해촉 ⑥수당 등 ⑦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 목적 -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고문을 두고 입법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위촉 - 고흥군의회 의장은 입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1명의 입법고문 위촉 가능 • 고문의 직무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자문 -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운영 관련 사항의 자문 - 그 밖에 의장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 • 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 의장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함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해당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용어정비

- 제1조: 관하여 → 생략

- 제2조: 교부한다 → 발급한다

• 띄어쓰기

- 제4조: 연임 할 수 있다 → 연임할 수 있다

실현성

□ **이행**

• 5년간 예산 편성 현황(사업명: 의회역량 강화, 본예산 기준)

- 의회 입법고문 선임수당

(단위: 천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액	2,400	2,400	2,400	2,400	2,400

실효성

□ **성과**

• 입법고문을 위촉하여 활동

• ‘25. 2. 제9대 제33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고흥군의회 입법고문 추천의 건: 2025. 3. 1. ~ 2027. 2. 28 활동할 입법고문 위촉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고문을 두고 입법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필요한 ---------- ----------.	용어정비

제2조(위촉) ① (생 략)	제2조(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 발급한다.	용어정비
제4조(위촉기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위촉기간) ---------- 연임할 ---------.	띄어쓰기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35] 고흥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기획실	시행일	2020. 09. 18.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해당 없음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용어의 정의 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④종합계획의 수립 ⑤공모사업의 추진 ⑥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⑦의회 보고 ⑧인센티브 ⑨시행규칙		
	• 목적 -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 종합계획의 수립 -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모사업의 추진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기본 또는 시행계획명 -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 계획 미수립 사유	

	- 2026년 수립 예정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의회 보고)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0. 07. 08. ~ 07. 28.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해당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띄어쓰기 - 제1조: 규정함으로써공모사업을 →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 용어정비 - 제8조: 인센티브 → 혜택(특전)	
실현성	□ **미이행** •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이 현재 미수립 상태로, 2026년 수립 예정 • 제7조에 따른 공모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있음 □ **2024년 주요 업무계획** • 고흥 맞춤형 공모사업 검증 추진단 운영(신규) - 대상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 중 군비 10억 원 이상 소요 사업 - 운영방법: 정기회의(3월, 6월, 9월, 12월), 수시회의(안건 발생 시) - 구성인원: 부군수,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인구정책실장, 여성가족과장, 재난안전과장, 건설과장 - 주요기능: 우리군 여건과 수요에 맞는 공모사업의 선별적 대응 등	
실효성	□ **성과** • 조례에 따라 공모사업을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 있음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조(목적) ---------- ----------	띄어쓰기

을 규정함으로써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	
제8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인센티브) ---------- ---------- ---------- ---------- ----- 혜택을-------.	용어정비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36] 고흥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기획실		시행일	2014. 10. 28.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군수의 책무 ④공직자의 청렴 의무 ⑤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⑥공직자 부패신고 의무 ⑦부패행위 신고 방법 ⑧부패행위 조사 및 처리 ⑨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⑩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고발 ⑪청렴해피콜 운영 ⑫공직자 청렴도 평가 ⑬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⑭청렴포상 운영 ⑮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 ⑯청렴교육 및 홍보 ⑰시행규칙 등			
	• 목적 - 고흥군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을 실현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 공직자 부패신고 의무 -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흥군 감사관에게 신고해야 함 • 공직자 청렴도 평가 • 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매년 수립)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4. 09. 18. ~ 10. 08. (20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해당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오탈자 - 제2조제3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띄어쓰기 - 제9조제2항: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현성	□ **이행** • 2025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 수립(소관부서) -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2025년 주요업무계획** • 청렴진단 및 맞춤형 청렴컨설팅 추진(신규) - 사업비: 16백만원 - 사업내용 · 청렴 CBTI* 진단 결과로 개인별·조직별 분석을 통해 청렴 추진방향 제시 · 70여 문항을 통해 지식, 태도, 업무, 부서 4대 요인에 대해 16가지 유형 도출 *CBTI(Clean Balance Type Indicator): 청렴감수성 진단으로 공직자의 청렴과 관련된 외부자극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감수성을 측정하는 진단도구 • 군수·부서장·MZ세대가 함께하는 '청렴 페스타' - 추진시기: '25. 3. ~ 9.(연1회) - 소요예산: 15백만원 - 사업내용: 부서장과 신규자의 청렴 데이트, 신입에게 듣는 청렴 리버스 멘토링 등 • 예방중심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감사행정 구현 中 - 사건·사고 예방활동 강화 · 부패행위 사전 차단하여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교육 실시	

실효성

□ **성과**

• 고흥군 공직자 2022년 부패방지 의무교육 이수

기관 전체 임·직원			대면교육 대상						
			기관장	고위공직자			신규승진자		
대상인원	이수자	이수율	참석여부	대상인원	이수자	이수율	대상인원	이수자	이수율
797명	676명	84.8%	o	4명	4명	100%	265명	243명	91.6%

• 2023년 사업 추진 성과

- 2023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역대 최고 성적 종합 2등급 달성
- 공직자 내부 청렴도 조사(400명), 직원 청렴교육 및 캠페인(17회)
- 군민 대상 청렴DAY 및 청렴교육(20회)

• 2024년 사업 추진 성과

- 청렴결의대회 및 청렴 서한문 발송, 민원 현장 중심 컨설팅 실시
- 공직자 내부 청렴도 조사(200명), 외부 민원 청렴도 조사(200명)
- 공직자 반부패 청렴교육(3회) 및 캠페인(3회)
- 군민 대상 청렴캠페인(5회) 및 청렴교육(2회)

□ **언론보도**

• 고흥군, 연극과 강의가 어우러진 '청렴 콘서트' 개최(고흥군청 보도자료, 2025. 5. 15.)

- 전 공직자와 함께하는 '2025 청렴 콘서트' 개최
-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의 사례를 상황극으로 구성한 청렴 연극 이후 청렴 특강 진행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4461&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3.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명 오탈자

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4호----------.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9조(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① (생 략)	제9조(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부패행위 신고를 받은 감사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부패행위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 ---------- ---------- ---------- - 공개하여서----------.	띄어쓰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37] 고흥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행정과	시행일	2020. 04. 06.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지방자치법	제164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적용범위 ④자매결연 등의 대상 ⑤자매결연 등의 제의 ⑥사전교류 ⑦교류의 확대 ⑧의회 동의 ⑨자매결연 등의 체결 ⑩자매결연 등의 취소 ⑪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⑫교류협력 사업의 위탁 등 ⑬사후관리 ⑭시행규칙		
	• 목적 - 고흥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및 우호교류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자매결연 등의 제의 -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 산업, 지역특성 등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질적인 이익 -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2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조례 제8조의 경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고흥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중 국외 나라나 도시와의 교류의 경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내 도시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음. • 조례는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상위법에 해당 사항이 없는 규정을 조례로 의무화하면, 지방의회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장되고 행정 추진에 탄력성 저하가 우려됨. • 이에 조례 제8조의 일부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용어정비 - 제7조: 제반사항 → 모든 사항 • 용어정비, 띄어쓰기 - 제13조: 제반 기록물,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 모든 기록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실현성	• 이행 • 국내협력도시 - 경남 창원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인천시 남동구, 경기도 광주시, 울산시 동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협정 내용: 행정, 경제, 문화, 체육, 복지, 환경 등 상호 교류 증진 및 일부 특산물 직거래 판매 • 우호교류도시 - 전남 곡성군, 경기도 안산시, 서울시 중랑구, 경기도 안양시 - 주요 교류분야: 지역 공동발전, 행정, 경제, 문화관광 등 상생협력 • 국외협력도시 - 일본-사가현 가시마시, 중국-광서성 동흥시, 중국-감숙성 주천시 등 - 협정 내용: 행정, 문화, 관광 경제 등 상호교류 증진 • 대외협력 교류지원 강화(2024 주요업무계획) - 타 지자체와의 자매우호 결연 확대와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증진 - 농·특산품 판매, 문화, 관광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교류 공감대 강화 □ **개정 제안 검토** • 제8조(의회 동의) 개정 필요(소관부서) - 제8조에 의하면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고흥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외 나라나 도시와의 교류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내 도시와의 교류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 과도한 권한 확장 등이 우려됨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0호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내 도시와의 교류는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의회의 동의가 과도하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려움.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회의 의결이 아니라 동의이므로 지방자치법 위반이 아니고, 과도한 단체장 권한의 제한이라고 볼 수 없음 - 의결은 의회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나 동의는 집행기관의 행위가 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유효해지는 것으로 둘 다 표결 절차를 거치지만, 권한 주체, 발의권, 결정구조에서 차이가 있음 - 또한 국내 도시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이 단체장의 정책수행에 결정적인 사안이 아니므로 의회의 동의를 규정한다고 해서 문제 될 것 없음
실효성	□ **성과** • 2023년 주요 성과 - 강원도 춘천시 자매결연('23. 2. 28.) - 서울 중랑구 우호교류('23. 5. 15.) • 2024년 주요 성과 - 타 시군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 체결: 경기도 안양시('24. 3. 27.) · 안양시 민간단체(안양생활음악협회) 소록도 음악공연 봉사활동: 44명 · 안양시민의 날 살거리 장터 참여: 관내 2개업체 • 청소년 문화교류 - '24년 전라남도 고흥군 ↔ 경기도 광주시 · 시군별 20명씩, 총 40명 참여 - '25년 전라남도 고흥군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시군별 20명씩, 총 40명 참여 •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교차기부 - '25년 전라남도 고흥군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양 도시 직원 40여 명 참여 □ **언론보도** • 고흥군, 서울 노원구에서 귀농어 귀촌 유치 나서(고흥군청 보도자료, 2024. 10. 21.) - 서울 노원구 중계근린공원,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도시민 대상 찾아가는 귀농어 귀촌 홍보부스' 운영 - 21개의 고흥군 농수산물 판매 업체와 홍보부스가 함께 운영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3508&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7조(교류의 확대) 군수는 양 도시간의 교류 확대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여건을 비교・견학하도록 주민, 학계, 산업계, 사회단체 등을 상호 교환・초청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7조(교류의 확대) ---------- ---------- 모든 사항---------- ---------- ---------- ---------- ---------- ---------- ---------.	용어정비
제13조(사후관리)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4.6.) ① (생략)	제13조(사후관리)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4.6.)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과 관련된 제반 기록물 및 관계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② ---------- ---- 모든 ---------- ---------- ---------- ---------- -- 영구 보존하여야 ---.	용어정비 띄어쓰기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38] 고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table>
<tr><th colspan="5">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소관부서</td><td colspan="2">기획실</td><td>시행일</td><td>2016. 07. 25.</td></tr>
<tr><td>조례 구분</td><td colspan="4">■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rowspan="2">관계 법령</td><td colspan="2">법령명</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공익신고자 보호법</td><td colspan="2">제3조 국가 등의 책무</td></tr>
<tr><td rowspan="2">주요
내용</td><td colspan="4">•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고흥군의 책무 ④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⑤공익신고의 처리 ⑥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⑦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⑧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⑩기능 ⑪우수기업 선정 ⑫우수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 등 ⑬환경조성사업 선정 ⑭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⑮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⑯민간협력 ⑰표창의 수여 ⑱민원사무처리의 특례 ⑲시행규칙</td></tr>
<tr><td colspan="4">• 목적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고흥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
•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 군수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함
•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 군수는 감사업무 담당자를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함
-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
• 민간협력
-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의 조치 강구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td></tr>
<tr><td rowspan="5">총괄평가</td><td rowspan="2">종합의견</td><td colspan="3">•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변경</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2">□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일반정비</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colspan="2">• 미이행</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2">• 미충족</td></tr>
<tr><th colspan="5">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th></tr>
<tr><td>분석항목</td><td colspan="3">세부항목</td><td>척도, 의견 및 자료</td></tr>
</table>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센터 또는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미이행 사유 - 인력 자원 한계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해당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용어정비, 오탈자 - 제2조제7호: 교부하는 자금, 제정상의 → 지급하는 자금, 재정상의 • 용어정비 - 제7조제2항: 기하여 → 따라 - 제10조제3호, 제10조제7호: 네트워크 구축, 부의하는 사항 → 연결망 구축,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제5호: 인센티브 → 혜택(특전) - 제16조: 강구하여야 한다 → 마련하여야 한다 • 소관부서에서는 위임조례로 분류하였으나 상위법령에 직접적인 위임 문구가 없어 자치조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도 자치조례로 분류하고 있음	
실현성	□ **미이행** • 공익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는 고흥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음 • 현재 공익 신고를 할 경우 국민권익위에서 결정하여 보상금을 지불하고 지자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라 군에서 직접 처리하지는 않고 있음 • 현실을 반영하여 제4조 공익센터의 설치 운영 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필요 있음 • 2025년 본예산에 공익신고 지방자치단체 상환금으로 10,000원 편성	
실효성	□ **성과** • 현재 군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조례는 유지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제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7. ---------- ---------- ---------- ---------- ---------- ------ 재정상--------- ---------- 지급하는 --- --------.	오탈자 용어정비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생 략)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 ---------- ---------- ---------- ----.	용어정비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기능)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 ---------- ---------- ----- 연결망 --------- ----------	용어정비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	7. ---------- ---------- ------- 회의에 부치는 -- ---------- -	용어정비
제11조(우수기업 선정) ① 고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우수기업 선정) ①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5. ---------- 혜택---	용어정비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민간협력)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민간협력) ---------- ---------- ---------- ---------- ---------- 마련-- --------.	용어정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2. 정책 제안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 ---------- ----------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현실을 반영하여 임의규정으로 변경

[39 고흥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행정과		시행일	2009. 04. 10.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해당 없음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군민의 날 ③행사 ④행사 및 비용지원 ⑤시행규칙			
	• 목적 - 고흥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의 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 • 군민의 날 - 고흥군민의 날은 11월 1일로 함 • 행사 및 비용지원 - 행사는 고흥군이 주최하고, 문화예술·체육행사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 - 군수는 행사 등을 주관하는 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관련 비용을 지원 가능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제50회 고흥군민의 날 추진계획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기타(군민의 날 행사 추진)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4년 530백만원(행사추진위원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제50회 고흥군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해당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용어정비 - 제1조: 고취시켜 → 북돋아 - 제3조제2항: 옥내행사 → 건물 안 행사	
실현성	□ **이행** • 제50회 군민의 날 추진계획 수립 • 고흥군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재정 지원 - ‘24년 530백만원 □ **공정성** • 제50회 고흥군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 - 위촉직 위원 21명(남16, 여5)으로 구성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평가	
실효성	□ **성과** • 매년 11월 1일을 군민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실효성 있음 • ‘24년 ’제50회 군민의 날 행사‘ 진행 - ’24. 11. 1. 진행 - 공연위주의 기존 행사 방식 탈피, 군민의 자부심과 희망을 고취시키는 행사 추진 - 고흥의 3대 미래 전략인 우주,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팜을 프로그램에 담음 - 군민의 상과 영광의 감사패 수상 □ **언론보도** • 고흥군, ’군민의 상‘ 후보자 접수…9월 5일까지(아시아경제, 2025. 8. 1.) - 2025년 11월 1일 ’제51회 고흥군민의 날‘을 맞아 고흥군 최고의 영예인 ’고흥군민의 상‘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 - 최종 수상자는 10월 중 개최 예정인 군민의 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제51회 고흥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 예정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80112431950307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의 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북돋아 ----------	용어정비
제3조(행사) ① (생 략)	제3조(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군민의날은 옥내행사인 기념식과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동 문화·체육행사는 격년제로 한다.	② -------- 건물 안 행사----------	용어정비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40]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기획실	시행일	2021. 09. 24.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기능 ③기존규제의 심사 ④구성 ⑤위원장의 직무 ⑥회의 ⑦간사 ⑧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⑨수당 등 ⑩시행규칙		
	• 목적 -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능 -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총괄평가	종합의견	• 위촉직 위원 구성 변경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위촉직 위원 구성에 성별균형 조항 추가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센터 또는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1. 08. 09. ~ 08. 30. (21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table>
<tr><td rowspan="6"></td><td>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 colspan="2">• 위원회 개최 건수
- 2022년: -건
- 2023년: 1건
- 2024년: 3건
• 회의록 보존 여부: 부</td></tr>
<tr><td>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 colspan="2">• 규제 공모전 및 등록규제일제정비 등 심의 필요</td></tr>
<tr><td>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종합 의견</td><td colspan="2">• 규제개혁위원회 존치 필요</td></tr>
<tr><td colspan="3">3. 입법평가 결과</td></tr>
<tr><td>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일반정비
– 용어정비: 제3조제3항, ... 풍부한 자 중에서 → 풍부한 사람 중에서
– 문장정비: 제8조, ... 예산의 범위안에서 → 예산의 범위에서</td></tr>
<tr><td>실현성</td><td colspan="2">□ 2025년 주요업무계획
• 오만가지 목소리를 담은 규제 발굴과 개선
- 규제공모전
· 상반기 시행, 불합리한 모든 규제 대상
· 우수 제안자 평가 후 시상
· 공모접수 → 부서검토 → 위원회 최종심사 → 결과발표
- 규제신고센터 운영
· 업종별 간담회 활용 또는 개별 방문(사업체, 군민)
· 현장방문단 구성
·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 고흥군 규제신문고 운영

□ 이행
•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 공모전 및 등록규제일제정비 등을 심의</td></tr>
</table>

	- ‘23년 1건, ’24년 3건 회의 개최하여 운영 • 고흥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위한 5년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사업	예산액	비고
2021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2,100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당	2,520	6명*6회
2022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800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당	1,680	6명*4회
2023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800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당	1,680	6명*4회
2024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800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당	1,680	6명*4회
2025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자료 제작	600	15부*4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당	1,400	5명*4회

	□ **공정성** •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 당연직 4명(남4), 위촉직 5명(남3, 여2)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 5명 중 남성 3명, 여성 2명으로 구성되어 성별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제3조에서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고려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본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성별균형 조항의 추가가 필요함
실효성	□ **성과** • 공모전 심의 - ‘24년 고흥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 ’25년 고흥군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 • 규제 공모전 및 등록규제일제정비 등 심의를 하고 있어 실효성 있음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3조(구성) ① ~ ② (생 략)	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 -- 사람 ---------- ---사람과---------- ----------...	용어정비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 ---------- ----------범위에서--- ----------.	문장점비

2. 위촉직 위원 구성에 성별균형 문구 추가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3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성별균형조항 신설
④·⑤ (생 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조항이동

[41] 고흥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기획실	시행일	2014. 05. 01.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해당 없음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적용대상 ④헌장의 기본원칙 ⑤헌장의 내용 ⑥헌장의 구성 ⑦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⑧헌장의 실천 ⑨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⑩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⑪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⑫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 목적 -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고흥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고흥군과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 • 이행실태 및 평가 및 환류 - 군수는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 군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해야 함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기타(규제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4. 03. 24. ~ 04. 14. (21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해당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띄어쓰기 - 전체: 규제신고고객, 규제 신고고객 → 규제 신고 고객 - 제7조제2항제1호: 헌장초안 → 헌장 초안 - 제9조제2항 및 제3항: 규제신고고객이 → 규제 신고고객이 • 용어정비, 띄어쓰기 - 제2조: 애로사항 → 고충 해소 • 용어정비 - 제10조제2항 및 3항, 제11조제2항: 옴부즈만 → 옴부즈맨 • 오탈자 - 제10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3항 →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실현성	□ **이행** • 규제신고고객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실효성	□ **성과** • 고흥군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우수 기관상을 수상(보도자료, 2024. 12. 27.) - 고흥군은 이번 평가에서 군 대표 누리집 내에 '규제 신문고' 접근방식을 개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 공모전, 1부서·읍면 1규제 발굴 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하려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 그 결과 불합리한 규제 46건을 발굴하고 이중 개선이 시급한 23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30% 이상 수용되는 성과를 거둠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3821&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고흥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	제1조(목적) ---------- ---------- ----- 신고 고객 보호·서비	띄어쓰기

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고흥군과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 ---------- ---------- 신고 고객들----------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 ---- 신고 고객 ---------- ---------- ---------- ---------- ---------- ---------- ---------- ---------- ---------- ----------.	띄어쓰기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 신고 고객 ---------- 고충 해소 ---------- ---------- ---------- ---.	띄어쓰기 용어정비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3. --- 신고 고객 만족도”--- ----------	띄어쓰기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신고 고객에게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1. --- 신고 고객 ----------	띄어쓰기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2. --- 신고 고객 ----------	띄어쓰기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3. --- 신고 고객 ----------	띄어쓰기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4. --- 신고 고객 ----------	띄어쓰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헌장의 구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2. --- 신고 고객----------	띄어쓰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4. --- 신고 고객 ----------	띄어쓰기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5. --- 신고 고객 ----------	띄어쓰기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6. --- 신고 고객 --------	띄어쓰기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생 략)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 ----------.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1. ---------- 헌장초안 ----------	띄어쓰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생 략)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규제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 고객----------.	띄어쓰기
③ 군수는 규제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 규제 신고 고객----------.	띄어쓰기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군수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 신고 고객들----------.	띄어쓰기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 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 신고 고객 ---------- 옴부즈맨----------.	띄어쓰기 용어정비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관련 민원처리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옴부즈맨----------.	용어정비

③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관련 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및 보상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 ---------- ------- 규제 신고 ------- ---------- ---------- ---------- ---------- ----------.	조항 번호 수정 띄어쓰기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군수는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 ---------- 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조사---------- ----------.	띄어쓰기
② 군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② ---------- 옴부즈맨에게 규제 신고 고객 -------- ---------- ---------.	용어정비 띄어쓰기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42] 고흥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기획실	시행일	2020. 04. 06.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지급대상 ④신고기한 ⑤부조리신고 심사결정 ⑥신고방법 ⑦신고자의 보호 ⑧포상금의 지급 ⑨포상금의 지급 제외 ⑩환수 ⑪시행규칙		
	• 목적 -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지급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의무를 불이행하여 군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 신고기한 - 부조리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하나, 수뢰액 3,000만 원 이상의 중대 비위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의 기간까지 가능 • 부조리신고 심사결정 -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함 - 지급대상 및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계획 미수립 사유 - 부조리 신고 발생 시 필요한 심사 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 계획 불필요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0. 01. 15. ~ 02. 11. (20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특이 사항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띄어쓰기 - 제1조: 사항을정함을 → 사항을 정함을 - 제3조제2호: 타인의부당한 → 타인의 부당한 • 조항 이동 - 제2조제2호: 제4조 → 제5조 - 제7조제1항: 제5조 → 제6조 - 제10조제1항: 제8조 → 제9조 • 용어 정비 - 제6조: 기타 → 그 밖에 - 제7조: 일체의 → 모든
실현성	□ **이행** •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에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 개설 및 운영 중에 있음
실효성	• 조례의 규정대로 홈페이지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조례의 실효성 충족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	제1조(목적) ---------- ---------- ---------- ----------	띄어쓰기

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 ---------- --------- 사항을 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포상금”이라 함은 신고를 통하여 부조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말한다.	2. ---------- ---------- ---------- ---------- 제5조- ---------- ---------- ---------.	조항이동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포상금은 고흥군에 소속된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3조(지급대상)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의무를 불이행하여 군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2. ---------- ---------- ----- 타인의 부당한 ---- ---------- ---------- ---	띄어쓰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신고방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제6조(신고방법) ---------- ----------	용어정비

사람은 실명으로 별지 서식에 의하여 군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4.6.)	---------- ---------- ----------. --- ---------- 그 밖에 - ---------- ---------- ---------- ---------- ----------	
제7조(신고자의 보호)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4.6.) ①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5조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조리 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4.6.) ① -- ---------- ---- 제6조---------- ---------- -- 모든 ---------- ---------- ------. ---------- ---------- ----------. -- ---------- ----------.	조항이동 용어정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환수)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4.6.) ① 군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 또는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4.6.) ① -------- ---------- 제9조---------- ---------- ---------- ---------- ----------.	조항 이동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43 고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기획실	시행일	2014. 12. 30.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특허법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	
	실용신안법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	
	저작권법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적용범위 ③정의 ④제안의 종류 ⑤제안의 제출 ⑥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⑦제안의 접수 ⑧제안의 보완 ⑨제안심사위원회 ⑩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⑪수당 ⑫심사기준 등 ⑬채택여부의 결정 ⑭의견조회 등 ⑮불채택제안의 재심 ⑯자체 우수제안의 추천 ⑰제안의 등급 ⑱인사상 특전 ⑲부상금의 지급 ⑳상여금 지급 ㉑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㉒그 밖의 보상 ㉓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㉔관리기간 ㉕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㉖실시의 권고 ㉗실시성과의 평가 ㉘비밀유지 ㉙시행규칙		
	• 목적 - 고흥군 군민과 고흥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안은 군민제안,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 제안으로 구분 • 심사기준 등 - 창의성 - 능률성 또는 경제성 - 계속성 - 적용범위 - 노력도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4 고흥군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계획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추진실적 성과평가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table>
<tr><td rowspan="8">현실
부합성</td><td>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 colspan="2">• 제안심사위원회(군정조정위원회)
• 제안심사실무위원회</td></tr>
<tr><td>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td><td>□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 colspan="2">• 위원회 개최 건수
- 2022년: 1건
- 2023년: 1건
- 2024년: 1건
• 회의록 보존 여부: 부(서면심사)</td></tr>
<tr><td>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종합 의견</td><td colspan="2">• 해다 없음</td></tr>
<tr><td colspan="3">3. 입법평가 결과</td></tr>
<tr><td>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일반정비
• 용어정비
- 제1조: 기하고, 관하여 → 도모하고, 생략
• 용어통일
- 제4조제1항: 공모 제안 → 공모제안
• 어법
- 제7조제3항: 명기하여 → 명확히 기재하여</td></tr>
<tr><td>실현성</td><td colspan="2">□ 2024년 주요업무계획
• 2024 고흥 발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명: 2024 고흥 발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td></tr>
</table>

- 공모주제: 고흥군 발전을 위한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아이디어
- 공모자격: 고흥군정 발전에 관심 있는 전 국민 누구나(공무원 포함)

• 국민 아이디어 접수 창구 활성화

- 목적: 정책제안 창구 다원화, 간소화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 군정에 반영
- 개선안

(기존) 2개 창구: 아이디어 공모전, 국민신문고(국민제안)

(개선) 6개 창구: SNS(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 홈페이지 등 채널 추가

□ **이행**

• 2024 고흥군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계획 수립

• 고흥군 홈페이지 내 「군정에바란다(국민신문고)」를 개설하여 '제안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붙여라 군민제안! 소통게시판 설치(2022)

- (주요 내용) 군 청사 내 소통게시판을 설치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군민들이 자유롭게 건의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
- 군민들의 현장의견 실시간 확인 및 군민 정서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 발굴

• 추진실적 성과평가를 하고 있음

• 5년간 예산 편성 현황(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회계연도	통계목	예산액	비고
2021	군민 제안 보상	5,500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공무원 제안 보상	1,000	10명
	공무원 정책제안 경진대회 포상	10,000	최우수 2명
			우수 2명
			장려 2명
2022	군민 제안 보상	5,500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공무원 제안 보상	1,000	10명
	공무원 정책제안 경진대회 포상	10,000	최우수 1명*2회
			우수 2명*2회
			장려 3명*2회
2023	군민 제안 보상	5,500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공무원 제안 보상	1,000	10명
	공무원 정책제안 포상	10,000	최우수 1명*2회
			우수 2명*2회
			장려 3명*2회

<table>
<tr><td></td><td>
<table>
<tr><td rowspan="9">2024</td><td>운영수당 - 정책제안 심사수당</td><td>5,000</td><td>25명*2회</td></tr>
<tr><td rowspan="3">군민 제안 보상</td><td rowspan="3">5,500</td><td>최우수 1명</td></tr>
<tr><td>우수 2명</td></tr>
<tr><td>장려 3명</td></tr>
<tr><td>우수 정책제안 제안자(국민) 보상</td><td>5,000</td><td>50건</td></tr>
<tr><td>공무원 제안 보상</td><td>1,000</td><td>10명</td></tr>
<tr><td rowspan="3">공무원 정책제안 포상</td><td rowspan="3">10,000</td><td>최우수 1명*2회</td></tr>
<tr><td>우수 2명*2회</td></tr>
<tr><td>장려 3명*2회</td></tr>
<tr><td rowspan="9">2025</td><td>운영수당 - 정책제안 심사수당</td><td>5,000</td><td>25명*2회</td></tr>
<tr><td rowspan="3">군민 제안 보상</td><td rowspan="3">5,500</td><td>최우수 1명</td></tr>
<tr><td>우수 2명</td></tr>
<tr><td>장려 3명</td></tr>
<tr><td>우수 정책제안 제안자(국민) 보상</td><td>5,000</td><td>50건</td></tr>
<tr><td>공무원 제안 보상</td><td>1,000</td><td>10명</td></tr>
<tr><td rowspan="3">공무원 정책제안 포상</td><td rowspan="3">10,000</td><td>최우수 1명*2회</td></tr>
<tr><td>우수 2명*2회</td></tr>
<tr><td>장려 3명*2회</td></tr>
</table>

•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
- ‘22년, ’23년, ‘24년 서면심사로 각 1회씩 회의 개최하여 운영
• 군민들의 제안 및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에서 ’군정에바란다(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모전 개최 등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제안 심사를 위해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

□ 공정성
•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
- 당연직 24명(남19, 여5)으로 구성되어 있음</td></tr>
<tr><td>실효성</td><td>□ 성과
• ‘24년 ’군민생각함‘을 통한 군민 의견 수렴(고흥군청)
- 민원 편의공간 개선
· 혈압측정기, 신장측정기, 발 마사지기 등 건강관리 코너
· 큰 글자 책 비치 어르신 쉼터
· 영유아용 도서관, 장난감 등 어린이 놀이방
· 민원인 열린 공간인 운주당 운영
· 민원인 전용 컴퓨터·팩스·프린터기 전자민원센터 마련 등

□ 언론보도
• 고흥군, 제3차 ’2023 지역발전 전략포럼‘ 성황리 개최(고흥군청 보도자료, 2023. 9. 19.)</td></tr>
</table>

	- 23. 1. 군민이 제안한 우수 정책 제언을 전문가와 군민,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함께 구체화 하고자 마련한 자리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1717&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군민과 고흥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44] 고흥군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문화체육과	시행일	2018. 12. 06.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국가유산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④회의 ⑤위원실비 등 ⑥기능 ⑦향토문화재 지정 ⑧보호구역 지정 ⑨지정 해제 ⑩지정 고시 ⑪지정서 교부 ⑫관리자 지정 ⑬보존관리 ⑭점검 ⑮경비보조등 ⑯집중관리 ⑰기록작성보관 ⑱준용규정		
	• 목적 -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재를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 • 지정 고시 - 군수는 향토문화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함 -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해야 하며, 이 경우 재검토에 의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고시해야 함		

총괄평가		
종합의견	•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조례명, 용어 등 개정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8. 11.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9년 171백만원 • 2020년 100백만원 • 2024년 35백만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고흥군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개최 건수 - 2022년: 0건(코로나-19로 붊가) - 2023년: 2건 - 2024년: 2건 • 회의록 보존 여부: 부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이 조례에 의거하여 전문가의 향토유산의 심의와 지정을 위해 필요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관내 산재한 비지정 문화유산이 법령에 비추어 유적·유물의 가치나 성격이 지정 가치가 있음에도 보존·관리되지 못해 멸실·훼손이 진행되어 전체적인 조사와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현재 향토유산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던 유산 중에서 성산사 소장 초상 일괄, 봉암사 이여재는 전남도 유형문화유산과 민속문화유산으로 각각 승격되어 향토유산이 승격의 발돋움하는 돌파구가 되어 있어 향토유산의 가치 파악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각종 정보 정비 필요(개정 제안) - 「국가유산기본법」(24. 5. 17.)의 시행에 따라 '문화재' →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 - 이에 '향토문화재' 역시 '향토문화유산' 또는 '향토유산'으로의 명칭 변경 필요 - 소관부서에서 개정안 준비 중 • 띄어쓰기 • 기타 용어 정비 • 신구대조표 참조	
실현성	□ **2025년 주요업무계획** • 고흥의 유·무형 문화유산 발굴·보존 - 추진계획 · 향토문화유산(고문서 및 전적, 근대유산 등) 조사: 20백만원 / '25. 3. ~ 9. • 고흥의 문화유산 전수조사 - 소요예산: 1,010백만원 ❋2025년: 50백만원 - 추친계획 · 문화유산 관리 및 국가 · 도 · 향토지정 위한 가치 평가: '25. 12.	

• 문화유산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 문화유산 보수정비

· 대상: '25년 문화유산 보수정비(총액계상) 대상사업 15건(국가지정 6, 도지정 6, 전통사찰 1, 전통문화유산 1, 방재 1)

· 소요예산: 1,529백만원

※ '25년 문화유산 보수정비(총액계상) 예산 확정안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 주요내용: 보수정비, 보존처리, 기록화, 방충방부,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등

- 문화유산 보존관리

· 지정 유산 현황: 110건(국가 13, 등록 18, 도 52, 향토 27)

· 지정유산별 관리이력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 현행화(보수정비 이력, 보존관리 실태 등)

· 문화유산 주변 환경정비(풀베기) 연 4회 이상 실시

· 방치 · 훼손되는 문화유산 없도록 지속적 발굴 및 보존 방법 강구

□ **이행**

• 향토문화재 보존·지원 관리(2021-2022)

- (주요 내용) 고흥군 향토문화재 발굴 및 보수정비 지원

• 고흥 지정 문화재 기록화 및 고도화 사업 추진(2023-2024)

- 사업대상인 고흥군 지정문화재 87건 중 군 지정 향토문화재 10건

- 사업 내용: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실태 점검 및 관리카드 작성, 지정문화재 사진 촬영 및 영상 제작

• 향토문화재 보존을 위한 5년간 예산 편성 현황(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회계연도	세부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1	향토문화재 보존 지원	103,520	위원회 9명*4회
			향토문화재 보수정비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관리카드화
2022	향토문화재 보존 지원	190,000	위원회 10명*5회
			도이상 지정문화재 용역비 2건
			향토문화재 보수 정비
2023	향토문화재 보존 지원	136,700	위원회 자문 5회
			위원회 9명*3회
			향토문화재 지정신청 연구용역비 1건
			도이상 지정문화재 용역비 2건
			향토문화재 보수 정비
	문화유산 기록화 및 전수조사	150,000	지정문화재 기록화 사업 간행물 제작*5회
			고흥 지정문화재 기록화 및 고도화*1식
			고흥의 문화유산 전수조사*1식
2024	향토문화유산 보존 지원	64,000	위원회 자문 5회
			위원회 7명*2회

<table>
<tr><td></td><td>
<table>
<tr><td rowspan="3"></td><td rowspan="3"></td><td rowspan="3"></td><td>향토문화재 지정신청 연구용역비 1건</td></tr>
<tr><td>도이상 지정문화재 용역비 2건</td></tr>
<tr><td>향토문화재 보수 정비</td></tr>
<tr><td>문화유산 전수조사</td><td>50,000</td><td>1회</td></tr>
<tr><td rowspan="6">2025</td><td rowspan="5">향토문화유산 보존 지원</td><td rowspan="5">85,000</td><td>위원회 자문 5회</td></tr>
<tr><td>위원회 7명*2회</td></tr>
<tr><td>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 연구용역비 1건</td></tr>
<tr><td>도이상 지정문화유산 용역비 2건</td></tr>
<tr><td>향토문화재 보존관리 및 보수 정비 3건</td></tr>
<tr><td>문화유산 전수조사</td><td>50,000</td><td>고흥의 문화유산 전수조사*1회</td></tr>
</table>
• 재정 지원 실적
- 2019년 171백만원
- 2020년 100백만원
- 2024년 35백만원
• 고흥군 향토유산 보호위원회
- ‘23년, ’24년 각 2회씩 회의를 개최하며 운영하고 있음
• 고흥군 향토문화재 지정을 위한 심의회 개최
• 고흥군은 향토문화재를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지정 예고 및 고시를 시행하고, 전수조사 및 점검 등을 하고 있어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

□ 공정성
• 고흥군 향토유산 보호위원회
- 당연직 2명(남2), 위촉직 7명(남3, 여4)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 7명 중 남성 3명, 여성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3조제2항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명시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고려를 규정하고 있음</td></tr>
<tr><td>실효성</td><td>
□ 성과
• ‘19년 향토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10건 지정
- 19. 6. 흥양목장 관목관 철비(2기), 영오리 석조보살입상 등 6건
- 19. 10. 운곡사 및 소장전적, 현검도거원철비, 하구정 등 4건
• 향토문화재 보존관리로 문화재 가치 제고(2020-2024)
- ’20-‘21년 : 7개소 보수 및 정비
· 성산사, 운곡사, 하구정, 이여재, 감목관 철비 등
- ’22년 향토문화재 보수 및 가치 제고: 10개소
- ‘23년 향토문화재 보수 및 가치 제고: 향토문화유산 지정 9건
· ’흥양현 선생안‘, ’진무성 고문서 일괄‘, ’송대립 묘비‘ 등
• ’23년 ‘고흥 성산사 성주이씨 초상 일괄’ 전남도 유형문화재 지정(고흥군청)</td></tr>
</table>

	- 2019년도 '성산사와 진영'으로 고흥군 향토문화재로 지정 및 관리되어 오다 가치를 인정받아 전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 '25년 '고흥 봉암사 이여재' 전남도 민속문화유산 지정(고흥군청) - 2019년도 고흥군 향토유산 제5호로 지정 및 관리되어 오다 민속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라남도 민속문화유산 제57호로 지정 • 매년 향토문화재 보존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일부 향토문화재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전라남도 문화유산으로 승격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 □ **언론보도** • 고흥군 흥양수군 위상 알려줄 유적 「향토문화유산」 지정 예고(고흥군청 보도자료, 2024. 10. 22.) - 1관4포 유물·유적과 문중 재실 건축물을 포함한 총 8건을 고흥군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 - 30일간의 공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지정 고시 예정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3518&boardId=BD_00025&pageId=www102 • 고흥군, 2023년 '향토 문화재' 지정 심의회 개최(고흥군청 보도자료, 2023. 8. 1.) - 심의 대상 9건 중 '흥양현 선생안' 등 8건은 원안 가결, '송심 묘비' 1건은 수정 가결 -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향토 문화재는 30일간 공고 기간을 거쳐 의견 수렴 후 지정 고시 예정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1498&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고흥군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고흥군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명 정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재를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향토문화유산을 ----------.	용어정비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향토문화재"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향토문화유산"----------.	용어정비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및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정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전라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도지정문화유산으----------	상위법령, 법규명 변경 용어정비
2.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2. --- 문화유산으----------	용어정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도록 고흥군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용어정비
② 위원회의 위원은 9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 9인 이내의 ----------. -----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 않도록 하여야 한다.	문장정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위원은 문화재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 ----------.	띄어쓰기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과 관련 학과의 부교수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1. ---------- - 문화유산---------- ---------- 부교수 이상으로 ---------	용어정비 띄어쓰기
2. 문화재의 보존·보호·관리	2. 문화유산----------	용어정비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향토사학에 조예가 깊은 자로 5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4. ---------- 사람으로 ----------	용어정비
5. 기타 문화재 업무에 관계되는 사람	5. --- 문화유산 ----------	용어정비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만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한다.	문장정비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명, 서기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재담당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⑦ ---------- 간사 1명, 서기 1명---------- 문화재 담당자가 ----------.	띄어쓰기 오탈자
제4조(회의) ① (생 략)	제4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재적위원 ---------- 회의를 시작하고 ----------.	용어정비
⑤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⑤ ---------- 회의 개최 3일 전----------	띄어쓰기
⑥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민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 관계 공무원----------	띄어쓰기
제6조(기능)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기능) ----------.	

1.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1. 향토문화유산----------	용어정비
2. 향토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 ----------	용어정비
3. 향토문화재 주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유산 ----------	용어정비
4. 향토문화재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 ----------	용어정비
5. 향토문화재 주변 건축, 토지 형질변경 행위 및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유산 ----------	용어정비
6. 기타 군수가 향토문화재의 보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 향토문화유산---	용어정비
제7조(향토문화재 지정) ① 향토문화재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향토문화재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향토문화유산으로 ----------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	용어정비
② 군수는 제출된 향토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종합 검토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형, 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재로 지정한다.	② ---------- 향토문화유산 지정 ---------- 향토문화유산으로 --.	용어정비
제8조(보호구역 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재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보호물을 설치할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호구역 지정) ① -----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상 --- ----- 하거나 ---------- -------. ----------	용어정비 문장정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이 있을 때에는 지정 향토문화재 보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 향토문화유산 ----------.	용어정비
제9조(지정 해제)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할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지정 해제) ----------.	
1. 향토문화재로써 가치를 상실한 경우	1. 향토문화유산으로서 ----------	용어정비 문장정비
2. 향토문화재로 보호·관리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향토문화으----------	용어정비
3. 향토문화재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3. 향토문화유산----------	용어정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정 고시) ①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문화재(보호구역 포함)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 고시) ① ---------- - 향토문화유산(보호구역 포함)을 ----------.	용어정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정서 교부) ① 군수는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향토문화재에 대하여 향토문화재 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를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서 교부) ① ----------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향토문화유산 ----------.	용어정비
② 군수는 향토문화재 지정서 교	② ----- 향토문화유산 ------	용어정비

부대장 <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재 및 보호구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마을이장,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향토문화재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12조(관리자 지정) ① ------ 향토문화유산 및 ---------- 사람을 향토문화유산 -----.	용어정비
②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경우에는 지정된 향토문화재의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향토문화재이 소재한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② ---------- 향토문화유산의 ---------- 향토문화유산이 ----------.	용어정비
제13조(보존관리) 관리자 등은 향토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존관리) ---------- 문화유산---------- -.	용어정비
1.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은 향토문화재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1. ---------- 향토문화유산---------- ----------.	용어정비
2. 군수는 향토문화재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의 지정 사항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보호구역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 향토문화유산-------- ---------- ----------.	용어정비
3. 향토문화재와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군이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군수가 이를 매입하여 보호할 수 있다.	3. 향토문화유산과 ---------- ---------- ---------- ----------.	용어정비
4. 향토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군수는 향토문화재	4.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 ---- ---------- 향토문화	용어정비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유산 보존 ----------.	
5. 군수는 향토문화재 주변정비 및 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 향토문화유산 ----------.	용어정비
제14조(점검) 군수는 향토문화재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점검) ----- 향토문화유산을 ----------.	용어정비
제15조(경비보조등) ① 군수는 향토문화재 및 보호구역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경비보조등) ① ---- 향토문화유산 ----------.	용어정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용어정비
제16조(집중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공예품 등 향토문화재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 집중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집중관리) ① ---------- 향토문화유산 ----------.	용어정비
②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재를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이동할 경우 그 상황과 위치·사유·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 향토문화유산을 ----------.	용어정비
제17조(기록작성보관) ① 군수는 향토문화재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기록작성보관) ① ----- 향토문화유산----------.	용어정비
② 군수는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 문화유산---------- ----.	용어정비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및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준용규정)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 「전라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상위법령, 법규명 변경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5] 고흥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고흥군 보건소	시행일	2020. 09. 18.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용어의 정의 ③군수의 책무 ④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⑤군민의 권리와 의무 ⑥감염병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⑦감염병 표본감시 등 ⑧역학조사 등 ⑨필수예방접종 ⑩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⑪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⑫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⑬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⑭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⑮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⑯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⑱감염병의 예방 조치 ⑲소독 의무 ⑳예방위원 ㉑비밀누설의 금지 ㉒교육 및 홍보 ㉓협력체계 구축 ㉔포상 등 ㉕자원봉사 ㉖시행규칙
	• 목적 -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 • 군수의 책무 -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감염병관리사업 추진 계획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0. 07. 08. ~ 07. 28. (20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띄어쓰기 - 제12조: 감염 병환자 → 감염병환자 - 제13조제1항: 감염병 환자 → 감염병환자 • 조사 중복 - 군 홈페이지를 등을 → 군 홈페이지 등을	
실현성	□ **2025년 주요업무계획** • C형간염 예방관리 사업 - 대상: 군민 1,000명 - 소요예산: 4백만원 - 사업내용: C형간염 신속 항체검사, C형간염 인식도 조사, C형간염 진단검사, C형간염 치료대상자 치료지원 • 찾아가는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사업 - 대상: 3개소 - 운영횟수: 월1회, 5개월 - 소요예산: 3백만원 - 주요내용: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예방접종 안내 등 •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 소요예산: 66백만원 - 사업내용: 기피제 구입 및 다발생지역 분사기 설치 등 감염병 예방교육 •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로 안전울타리 구축 - 사업비: 15백만원 - 대상: 38개소(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관리자 및 종사자) - 사업내용: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관리 및 감염관리 교육	

• 예방접종 안내 및 안심문자서비스

- 소요예산: 비예산

- 주요내용: 예방접종 전 · 후 문자서비스 발송

•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

- 사업대상: 군민

- 접종기관: 보건기관(16개소) 및 위탁 의료기관(31개소)

- 소요예산: 1,551백만원

- 사업내용

·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18종(BCG, B형간염, 수두, 일본뇌염, 뇌수막염)

· 임시(성인) 예방접종: 6종(폐렴,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B형간염, 65세이상 인플루엔자, 코로나19)

· 전 군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제외자)

□ **이행**

• 감염병관리사업 추진 계획 수립

- 감염병 예방 인식 제고 및 발생률 감소를 위한 연령별 눈높이 교육 실시

- 결핵 발견환자 치료성공률 100% 달성 유지

-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 강화 및 감염병 예방홍보 채널 확대

- 진드기매개 감염병 관련 종사자 대상 예방교육 및 관리 강화

→ 다발생지역 농번기 이전 집중교육 실시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사업명	세부 내용	비고
감염병 선제적 예방·대응체계 강화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및 현행화	–
	감염병 발생 대비 방역대책반 운영(5개반, 25명)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알일모니터링 및 보고체계 유지(165개소): 보건기관, 의료기관, 학교 ·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지정 및 교육 실시 · 생물테러 대비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신종감염병 선별진료소 운영(3개소): 보건소, 고흥종합병원, 녹동현대병원	
	찾아가는 515 감염병 예방교실 운영 및 유행시기별 감염병 예방교육·홍보	
친환경 해충퇴치기 설치·운영	–	–
C형간염 예방관리사업	C형간염 신속 항체검사, 인식도 조사, 진단검사, 치료대상자 치료지원 등을 진행	2023~
찾아가는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사업	어린이집 3개소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 및 예방접종 독려 등을 진행	2025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기피제 구입 및 분사기 설치, 예방교육 등	2025

	<table><tr><td>관리사업</td><td></td><td></td></tr><tr><td>촘촘한 맞춤형 방역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td><td>위생해충 종합방제, 소독업소 및 의무소독시설 지도 점검</td><td>2024~</td></tr><tr><td>감염취약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로 안전울타리 구축</td><td>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관리 및 감염관리 교육</td><td>2024~</td></tr><tr><td rowspan="3">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td><td>만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18종 (BCG, B형간염, 수두, 일본뇌염,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td><td rowspan="3">-</td></tr><tr><td>임시(성인) 예방접종: 6종 (성인폐렴,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B형간염, 인플루엔자, 코로나19)</td></tr><tr><td>전 국민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td></tr><tr><td>만65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td><td>-</td><td>2023-2026</td></tr><tr><td rowspan="2">생애전환기 잠복결핵검진 실시</td><td>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td><td rowspan="2">2023</td></tr><tr><td>결핵예방 및 맞춤형 교육 실시</td></tr><tr><td>「해충 ZERO」 찾아가는 맞춤형 방역소독</td><td>귀농·귀촌가구 등 요청 시 찾아가는 맞춤형 방역실시</td><td>2023</td></tr><tr><td>영유아·아동 적기 접종 민관 네트워크 구축</td><td>접종대상 영유아·아동의 시기별 예방접종 유·무를 확인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및 가정방문 실시</td><td>2023</td></tr><tr><td>만 50~59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td><td>43개 보건기관에서 무료로 접종</td><td>2023.9. - 12.</td></tr><tr><td rowspan="2">코로나 19</td><td>코로나19 대응 및 방역체계 강화</td><td rowspan="2">2023</td></tr><tr><td>코로나19 예방접종률 제고</td></tr><tr><td>건강닥터 홈페이지 운영</td><td>계절별 발생질환과 예방활동을 군 홈페이지「건강닥터」코너를 통해 홍보</td><td>2023~</td></tr><tr><td>우리동네 감염병 예방 홍보대사 운영</td><td>우리동네 감염병 예방 홍보대사 양성하여 운영을 통해 선제적 예방관리 도모</td><td>2024</td></tr></table>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붙임 1 참조) • 현재 고흥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음 •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역을 위한 소독, 예방접종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어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
실효성	□ **정책환경 수용성** • C형간염 예방관리 사업 - 고흥군은 특성상 해안 중심 지역주민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C형간염 발생률이 높음 - 이러한 특성과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제적 예방을 위해 본 사업 추진

(출처: 감염병포털)

2021. 01. 01 - 2025. 06. 30 전라남도 C형간염 감염자 수 (전수감시)		
구분		제3급 C형감염
전국		35,015
전남	전남	2,319
	광진군	51
	고흥군	232
	곡성군	27
	광양시	74
	구례군	10
	나주시	81
	담양군	31
	목포시	316
	무안군	133
	보성군	34
	순천시	111
	신안군	144
	여수시	280
	영광군	45
	영양군	67
	완도군	98
	장성군	50
	장흥군	102
	진도군	237
	함평군	24
	해남군	137
	화순군	35

- 전라남도 내 군 중 진도군 다음으로 C형간염 감염자 수가 많으며, 전라남도 내 C형간염 감염자 중 약 1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고흥군 내 C형간염 감염자 현황: '19년 50명, '20년 77명, '21년 68명, '22년 9월 47명(질병청 통계)

□ **목적 및 성과**

• 본 조례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함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21년 고흥군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률 87.6%로, 전국 81.0%, 전남 83.4% 대비 높은 접종률을 보임

- '22년 총 인구대비 고흥군 코로나19 4차접종률은 38.9%로, 전남 1위를 차지하였으며, 전국 14.6%, 전남 24.6%로,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단위: 명, %)

'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22. 10. 24. 기준)				
인구수	1차접종	2차접종	3차접종	4차접종
62,442	58,823 (94.2%)	58,380 (93.5%)	51,790 (82.9%)	24,308 (38.9%)

• 만65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 '23년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5,549건으로, 2023년 목표인원 128% 달성

• 기관표창 수상

- 2023. 3. 24. '결핵예방관리사업 유공' 수상, 결핵협회장 표창

- 2023. 12. 20. '코로나19 예방접종 우수기관' 수상, 전라남도지사 표창

- 2023. 12. 26. '2023 감염병예방관리사업 평가 우수기관' 수상, 전라남도지사 표창

• 2020-2024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주요 사업 추진 성과

구분	사업 내용	성과		
		추진율	회 / 건	명
2020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방역 9,144회	유증상자 2,409명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률	95%	-	-
	만12세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	88%	-	-
2021	코로나19 예방접종	87.6%	-	-
	코로나19 감염병 선제적 대응	-	검사건수 127,867건 방역 12,382회	자가격리 전담관리 2,557명
2022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	-
	건강닥터 홈페이지 알림운영 2-3급 질환 감소	발생률 23.5%	-	'21년 132명 '22년 101명
	질병모니터링 운영		165개소	
	위생해충 방역 기피제 분사기 신규 설치	6.5% 감소	5개소	'21년 32명 '22년 30명
	결핵검진·취약계층 보균검사	-	-	5,818명
	찾아가는 515 감염병 예방교육	-	203회	6,914명
2023	코로나19 선제적 예방·대응	-	PCR 300,099건 자가현장검사 40,506건 상담 27,472건	-
	건강닥터 홈페이지 알림운영 2-3급 질환 감소	발생률 9.3%	-	-
	질병모니터링 운영	-	175개소	-
	위생해충 방역 기피제 분사기 신규 설치	-	5개소	-
	결핵검진·취약계층 보균검사	-	-	3,300명
	찾아가는 515 감염병 예방교육	-	271회	5,003명
	생애전환기 잠복결핵 검사	-	-	100명
	C형간염 항체 무료검사	-	-	1,009명
	65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 무료접종	-	-	5,549명
2024	코로나19 예방접종	-	16,739건	-
	우리동네 감염병 예방 홍보대사 양성	-	-	515명
	질병정보 모니터링 요원 구성	-	-	171명
	감염취약시설 시설장 및 방역관리자 감염관리교육	-	2회	-

구분	사업 내용	성과		
		추진율	회 / 건	명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교육	-	5개소	-
	C형간염 항체검사	-	-	1,200명
	65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	2,634건	-
	'23-'24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32,628건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통해 감염병 발생률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고, 관련하여 수상까지 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어 실효성 있다고 평가

□ **언론보도**

- 고흥군, 해외 여행자 감염병 급증 우려...모니터링 강화(고흥군청 보도자료, 2025. 5. 27.)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4523&boardId=BD_00025&pageId=www102

- 고흥군, 관내 어린이집 대상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교실 운영(고흥군청 보도자료, 2025. 6. 10.)

- 관내 3개의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교실' 운영
- 간호사가 미배치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진행
- 집단생활을 하는 아동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과 예방수칙을 교육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4577&boardId=BD_00025&pageId=www102

- 고흥군,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주의 예방 활동 강화(고흥군청 보도자료, 2025. 7. 14.)

- 폭염으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으로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위험이 커짐에 따라, 감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 홍보 진행
- 예방 수칙 준수 당부, 파스 및 전단지 등 홍보 물품 배부
- 매주 검체 검사를 통한 감시 활동, 어패류 취급 업소 위생 교육 등 다각적인 감염병 예방 활동도 추진 중에 있음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4764&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12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 병환자 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 ---------- 감염병환자 ---------- ---------.	띄어쓰기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띄어쓰기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① ---------- ---------- ---------- ----- 감염병환자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교육 및 홍보) ①·② (생 략)	제22조(교육 및 홍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를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③ ---------- ---------- ---------- 홈페이지 ---------- ----------.	조사중복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46] 고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보건소 마음건강팀		시행일	2013. 09. 30.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군민의 권리와 의무 ④군수의 책무 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추진계획의 수립 ⑥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 ⑦교육 및 홍보 ⑧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⑨예산지원 ⑩비밀누설의 금지 ⑪시행규칙			
	• 목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군민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추진계획의 수립 -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우울증 및 약물 중독자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 - 생명존중과 자살 관련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마련 -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 그 밖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시책 •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고흥군 자살예방시행계획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센터 또는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3. 06. 10. ~ 06. 29.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의견 수렴 방법 - 방식: 의견서 제출 - 개최일: 2013. 6. 10. - 장소: 고흥군보건소 방문진료팀 -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기관: 고흥나누리 통합 상담센터 - 2024년 12명 신청 - 2025년 3월 기준 1명 신청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제8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개최 건수 - 2022년: 1건 - 2023년: 4건 - 2024년: 4건 • 회의록 보존 여부: 정신건강 위기대응지역협의체 결과보고서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함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상위법 개정** • 상위법명 변경 및 조항 이동 - 제6조제3항: 「정신보건법」 제27조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실현성	□ **2025년 주요업무계획**	

• 소중한 생명사랑 함께해요! 자살예방사업

- 사업대상: 지역주민, 정신질환자(가족),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자살유족)

- 소요예산: 161백만원

- 주요내용: 우울선별검사,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등

- 추진계획

주요내용	세부내용
활동분야	우울선별검사(PHQ-9) - 5,000명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및 사후관리 - 1,000명
	자살고위험군 위기개입 및 관리
	정신응급대응 협의체 운영(경찰, 소방 등) - 연 2회
	1:1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자살수단 차단사업	동네 병의원 마음이음 및 생명사랑 약국 사업
	일산화탄소 및 농약 중독 생명사랑 실천가게 모니터링
	추락 및 기타 자살고위험수단 차단 관리
홍보 및 캠페인	생명사랑 릴레이 챌린지 전광판 송출
	자살예방 관련 정보제공 리플릿 비치,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홍보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 **이행**

• 2025년 고흥군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 번개탄 보관함 사용보다 구매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체 교육 실시

- 인식개선 및 편견해소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유가족에게 서비스 지원

- 전담인력 충원 필요성 건의 및 요구

•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 고위험군 발굴 · 개입 · 연계

· 대상 및 인원: 5개 읍·면

· 주요내용: 스크리닝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 치료 연계 진행

-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 대상 및 인원: 5개 읍·면

· 주요내용: 자살과 우울증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캠페인 진행

- 자살위험 수단 차단

· 대상 및 인원: 5개 읍·면

· 주요내용: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을 제한

• 생명존중인식교육

-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 대상 및 인원: 고흥 군민

· 주요내용: 보고 듣고 말하기 활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실시

	- 생명존중인식개선 교육 실시 · 대상 및 인원: 고흥 군민 · 주요내용: 관내 사업장 및 관계기관 서비스 제공 실무자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인식개선 교육 실시 • 민관협력 및 홍보 활성화 - 지자체 내 유관조직 연계 자살예방 홍보 - 유관 민관조직 협력 자살예방 홍보 • 자살위해수단 및 자살다빈도 장소 관리 강화 - 자살 위해수단 점검 및 모니터링 - 자살 다빈도 장소 관리 강화 • 자살시도자 연계 협력체계 구축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연계 · 대상 및 인원: 관내 응급실 운영 병원 2개소 -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협력 체계 강화 · 대상 및 인원: 관내 경찰서 및 소방서 • 자살유족 발굴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자살유족 정보제공 협력 체계 강화 • 자살예방 인프라 확충 - 자살 및 위기상담전화 인프라 확대 - 지역주민 네트워크 강화 · 주요내용: 읍·면 단위 전담 생명지킴이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신속한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 인력 역량 강화와 보호 -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교육 참여 -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소진방지 프로그램 참여 •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 대상 및 인원: 자살현장 대응팀(경찰, 소방, 응급의료기관) • 재난 후 자살예방 위기 대응체계 구축 및 트라우마 회복 지원 - 재난 상황시 위기 대응체계 구축(유관기관 및 전신건강복지센터) - 고위험군 심리지원 관리 • 자살유족에 대한 인식개선 · 교육 강화 -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실시 · 주요내용: 자살예방교육시 유족에 대한 인식개선 포함 및 편견 해소 캠페인 실시 • 마음건강사업 운영(고흥군청)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자살예방 상담: 방문, 내소, 전화 상담

	· 자살고위험군 선별 및 사례관리 · 응급의료센터 내원 자살시도자 지속관리 · 지역사회 자살위험대상자에 대한 개입 · 자살 대상자 가족상담 • 이장과 함께하는 생명사랑사업(2023-2024) - (주요 내용) 마을이장 생명지킴이 양성, 생명사랑 로고송 송출 - (운영 방법) 마을이장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후 주민 체계적 모니터링 실시 • 자살예방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5년 예산 현황(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회계연도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비고
2025	지역 정신보건 지원	일반수용비(홍보물품·교육 자료 등)	15,064	-
		자살예방 상담 전화요금		
		자살예방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전국민마음건강지원	56,628	100명 지원
	취약계층 마음지원 치유프로그램 지원	취약계층 마음건강지원 참가비	32,890	기초생활수급자 30명*1회
				65세이상 어르신 80명*1회
				청소년 12명*1회

	•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 최근 3년간 회의를 개최하며 운영하고 있음 - '22년 1건, '23년 4건, '24년 4건 • 고흥군은 이전 연도 사업 결과를 점검하여 다음 연도 자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 인력 측면에서 센터 내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흥서방서 등을 비롯하여 총 16개의 조직을 유관 민관조직으로 협력하고 있음 • 또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고, 위원회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어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 •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는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음 - 당연직 7명(남2, 여5), 위촉직 3명(남2, 여1)으로 구성 -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위촉직 위원 관련하여 성별 균형 고려를 규정하고 있음
실효성	□ **정책환경 수용성** • 조례 제·개정 과정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의견 수렴 방법

· 방식: 의견서 제출

· 개최일: 2013. 6. 10.

· 장소: 고흥군보건소 방문진료팀

·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등

• 이전 연도의 사업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자살 현황 및 추이를 5개년으로 정리하고, 자살 관련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여 자살예방사업의 효과 증진을 위해 노력

- 2023년 고흥군 자살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전년 대비 2명 증가하였고, 자살률은 39.1명으로 전라남도(29.2명)보다 높음 수준임

- 최근 5년간(2019~2023) 남성의 자살률 비율이 높았으며, 40대의 자살률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자살 예방 대책 강화를 계획

- 자살 수단과 관련하여 목맴과 증가 추세에 있는 농약에 대한 예방책 필요성 인식 등

□ **성과**

• 2020-2024 주요 사업 추진 성과

구분	사업 내용	성과		
		개소	회 / 건	명
2020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	71회	989명
	노인우울자살예방사업 프로그램 운영	10개소	58회	870명
2021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	-	736명
	우울증 선별검사	-	-	3,725명
2022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	-	891명
	우울선별검사	-	2,709건	-
2023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	-	-1,478명
	우울선별검사	-	5,288건	-
	이장과 함께하는 생명사랑사업	-	16회	515명
2024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	-	1,724명
	우울선별검사	-	-	5,883명
	이장과 함께하는 생명사랑사업	16개 읍·면	-	515명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 (기관) 고흥 나누리 통합 상담센터

- (추진 성과)

· '24년 12명 신청

· '25년 3월 기준 1명 신청

• '25년 생명사랑 실천가게(고흥군청)

- 32개소 운영 중

-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점검 실시(번개탄 비진열 판매 여부, 숙박업소 내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여부 등)

- 자살 예방 상담전화 등 도움이 필요한 기관 안내 홍보물 제공

- 사업주 대상 1:1 자살 예방 교육 실시

• '25년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 의료기관 23개소와 협력

• '25년 '생명사랑약국' 사업: 약국 29개소 참여

• 기관표창 수상

- 2024. 10. 8. '2024년 전라남도 생명 사랑 릴레이 챌린지 장려상' 수상, 전라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표창

•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나, 고흥군민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의 참여자를 확인할 수 있고, 수상 등을 하는 등 그 성과가 있어 실효성 있다고 평가

□ **언론보도**

• 고흥군, 마음이 힘들 때 고민하지 말고 109로 연락주세요(고흥군청 보도자료, 2025. 3. 20.)

- 보건복지부 분석 결과, 3월부터 5월까지 자살률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자살 고위험 시기로 지정 및 집중관리 실시

- 홈페이지 게재,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현수막과 포스터 게시 등 홍보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4177&boardId=BD_00025&pageId=www102

• 고흥군, 민관이 함께한 생명사랑 릴레이 챌린지 전개(고흥군청 보도자료, 2024. 8. 29.)

-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념행사 전개

- 관내 7개소 공공기관과 민관기관이 '소중한 생명사랑 우리 함께'라는 주제로 생명사랑 릴레이 챌린지 진행

- 고흥군청에서 민원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건강홍보관 운영, 옴니핏을 활용한 스트레스 지수 측정, 자살 예방 상담 전화(109) 홍보, 마음안심버스 운영 등도 진행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3277&boardId=BD_00025&pageId=www102

• 고흥군, 동네 약국 30개소 '생명사랑 약국사업'참여 활발(고흥군청 보도자료, 2023. 7. 26.)

- 약국 기반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받은 약사가 정신건강 위험 대상자를 조기 발견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보건기관에 연계해 주는 사업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1484&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6조(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 ①·②(생 략)	제6조(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으로 상위법명 변경 및 조항 변경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47]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보건소	시행일	2013. 09. 30.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지역보건법	제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설치·운영 ④인력 ⑤사업 ⑥운영비 지원 ⑦이용제한 ⑧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⑨운영위원회의 구성 ⑩해촉 ⑪회의 ⑫수당 ⑬환자 등 지원 ⑭협조사항 ⑮준용 ⑯시행규칙		
	• 목적 -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고흥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사업 -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정신과전문병원) 연계사업 - 정신질환예방,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홍보사업 -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한 사례관리 -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과 모임지원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자문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 -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과 정신보건관련 인력교육 및 훈련 -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노인 우울관리사업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총괄평가	종합의견	• 센터명의 변경을 반영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개정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_2025년도 고흥군 시행계획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센터 또는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3. 06. 10. ~ 06. 29.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의견 수렴 방법 - 방식: 의견서 제출 - 개최일: 2013. 6. 10. ~ 6. 29. - 장소: 고흥군보건소 방문진료팀 -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등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비율에 따라 예산의 35% 지급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비율에 따라 예산의 35% 지급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개최 건수 - 2022년: 4건 - 2023년: 4건 - 2024년: 4건 • 회의록 보존 여부: 여(결과보고서)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 필요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고흥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직인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대한 근거가 더 명확해지는바 조례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2017. 5. 30.)에 따른 센터의 명칭 변경(정신건강증진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상위법 개정** • 조항이동 - 제1조: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 →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정신보건법」 제12조 • 규칙명 변경 - 제15조: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 →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조례명 및 용어 변경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2017. 5. 30.)에 따라 센터의 명칭이 '정신건강증진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비롯하여 조례 내 용어 일괄 변경 필요
실현성	□ **2025년 주요업무계획**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소요예산: 498백만원 - 주요내용: 중증정신질환자관리,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등 - 추진계획

주요내용	세부내용
중증정신질환자관리사업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130명
	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연 84회
	정신장애인 가족 교육 및 지지모임: 연 4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10명
정신건강증진 및 우울예방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연 4회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행복한 마음 만들기' 운영: 16개소
	지역 복지자원 연계 '토다토닥 마음치유교실' 운영: 3개소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노인정신건강 실태조사: 110명

□ **이행**

•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 2025년 고흥군 시행계획 수립

- 추진 방향 붙임1 참조

• 국립청소년우주센터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3)

- 고립위기 아동·청소년 발굴 및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함

• 도란도란 정신건강 아동상담소 운영(2024)

- 정신건강 상담 및 우울선별검사

- 고위험군 발굴 및 치료 연계, 사후관리 지원

• 아동·청소년 마음튼튼! 마음톡톡! 사업(2024)

-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예방교육

-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서비스

•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를 최근 3년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22년부터 '24년까지 매년 4회씩 회의를 개최

• 2025년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회계연도	세부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5	지역 정신보건 지원	15,064	홍보물품 제작 등
			자살예방 상담
			시설장비유지비

회계연도	세부사업명	예산액	비고
			자살예방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51,100	일반수용비
			정신건강 화합한마당 행사 운영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의학과 위촉자문의 수당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314,260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	42,956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28,000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20,00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비 등 5명*1회
	통합정신건강증진	94,400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자살예방 및 마음건강 표지석 설치 2개*5개소

• 재정 지원

-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비율에 따라 예산의 35% 지급

□ **공정성**

•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

- 당연직 7명(남2, 여5), 위촉직 3명(남2, 여1)으로 구성

- 위촉직 3명 중 남성 2명, 여성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공정성을 유지한다고 평가

- 제9조제1항에서 위촉직 위원 관련하여 성별 균형 고려를 규정하고 있음

• 고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군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 또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 또한 적절한 구성 및 운영을 이루고 있어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

• 그러나 현재 센터의 명칭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 역시 센터 명칭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실효성

□ **정책환경 수용성**

• 조례 제·개정 과정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의견 수렴 방법

· 방식: 의견서 제출

· 개최일: 2013. 6. 10. ~ 6. 29.

· 장소: 고흥군보건소 방문진료팀

·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등

• 고흥군 정신건강 현황 반영

- 고흥군민의 우울감 경험률이 최근 3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8% → 3.3% → 5.5%)

- 2023년 고흥군은 자살자 수는 24명, 인구10만명 당 자살률은 39.1명으로, 곡성(12명, 44.6명), 신안(16명, 42.3명) 다음으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연령별표준화 자살율은 37.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울 질환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출처: 2024년 전라남도 자살통계 자료집)

□ **성과**

• 2024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 사업 추진 성과

세부사업명	성과	성과 달성도
맞춤형 심리상담 및 정보제공	341회	-
정신건강 캠페인 등 홍보	91회	910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아동 정신건강증진 교육 - 22회	-
	청장년층 정신건강증진 교육 - 52회	-
	노인 정신건강증진 교육 - 166회	-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행복한마음만들기 운영)	16회	-
재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50명	-
보건·복지 협력 활성화(고위험군 대상 상담 및 정보제공)	341명	100
지역사회조직역량 강화(마을 지도자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515명	-
정신응급협의체 운영	2건	100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25건	-
퇴원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등	9회	-
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	149명	99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84회	-
가족지지 모임 및 교육	4회	100
정신질환 인식개선 주간 운영 캠페인 및 행사 집중운영	2회	100
정신질환 편견해소 인식개선 홍보	91회	100
중독 위험성이 높은 약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1명	100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기기 과도 사용 위험 교육	22회	100
근거기반 자살예방사업	19명	-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1,724명	-
자살위험환경개선(번개탄 판매업소 개선사업)	32개소	100
자살고위험군·자살유족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	44명	100
자살예방 전담인력 교육	4회	100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인력 직무교육 참여	12회	100

• 기관표창 수상 내역

- 2021. 12. 15. "'21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수상, 전라남도지사 표창

- 2023. 10. 26. '정신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수상, 전라남도지사 표창

- 2024. 10. 8. '2024년 전라남도 생명 사랑 릴레이 챌린지 장려상' 수상, 전라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표창

• '행복한 마음 만들기'(2023-2024)

- 우울증과 자살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담당 인력과 외부 강사 투입 - 1회 2시간씩 8회 진행 - 정보 제공, 교육, 요가, 노래 교실, 웃음 치료 등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 **언론보도** • 고흥군, '정신건강 증진사업' 우수 기관상 수상(고흥군청 보도자료, 2023. 10. 27.) - '2023년 정신건강 화합 한마당 행사'에서 정신건강 증진사업 유공으로 우수 기관상 수상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1874&boardId=BD_00025&pageId=www102 • 고흥군, 초등학생 대상 마음 튼튼! 마음 톡톡! 공연 펼친다(고흥군청 보도자료, 2024. 7. 10.) -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10개소의 868명 아동을 대상으로 공연 진행 -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3050&boardId=BD_00025&pageId=www102 • 고흥군, 정신질환자 집중 관리 및 발굴에 총력(고흥군청 보도자료, 2023. 8. 10.) - 기사 작성일 기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록 관리하는 정신질환자는 150명 - 재활 정신질환 대상에 대하여 사회적 적응 훈련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주 2회 운영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1534&boardId=BD_00025&pageId=www102 • 고흥군 보건소, 찾아가는 보건사업 운영...분야별 강사 17명 위촉(고흥군청 보도자료, 2023. 2. 13.) - 경로당 및 마을회관 64개소를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및 정보 제공 예정 - 2022년 '찾아가는 보건사업 프로그램'에서는 55개소에서 총 518회, 누적인원 6,856명 참여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0750&boardId=BD_00025&pageId=www102 • 고흥군, 토닥토닥 마음 살펴주는 치유교실 운영(고흥군청 보도자료, 2025. 3. 11.) - 4개소에서 42회 운영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4134&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 행	개 정 안	비고(사유)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고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명칭 변경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9조 및「정신보건법」제13조에 따라 고흥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제14조 및「정신보건법」제12조----------정신건강복지센터 ----------.	조항이동 명칭변경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정신건강증진센터”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	명칭변경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설치·운영)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라 한다)를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제3조(설치·운영) ① ----------.	명칭변경
②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명칭변경

제4조(인력) 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으로 하여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인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명칭변경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센터장으로 위촉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명칭변경
제5조(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9. (생 략)	제5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1. ~ 9. (현행과 같음)	명칭변경
제6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명칭변경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2. (생 략)	제7조(이용제한) ---------- 정신건강복지센터----------. 1.·2. (현행과 같음)	명칭변경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 정신건강복지센터----------	명칭변경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명칭변경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1. 정신건강복지센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3. ------ 정신건강복지센터----------	명칭변경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보건소장 및 정신보건사업 담당 공무원,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정신보건 임상자문의, 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직원), 협력기관 담당자 등 7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 ---------- ----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 ---------- ---------- ---------- ----------.	명칭변경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신보건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고흥군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 ---------- ---------- ---------- ---------- ---------- ---------- ---------- ---------- ----------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명 변경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붙임 1]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 2025년 고흥군 시행계획

추진방향		2025년 추진계획
추진전략	중점(핵심) 과제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	적극적 정신건강증진 분위기 조성	맞춤형 심리상담 및 정보제공
		정신건강인식개선 홍보
	대상자별 예방 접근성 제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청장년층 정신건강증진사업
		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임산부정신건강교육
		다문화여성 정신건강교육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	재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정신의료서비스/인프라 선진화	재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보건_복지 협력 활성화
		지역사회 조직 역량 강화
	지역기반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협의체 운영
	집중 치료 및 지속지원 등 치료효과성 제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간재활프로그램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퇴원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 추진	지역사회 기반 재활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발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지역사회내 자립지원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가족지지 모임 및 교육
	정신질환자 권익 신장 및 인권 강화	정신질환 인식 개선 주간 운영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중독 및 디지털 기기 이용 장애 대응 강화	마약류 등 약물중독 관리체계 구축	약물중독 폐해에 대한 캠페인 등 홍보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아동 청소년 디지털기기 이용 장애 예방교육 및 홍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자살고위험군 발굴과 위험요인 관리	생명지킴이 양성
		번개탄 자살수단 차단 및 관리강화
		근거기반자살예방사업
	고위험군 지원 및 사후관리	자살유가족 지원 사업
	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자살 위기지원을 위한 신규 전담
정신건강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정신건강관리 전문인력 양성	비정신건강전문요원 직무교육
		정신건강전문인력 지속 확충

[48] 고흥군 명예읍면장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행정과	시행일	2009. 04. 10.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해당 없음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위촉 ③임무 ④복무 ⑤예우 및 실비지급 ⑥해촉		
	• 목적 -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 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임무 -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 공무원 및 주민상담지도 -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복무 -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회 당해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월 1회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함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제3조 임무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 제4조 복무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4년 530백만원(행사추진위원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띄어쓰기 - 제4조: 당해읍면에, 월 1회이상 → 당해 읍면에, 월 1회 이상 - 제6조: 있을때에는 → 있을 때에는 • 용어정비 - 제6조: 부적당하다고 →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실현성	□ **이행** • '24년 행사추진위원회 530백만원 재정 지원	
실효성	□ **성과** • 출향인사 중심으로 명예읍면장 제도 운영 중,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실시 이후 중요성이 높아짐 • 고흥군, 재경고흥군향우회 제24차 고향방문 성황리에 열려(무등저널뉴스, 2025. 6. 13.) - 고향사랑기부금 2억 원 기탁, 명예군수·홍보대사 등 위촉, 고향변화발전 주말 동행 http://www.mdjournal.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463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4조(복무)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회 당해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월 1회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복무) ---------- 당해 읍면---------- -- 1회 이상 ----.	띄어쓰기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읍면장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 ----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 있을 때---------- -------.	용어정비 띄어쓰기

2. 정책 제안 사항

• 현재 명예읍면장 제도는 출향인사들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음

- 출향인사들이 군 행사에 참여하고 고흥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고향사랑기부제 실시 이후 출향인사들의 참여가 중요해짐

• 현재 고흥군에서는 명예군수 제도도 운영되고 있어 이를 포함하도록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함

- 신안군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참조

신안군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0. 1.]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766호, 2024. 10. 1., 일부개정]

전라남도 신안군(문화예술관광국 행정지원과), 061-240-82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발전을 위한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고, 신안군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신안군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신안군 명예군수(이하 "명예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안군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대외적으로 신안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2. 기업활동, 학문연구 등으로 신안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4. 문화·예술·체육 등 신안군과 인연을 맺어 신안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
5. 국내·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재외 동포, 타 시군 출신인 사람

② 명예읍·면장(이하 "명예읍·면장"이라 한다)은 덕망이 있는 출향인 또는 대외적으로 신안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위촉방법) 제2조에 따라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위촉패를 수여한다.

제4조(직무) ①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신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 시책 홍보활동
2. 신안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
3. 군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주요행사 참석
4. 그 밖에 주민화합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정자문 및 읍·면행정의 자문
2.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임기와 해촉)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이라도 신안군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위촉대장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군정을 위한 대내외 활동 시 군수 또는 읍·면장에 준하는 의전상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수당지급 등)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재직 중에 취득한 공무상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부칙 <조례 제2500호, 2022.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9] 고흥군 교복지원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시행일	2018. 09. 28.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지원대상의 범위 ④지원금액 ⑤신청 및 지급 ⑥환수 ⑦시행에 필요한 사항
	• 목적 -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지원대상의 범위 - 고흥군수는 학교 배정 기준일로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 구입비 지원 가능 • 신청 및 지급 -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 -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지원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 -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교복 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충족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유사 조례명 - 고흥군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 조례 통합 필요 사유	

	-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중복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교육청에 예산 지원, 교육청 자체계획 수립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8. 08. 24. ~ 09. 5. (15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17개교(중 13, 고 4), 553명(중 292, 고 261) • 지원액: 175,385천원(군 50%, 교육청 50%)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고흥군 교복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2016. 3. 4.子에 제정된 '고흥군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지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을 포함하고 있어 두 개의 조례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띄어쓰기 - 제6조: 환수 할 수 있다 → 환수할 수 있다	
실현성	□ **이행** • 교육청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교복 지원 - 17개교(중 13, 고 4), 553명(중 292, 고 261) - 지원액: 175,385천원(군 50%, 교육청 50%) • 교육복지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지원내용) 335천원/인(학교별 교복 단체 구입) - (신청)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 관내 고교 진학률 10% 올리기(2019-2023) - (주요내용) 관내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관내 고교 입학축하금 지원, 중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지원, 우수 명문고·특성화고 육성 지원 등 •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2023 주요업무계획) -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운영(사업비: 94백만원)	
실효성	□ **성과** • 교복 지원 성과	

구분	사업 내용	성과	비고
2019-2020	관내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20개교, 706명	212백만원
2021	관내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20개교, 664명	200백만원

□ **언론보도**

• 고흥군, 관내 고교 신입생 교복비 및 입학 축하금 지원(브릿지경제, 2019. 4. 10.)

-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 5개교 330여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하복 구입이 완료되지 않은 녹동고에 5월 중으로 지급 예정

https://www.viva100.com/20190410010003631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구입비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6조(환수) ---------- ---------- ---------- ----- 환수할 ------.	띄어쓰기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50] 고흥군 발포역사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문화체육과	시행일	2017. 12. 07.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해당 없음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위치 ③운영시설 ④관람 및 매표시간 ⑤개관 및 휴관 ⑥관람료 ⑦관람 이용의 제한 ⑧변상 및 손해배상 ⑨시행규칙		
	• 목적 - 발포역사전시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관람료 -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 • 변상 및 손해배상 - 관람객이 전시체험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 해야 함 -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고흥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어법 - 제4조제2호: 체험관은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을 체험할 수 → 체험관은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을 • 띄어쓰기 - 제6조제2항: 고흥군홈페이지 → 고흥군 홈페이지 - 제9조제5호: 필요 하다고 → 필요하다고 • 조례명 변경 - 제10조제2항: '고흥군 물품관리 조례' →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
실현성	□ **이행** 5년간 예산 편성 현황(사업명: 발포 역사전시체험관 운영, 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실효성	□ **목적 및 성과** • 조례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언론보도** • 고흥군, 설 연휴 가족과 함께 즐기는 체험프로그램 '풍성'(뉴스워커, 2023. 1. 19.) - 설을 맞이하여 군민과 귀성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주요관광시설 정상 운영 - 발포역사전시체험관 설 당일을 제외한 연휴기간 정상 운영 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786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액	47,001	18,199	16,080	16,560	16,560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4조(운영시설) 전시체험관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운영시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험관은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공간을 말한다.	2. ---------- ----- 설치해 둔 시설공간 ----------.	어법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생 략)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시체험관의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에 게시판 및 고흥군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 고흥군 홈페이지 ----------.	띄어쓰기
제9조(관람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시체험관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관람 이용의 제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금지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	5. ---------- 필요하다고 ----------	띄어쓰기
제10조(변상 및 손해배상) ① (생 략)	제10조(변상 및 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고흥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조례명 변경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51] 고흥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시행일	2021. 05. 11.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 정의 ③군수의 책무 ④시행계획 수립 등 ⑤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 ⑥피해자 보호 ⑦협력체계 구축 ⑧홍보 ⑨비밀준수 의무 ⑩시행규칙		
	• 목적 -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흥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 시행계획 수립 등 - 디지털 성범죄 방지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피해자 보호 • 협력체계 구축		

총괄평가		
종합의견	• 현행 유지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충족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고흥나누리통합상담센터 운영 및 폭력 피해자 지원 계획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교육이나 홍보, 기관 교류 또는 협력체계 구축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1. 04. 08. ~ 04. 14. (7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충족	
실현성	□ **이행** • 고흥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시행계획 수립 • 고흥나누리통합상담센터 - 2009년에 개소하여, 폭력피해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며 운영중에 있음 - 상담사업, 교육사업(폭력예방 교육,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사업(법률 및 의료 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음 - (지역협력) 11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전남청, 경찰서, 순천보호관찰서, 교육지원청, 보건소, 키다리정신과 등) - (상담방법) 내방, 전화, 찾아가는 상담(긴급상담시 재발방지 모니터링), 인터넷 - (프로그램)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가정폭력 재발방지 모니터링 사업', '피해자 자립지원 운영사업',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히말라야 상잉볼 이완 명상, 감정 아로마 테라피, 핸드팬 힐링명상, 미술치료 및 놀이 • 성교육 실시 - 학교 밖 청소년, 공무원, 부모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또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	
실효성	□ **성과** • 디지털성폭력 및 교제폭력 홍보캠페인 - 고흥나누리통합상담센터에서 성범죄에 대한 교육 및 인식 개선과 피해자의 심리 정서 지원을 홍보하기 위해 진행 · '24. 4. 16. 고흥고등학교 · '24. 4. 17. 늑동고등학교 · '24. 4. 19. 고흥과학산업고 · '24. 4. 23. 고흥여자중학교 □ **언론보도** • 고흥군 드림스타트, 아동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고흥군청 보도자료, 2023. 11. 16.) - 드림스타트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1964&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 현행 유지		

[52] 고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table>
<tr><th colspan="5">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소관부서</td><td colspan="2">여성가족과</td><td>시행일</td><td>2020. 12. 24.</td></tr>
<tr><td>조례 구분</td><td colspan="4">■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rowspan="2">관계 법령</td><td colspan="2">법령명</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아동복지법</td><td colspan="2">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td></tr>
<tr><td rowspan="2">주요
내용</td><td colspan="4">•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군수의 책무 ④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⑥아동실태조사 실시 ⑦아동영향평가 ⑧건강증진 및 안전망 구축 등 ⑨홍보 및 교육 ⑩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⑪위원회의 구성 ⑫위원의 임기 ⑬위원장의 직무 ⑭회의 ⑮위원의 해촉 ⑯아동권리 옹호관 위촉·운영 ⑰아동권리 옹호관의 기능 ⑱아동참여위원회 설치 ⑲기능 ⑳구성 ㉑위원의 임기 및 해촉 ㉒회의 ㉓지원·포상</td></tr>
<tr><td colspan="4">• 목적
-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고흥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주요시책
-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아동실태조사 실시
• 아동영향평가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계획
-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아동관련 중장기 사업계획
-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
-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해야 함</td></tr>
<tr><td rowspan="5">총괄평가</td><td rowspan="2">종합의견</td><td colspan="3">• 폐지 권고
-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미실시로 실효성 없음</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2">□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일반정비</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colspan="2">• 미충족</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2">• 미충족</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th></tr>
<tr><td>분석항목</td><td>세부항목</td><td>척도, 의견 및 자료</td></tr>
<tr><td>조례의</td><td>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td></tr>
</table>

실효성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계획 미수립 사유 -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미시행에 따른 2025년 본예산 미편성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실태조사, 교육이나 홍보, 추진실적 성과평가, 포상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미시행에 따른 2025년 본예산 미편성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0. 11. 11. ~ 11. 30.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미지원 사유 -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미실시 -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안 됨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군수는 아동위원회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아동친화도시 조성 인증을 위해 투입되는 재원 대비 인증효과 미미 • 사업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별도 상설조직 및 전담인력 확보 등은 고흥군 행정 조직 운영 효율성 저해할 우려 있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 아동참여위원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미실시로 인해 운영 필요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유니세프에서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우리 군에 직접적 혜택이나 재정적 지원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인증사업을 위해 요구되는 별도의 상설조직 및 전담인력 확보 등은 고흥군 행정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해당 조례 폐지 검토 필요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용어정비 - 제3조제2호: ·행재정적 지원 →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10조제6호: 관하여 → 생략 • 띄어쓰기 - 제5조제2항: 수립 할 시에 → 수립할 시에	

<table>
<tr><td></td><td>- 제11조제3항: 특정성별이 → 특정 성별이
• 오탈자
- 제7조제3항: 다음 각 호이 → 다음 각 호의
• 조례명 변경
- 제23조제2항: 고흥군 포상조례 → 고흥군 포상 조례</td></tr>
<tr><td>실현성</td><td>□ 미이행
• 2024년도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2025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미실시로 인해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등을 진행하지 않음
• 소관부서에 의하면 2025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미실시하는 사유는 유니세프에서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고흥군에 직접적인 혜택이나 재정적 지원이 없어 실효성 없고, 해당 사업을 위한 별도의 상설조직 및 전담인력 확보는 고흥군 행정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
• 아동친화도시 인증추진 계획(2021-2022)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 달성 및 심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
- 아동친화도시 10대 구성요소 정리 및 2022년 아동친화도시 인증 후, 이후로는 4년마다 재인증하는 추진계획 마련
-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table><tr><th>구분</th><th>아동친화도시 인증추진</th><th>비고</th></tr><tr><td rowspan="3">2020</td><td>고흥군 아동 실태조사 및 친화도 평가</td><td>2월-8월</td></tr><tr><td>고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민참여 원탁토론회</td><td>10월</td></tr><tr><td>고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td><td>12월</td></tr><tr><td rowspan="3">2021</td><td>아동친화도시 위원회 구성</td><td>6월</td></tr><tr><td>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td><td>8월</td></tr><tr><td>UN아동권리협약 홍보 및 아동권리 교육</td><td>12월</td></tr></table>
• 시끌벅적 「바닥놀이 마당」 조성(2022)
• ‘아이를 품GO 희망을 담GO 고흥을 열GO’(2023-2024)
-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활동
- 아동친화도시 인증 보고서 작성 및 신청
• 2024년도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table><tr><th>구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r><tr><td>예산액</td><td>25,500</td><td>25,500</td><td>23,500</td><td>37,500</td><td>미편성</td></tr></table>※ ‘24년 아동친화도시 인증 컨설팅 연구용역 실시로 인해 예년보다 예산이 높게 편성됨
• 재정 지원
-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미실시로 인해 재정적 지원 미이행
• 위원회</td></tr>
</table>

-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미실시로 인해 위원회 미구성 및 미운영

•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행정체계와 제도를 갖춘 지역사회로, 지방정부 행정체계 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될 수 있는 대표적 수단

- 유엔아동권리협약 중 4가지의 조항을 주요 기반으로 함

· 제2조 비차별의 원칙,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제6조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 제12조 아동 의견 존중

- 아동친화도시 변화모형: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요건(5대 목표 + 6대 아동친화 영역, 붙임1 참조)

- '25. 7. 기준 전라남도 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

· 영광군, 강진군, 해남군,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장흥군, 화순군,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 전라남도 내 22개의 지자체 중 11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음

□ **공정성**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 제11조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 관련하여 성별 균형 고려를 규정하고 있음

• 아동참여위원회

- 제20조제2항에서 성별, 연령, 권역 등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위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실효성

□ **성과**

• 아동친화도시 인증추진 계획

- '20년 고흥군 아동 실태조사 및 친화도 평가 진행

• '22년 시끌벅적 「바닥놀이 마당」 설치

- 녹동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

• 현재는 추진을 중단한 상태로 실효성 없음

□ **지난 10년간 고흥군 아동 수와 인구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있음**

•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인한 실질적 혜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흥군의 아동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고흥군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추진여부를 재고해야 함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출산율		1.091	1.323	1.153	1.168	1.438	1.459	1.245	1.095	1.153	1.280
아동인구	수(명)	7,245	6,809	6,462	6,039	5,754	5,535	5,233	4,956	4,703	4,485
	비율(%)	0.106	0.101	0.097	0.092	0.089	0.087	0.083	0.080	0.077	0.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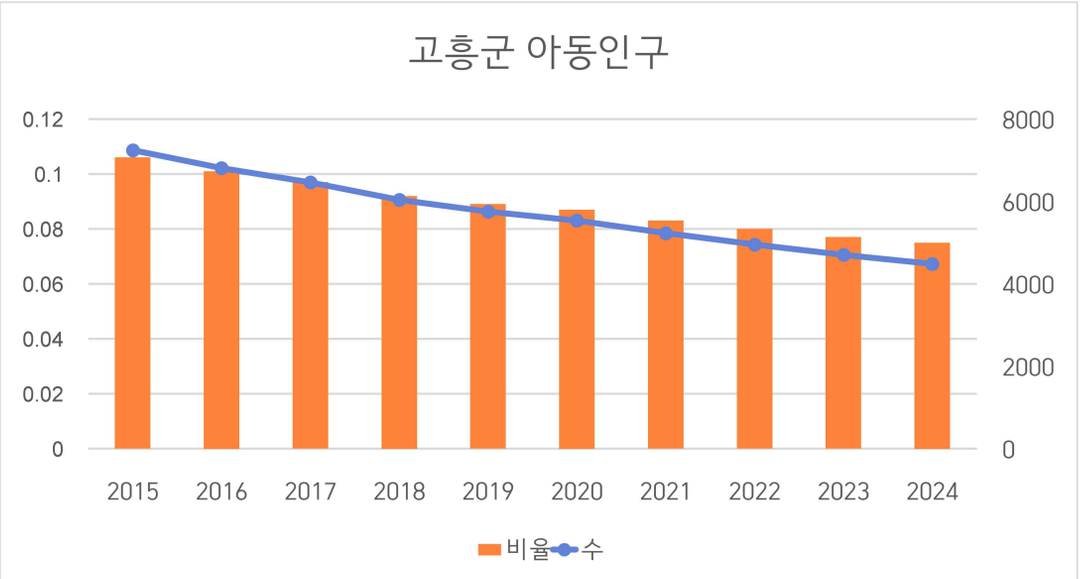

□ **타 지자체 사례**

- 전라남도 해남군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22년 조례 제정, 전담부서 신설, 아동친화도시 4개년 중점 사업 발굴, 아동 권리 교육 등 체계적으로 추진을 이어 2025년 6월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https://www.fnnews.com/news/202506101355253262)

- 전라남도 화순군

- 2회 연속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 아동의 참여권 확대, 아동권리 교육 강화, 아동친화공간 조성, 아동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정책 추진

- 매년 내실 있는 아동청소년의회 운영을 통해 아동의 정책·사업 제안 기회 제공

- 제2기 아동친화도시 계획: 아동친화 중점사업을 14개의 부서에서 49개의 사업으로 확대 및 모니터링 실시, 아동권리교육 및 캠페인 확대, 다양한 아동 의견 수렴 창구 마련, 아동권리대변인의 역할 강화를 통한 아동권리침해사례 관리 및 고충 처리, 다양한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참여를 통한 폭넓은 의견 반영

- 충청북도 진천군

- 2019년 6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담팀 '아동친화드림팀' 신설 이후 2022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 '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연구용역 실시,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약 체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권리 옹호관 구성

- '21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수립 연구용역 실시, 군민 참여 원탁토론회 실시,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구성,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수립

- '22년 아동친화도시 업무추진단 구성, 아동권리교육 실무협의체 구성,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중장기 계획 수립,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해남군과 화순군, 진천군을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규정을 준수하며, 전담부서 신설, 다양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기존 사업의 확대 등을 추진함을 알 수 있음

- 이에 고흥군 또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인증을 위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확대 또는 전담부서 신설 등 더욱 체계적인 추진을 제안

- 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을 경우, 폐지 제안

	□ **언론보도** • 고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관리 옹호관 위촉(고흥군청 보도자료, 2022. 10. 21.) - 아동관리 옹호관 위촉 및 정기회의 개최 - 아동관리 옹호관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의 역할 수행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0413&boardId=BD_00025&pageId=www102 • 고흥군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정책 간담회 열어(고흥군청 보도자료, 2022. 11. 21.) - 유니세프 아동의회 아동의원 3명과 고흥군청청소년참여기구 위원 2명이 6개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 제안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0481&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행·재정적 지원	2. ---------- ----- 행정적·재정적 -- ----------	용어정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에 아동을 포함한 고흥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수립할 ---------- ---------- ---------- ---.	띄어쓰기
제7조(아동영향평가) ①·②	제7조(아동영향평가)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아동영향평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 각 호의 ---------- -.	오탈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흥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 --- 군수---------- ----------	용어정비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 ---------- 특정 성별---------- ---------- ----------.	띄어쓰기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3조(지원·포상) ① (생 략)	제23조(지원·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아동위원회 활동에	② ----------	조례명 변경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군정 발전을 위한 제안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위원에 대하여 「고흥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 ---------- 「고흥군 포상 조례」----- ---------- --.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붙임 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요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분	목표 및 영역
5대 목표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아동 참여 및 권리교육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6가지 아동친화영역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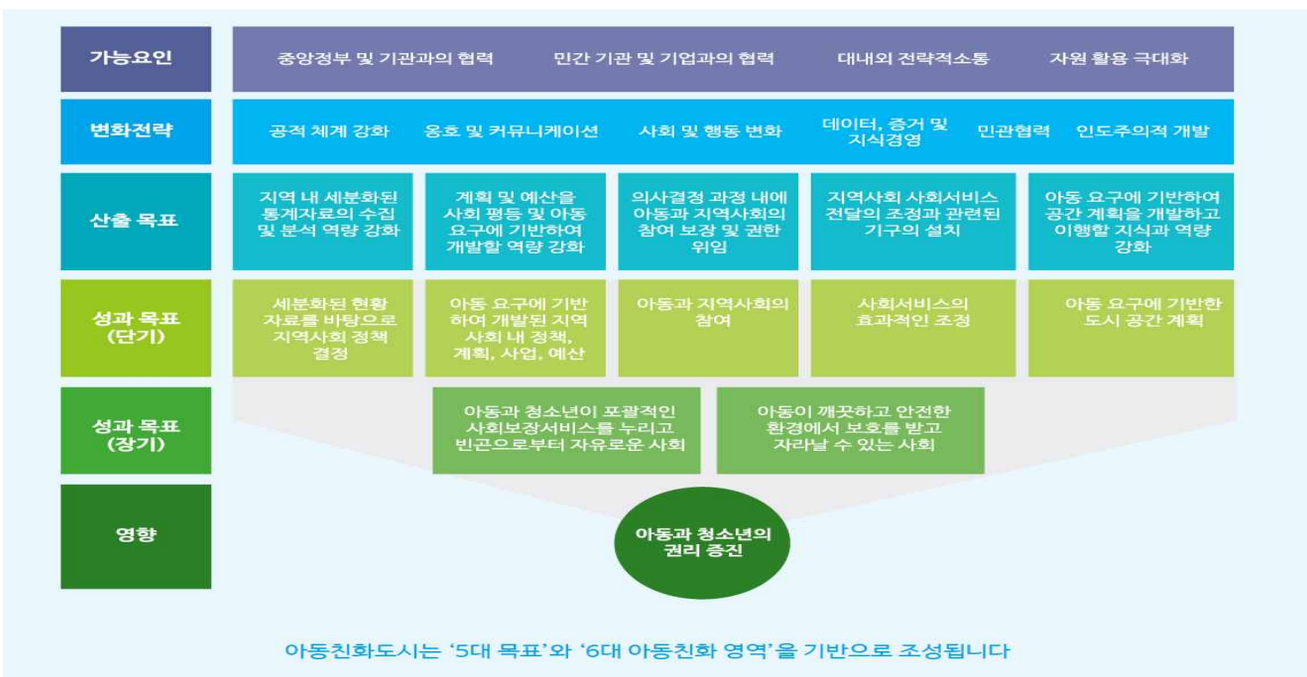

[53] 고흥군여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시행일	2019. 10. 02.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위치 ③업무 ④사용승인 ⑤사용료의 납부 ⑥사용료의 면제 ⑦사용료의 반환 ⑧위탁관리 ⑨시행규칙			
	• 목적 - 고흥군여성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 • 업무 -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한 교육 - 여성의 취·창업 교육 및 상담 · 연계 - 여성단체의 활동지도 -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조손이함께하는놀이방, 희망나눔가게 등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시설이나 장비 대여 또는 사용 승인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9. 08. 06. ~ 08. 25. (20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띄어쓰기 - 제3조제1호: 여가선용을 위한 → 여가 선용을 위한 - 제6조제1호: 공익목적으로 → 공익 목적으로 • 용어정비 - 제4조제5호: 부적당하다고 →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 제6조: 요보호 대상자 →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 제9조: 관하여 → 생략 • 상위법명 변경 - 제6조제3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실현성	□ **2025년 주요업무계획** • 행복한 양육 지원 - 조손놀이방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대상: 2개소 · 사업비: 83백만원 · 주요내용: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제공, 자녀돌봄 품앗이, 상시프로그램 운영 - 아이행복센터 운영 대상: 1개소 · 사업비: 83백만원 · 주요내용: 장난감대여 나눔터, 가족 품앗이 프로그램 운영 • 고흥군 여성지원센터 - 2019년 7월 26일 개관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음 - 취업 실습 및 상담실, 공동육아나눔터,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 행복나눔가게, 장난감 대여·나눔터, 여성단체협의회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행복나눔가게 · 옷, 신발, 가전용품, 장난감, 도서, 생활용품 등을 아나바다 · 수익금은 불우이웃 돕기 지정기탁 하고 있음	

- 교육프로그램

· '나를 가꾸는 「원데이 클래스」 운영' : 공예, 공방, 베이킹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 꽃꽂이, 우쿠렐라, 건강밥상 가정요리, 한식조리기능사 자격 취득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고흥 공동육아나눔터

·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 및 운영 등

- 도양 공동육아나눔터

·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 및 운영 등

-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

· 조손이 함께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조손의 유대관계 증진과 소통의 기회 제공을 위한 조손동행 외출 지원 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결혼이나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

· 구인·구직 연계 및 취업상담·알선, 새일여성인턴,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 여성근로자 역량 강화 교육 등

• 5년간 예산 편성 현황(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회계연도	세부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1	여성지원센터 운영	106,381	행복 나눔가게 운영 4회
			여성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등
	조손 놀이방 운영	60,000	조손놀이방 1호점(여성지원센터 내)
			조손놀이방 2호점(고흥남계LH아파트 내)
			1·3세대 행복한 동행 프로그램 운영
2022	여성지원센터 운영	98,185	행복 나눔가게 운영 4회 등
	조손 놀이방 운영	53,000	조손놀이방 1호점
			1·3세대 행복한 동행 프로그램 운영
2023	여성지원센터 운영	101,401	행복 나눔가게 운영 등
	조손 놀이방 운영	93,000	조손놀이방 1호점
			1·3세대 행복한 동행 프로그램 운영
2024	여성지원센터 운영	81,516	일반 운영비 등
	조손 놀이방 운영	100,000	조손놀이방 1호점
			1·3세대 행복한 동행 프로그램 운영
2025	여성지원센터 운영	81,598	일반 운영비 등
	조손 놀이방 운영	100,000	조손놀이방 1호점
			1·3세대 행복한 동행 프로그램 운영

• 고흥군 여성지원센터는 여성의 삶과 질 향상, 취업 상담 및 연계, 돌봄공간 운영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고흥군 행사 및 사업 등의 개최 및 운영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

실효성

□ **성과**

• 고흥여성지원센터 운영 성과

사업명	성과	비고
취창업·자기개발 등 여성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48개 과정 진행 719명 참여	~'21년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상담실 운영	취업 977명 상담 8,590명	~'21년
장난감 대여·나눔터	1,355명/2,460점	~'21년
행복나눔가게 장터	2회 운영 600명 참여	~'21년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	맞춤형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120회 운영 2,000명 이용	~'21년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인원 2,496명 프로그램 84회, 1,425명 참여 4,540명 이용	~'20년 ~'21년

• 고흥 공동육아나눔터(2개소)

- '22년 3,785명 이용, '23년 3,341명 이용, '24년 9,717명 이용
- 오감놀이 프로그램 "감감쑥쑥!! 오감톡톡!!" 볼풀공 놀이 진행
- 고흥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미미 식생활 체험" 운영 -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 그 밖의 음악활동 프로그램, 아빠와 함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

- '23년 2호점 신규 개소(도양읍), '24년 1,291명 이용
- 2025 조손가족 외출동행 지원 "1.3세대 행복한 동행" – 백향과 체험, 허브솔트 체험, 한식디저트 체험 등 다수 진행
- 그 밖의 세대공감프로그램, 오감발달 프로그램, 가족기능향상프로그램, 음악놀이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 여성대학 모집,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장소 제공 등 타 사업 지원 및 대관 기능 수행

□ **정책환경 수용성**

•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 시설이용자 만족도 조사 시행: 35회, 234명

-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으로 수시 만족도 진행 후 의견을 반영

□ **언론보도**

• 고흥군, 상반기 '여성미래 행복과정' 수강생 모집(고흥군청 보도자료, 2025. 3. 25.)

-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 한식조리기능사 과정 개설 등 취·창업을 위한 자격증반과 우쿨렐라 등 교양 및 취미 강좌로 구분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4203&boardId=BD_00025&pageId=www102

	• 고흥군, 나를 가꾸는 원데이 클래스 수강생 모집(고흥군청 보도자료, 2024. 8. 20.) -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맞추고, 여성이 삶이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수업 운영 - 쿠키 만들기, 코바늘뜨기, 테라리움, 라탄 공예 등 4개 강좌 개설 -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반 개설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3227&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업무) ----------.	
1.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한 교육	1. ---------- 여가 선용----------	띄어쓰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승인) 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사용승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5. ----------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	용어정비
제6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때	1. ---------- 공익 목적----------	띄어쓰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요보호 대상자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보호가 필요한 ----------	상위법명 변경 용어정비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시행규칙) ---------- --- 필요한 ----------.	용어정비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54] 고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시행일	2021. 05. 11.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책무 ④시행계획의 수립 등 ⑤피해자 보호와 지원 사업 ⑥고흥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⑦위원회의 구성 ⑧위원의 임기 ⑨위원의 해촉 ⑩위원장의 직무 ⑪위원회의 운영 ⑫간사 ⑬운영세칙 ⑭실태조사 ⑮2차 피해 방지 ⑯예방교육 및 홍보 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⑱비밀 누설 금지 ⑲시행규칙			
	• 목적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 • 2차 피해 방지 -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예방교육 및 홍보 •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총괄평가	종합의견	• 현행 유지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충족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고흥나누리통합상담센터 운영 및 폭력 피해자 지원 계획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교육이나 홍보, 기관 교류 또는 협력체계 구축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1. 04. 08. ~ 04. 14. (7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고흥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table>
<tr><td rowspan="2"></td><td>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종합 의견</td><td colspan="2">• 없음</td></tr>
<tr><td colspan="3">3. 입법평가 결과</td></tr>
<tr><td>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충족</td></tr>
<tr><td>실현성</td><td colspan="2">□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 여성 1인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 대상: 범죄대응능력이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심 홈세트 지급
※여성범죄 피해자, 한부모 모자가정 우선
※고흥군에 주민등록된 여성 1인가구 선착순
- 소요예산: 5백만원 ※ 25가구 선정
- 지원내용: 스마트 홈카메라, 창문 잠금장치, 호신용 경보기, 송장 지우개
※ 구성품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강한 가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 소요예산: 392백만원
- 주요내용: 통합상담센터 운영 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 추진계획
<table><tr><th>주요 내용</th><th>세부 내용</th></tr><tr><td>고흥 나누리 통합상담센터 운영 지원</td><td>전문 상담 인력 인건비,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및 교육·홍보 활동 지원 등 운영비 지원</td></tr><tr><td rowspan="6">안전한 사회를 위한 폭력 피해자 지원</td><td>피해자 의료비 지원</td></tr><tr><td>피해 재발 방지 모니터링</td></tr><tr><td>피해자 임시 숙박비용 지원</td></tr><tr><td>피해자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td></tr><tr><td>피해자 마음치료상자 제공</td></tr><tr><td>아동복지시설 성폭력 피해 아동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등</td></tr><tr><td rowspan="3">사회 전반적인 인식개선을 통한 폭력 피해 방지</td><td>‘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일반군민 대상)</td></tr><tr><td>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폭력예방교육</td></tr><tr><td>고위직 공무원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td></tr></table>
□ 이행
• 고흥나누리통합상담센터 운영 및 폭력 피해자 지원 계획 수립</td></tr>
</table>

• 고흥나누리통합상담센터

- 2009년에 개소하여, 폭력피해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며 운영중에 있음
- 상담사업, 교육사업(폭력예방 교육,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사업(법률 및 의료 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음
- (지역협력) 11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전남청, 경찰서, 순천보호관찰서, 교육지원청, 보건소, 키다리정신과 등)
- (상담방법) 내방, 전화, 찾아가는 상담(긴급상담시 재발방지 모니터링), 인터넷
- (프로그램)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가정폭력 재발방지 모니터링 사업', '피해자 자립지원 운영사업',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 가정·성폭력 피해자 1일 치료비 및 입원비 지원
- 군 경찰서와 병원 업무협약 체결

• 4대 폭력예방 교육 실시

- '24. 4. 26. 6급 이하의 전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 '23. 10. 23. 고위직 공무원 44명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 '20년부터 임시숙소지원, 의료비 지원,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하고 있음

• '22년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설치 운영 계획

- 임시보호시설 설치
- 심리상담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 '24년 가정폭력피해자 「마음치료상자」 제공 계획

- (사업대상) 가정폭력피해자 중 임시숙소 이용자
- (키트구성) 세면도구, 속옷, 슬리퍼, 충전기, 간편죽 등 긴급하게 피신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필수생활용품 지원, 50세트 마련

• 5년간 예산 편성 현황(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회계연도	세부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1	여성권익 증진 中 가정폭력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3,000	60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167,175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가정폭력상담소 시설 개보수 등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5,000	여성폭력피해자 20명 지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4,548	-
	가정폭력 피해 재발방지 사업	3,500	가정폭력피해 재발방지 모니터링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5,400	5명*12월
2022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203,998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여성폭력방지시설 도 추가지원

회계연도	세부사업명	예산액	비고
			가정폭력상담소 임대료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5,000	여성폭력피해자 20명 지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4,867	-
	가정폭력 피해 재발방지	3,500	가정폭력피해 재발방지 모니터링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5,400	5명*12개월
2023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204,998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여성폭력방지시설 도 추가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임대료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5,000	여성폭력피해자 20명 지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4,867	-
	가정폭력 피해 재발방지	4,250	가정폭력피해 재발방지 모니터링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5,400	5명*12개월
2024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199,115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가정폭력상담소 인건비 등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4,640	20회 지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6,486	1회
	가정폭력 피해 재발방지	3,450	가정폭력피해 재발방지 모니터링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5,400	5명*12개월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설치 운영	28,000	임시 숙박비용(60일)
			자립지원 프로그램
			마음치료상자(50개)
	여성폭력방지시설 운영 도 추가지원	35,446	1개소
	4대폭력 예방교육	18,300	교재, 책자 등 예방교육
2025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286,372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가정폭력상담소 인건비 등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4,150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5회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5회
	가정폭력 피해 재발방지	2,300	재발방지 모니터링 1개소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7,560	7명*12개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27,000	임시 숙박비용(40일)
			자립지원 프로그램
			마음치료상자(50개)
	여성폭력방지시설 운영 도 추가지원	48,930	1개소
	4대폭력 예방교육	12,400	-
	여성폭력방지시설 치료회복프로그램	1,700	1개소

- 고흥나누리통합상담센터는 2019년도와 2024년도 국비 지원 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가정폭력 상담 홍보방식 개선

- 안심귀갓길 로고라이트를 활용화여 개선

	– 가정폭력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 내 이주 여성들 중 베트남 여성들이 47%를 차지하고 있어, 로고라이트 33개소 중 5개소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홍보 • 고흥군은 매년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상담 홍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음 □ **공정성** • 고흥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 제7조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고려를 규정하고 있음
실효성	□ **성과** • 임시숙소 이용 - '22년 25건, '23년 28건 • 긴급생활키트 제공 - 고흥경찰서와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 - 의류, 세면도구, 상비약 등 17종으로, 24시간 긴급지원 가능 • '23년 '나누리 희망제작소 자립지원 프로그램' -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자립과 심리적 치료 병행을 위한 프로그램 - '행복 디저트 쿡' 진행 - 6명 참여, 매주 2회, 총 10회 운영 • '25년 '나누리 희망제작소 자립지원 프로그램' - "희망디저트 쿡!" 진핸 - 5월 20일 개강 이후 진행중에 있음 - 쉬폰케이크, 파운드, 스콘, 쿠키 등 주 1회마다 베이킹 □ **언론보도** • 고흥군, '가정폭력 상담 안내' 홍보 방식 개선(뉴스워커, 2023. 1. 11.) - 안심귀갓길 로고라이트를 활용하여 개선 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695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 해당 사항 없음	

[55] 고흥군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시행일	2016. 03. 24.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지원대상 및 기준 ④지원시기 ⑤신청절차 및 지원방법 ⑥지원중단 ⑦환수 ⑧시행규칙			
	• 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고흥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의 교복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지원대상 및 기준 -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자녀로 둔 저소득계층으로 함 - 고흥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가능			
총괄평가	종합의견	• 「고흥군 교복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지원 사업이 시행되어 폐지 필요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미충족		
	조례의 실효성	• 미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유사 조례명 - 고흥군 교복지원 조례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6. 02. 05. ~ 02. 25.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미지원 사유 - 고흥군 교복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 구입비 지원하고 있어 중복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 규정(행정·재정 지원 내용) -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자녀로 둔 저소득계층으로 한다. • 부적정 사유 - ‘고흥군 교복지원 조례’에 지원대상을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하고 있어 대상에 포함됨.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을 포괄하는 조례가 제정됨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2018. 9. 28. 구에 제정된 '고흥군 교복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고흥군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지원대상을 포괄하고 있어 두 개의 조례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오탈자 - 제2조제2호: 2 . "교복구입비"란 → 2. "교복구입비"란 • 띄어쓰기 - 제7조: 지체없이, 환수 할 수 있다 → 지체 없이, 환수할 수 있다 • 용어정비 - 제8조: 관하여 → 생략
실현성	□ **미이행** • 본 조례는 보편적인 교복 지원이 시행되기 이전에 제정된 조례로 현재 조례에 따라 이행되지 않고, 실효성도 없음 • 2018년 제정된 「고흥군 교복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본 조례의 폐지를 권고
실효성	• 실효성 없음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복구입비"란 저소득계	2. "교복구입비"란 --------	오탈자

층 가정의 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자가 신규로 교복을 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환수 할 수 있다.	제7조(환수) ---------- ---------- ---------- ------- 지체 없이 환수할 ----.	띄어쓰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 ---- 필요한 ---------- ----------.	용어정비

2. 정책 제안 사항

• 폐지 권고

[56] 고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시행일	2020. 12. 24.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적용 범위 ④군수의 책무 ⑤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⑥지원사업 ⑦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 등 ⑧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⑨지원센터의 위탁 ⑩지원센터의 지도·점검 등 ⑪후견인제도 운영 ⑫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⑬시행규칙
	• 목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 가능 • 후견인제도 운영 -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 운영 가능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하여 고흥교육지원청, 고흥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한 연계·협력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가능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고흥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간계획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센터 또는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교육이나 홍보, 인증기관 등 지정, 기관 교류 또는 협력체계 구축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0. 11. 11. ~ 11. 30.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상담지원(1,312건)/건강지원(43건) 생활지원(994건)/교육지원(371건) 자립지원(89건)/활동지원(100건) ⇨ 합계: 2909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 규정(행정·재정 지원 내용)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설치 여부 지자체 재량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용어정비 -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 교부 → 지급 • 띄어쓰기 - 제10조제2항: 회수 할 수 있다 → 회수할 수 있다	
실현성	□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 「미래의 주역」 청소년의 성장 지원 강화 - 소요예산: 914백만원 - 주요내용: 청소년 시설 운영, 유관기관 협력 복지·보호 활동 및 청소년 관련 단체 지원 등 - 추진계획 ·“꿈꾸는 자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마음충전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꿈드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이행**

• 고흥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간계획 수립

- 매년 「미래의 주역」 청소년의 성장 지원 강화 계획 수립에서 “꿈드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고흥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고흥군청)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고흥군문화의집 2층에 위치

- 2021년 1월 4일 개소

-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자립·교육·상담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검정고시 지원, 건강검진, 무료급식 제공 등도 지원 예정

• 5년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현황(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회계연도	세부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80,672	인건비, 홍보물 제작 상담프로그램 검정고시반 운영 문화체험 프로그램 직업기술교육 진로캠프활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	2,520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급식비)	5,050	-
202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15,304	인건비, 홍보물 제작 상담프로그램 검정고시반 운영 문화체험 프로그램 직업기술교육 진로캠프활동 지원 연금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	2,781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급식비)	4,444	-
20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29,467	인건비, 홍보물 제작 상담프로그램 검정고시반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급식비)	4,000	-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	2,781	-
20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31,390	인건비, 홍보물 제작 상담프로그램 검정고시반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급식비)	5,000	500명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	5,000	-
202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34,507	인건비, 홍보물 제작 검정고시반 운영

회계연도	세부사업명	예산액	비고
			자립지원 프로그램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급식비)	5,000	500명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	5,000	-

- '25년 성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성폭력 예방 교육 통합 실시
- 6월 20일 무안복합문화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
- '24년 원예상담 프로그램 운영
- (기간) 6월 19일, 6월 27일(2일간)
- 고흥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고흥읍 소재 사계절화원의 협약을 바탕으로 추진
- '23년 뛰뛰빵빵 잡(JOB)아라' 프로그램 운영
- (사업대상)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원비 지원
- 고흥군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와 고흥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3명으로 시작
- '23년 바리스타 자격 취득반 운영
- 주 2회 총 6회 동안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교육 진행
- '20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 (검진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박 청소년
- (검진항목) 건강검진 및 건강생활습관 조사 등
- 제5조에 따라 고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였으며,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2021년 고흥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 개소 이후, 센터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

실효성

□ **목적 및 성과**

- 본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목적으로 함
- 지원 성과
- 상담지원(1,312건)/건강지원(43건)
- 생활지원(994건)/교육지원(371건)
- 자립지원(89건)/활동지원(100건)

→ 합계: 2,909건

- 연도별 사업 추진 성과

구분	세부 사업	성과
2021	학교 밖 청소년 학습 및 급식지원	10명 / 상담지원: 1,169건
2022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건전 청소년 육성 지원	35,000명
	학교 밖 청소년 상담·교육·보호·자립·급식지원	17명, 5,391건

구분	세부 사업	성과
2023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건전 청소년 육성 지원	35,000명
	학교 밖 청소년 상담·교육·보호·자립·급식지원	15명, 2,357건
2024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건전 청소년 육성 지원	35,000명
	학교 밖 청소년 상담·교육·보호·자립·급식지원	21명, 2,283건

• 2022년 추가 성과

- 급식꾸러미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18회에 걸쳐 각 가정으로 1,000개의 꾸러미 전달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8명 합격, 합격률 89%

□ **언론보도**

• 고흥군,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최다 합격'(뉴시스, 2022. 12. 22.)

-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합격자 8명 배출

- 고흥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검정고시 대비반 '스마트 교실' 운영과 인터넷 수강권 및 교재 지원 등을 제공

-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들에 의하면 1:1 학습 진도 관리와 진로 및 고민 상담이 도움이 된 것으로 언급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1222_0002133329&cID=10899&pID=10800

• 고흥군,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생활지원 나서(고흥군청 보도자료, 2021. 3. 31.)

- '찾아가는 밥드림(Dream)꾸러미 전달 등 4개 프로그램 추진

- 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등록된 관내 학교 밖 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지원

- 매주 1회 방문 전달서비스 및 상담활동과 병행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9485&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10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등) ① (생 략)	제10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목적과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② ---------- ---------- -- 지급조건---------- ---------- 지급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지급한 -----	용어정비 띄어쓰기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 회수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 신청·지급·정산 ---------- ---------- ---------- ----------.	용어정비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57] 고흥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기획실	시행일	2025. 05. 22.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해당 없음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포상금 지급대상자 ③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④포상금 지급기준 ⑤포상금 지급액 ⑥포상금 지급신청 ⑦표창		
	• 목적 - 고흥군 또는 고흥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총괄평가	종합의견	• 현재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없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어 유지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미충족	
	조례의 실효성	• 미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포상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3. 09. 17. ~ 10. 08.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본 조례는 소송 수행자의 공적을 보상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실제 지급 사례가 드물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table>
<tr><th colspan="2">3. 입법평가 결과</th></tr>
<tr><td>법적
정합성</td><td>□ 일반정비
• 어법
- 제7조: 지급받은 자, 인정되는 자 → 지급받은 사람, 인정되는 사람</td></tr>
<tr><td>실현성</td><td>□ 미이행
• 2023년부터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음
• 예산은 2022년도까지만 편성(사업명: 소송사건 관리, 본예산 기준)
- 소송수행자 승소 보상금
(단위: 천원)
<table><tr><th>구분</th><th>2020</th><th>2021</th><th>2022</th></tr><tr><td>예산액</td><td>2,500</td><td>2,500</td><td>2,500</td></tr></table></td></tr>
<tr><td>실효성</td><td>□ 목적 및 성과
• 최근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례를 찾을 수 없어 성과 없음</td></tr>
<tr><th colspan="2">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th></tr>
</table>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7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제7조(표창) ---------- ---------- 사람 중 -- ---------- --- 사람은 ----------.	어법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58]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인구정책실	시행일	2018. 09. 28.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고용우수기업 인증 ④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 ⑤의견청취 등 ⑥인증의 유효기간 ⑦인증의 취소 ⑧고용우수기업 지원 ⑨시행규칙
	• 목적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관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일자리 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 • 고용우수기업 지원 - 인증패 및 현판 교부 - 기업홍보 - 고용환경개선 지원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미충족	
조례의 실효성	• 미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도 시행계획 미송부, 송부 시 계획 수립 예정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8. 02. 22. ~ 03. 13. (20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4-5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 개최 운영실적은 없음. • 2018년, 2019년 각 1건씩 위원회 개최한 사실이 있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용어정비, 띄어쓰기 - 제3조제3항: 기업애로사항 → 기업 고충사항 • 띄어쓰기 - 제4조제1항: 관내기업에 대하여 → 관내 기업에 대하여 • 오탈자 - 제4조제4항, 제5조: 고흥군 고흥군 일자리창출 위원회 → 고흥군 일자리창출 위원회	
실현성	□ **미이행** • 2025년도 예산 편성 확인 불가 •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지원을 위한 예산을 40,000천원씩 편성하였음(본예산 기준)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2023 주요업무계획) - 추진계획 中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기업(인증패 수여·고용환경개선금 2천만원 지원) · 전라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2개소 • '2025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인센티브 지원' 진행, 2023년 등 일부 기업들의 일자리 우수 기업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모두 전남도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에 선정된 것으로, 2019년 이후로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선정을 확인하기 어려움 • 전라남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과 중복	
실효성	□ **성과** • 2022년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고흥군 지역 내 기업체인 '폐기물처리업(주)송림'이 선정 - 고용환경 개선자금 2,000만원, 인증서 및 인증패(인증기간 2년), 시설자금 융자 한도 우대(15억 원), 운전자금 융자 한도 우대(3억 원), 이자(1.1~2.0%)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재정·행정적 지원 • '2023년 전남도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에 고흥청정식품단지 입주기업인 '(주)죽암에프앤씨'와 '(주)현도바이오푸드'가 선정됨(고흥군청 보도자료) - 고용환경 개선자금(기업당 2천만원), 시설자금·운전자금 융자 한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간) 등 지원 및 인증서와 인증패 수여 □ **언론보도** • 고흥군 2개 기업, 전남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에 선정(고흥군청 보도자료, 2023. 11. 21.)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1992&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3조(고용우수기업 인증) ①·②(생 략)	제3조(고용우수기업 인증) ①·②(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인증기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업애로사항 파악 등 인증제도 개선 보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 ---------- ------ 기업 고충사항 ---- ---------- ----------.	용어정비 띄어쓰기
제4조(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 ① 군수는 고용창출 및 근로자의 복지에 노력한 관내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4조(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 ① ---------- ---------- 관내 기업---------- ---------- ----------.	띄어쓰기
②·③(생 략)	②·③(현행과 같음)	
④ 고용우수기업은 고흥군 고흥군 일자리창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 고흥군 --- ---------- ------.	오탈자
⑤(생 략)	⑤(현행과 같음)	
제5조(의견청취 등) 고흥군 고흥군 일자리창출 위원회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견청취 등) 고흥군 --- ---------- ---------- ---------- ---------- ----------.	오탈자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59] 고흥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table>
<tr><th colspan="5">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 colspan="2">소관부서</td><td>인구정책실
이민정책팀</td><td>시행일</td><td>2010. 12. 27.</td></tr>
<tr><td colspan="2">조례 구분</td><td colspan="3">■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colspan="2" rowspan="2">관계 법령</td><td>법령명</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해당 없음</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주요
내용</td><td colspan="4">•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외국인주민의 지위 ④군수의 책무 ⑤지원대상 ⑥지원의 범위 ⑦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의 설치 ⑧위원회의 기능 ⑨위원장 ⑩회의 ⑪수당 등 ⑫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⑬업무의 위탁 ⑭세계인의 날 ⑮포상 ⑯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⑰명예군민 ⑱시행규칙</td></tr>
<tr><td colspan="4">• 목적
- 고흥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지원의 범위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세계인의 날</td></tr>
<tr><td rowspan="5">총괄평가</td><td colspan="2" rowspan="2">종합의견</td><td colspan="2">• 시책위원회 구성 중 성별균형 문구 추가</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2">□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일반정비</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colspan="2">• 이행</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2">• 충족</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th></tr>
<tr><th>분석항목</th><th>세부항목</th><th>척도, 의견 및 자료</th></tr>
<tr><td rowspan="2">조례의
실효성</td><td>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외국인 숙련공 레벨업 지원 •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자원봉사단 및 재능기부단 운영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실태조사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고흥군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위원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table>
<tr><td rowspan="6"></td><td colspan="2">• 법정위원회 명칭: 행정자치위원회</td></tr>
<tr><td>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 colspan="2">• 필요 사유
- 외국인 유입 증가</td></tr>
<tr><td>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종합 의견</td><td colspan="2">• 없음</td></tr>
<tr><td colspan="3">3. 입법평가 결과</td></tr>
<tr><td>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일반정비
• 조례명 변경
- 제11조: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용어정비
- 제18조: 관하여 → 생략</td></tr>
<tr><td>실현성</td><td colspan="2">□ 2025년 주요업무계획
• 고흥이라 흥 난다, 숙련공 레벨업 지원
- 대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취업한 외국인(E-9, E-7, H-2), F-2
·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후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간 고흥에 근로할 사람
- 소요예산: 41.18백만원
- 주요내용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3가구
· 한국어 능력시험 수수료 전액 무료 지원(Ⅰ 40,000원, Ⅱ 55,000원)
· 외국인 신규채용한 중소기업에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지원
•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취업한 외국인(E-9, E-7, H-2), F-2 비자
- 소요예산: 22백만원
- 주요내용
· 외국인 매칭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지원</td></tr>
</table>

· 외국인 법률상담 및 자격별 비자 상담 운영 등

• 글로벌 외국인 자원봉사단 운영

- 대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취업한 외국인(E-9, E-7, H-2), F-2 비자

- 소요예산: 5.4백만원

- 주요내용

· 관내 독거노인 등 지원이 필요한 집을 방문해 환경개선 봉사: 1년 / 5회

· 외국인 밀집지역 통·번역 지원 등 재능 기부

· 우수 자원봉사자 고흥군 군정 모니터링단 위원 위촉

□ **이행**

• '23년 외국인 초기 정착지원금 지원 사업

- (사업대상) 고흥군 지역특화 비자 시범사업 이주 외국인

- (신청기간) 2023. 11. 2. - 2023. 12. 1.

- (지원내용) 초기 정착지원금 지원(1인당 600천원)

• '21년 외국인주민 문화체육활동 및 관련 물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도내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문화체육 동아리

- (지원기간) 2021. 10. ~ 2021. 12.(2개월)

- (지원비용) 1개 동아리당 50만원 한도 내 지원(예상 10백만원)

•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2025년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관련 예산 편성(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비고
이민 정책 지원	일반수용비	8,880	현수막, 홍보물
	고흥사랑 글로벌 자원봉사단 및 재능기부단 운영	3,000	300,000*10회
	2025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자녀 유학비 지원	20,000	-
	한국어 능력 시험 수수료 전액 무료 지원	3,300	55,000*60명
	외국인 신규채용 중소기업 4대보험료 사업	9,000	250,000*30%*40명*3개월
	고흥사랑 글로벌 자원봉사단 및 재능기부단 지원	2,400	8,000*60명*5회
	외국인 주민 교육, 상담 프로그램 운영	22,000	2,200,000*10개월

• 고흥군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

- 외국인 유입의 증가로 인해 설치 및 운영 필요

□ **공정성**

• 고흥군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

	- 제7조에서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성별 균형 고려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규정 반영이 필요함
실효성	□ **성과** • 2024년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사업 추진 성과 - 지역 특화형 비자사업(외국인 20명) 추진 및 지역인재 쿼터(35명) 운영 -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초기 정착비 지원(1인 60만원 / 17명) -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자녀 유아학비 전액 지원(3가구) • '귀농귀촌·외국인 통합교육 플랫폼' -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가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으로 선정 - 귀농·귀촌,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유치와 정착 지원이 가능한 전국 최초의 인구유입 통합교육 플랫폼 구축 -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언어, 사회 이해 등의 교육 진행 -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는 2019년 9월 문을 열어, 지금까지 700명의 교육생을 배출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 제7조제3항제2호의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성별균형 문구 추가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고흥군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단서조항이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문구 추가가 필요

□ 일반정비 및 정책제안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7조(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 략)	제7조(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③ ----------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성별균형 문구 추가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경찰서·교육지원청 등 적정 직	1. ----------	용어정비

위에 있는 자	----- 사람	
2. 민간위원: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2. ---------- ---------- ------- 사람과 ------- ---------- ---------- ---------- 위촉하는 사람	용어정비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 ----------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	띄어쓰기
제13조(업무의 위탁) ①·② (생략)	제13조(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 ---------- ---- 위탁 ---------- ---------- -----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 ---------- 지도·점검하게 할 --.	문장정비
제17조(명예군민)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제17조(명예군민) ① -------- ---------- 외국인을 ---------- -------.	문장정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 ---- 필요한 ---------- ----------.	문장정비

[60] 고흥군 수입증지 조례

<table>
<tr><th colspan="5">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 colspan="2">소관부서</td><td>재무과</td><td>시행일</td><td>2012. 12. 26.</td></tr>
<tr><td colspan="2">조례 구분</td><td colspan="3">■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colspan="2" rowspan="2">관계 법령</td><td>법령명</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6항</td><td colspan="2">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td></tr>
<tr><td rowspan="2">주요 내용</td><td colspan="4">•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적용범위 ④증지의 발행 ⑤수입증지요금 계기의 사용 ⑥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⑦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⑧증지 인수 및 보관 ⑨판매인의 신고 ⑩증지취급 및 매수 ⑪정액판매 ⑫판매인의 수수료 ⑬시스템사용 수입금의 정산 ⑭증지의 진위조사 ⑮증지의 무효 ⑯증지의 환매 ⑰증지의 교환 ⑱변상책임 ⑲출납정리 ⑳보고</td></tr>
<tr><td colspan="4">• 목적
- 고흥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증지의 발행
- 증지는 고흥군의 명의로 발행
-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년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으로 증지 소요량 부족이 예상되거나 또는 중지 제조기관의 형편등을 고려하여 긴급 또는 수시 발행 가능
- 증지의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해야 함</td></tr>
<tr><td rowspan="5">총괄평가</td><td rowspan="2">종합의견</td><td colspan="3">• 전부개정 권고
- 2024년부터 전 사용부서가 전자수입증지를 도입함으로써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전부개정 필요</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2">□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colspan="3">• 일반정비/전부개정</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colspan="3">• 미충족</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3">• 미충족</td></tr>
<tr><th colspan="5">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th></tr>
<tr><td>분석항목</td><td colspan="2">세부항목</td><td colspan="2">척도, 의견 및 자료</td></tr>
<tr><td>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2">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td><td colspan="2">□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계획 미수립 사유 - 24년부터 전 사용부서 인증기 설치 증지발행 계획 수립 불필요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구매 또는 고용 실적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수입증지 도입으로 종이수입증지 발행 불필요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2. 6. 27. ~ 7. 16.(20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수입증지 도입으로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2023년까지 일부 사용부서(시산출장소)에서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하였으나, 2024년부터 전 사용부서가 전자수입증지 도입함으로써, 종이수입증지가 사용되지 않고 있어, 현 운영실태를 반영하여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폐지하고, 인증계기 사용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여 수입증지 관련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흥군 수입증지 조례」를 전면개정하여야 함.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용어정비 - 제2조: 반대급부로서 → 대가로서 -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0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교부 → 발급 - 제11조제3항: 결손 → 상실 - 제13조, 제14조: 소인하~ → 접수도장을 찍어야 한다 - 제15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7조제2항: 의거 → 의하여 - 제16조제1항: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예외로 한다 • 오탈자 - 제4조제2항: 년1회 → 연 1회 - 제5조제2항: 제조할 때가지는 → 제조할 때까지는 • 띄어쓰기 - 제4조제2항: 형편등을 → 형편 등을 - 제7조제3항: 사망등으로, 민원부서 공무원중 → 사망 등으로, 민원부서 공무원 중 • 어법 - 제4조의2제2항: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 제7조제1항: 판매하고자 하는 자 →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현성	□ **미이행** • 증지발행 계획 미수립 - 전자 수입증지의 도입으로, 종이 수입증지가 사용되고 있지 않아 계획 수립의 필요성 상실
실효성	□ **성과** • 본 조례의 실효성 없음 - 고흥군 내 일부 사용부서에서(시산출장소)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2024년부터 전 사용부서에서 전자 수입증지를 사용함으로써 본 조례의 실효성 없음 - 전부개정 필요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2조(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고흥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 대가-- ---------- ---------- ----------.	용어정비
제4조(증지의 발행) ① (생 략)	제4조(증지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증지 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년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으로 증지 소요량 부족이 예상되거나 또는 중지 제조기관의 형편등을 고려하여 긴급 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② ---------- ---------- 연 1회 ----------. ---- ---------- ---------- ---------- ---------- 형편 등---------- ----------.	오탈자 띄어쓰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수입증지요금 계기의 사용) ① (생 략)	제4조의2(수입증지요금 계기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② ---------- 사람은 ----------.	어법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생 략)	제5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현행과 같음)	
② 증지의 규격을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고흥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다만 새로이 모양을 정하여 제조할 때가지는 현재의 모양을 사용할 수 있다.	② ----------. ---------- --- 때까지----------.	오탈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판매인의 신고) ①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인의 신고) ① ---------- 사람은----------.	어법
② 군수가 판매인 신고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 발급---------.	용어정비
③ 군수는 수입증지의 판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판매인 신고가 없거나 사망등으로 판매중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군 및 읍면의 직장상조회	③ ---------- 사망등----------	띄어쓰기

또는 민원부서 공무원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대장을 정리 비치하여야 한다.	---------- 공무원 중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 (생략)	제8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증지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 ------ 발급---------.	용어정비
③ 군금고에서는 제3항의 증지 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 ---------- 발급 ---------.	용어정비
제10조(판매인의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군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및 무인발급기 지방세시스템을 사용할 때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판매인의 수수료) ---- - 발급한다. ---------- ----------.	용어정비
제11조(시스템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② (생 략)	제11조(시스템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	③ ---------- ---------- 상실처	용어정비

리하되 계기 및 무인발급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리하되 ---------- ---------- ----------.	
제13조(증지의 소인) 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소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증지의 소인) -------- ---------- ---------- --------- 접수도장을 찍어야 ---------- --. ---------- -----.	용어정비
제14조(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제14조(증지의 무효) 접수도장을 찍은 ---------- ---------- -.	용어정비
제15조(증지의 환매) ① 판매인으로부터 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로서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 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판매인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인의 사망등 판매인으로부터 환매가 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증지의 환매) ① ----- ---------- ---------- ---------- ---------- ---------- ---------- ---------- ---------- ---------- ---------- ----------. --- ---------- ---------- ---------- 의하여 ----------.	용어정비
② 군수는 제1항의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② ---------- ---------- ---------- ---------- 발급한다.	용어정비
③ 군금고에서는 환매증에 의	③ ---------- 의	용어정비

거 청구인에게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하여 ----------.	
제16조(증지의 교환) ① 판매인이 보유하는 수입증지로서 오염·훼손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증지의 교환) ① ----------의하여 ----------. ----------예외로 한다.	용어정비
② 군수는 제1항의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② ----------발급한다.	용어정비
③ 군금고에서는 환매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③ ---------- 의하여 ----------.	용어정비
제17조(변상책임)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판매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 줄 경우 증지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가장 최근 제조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변상책임) ① ---------- 의하여 ----------.	용어정비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납입고지서에 의거 고흥군 금고에 납부한다.	② ----------의하여 ----------.	용어정비

2. 정책 제안 사항

- 2024년부터 고흥군 전 사용부서에서 전자 수입증지를 사용함으로써 본 조례의 실효성 없음
- 전부개정 필요

□ **타 지자체 사례**

고흥군 수입증지 조례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 수수료의 납부	제3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제4조 증지의 발행	제4조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의2 수입증지요금 계기의 사용	제5조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5조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의3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제6조 수입금의 납입 등	제6조 전자수입증지의 관리
제5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7조 변상책임	제7조 수입금의 정산
제6조 증지 인수 및 보관	제8조 규칙	제8조 변상책임
제7조 판매인의 신고		
제8조 증지취급 및 매수		
제9조 정액판매		
제10조 판매인의 수수료		
제11조 시스템사용 수입금의 정산		
제12조 증지의 진위조사		
제13조 증지의 소인		
제14조 증지의 무효		
제15조 증지의 환매		
제16조 증지의 교환		
제17조 증지의 교환		
제18조 출납정리		
제19조 보고		
2012. 12. 26. 일부개정	2021. 8. 12. 일부개정	2022. 12. 30. 전부개정

[61] 고흥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table>
<tr><th colspan="5">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소관부서</td><td colspan="2">종합민원실</td><td>시행일</td><td>2025. 03. 17.</td></tr>
<tr><td>조례 구분</td><td colspan="4">■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rowspan="2">관계 법령</td><td>법령명</td><td colspan="3">관계 내용</td></tr>
<tr><td>국가공간정보 기본법</td><td colspan="3">제3조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td></tr>
<tr><td rowspan="2">주요 내용</td><td colspan="4">•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④공간정보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⑤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⑥조직 및 인력 등 ⑦임무 ⑧설치 및 기능 ⑨구성 ⑩위원장의 직무 ⑪회의 ⑫의견청취 ⑬간사 ⑭수당 ⑮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⑯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⑰자료제출 요구 ⑱공간정보의 활용 ⑲공간정보 목록의 작성 ⑳공간정보목록의 활용 ㉑ 공간정보 자료제공 ㉒공간정보 자료제공 제한 ㉓사용료 등 징수방법 ㉔사용료 등의 감면 ㉕사용료 등의 감면율 ㉖보안관리 ㉗시스템 설치 및 관리 ㉘유관기관시설물 통합관리 ㉙시스템 유지보수 ㉚시스템 장비관리 ㉛프로그램 관리 ㉜프로그램 개발 ㉝프로그램의 보급 ㉞프로그램 버전관리 ㉟사용자 등록 ㊱사용자 교육 ㊲시행규칙</td></tr>
<tr><td colspan="4">• 목적
- 고흥군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고흥군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실정에 맞는 군 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군수는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관리부서의 장이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총괄부서로 이를 통보해야 함</td></tr>
<tr><td rowspan="4">총괄평가</td><td rowspan="2">종합의견</td><td colspan="3">• 특이 사항 없음</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2">□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일반정비</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colspan="2">• 이행</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2">• 충족</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th></tr>
<tr><td>분석항목</td><td>세부항목</td><td>척도, 의견 및 자료</td></tr>
<tr><td>조례의 실효성</td><td>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공간정보 보안업무 세부 시행계획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교육이나 홍보, 허가·승인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5. 01. 13. ~ 01. 31.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용어정비 - 제2조제1호, 2호, 3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라 함은 → ~란 - 제4조제2항제7호, 제7조제1호마목, 제8조제2항제4호, 제21조제2항제6호: 기타 → 그 밖의 - 제37조: 관하여 → 생략 • 띄어쓰기 - 제6조제2항: 양성하기 위하여다음 →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 제23조제5항: 납부한사용료 → 납부한 사용료 - 제29조제2항: 평상시의운영에, 특별유지보수 → 평상시의 운영에, 특별 유지 보수 - 제36조제3항: 배양하기 위한것과, 시스템의안정성 → 배양하기 위한 것과, 시스템의 안정성 • 어법 -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 각 호의 사람 중에서 - 제9조제3항: 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 제14조,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0조제2항: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예외로 한다 - 제20조제3항: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 제24조제1항,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35조제3항: 등록된 자 중 → 등록된 사람 중 • 오탈자 - 제19조제3항: 관리부서의 은 → 관리부서의 장은	

실현성	□ **이행** • 공간정보 보안업무 세부 시행계획 수립 •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실효성	•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행되고 있어 실효성 충족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공간정보”라 함은 공간과 관련된 지상·지하의 각종 지형 지물에 대한 위치와 속성, 공간구획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여기에는 각종 도형 및 속성 자료가 포함된다.	1. “공간정보”란 ---------- ---------- ---------- ---------- ---------- ---------- -----.	문장정비
2. “공간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시설물에 대한 도형 및 속성자료를 공간정보시스템 기법을 이용하여 전산화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입력·출력,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전산정보 체계를 말한다.	2. ----------이란 ---- ---------- ---------- ---------- ---------- ---------- ---------- ---------- --.	문장정비
3. “공간정보사업”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생산·유통·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구매, 정보통신장비	3. ----------이란 ------ ---------- ---------- ----------	문장정비

의 도입 및 설치공사, 공간정보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관리부서”라 함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군 실·과·소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 ---------- ----------.	문장정비
6. “전산부서”라 함은 공간정보를 전산관리·운영하는 주전산기 및 프로그램 등 지리정보 전산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전산부서”란 ---------- ---------- ---------- ---------- ---------- -.	문장정비
7. “유관기관”이라 함은 관내의 각종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관리부서 이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7. --------이란 ---------- ---------- ---------- ----------.	문장정비
8. “공간정보유통망”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사용자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8. ----------이란 ---- ---------- ---------- ---------.	문장정비
9. “사용료”라 함은 공간정보 자료를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 등)를 통하여 제공하는 비용을 말한다.	9. “사용료”란 ---------- ---------- ---------- ---------- ----------.	문장정비
10. “수수료”라 함은 공간정보를 도면으로 출력하여 제공하고 받는 비용을 말한다.	10. “수수료”란 ---------- ---------- ----------.	문장정비
11. “1도면”이라 함은 플로터로 출력된 A1크기(45㎝x55	11. -----이란 ---------- ----------	문장정비

㎝)를 말하며, 1도면의 크기가 A1이하일 경우에도 1도면으로 본다.	---------- ---------- ---------.	
12. “공동전산화사업”이라 함은 도시기반 시설물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로기반시설물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들이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도로기반 시설물에 대한 조사·탐사 및 전산망 구축 등을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2. ----------이란 ---------- ---------- ---------- ---------- ---------- ---------- ---------- ---------- ---------- ---------.	문장정비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4조(공간정보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공간정보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 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그 밖의 ---------- ---------- ----------	용어정비
제6조(조직 및 인력 등) ① (생략)	제6조(조직 및 인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② ---------- ----------	띄어쓰기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 위하여 다음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임무) 공간정보시스템의 총괄부서, 전산부서, 관리부서는 시스템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제7조(임무) ---------- ---------- ---------- ---------- ----------.	
1. 총괄부서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기타 시스템 운영사항	마. 그 밖의 ---------	용어정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②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의 ---------- ----	용어정비
제9조(구성) ① (생 략)	제9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장 및 관리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 ---------- ---------- ---------- ---------- ---------- 사람 -------- ---------.	어법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③ ----------	문장정비

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 군수는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으로 공무원인 자에 대해선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수당) ----------. ---------- 예외로 한다.	문장정비
제19조(공간정보 목록의 작성) ①·② (생 략)	제19조(공간정보 목록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부서의 은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목록을 작성한 때에는 총괄부서장이 보급한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 또는 갱신하여야 한다.	③ -------- 장은 ----.	오탈자
제20조(공간정보목록의 활용) ①·② (생 략)	제20조(공간정보목록의 활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부서의 장은 당해부서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목록과 자료를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공간정보유통망(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	③ ---------- 사람이 ----------	용어정비

다)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제21조(공간정보 자료제공) ① 군수는 법 27조에 따른 공개제한시설물 자료에 대하여 공개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치(1/1,000) 벡터데이터는 공공측량성과에 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공간정보 자료제공) ① ---------- ---------- ---------- ---------- --. ---------- ---------- ---------- ---------- - 예외로 한다.	문장정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사용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한다.	②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6. 그 밖의 ---------- ----------	용어정비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용료 등 징수방법)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 등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부서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공간정보자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사용료 등 징수방법) ① ---------- ---------- ---------- ----------. ---------- ---------- ---- 예외로 한다.	문장정비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련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관련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 - 납부한 사용료 ----------.	띄어쓰기
제2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어느 하나에 ----------.	문장정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② ---------- 어느 하나와 ----------.	문장정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9조(시스템 유지보수) ① (생략)	제29조(시스템 유지보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하드웨어 유지보수는 일반 유지보수와 특별 유지보수로 구분하며, 일반 유지보수는 평상시의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를, 특별유지보수는 장애발생시 유지보수를 말한다.	② ---------- - 평상시의 운영---------- 특별 유지보수----------.	띄어쓰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시스템 장비관리) ① (생략)	제30조(시스템 장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스템 장비는 관련업무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단,	② ----------. ---	문장정비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외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사용자 등록) ①·② (생략)	제35조(사용자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형자료 편집 권한은 사용자로 등록된 자 중 별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 이외에는 도형 자료를 입력, 수정할 수 없다.	③ ---------- 사람 중 ---------- ----------.	용어정비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사용자 교육) ①·② (생략)	제36조(사용자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의 내용은 관리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 및 판단능력을 배양하기 위한것과 시스템의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식제고 교육을 포함한다.	③ ---------- 위한 것과 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 ---------- -----.	띄어쓰기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 필요한 ----------.	문장정비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62] 고흥군 빈집정비 및 활용 조례

<table>
<tr><th colspan="5">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소관부서</td><td colspan="2">종합민원실</td><td>시행일</td><td>2025. 06. 02</td></tr>
<tr><td>조례 구분</td><td colspan="4">■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rowspan="3">관계 법령</td><td>법령명</td><td colspan="3">관계 내용</td></tr>
<tr><td>농어촌정비법</td><td colspan="3">제64조의2 빈집실태조사
제64조의7 빈집우선정비구역
제65조의2 빈집에 대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책무
제65조의6 빈집의 매입 및 활용</td></tr>
<tr><td>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td><td colspan="3">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td></tr>
<tr><td rowspan="2">주요 내용</td><td colspan="4">•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군수의 책무 ④ 지원대상 ⑤지원순위 ⑥지원방법 ⑦빈집 활용 관리 ⑧법령 등과의 관계 ⑨준용 ⑩시행규칙 ⑪특정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td></tr>
<tr><td colspan="4">• 목적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
• 군수의 책무
-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함
-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함
• 지원대상
- 군수는 다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1. 고흥군 소재 내 방치된 본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다만, 부분 철거는 지원 제외)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빈집 활용 관리
-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 및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권고 가능
- 군수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관리 가능</td></tr>
<tr><td rowspan="5">총괄평가</td><td rowspan="2">종합의견</td><td colspan="3">• 특이 사항 없음</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3">□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colspan="3">• 일반정비</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colspan="3">• 이행</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3">• 충족</td></tr>
<tr><th colspan="5">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th></tr>
<tr><td>분석항목</td><td colspan="3">세부항목</td><td>척도, 의견 및 자료</td></tr>
</table>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유사 조례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농어촌 정비법 • 충돌(모순) 내용 - 이행강제금의 기준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유사 조례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농어촌 정비법 • 조례 통합 필요 사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5조(이행강제금)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실태조사, 교육이나 홍보, 추진실적 성과평가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5. 03. 19. ~ 04. 08.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특정빈집에 대한 민원 신고 등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유사위원회 명칭: 건축위원회 • 통합 필요 사유: ‘빈집’은 ‘건축물’에 해당함으로써 건축위원회와 통합이 적합	
종합 의견	•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띄어쓰기 - 제1조: 살기좋고 → 살기 좋고 - 제6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호: 빈집정비 → 빈집 정비 • 용어정비 - 제1조, 제2조제2호, 제7조: 저해하는 → 해하는(방해하는)

	- 제10조: 관하여 → 생략
실현성	□ **2025년 주요업무계획** • 주거환경 개선 빈집정비사업 - 사업량: 75동(슬레이트 55동, 일반 20동) - (타부처 연계) 슬레이트 지붕 처리: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사업비: 150백만원 - 사업대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노후화 된 빈집 및 안전·위생·경관훼손 등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 빈집 □ **이행** • 5년간 빈집정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회계연도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비고
2021	빈집정비	빈집정비	90,000	1,000,000원*90동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빈집 실태조사 및 DB 구축	67,960	-
		일반 수용비		
		급량비		
		빈집업무 지도점검 여비		
2022	빈집정비	빈집정비	100,000	1,000,000원*100동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빈집 실태조사 및 DB 구축	69,168	-
		일반수용비		
		급량비		
		빈집업무 지도점검 여비		
2023	-	-	-	-
2024	빈집정비	빈집정비	140,000	2,000,000원*70동
		빈집 실태조사 및 DB 작업	49,695	인건비 9,860원*8시간*18명*35일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일반수용비	20,000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운영비
		급량비	1,920	빈집업무 지도점검 급식비 8,000원*4명*5일*12월
2025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70,000	5,000,000원*14동
		빈집 실태조사 및 DB 작업	51,354	인건비 10,030원*8시간*16명*40일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일반수용비	4,400	운영비
		급량비	2,160	빈집업무 지도점검 급식비 9,000원*4명*5일*12월

• 고흥군은 매년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실효성

• 연도별 주요 성과

연도	사업	동 수	비고
2020	빈집정비	76동 정비	-
2021	빈집정비	90동 정비(단독주택)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8개소 노후시설물 개보수 지원: 4개소
2022	빈집정비	100동 정비(단독주택)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11개소
2023	빈집정비	130가구	-
2024	빈집정비	93가구	(농림축산식품부) 75가구 (행정안전부) 18가구

• 최근 3년간 빈집 실태조사를 시행하였고, 2025년에는 5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실태조사를 위한 빈집 실태조사 현장조사원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음(고흥군청 보도자료)

• 빈집정비 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고, 빈집정비 성과를 매년 보이고 있어, 실효성 충족

□ **정책환경 수용성**

• '24년 현실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빈집정비 사업비를 동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증33%)

□ **언론보도**

• 고흥군, 515개 마을 빈집 실태조사 나선다(고흥군청 보도자료, 2025. 1. 22.)

- 군 자체적으로 16개 읍·면 5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빈집을 1~3등급으로 나누어 조사할 계획

- 조사 결과 1-2등급 빈집에 대해서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인구 유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용 기대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3934&boardId=BD_00025&pageId=www102

• 고흥군,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 사업 추진(매트로신문, 2024. 2. 8.)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40208500134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미관을 저해	제1조(목적) ---------- ---------- 해하는	용어정비 띄어쓰기

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살기 좋고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 해할 ----------.	용어정비
제6조(지원방법) ① 빈집정비 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빈집 정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빈집정비 전경사진 각 1매 (전, 중, 후)	2. 빈집 정비 ----------	띄어쓰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빈집 활용 관리) ①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 및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 할 수 있다.	제7조(빈집 활용 관리) ① ---------- 해----------.	용어정비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규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 ---- 필요한 ---------- ----------.	용어정비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63] 고흥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주민복지과	시행일	2017. 06. 27.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42조 생업 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생업 지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생업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적용의 범위 ③사전공고 ④신청 ⑤우선허가 ⑥사업의 의무 ⑦사용료 등 ⑧시행규칙		
	• 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이 우선하여 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사전공고 - 군수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이를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해야 함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계획 미수립 사유 - 계획 수립 의무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허가·승인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1999년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해당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어법 - 제1조: 규정에 의한 자 → 규정에 의한 사람 • 소관부서에서는 위임조례로 분류하였으나 상위법령에 직접적인 위임 문구가 없어 자치조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도 자치조례로 분류하고 있음	
실현성	□ **이행** • 허가·승인 이행 중	
실효성	•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고 있어 실효성 충족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복지법」제4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제1조(목적) ----------	어법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이 우선하여 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사람)---------- ---------- ----------.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64] 고흥군 노인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table>
<tr><th colspan="5">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소관부서</td><td colspan="2">주민복지과</td><td>시행일</td><td>2014. 12. 30.</td></tr>
<tr><td>조례 구분</td><td colspan="4">■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rowspan="2">관계 법령</td><td colspan="2">법령명</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노인복지법 제4조</td><td colspan="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함</td></tr>
<tr><td rowspan="2">주요 내용</td><td colspan="4">•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설치기준 ④등록신청 및 절차 ⑤지원기준 ⑥지원시기 ⑦시설물관리 ⑧지원중단 및 취소 ⑨운영위원회 구성 및 책무 ⑩심의위원회 구성 ⑪심의위원회 기능 ⑫심의위원회 회의 ⑬준용 ⑭시행규칙</td></tr>
<tr><td colspan="4">• 목적
-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고흥군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27조의 2에 의해 독거노인들의 생활공간 확보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공동생활관”을 설치하고 지원함
• 설치기준
-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다수노인 이용가구, 빈집 등으로 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춘 장소
- 희망노인이 5명 이상인 지역
- “노인공동생활관”운영에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가 5명 이상인 지역
- 읍·면장이 추천하는 지역</td></tr>
<tr><td rowspan="4">총괄평가</td><td rowspan="2">종합의견</td><td colspan="3">• 현행 유지</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2">■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충족</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colspan="2">• 이행</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2">• 충족</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th></tr>
<tr><th>분석항목</th><th>세부항목</th><th>척도, 의견 및 자료</th></tr>
<tr><td rowspan="2">조례의 실효성</td><td>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허가·승인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7개소 264백만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제5조제4항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노인공동생활관 운영위원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충족	
실현성	□ **이행** • 7개소 264백만원 지원 • 노인공동생활관 운영위원회 - 당연직 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실효성	□ **성과** •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실효성 충족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 해당 사항 없음		

[65] 고흥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행정과	시행일	2009. 04. 10.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해당 없음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장학생의 자격 ③추천 ④선발 ⑤장학생의 정원 ⑥장학금액 ⑦장학금의 지급 ⑧지급의 정지 ⑨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⑩규칙		
	• 목적 -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장학생의 정원 - 장학생은 년간 군당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 • 장학금의 지급 -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 -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		
총괄평가	종합의견	• 중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장학금 지급대상이 없음 • 현재 소관부서에서 대학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 준비 중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미이행	
	조례의 실효성	• 미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미지원 사유 - 장학금 미신청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용어정비

- 제2조: 각 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9조제2항: 기타 → 그 밖의
- 제10조: 관하여 → 생략

• 어법

- 제2조제1호, 제2호: 자 → 사람
- 제3조: 적당한자로 인정되는 → 적당할 것으로 인정되는
- 제4조제1항: 자 → 사람

• 띄어쓰기

- 제7조제1항: 1월이내에 → 1월 이내에
-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지급정지사유가 → 지급정지 사유가

실현성

□ **이행**

• 5년간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세부사업명: 이장 사기진작 및 관리, 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액	6,500	6,500	6,500	2,600	2,600

※ 5년간 장학금 연 2회 지급은 동일하나, 2024년도부터 지급인원을 5명에서 2명으로 줄이면서 예산 감축

실효성

□ **성과**

• 장학금 미신청으로 성과 없음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 ---- 어느 하나에 ---------.	용어정비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전 과목별 석차 백분률 상위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1. ---------- 사람	어법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2. ---------- 사람	어법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한자로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3조(추천) ---------- 적당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	띄어쓰기 어법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① ---------- 사람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 1월 이내---------. ----------.	띄어쓰기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② ---------- 지급정지 사유---------- ---.	띄어쓰기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	제8조(지급의 정지) ① ----------	용어정비

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어느 하나에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생 략)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② ---------- ---------- 그 밖의 ----------.	용어정비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규칙) ---------- 필요한 ---------- -------.	용어정비

2. 정책 제안 사항

- 조례는 이장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 대상으로 공납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장이 고령층이고, 2019년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없어 이행되지 않고 있음
- 현재 소관부서에서 지원대상을 대학생 자녀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준비 중
- 「해남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지급 조례」를 참고로 하고 있음

- 해남군 조례는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생활비로 고등학생은 학기별 20만원, 대학생은 학기별 5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6] 고흥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행정과		시행일	2015. 01. 01.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해당 없음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④군수의 책무 ⑤군민의 협력 ⑥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⑦인권교육 ⑧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⑨인권지수 개발 ⑩고흥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⑪구성 ⑫운영 ⑬간사 ⑭위원회 의견청취 ⑮수당 등 ⑯시행규칙			
	• 목적 - 고흥군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 고흥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 위원회 의견청취 -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총괄평가	종합의견	• 위원회 구성에 성별균형 조항 추가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수립 준비 중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교육이나 홍보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고흥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미구성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 그렇다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특이 사항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용어정비 - 제6조제2항제4호: 조달 → 마련 □ **개정** • 제11조 고흥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 중 성별균형 조항 추가
실현성	□ **미이행**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 수립 준비 중에 있음 • 인권교육 - 6급 이하 전 직원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CBS방송, 2024. 4. 29.) -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교육 및 위촉장 수여(웰페어뉴스, 2024. 8. 7.) -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조사 실시(퍼스트뉴스, 2025. 5. 9.) • 고흥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 미구성
실효성	□ **성과** •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았으나 공무원,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로 실효성 충족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 마련 ---	용어정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2. 정책 제안 사항

- 제11조 고흥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구성

- 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고려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고흥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구성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단서조항이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문구 추가가 필요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11조(구성) ①·② (생 략)	제11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 ---------- ---------- ---------- ----------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 조항 추가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67] 고흥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table>
<tr><th colspan="5">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 colspan="2">소관부서</td><td>주민복지과</td><td>시행일</td><td>2018. 12. 06.</td></tr>
<tr><td colspan="2">조례 구분</td><td colspan="3">■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colspan="2" rowspan="4">관계 법령</td><td>법령명</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노인복지법</td><td colspan="2">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td></tr>
<tr><td>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td><td colspan="2">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 고용과 소득보장
제15조 평생교육과 정보화</td></tr>
<tr><td>고용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td><td colspan="2">제16조 우선고용직종의 고용</td></tr>
<tr><td rowspan="2">주요 내용</td><td colspan="4">•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군수의 책무 ④추진계획 수립·시행 ⑤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⑥생산품 우선구매 ⑦참여자 모집 등 ⑧사무위탁 ⑨수탁자의 의무 ⑩협약의 해지 ⑪지도·감독 ⑫보험가입 ⑬예산지원 등 ⑭시행규칙</td></tr>
<tr><td colspan="4">• 목적
-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추진계획 수립·시행
-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td></tr>
<tr><td rowspan="4">총괄평가</td><td rowspan="2">종합의견</td><td colspan="3">• 특이 사항 없음</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3">□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colspan="3">• 일반정비</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colspan="3">• 이행</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3">• 충족</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th></tr>
<tr><td>분석항목</td><td>세부항목</td><td>척도, 의견 및 자료</td></tr>
<tr><td>조례의 실효성</td><td>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센터 또는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교육이나 홍보, 추진실적 성과평가, 구매 또는 고용 실적, 위탁, 기타(예산지원 등)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8. 10. 04. ~ 10. 24. (20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3~25년 노인일자리 군비 100% 자체 사업 위탁 추진 - ‘23년 2,855백만원/ ’24년 1,804백만원/ ‘25년 1,802백만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제13조(예산지원 등) 제1항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용어정비

- 제14조: 관하여 → 생략

• 소관부서에서는 위임조례로 분류하였으나 상위법령에 직접적인 위임 문구가 없어 자치조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도 자치조례로 분류하고 있음

실현성

□ **2025년 주요업무계획**

•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 사업량: 4,949명

- 소요예산: 72,169백만원

- 주요내용: 대기자 제로화 모든 어르신께 일자리 제공, 다양한 일자리 창출

-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사업비	13,269(증 2,967)	15,820(증 2,551)	18,783(증 2,963)
사업내용	24개 사업 (공익 11, 시장 10, 사회서비스 3)	25개 사업 (공익 11, 시장 10, 사회서비스 4)	30개 사업 (공익활동 14, 공동체 10, 역량활용 6)
참여자	3,696명(증 755)	4,365(증 669)	4,949(증 584)
수행기관	고흥시니어클럽/대한노인회 고흥군지회/고흥군 노인복지관		

□ **이행**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진행

- 2022년 예산 확보 및 운영 계획 수립 이후, 20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23. 12. '24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계획 수립, '24. 12.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계획 수립 등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22. 11.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공공 및 재지정 심사, '23. 11. '24년 수행기관 재위탁 심사, '24.10. 2025년 수행기관 재위탁 심사 등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위탁심사가 진행되고 있음

- '23. 9. 수행기관 지도 점검, '24. 8. 수행기관 지도·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매년 1회 이상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시행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합계획 수립,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및 점검과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위탁기관

- 현재 고흥군 내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은 3곳으로, '대한노인회 고흥군지회', '고흥시니어클럽', 고흥군 노인복지관'이 이에 해당

- 대한노인회 고흥군지회

· 위탁사업으로 경로식당급식, 마을공공시설종사, 공원놀이터지킴이 등 시행

· 보조사업으로 노인회 운영 및 정기총회, 한궁대회 및 게이트볼 대회 출전 지원 등 6개 사업을 시행

- 고흥시니어클럽

· 위탁사업으로 은빛카페 등을 시행

- 고흥군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 사회교육, 고용지원, 건장생활지원 등을 진행 중

• 5년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편성 현황(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회계연도	단위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7,975,488	인건비 사업 위탁 시니어클럽 운영
202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10,599,270	인건비 사업 위탁 시니어클럽 운영
202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12,900,727	인건비 보험료 위탁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등
202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14,800,770	인건비 위탁사업

<table>
<tr><td></td><td>
<table>
<tr><th>회계연도</th><th>단위사업명</th><th>예산액</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시니어클럽 운영 등</td></tr>
<tr><td rowspan="3">2025</td><td rowspan="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td><td rowspan="3">16,192,972</td><td>인건비</td></tr>
<tr><td>위탁사업</td></tr>
<tr><td>시니어클럽 운영 등</td></tr>
</table>
)
</td></tr>
<tr><td>실효성</td><td>

□ **성과**

•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실적 및 주요 성과

- 2022년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한 종합분석 및 점검

· ‘23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공고 및 재지정 심사

· ’23년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및 참여자 모집

- 2023년

· ‘23년 대기자없는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3,696명 참여

· 수행기관 지도점검

· 수행기관 종사자 및 전담인력 간담회 실시

· 수행기관 재위탁 심사 및 ’24년 종합계획 수립, 참여자 모집

- 2024년

· 전담인력 간담회 실시

· 수행기관 지도 및 점검, 재위탁 심사

· 2025년 종합계획 수립 및 참여자 모집

· 노인일자리 대기자 제로화 달성

• 2024년도 목표 달성률

<table>
<tr><th colspan="2">확인지표</th><th colspan="2">2024년도 목표</th><th colspan="2">2024년도 달성도</th></tr>
<tr><td rowspan="2">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수</td><td>단위</td><td>목표</td><td>추진실적</td><td>달성률(%)</td></tr>
<tr><td>명</td><td>3,591</td><td>4,365</td><td>121%</td></tr>
</table>

- 2024년도 사업의 달성률은 121%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 2022년 참여인원 2,940명에서 2025년 4,949명까지 약 2,000명 가까이 증가

- 2023년도 대비 669명 증가

• 노인일자리 사업의 규모 및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실효성 있음

□ **정책환경 수용성**

• 고흥군의 노인인구비율은 43.5%로, 전라남도 내 시·군 중 가장 높음(통계지리정보서비스)

- 보성군: 41.9%, 함평군: 39.3%, 신안군: 39.1%, 구례군: 38.7%, 곡성군: 37.9% 순 등

• 노령화지수 또한 723.2%로, 전라남도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노인 중 8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6.2%로, 전라남도 내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는 노인들이 더 많음을 나타냄

</td></tr>
</table>

	• 고흥군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언론보도** • 고흥군, 폭염 대비 노인일자리사업 현장 안전점검 강화(고흥군청 보도자료, 2025. 7. 10.) -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온열질환 방지를 위해 혹서기 현장 지도 및 점검을 강화 - 6월부터 10월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 - 8월까지 미방문한 14개 읍·면 야외 공익활동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점검을 강화할 예정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4735&boardId=BD_00025&pageId=www102 • 고흥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공모사업 2건 동시 선정(고흥군청 보도자료, 2025. 7. 11.) - 고흥군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고흥시니어클럽이 '공동체사업단 초기투자비 공모사업'과 '재도약지원비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지역 어르신 일자리 확충 및 소득 기반 강화 기대 - 2025년 말까지 '은빛카페 1호점'을 리모델링하여 분식 메뉴를 접목한 수익형 일자리 모델 '은빛카페&분식'으로 변경할 예정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4719&boardId=BD_00025&pageId=www102 • 고흥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대상 소양·직무 교육 실시(고흥군청 보도자료, 2025. 6. 13.) - 공익활동형 사업단 참여자 2,760명을 대상으로 16개 읍·면을 순회하며 총 11일간 18차례 진행한 교육의 후속조치 - 고흥시니어클럽 소속의 총 370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교육 진행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4602&boardId=BD_00025&pageId=www102 • 고흥군, 제13회 고흥군노인회장기 한궁대회 성료(고흥군청 보도자료, 2025. 6. 11.) - 2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4582&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 필요한 ---------- ----------.	용어정비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68] 고흥군립 하늘공원 설치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주민복지과		시행일	2021. 08. 09.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장 묘지 · 화장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위치 ④시설의 종류 ⑤부지선정 ⑥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⑦위원회 구성 ⑧위원회 임기 ⑨위원의 해촉 ⑩위원장의 직무 ⑪회의 ⑫의견청취 등 ⑬수당 ⑭경비지원 ⑮군립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⑯시행규칙			
	• 목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흥군립 하늘공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시설의 종류 - 군립하늘공원에는 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과 주차장, 편의실,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해야 함 • 군립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장사시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주변지역 주민에게 해당 시설의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군수는 군립하늘공원 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 숙원 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원 가능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고흥군립 하늘공원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보고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1. 06. 14. ~ 07. 04. (20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설치 추진위원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회의록 보존 여부: 여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용어정비 - 제6조제1항: 제반사항 → 모든 사항 - 제6조제2항제3호: 인센티브 → 혜택(특전) • 오탈자 - 제9조: 군수은 → 군수는 • 어법 - 제9조제1호: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 않다고 인정되는 - 제11조제3항: 송부하여 → 발송하여 - 제11조제3항: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외로 한다 • 소관부서에서는 위임조례로 분류하였으나 상위법령에 직접적인 위임 문구가 없어 자치조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도 자치조례로 분류하고 있음	
실현성	□ **2025년 주요업무계획** •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 사업 - 위치: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산 173-1번지 일원 - 소요 예산: 19,850백만원 ※ 2025년: 34억원 - 주요 내용: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 주차장 등 □ **이행** • 고흥군립 하늘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보고회 진행 •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 사업 시행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고흥군 추모공원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추모공원 조성부지 공개 모집 공고 및 선정,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심의, 공사 발주 등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을 위해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음 - '20. 10. ~ '21. 2. 추모공원 조성부지 공개 모집 공고 및 선정	

· 원활한 부지공모를 위해 사업 관련 읍면 순회교육 실시

· 부지면적 65,000㎡ 이상이면서 인근 마을의 실제 거주 세대주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공모 가능

·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산 173-1번지 일원으로 선정

- '21. 4.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발주

- '23. 8. ~ 10.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도시계획·지방건설 심의 완료

- '24. 5. '24년 주민지원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고흥군립추모공원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20년 8월 총 13명으로, 설치조례에 따라 당연직 공무원 3명, 군의회 의원 1명, 장사전문가 3명,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

- 건립지역 선정을 위한 부지공모 진행, 인센티브 관련 읍면 순회교육 시행, 공개모집 선정 등 조례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함

• 5년간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 사업 예산 편성(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회계연도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2021	군립 추모공원 조성	추모공원 위원회 운영	27,000
		장사문화 인식개선 및 추모공원 설명회	8,000
		추모공원 우수시설 벤치마킹 여비	15,000
		추모공원 기본실시설계 용역	400,000
2022	군립 추모공원 조성	하늘공원 위원회 운영	14,000
		장사문화 인식개선 및 하늘공원 설명회	5,000
		하늘공원 실시설계 용역	400,000
		하늘공원 토지매입	400,000
2023	군립 추모공원 조성	하늘공원 조성사업 추진	4,000
		하늘공원 조성사업 착공식	3,000
		하늘공원 실시설계 용역 등	1,000,000
		하늘공원 조성사업 부대시설	400,000
		하늘공원 조성사업 감리비	700,000
		하늘공원 토지매입	800,000
2024	군립 추모공원 조성	하늘공원 조성사업 착공식	3,000
		하늘공원 공사비 등	3,500,000
		하늘공원 각종 용역비 등	200,000
		하늘공원 조성사업 감리비	1,000,000
		하늘공원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 등	300,000
2025	군립 추모공원 조성	하늘공원 2차분 공사비	3,000,000
	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고흥군립하늘공원 전출금	300,000

□ **공정성**

• 제7조제4항에서 위원 구성 시, 성별 규형 고려를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 사항도 함께 명시하고 있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부합

실효성	□ **성과** • 2024년 주요 추진실적 - 고흥군립하늘공원 착공 - ‘24. 4. 1차분 공사 착공 및 감리용역 착수 - ’24. 8. 기초 파일 공사 및 부대 토목 공사 추진 - ‘24. 12. 1차분 준공 및 2차분 발주 • 2025년 4월 기준 공정률 60%로, 예정대로 8월 완공 후 2026년 1월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언론보도** • 고흥군,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사업 8월 완공계획 ’순항‘(고흥군청 보도자료, 2025. 1. 8.) - 고흥군이 2025년을 맞아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사업‘ 진행 상황 점검 - 해당 사업은 2024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 25. 1. 8. 기준 공정률 55%로 순항 - 봉안당 8,500기, 잔디형 자연장지 1,883기, 유택동산,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 예정 - 2025년 상반기 군민 의견수렴을 통해 조례 제정 및 운영계획 수립 예정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3838&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6조(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립하늘공원의 설치에 관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립하늘공원 설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모든 사항 ----------.	용어정비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군립하늘공원 건립지역 인센티브 등에 관한 사항	3. ---------- 혜택 ----------	용어정비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	오탈자
1. 위원의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 않다고 ----------	어법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 ①·② (생 략)	제11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발송하여 ---------- 예외로 한다.	어법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69] 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행정과	시행일	2021. 03. 26.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해당 없음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지원사업 등 ④사업계획 등의 승인 ⑤정산보고 등 ⑥준용 ⑦시행규칙			
	• 목적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협력 및 군정발전에 기여함 • 지원사업 등 -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 -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 호국정신을 함양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1. 01. 19. ~ 01. 25. (7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주요사업 추진비 지원 - 2021년 이후 매년 지원 • 미지원 사유 - 사업 미신청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국가안보의식고취 및 치안협력활동 사업 - 5,000천원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특이 사항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정비

- 제2조제2호: 법 제5조제1항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1항

- 제3조: 법 제15조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 문장정비

- 제3조제4호: 호국정신을 함양을 → 호국정신 함양을

• 용어정비

- 제7조: 관하여 → 생략

실현성

□ **2025년 주요업무계획**

• 주민행복 UP, 공익 UP!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법정사회단체(7개소)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단체명	교부결정액			지원근거
	계	사업비	운영비	
계	303,226	173,736	129,490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흥군협의회	53,400	28,400	25,0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고흥군새마을회	157,336	95,536	61,800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고흥군협의회	32,490	12,800	19,690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고흥군지회	36,000	13,000	23,000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000	10,000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지방행정동우회	9,000	9,000	-	지방행정동우회법
재향경우회	5,000	5,000	-	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주민자치센터(3개소)

	□ **이행** • 주요 사업 추진비 지원 - 미신청으로 인해 지원을 하지 않았었으나, 2021년 이후로 매년 지원하고 있음 - 국가안보의식 고취 및 치안협력 활동 사업: 5,000천원 - 5년간 재향경우회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현황(사업명: 재향경우회 지원, 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 찾아가는 보조금 치료사 운영(2024년도 고흥군 주요 업무 계획) - 대상: 재향경우회를 포함한 법정사회단체 등 8개의 단체 - 운영 방법: 현장 방문 - 주요 내용: 민간단체의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 유도, 민간단체별 보조금 지원기준 및 보탬e 시스템* 사용 방법 교육 등 *'24년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 본 사업 진행을 통해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산보고 등의 변경 사항을 전달
실효성	□ **성과** • 찾아가는 보조금 치료사 운영 - 고흥군 재향경우회를 대상으로 하여 '찾아가는 보조금 치료사' 진행 - 본래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보탬e 시스템 사용 방법 등의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시스템 사용 방법의 환경을 고려하여 고흥군청에서 진행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액	-	3,000	5,000	5,000	5,000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향경우회"라 함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직된 "고흥군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2. ----------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1항---------- ---------- ---.	상위법령명 변경

제3조(지원사업 등)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의하여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등) ----------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상위법령명 변경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호국정신을 함양을 위한 사업	4. 호국정신 ----------	조사중복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 필요한 ----------.	용어정비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70] 고흥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주민복지과		시행일	2008. 09. 04.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 가능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예우 및 지원대상 ④군민의 책무 ⑤예우 ⑥지원대상 사업 ⑦지원신청 및 보고 ⑧중복지원 금지 ⑨시행규칙			
	• 목적 -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 예우 및 지원대상 -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고흥군 재향군인회로 함 • 예우 -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사업 -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 6.25전쟁 기념행사 사업 -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고흥군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새올(고시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연혁) 확인결과 해당 내용 확인불가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새올(고시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연혁) 확인결과 해당 내용 확인불가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재향군인회 운영비·사업비(보조금) 지원 - 25년도 지원보조금: 운영비(24백만원), 사업비(20백만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제7조(지원대상 사업)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용어정비

- 제5조제4호: 고취를 위하여 → 북돋움을 위하여

- 제10조: 관하여 → 생략

• 띄어쓰기

- 제9조: 법령 또는조례 → 법령 또는 조례

- 제9조: 경우에는이 조례에 → 경우에는 이 조례에

실현성

□ **이행**

• 고흥군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 매년 재향군인회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예산 편성 현황(사업명: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단위: 천원)

회계연도	통계목	예산액
2021	고흥군 재향군인회 71주년 6.25행사 개최 및 전적지 순례	13,000
	고흥군 재향군인회 운영	9,000
2022	고흥군 재향군인회 72주년 6.25행사 개최 및 전적지 순례	20,000
	고흥군 재향군인회 운영	17,000
2023	재향군인회 6.25전쟁 73주년 행사 및 안보견학	20,000
	재향군인회 운영	24,000
2024	재향군인회 6.25전쟁 73주년 행사 및 안보견학	20,000
	재향군인회 운영	24,000

회계연도	통계목	예산액
2025	재향군인회 6.25전쟁 75주년 행사 및 호국순례	20,000
	재향군인회 운영	24,000

• 재정 지원

- 재향군인회 운영비·사업비(보조금) 지원

· 25년도 지원보조금: 운영비(24백만원), 사업비(20백만원)

• 매년 6.25전쟁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양한 순례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음

실효성

□ **성과**

• 매년 6.25전쟁 기념 행사 개최 및 관련 사업 진행

- 전적지 순례, 안보 견학, 호국 순례 등

• 최근 성과

- '22년, 참전유공자 감사장 수여,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10명 군수 표창패 수여

- '23년, 6.25참전유공자회 신은우 고흥군지회장에게 새로 제작된 제복 및 '121,879명의 전사자'를 나타내는 태극기 배지 전달

- '24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8명 군수 표창 수여

• 6.25전쟁 기념 행사 개최와 함께 매해 표창 수여 등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언론보도**

• 고흥군,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 개최(고흥군청 보도자료, 2024. 6. 26.)

- 부군수, 고흥군재향군인회장 등 300여 명 참석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2996&boardId=BD_00025&pageId=www102

• 고흥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고흥군청 보도자료, 2025. 6. 6.)

- 9개의 보훈단체와 함께 군 현충공원 현충탑 광장에서 추념식 개최

- 고흥군수, 보훈단체협의회장 등 500여 명 참석

-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 현충공원 내 참전기념탑에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 1,739명의 명단을 새김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4558&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5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제5조(예우) ---------- ----------	

수 있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 --- 북돋움을 ---------- -----	용어정비
제9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조례 등에 의하여 제5조 및 제7조의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금지) ---------- ---------- ---- 법령 또는 조례 ---------- ---------- ---------- 경우에는 이 ---------- ----------.	띄어쓰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 ---- 필요한 ---------- ----------.	용어정비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71] 고흥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주민복지과	시행일	2019. 12. 23.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관계기관등과의 협의,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해야 함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군수의 책무 ④장애인 등의 권리 ⑤기본계획의 수립 ⑥시행계획의 수립 ⑦교육 ⑧홍보 ⑨실태조사 ⑩권익침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⑪법률지원 ⑫위탁 ⑬위원회 ⑭기능 ⑮구성 ⑯관계기관 등의 협조 ⑰시행규칙		
	• 목적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를 방지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권익보장 등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 • 기본계획의 수립 -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해야 함 • 시행계획의 수립 -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함 1. 장애인 “괴롭힘 등” 예방과 권익보장 시행계획, 연계・협력구축 방안 2. 장애인 차별행위 권리구제 및 편의제공 등의 세부 방안 3. 여성장애인·장애아동·정신적 장애인에 맞는 적절한 세부추진 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참여 활성화 방안 등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 • 홍보 - 군수는 소속기관, 장애인,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법인·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함 -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해야 함		

종합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기타(계획 수립)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9. 11. 14. ~ 11. 28. (15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띄어쓰기 - 제5조제5항: 권익보장과 관련 된 → 권익보장과 관련된 - 제6조제2항제3호: 세부추진 시책 → 세부 추진 시책 - 제7조제3항: 교재개발과 → 교재 개발과 • 소관부서에서는 위임조례로 분류하였으나 상위법령에 직접적인 위임 문구가 없어 자치조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도 자치조례로 분류하고 있음	
실현성	□ **이행**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 ‘2025년 고흥군 장애인 어울림한마당 축제’(고흥군청) – 소통부스 7개 설치(고흥군 내 사회복지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 건강 정보와 장애인 권익 안내 · 휠체어 체험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소통 체험 프로그램 운영 - 2024년에는 5개의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자활센터)의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 • ‘2024 공직자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 고흥군 공직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 - 주요 강의 내용 · 장애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권리 보장 ·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된 본인의 경험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시선, 존중, 공감 방안 제시 • 고흥군장애인복지관 - 장애인권익옹호서비스 제공 · 일반장애인 및 의사소통 혹은 자기결정의 어려움이 많은 발달장애인(지적장애)에 대한 각종 차별, 학대, 위법행위 발생시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실효성	□ **성과** • '2025년 고흥군 장애인 어울림한마당 축제'(고흥군청) - 장애인복지 유공자 표창장 수여: 5명, 감사패 수여: 2명 - 중고등학생 장학금 전달: 10명 - 2024년에는 장애인복지 증진 유공자 표창 5명, 감사패 2명 수여, 장학금 2명 전달 • '23년, '24년 공직자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 **언론보도** • 고흥군, 2025년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 성황(고흥군청 보도자료, 2025. 4. 18.) - 지역 장애인과 봉사자 등 총 800여 명 참여 - 고흥군 내 4개 장애인 단체(지체·신체·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와 고흥군장애인복지관이 함께 참여하여 주관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4329&boardId=BD_00025&pageId=www102 • 고흥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나서(고흥군청 보도자료, 2020. 11. 5.) - 본청과 사업소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 우수사례와 장애인 인권 및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9195&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⑤ ----------	띄어쓰기

및 권익보장과 관련 된 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된 ---------- --.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생 략)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여성장애인·장애아동·정신적 장애인에 맞는 적절한 세부추진 시책	3. ---------- 세부 추진 ----------	띄어쓰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7조(교육) ①·② (생 략)	제7조(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교재개발과 강사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 교재 개발---------- .	띄어쓰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72]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table>
<tr><th colspan="5">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소관부서</td><td colspan="2">주민복지과</td><td>시행일</td><td>2021. 09. 24.</td></tr>
<tr><td>조례 구분</td><td colspan="4">■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rowspan="2">관계 법령</td><td colspan="2">법령명</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 colspan="2">장사 등에 관한 법률</td><td colspan="2">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3장 묘지 · 화장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td></tr>
<tr><td rowspan="2">주요
내용</td><td colspan="4">•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지원대상 ④지원제외 ⑤지원금액 ⑥신청방법 ⑦지급방법 ⑧환수조치 ⑨시행규칙</td></tr>
<tr><td colspan="4">• 목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지원대상
- 고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고흥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금액
- 고흥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액은 다음과 같음
1.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으로 한다.
2.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00,000원으로 한다.
-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
• 지급방법
- 군수는 장려금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야 함
-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함</td></tr>
<tr><td rowspan="5">총괄
평가</td><td rowspan="2">종합의견</td><td colspan="3">• 개정 예정
- 지원금액 증액 예정</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2">□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colspan="3">• 일반정비</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colspan="3">• 이행</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3">• 충족</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th></tr>
<tr><td>분석항목</td><td>세부항목</td><td>척도, 의견 및 자료</td></tr>
<tr><td>조례의
실효성</td><td>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지급방법, 환수조치)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1. 07. 26. ~ 08. 15. (20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확대 요청 - 지원대상 현행유지, 지원금액 확대 필요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4년 170건, 29,650천원 지원 (사망 123, 개장46)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제3조(지급대상), 제5조(지원금액) - 사망자 시신 1구 200천원, 개장유골 유골 1구 100천원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화장장려 및 장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증액 필요 • 민원 내용 및 전라남도 인근 지역 화장장려금지원 지자체(14곳)와의 형평성 고려하여 금액 증액예정 (20만원 초과 지급8개군)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띄어쓰기 - 제6조제2항: 1년이내에 → 1년 이내에	
실현성	□ **이행** • 매년 화장장려금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 매년 화장장려금으로 35,000천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실효성	□ **성과** • ‘24년 170건, 29,650천원 지원 (사망 123, 개장 46)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6조(신청방법) (생 략)	제6조(신청방법) (현행과 같음)	
② 장려금 신청은 사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개장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② ----------1년 이내----------. ----------.	띄어쓰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 정책 제안 사항

- 민원 내용 및 전라남도 인근 지역 화장장려금지원 지자체(14곳)와의 형평성 고려하여 금액 증액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직접 지원금액을 조례에 정해놓은 곳과 비용 중 지원 비율을 정해놓은 곳으로 나눌 수 있음
- 금액을 직접 정해 놓으면 집행의 편리성이 있으나 금액을 조정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직접 금액을 정하기보다 비율을 정하는 것을 권고함

□ 전국 지방자치단체 화장장려금 조례 현황(2025. 9. 3. 기준)

연번	지자체명	지원금액	기타
1	경기도 가평군	• 1구당 70만 원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미만일 경우 실 소요비용 지급
2	전라남도 강진군	• 지원한도액 내에서 비용전액 또는 실비일부	지원한도액은 전남 서남권 화장장 이용 시 지급액 중 가장 큰 금액
3	경상남도 거제시	• 시신 1구당 500,000원 • 개장유골 1구당 200,000원 • 사산아 1구당 150,000원	-
4	경상남도 거창군	• 사망자 1구당 30만 원 • 개장유골 1구당 10만 원	화장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 경우 10만원까지 추가지급
5	경상북도 경산시	• 시 지역 외의 화장장을 이용한 사용료 중에서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사용료 공제 후 남은 비용 전액	-
6	충청남도 계룡시	• 시신 1구당 100,000원 • 개장유골 1구당 50,000원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7	경상북도 고령군	•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45%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1구당 화장장 사용료의 50%	-
9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서남권추모공원 시설 사용료 기준 지급	-
10	전라남도 고흥군	• 시신 1구당 200,000원 • 개장유골 1구당 100,000원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11	경기도 과천시	• 1구당 85만 원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12	경기도 광주시	• 1구당 50만 원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13	충청북도 괴산군	• 시신1구당자연장30만원 그외20만원 • 개장유골 1구당 10만 원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14	경기도 구리시	• 화장장 이용료의 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 사망시 70%	지원액은 최대 50만원
15	경상북도 김천시	• 화장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비용 지급	-
16	경기도 김포시	• 1구당 50만 원	화장시설 이용금액시 5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급
17	전라남도 나주시	• 시신 1구당 200,000원 • 개장유골 1구당 200,000원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사용료의 50%	-
19	경기도 남양주시	• 화장시설 이용비용의 100분의 50 • 개장유골의 경우 화장시설 이용비용 전액	1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
20	충청북도 단양군	•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 지급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
21	전라남도 무안군	• 시신 400,000원 • 개장유골 120,000원 • 소인·영아·태아(사산아) 140,000원	시신은 무안군민이어야 함

연번	지자체명	지원금액	기타
22	충청남도 보령시	• 1구당 30만 원	실 비용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들어간 비용 전액 지급
23	전라남도 보성군	• 시신 1구당 20만 원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24	충청북도 보은군	• 시신 1구당 300,000원 • 개장유골 1구당 100,000원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25	경상북도 봉화군	• 실제 부담 화장비용의 50%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2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27	경상남도 산청군	• 조례에 지원금 내용 없음	-
2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80%	-
29	경상북도 상주시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30	경상북도 성주군	•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 50% 지급	타 지역 화장장을 성주군민이 이용할 경우
3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남원승화원 화장시설 사용료 기준으로 지급	-
32	전라남도 신안군	• 시신 1구당 405,000원 • 개장유골 1구당 50,000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 1구당 495,000원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33	충청남도 아산시	• 시신 1구당 100,000원 • 개장유골 1구당 50,000원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34	경상남도 양산시	• 각 화장시설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
35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실 소요비용의 50%	-
36	경기도 양주시	• 시신 1구당 300,000원 • 개장유골 1구당 100,000원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37	경기도 양평군	• 1구당 최고 100만 원 한도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38	경기도 연천군	•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사용료 전액 지급	-
39	전라남도 영광군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최대 30만원
40	경상북도 영덕군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41	충청북도 영동군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42	경상북도 영양군	• 타 지역 화장장 이용시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
4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시신 1구당 200,000원 • 개장유골 1구당 100,000원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44	경상북도 영천시	• 화장장사용료의 60%	-
45	충청남도 예산군	• 시신 1구당 150,000원 • 개장유골 100,000원	-
46	경기도 오산시	• 화장시설 이용 실비 • 개장 등 일부대상 화장시설 이용 실비의 100분의 70	1구당 35만원 한도

연번	지자체명	지원금액	기타
47	충청북도 고흥군	• 1구당 50만원 이하의 실제 비용	–
48	인천광역시 옹진군	• 1구당 1,000,000원 범위 내	–
49	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산하늘공원 승화원 사용료의 50%	–
50	충청북도 음성군	• 화장 1구당 30만 원 • 개장유골 1구당 10만 원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51	경상남도 의령군	• 시체 1구당 30만 원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52	경기도 의왕시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85%	지급액은 최고 85만원
53	경기도 이천시	• 시신 1구당 60만 원 • 개장유골 1구당 30만 원	–
54	전라남도 장성군	• 시신 1구당 20만 원 • 개장유골 1구당 5만 원 •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주민등록법」 상 8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1구당 30만 원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55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시신에 대하여 화장시설 이용 비용의 80% • 개장유골에 대하여 화장시설 이용 비용의 80%	시신은 1구당 최고 50만원 한도 개장유골 1구당 최고 10만원 한도
56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실제 화장비용의 70%	–
57	충청북도 진천군	• 시신 1구당 300,000원 • 개장유골 1구당 100,000원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58	경상남도 창녕군	• 각 화장시설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
5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시신 1구당 500,000원 이내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60	경상북도 청도군	• 타 지역 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100%를 지급	–
61	경상북도 청송군	• 타 지역 화장장을 청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
62	경상북도 칠곡군	• 타 지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전액	–
6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행려사망자는 사용료 전액 지원
64	경기도 평택시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	최대 30만원 지원
65	경기도 하남시	• 실 소요비용의 50%	–

연번	지자체명	지원금액	기타
66	경상남도 하동군	• 사망자 1구당 최고 30만 원까지 실제 화장비용 • 개장유골 1구당 예산 범위에서 10만 원	–
67	경상남도 함양군	• 시신 1구당 30만원 • 개장유골 1구당 10만원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68	전라남도 함평군	• 시신 1구당 200,000원 • 개장유골 1구당 50,000원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69	경상남도 합천군	• 각 화장시설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
70	전라남도 화순군	• 사망자 1구당 30만 원 • 개장 1기당 5만 원	–
7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전액 • 차상위계층: 80% • 일반주민 중 화천군공설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 80% • 일반주민 중 화천군공설장례식장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30%	–

[73]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운영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주민복지과	시행일	2018. 12. 27.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해당 없음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설치 및 위치 ③정의 ④업무의 위탁 ⑤위탁취소 ⑥이용료 ⑦이용료 감면 ⑧이용료 반환 ⑨개관 및 휴관 ⑩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⑪손해배상 책임 ⑫위탁운영 기간 ⑬관리감독			
	• 목적 - 40여 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한 간호사 마리안느 스퇴거(Marianne Stoeger)와 간호사 마가렛 피사렉(Margreth Pissarek) 두 분의 숭고한 봉사의 참뜻을 널리 알리고 봉사정신을 교육·실천하기 위해, 고흥군과 사단법인 마리안느·마가렛이 공동으로 건립한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업무의 위탁 • 위탁운영 기간 - 위탁운영 기간은 군과 법인이 계약체결한 날부터 20년으로 하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연장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교육이나 홍보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7. 10. 25. ~ 10. 31.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건물 전기요금 - 2020-2024 총 179,143,760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해당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용어정비 - 제7조제1호: 당초 목적 → 원래의 목적 - 제13조: 망실 → 상실	
실현성	□ **이행** •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과 공동 운영 중에 있음 •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 - 연수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사람에게서 희망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연수프로그램 · 간호사 및 의료 종사자 자긍심 고취와 격려의 프로그램 · 공직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감과 감동이 있는 프로그램 ·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권, 소통, 배려와 현장 봉사활동 프로그램 · 부모와 자녀가 가족 캠프를 통해 대화와 호연지기를 느끼는 체험 프로그램 · 공공기관, 사회단체 연수 및 체험 활동 지원 - 체험프로그램 · 마리안느와 마가렛 기념관, M관사, 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중앙공원 방문 · 고흥군 주변지역 문화체험: 분청문화박물관, 녹동항, 거금대교 트래킹, 금진항 유람선 승선, 우주천문관학관, 거금생태숲 체험 등 - 사람에게서 희망찾기 프로젝트 · 소록소록 캠프-추억은 소록소록(기본과정 1박2일), 나이팅게일 캠프(심화과정 2박3일)로 진행 · 공감 스테이 캠프(2박3일) · 봉사 나눔학교(1일) · M&M 힐링 스테이 운영(2박3일) · 특별프로그램: 허브제품 만들기 • 2024년 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 계획 - 마리안느 마가렛 연수원과 연계: "나눔과 별여행" 프로그램 운영 - 관내 초·중등(학부모 참여 가능, 연 4회/ 회당 150명) • 재정 지원: 건물 전기요금 - 2020-2024 총 179,143,760원	

실효성	□ **성과** •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 자원봉사 성지화 추진(2022. 7. ~ 2026. 12.) - 시설 확충 및 경관 정비, 나눔연수원 운영 활성화,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축제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22년 추진 실적 · ‘22. 7.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 활성화 계획 수립 · ’22. 11. 기념관동 리모델링 실시 설계 · ‘22. 11. 연수원 증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 2023년 추진실적 · ’23. 4. 기념관 리모델링 공사 및 기념공원 허브 치유화단 조성 · ‘23. 12.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 리더양성 거점공간 조성 2024년 사업비 5억원 확보 - 2024년 추진실적 · ’24. 2. ~ 12. 행정안전부, 대한조산협회 등 전국 단위 행사 유치 · ‘24. 5. ~ 12. 마마 글로벌 리더양성 거점공간 조성사업 행정절차 이행 · ’24. 10~ 11. 마·마 기념관 상수도 인입 공사 - 나눔연수원 방문객 수: 총 603회, 22.968명/ ‘24년 11월 말 기준: 150회, 6,076명 • 2023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제1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 진행(고흥군청) □ **언론보도** • 소록도 나눔연수원에서 ’온기나눔 캠페인‘(브릿지경제, 2024. 2. 2.) - 소록도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전국 자원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행정안저부 주관의 온기나눔 캠페인 워크숍 진행 -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등 150여 명 참석 - 소록도 해안 환경 정비 봉사, 강연 등 진행 https://www.viva100.com/20240202010000731 • 고흥군, 제18회 자원봉사자대회 개최(고흥군청 보도자료, 2021. 12. 3.) -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제18회 고흥군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 우수 봉사자 11명 표창, 자원봉사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수상자 9명 시상, 생필품꾸러미 만들기(350개) 등을 진행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9849&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7조(위탁취소) 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취소) ---------- ---------- ---------- ----------.	

1. 연수원을 당초 목적 이외로 운영하였을 때	1. ------ 원래의 ----------	용어정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3조(손해배상 책임) 이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민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책임) ------ ---------- 상실하였---------- ---------- ----------.	용어정비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74] 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행정과	시행일	2014. 10. 02.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해당 없음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적용대상 ④포인트 관리 ⑤포인트 부여 등 ⑥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⑦포인트 부여 제외 ⑧포인트 소멸기준 ⑨시행규칙
	• 목적 - 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에 공헌한 고흥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군정 참여 활성화 • 포인트 관리 - 고흥군수는 군정공헌 포인트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포인트는 관리부서의 장이 관리하고, 사업부서에서는 군정 공헌자를 관리부서 부서장에게 알려야 함 • 포인트 부여 등 - 군수는 주민 참여 및 공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정에 공헌한 군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에 관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함

총괄평가			
	종합의견	• 행정여건 변화,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이행되고 있지 않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폐지권고	
	조례의 실현성	• 미충족	
	조례의 실효성	• 미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기타(군정공헌 포인트 관리)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미이행 사유 - 행정여건 변화, 제도실효성 저하 등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4. 08. 05. ~ 08. 25. (20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포인트 운영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특이 사항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용어정비 - 제1조: 고취 → 북돋움 - 제2조제1호: 인센티브 → 혜택(특전) - 제7조: 자(者) → 사람 • 어법 - 제8조: 아니하거나 → 않거나	
실현성	□ **미이행** •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 • ‘17년까지 시행되었으나 참여신청자가 없어 그 이후 시행되지 않음 • 행정여건의 변화 및 제도 실효성의 저하 등을 사유로 하여 미이행	
실효성	• 미이행으로 실효성 없음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에 공헌한 고흥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군정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북돋움과 ---------- ----------.	용어정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군정공헌 포인트제”란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공헌한 군민들에게 참여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 ---------- ---------- ---------- ---------- ------- 혜택을 ------- ----------.	용어정비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군정에 공헌한 자라도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은 자는 포인트를 부여할 수 없다.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 ----- 사람이라도 ------- ---------- 사람은 ----- ----------.	용어정비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포인트 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포인트가 누적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여 포인트는 모두 소멸한다.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 ---------- ---------- 않거나---- ---------- ----------.	어법

2. 정책 제안 사항

- 폐지 권고
- 행정여건에 부합하지 않고 이행되지 않아 실효성 없는 조례로 폐지해야 하나 기존 포인트 미사용자가 폐지 이후 사용을 하려고 할 때 문제 발생 가능
- 폐지안 부칙에 경과규정을 넣는 방식이 바람직함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폐지일 현재 「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 조례」에 따라 부여된 포인트는 부여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0XX년 XX월 XX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종료) 제2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면 미사용 포인트는 자동 소멸한다.

[75] 고흥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행정과	시행일	2009. 05. 15.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해당 없음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설치 ③구성 ④위원 등의 임기 ⑤위원장 ⑥회의 ⑦사업위원 ⑧감사위원 ⑨회계 ⑩서기 ⑪보고 ⑫시행규칙			
	• 목적 -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설치 -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읍·면장 또는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개정 요구 민원(리자치위원회로의 명칭 개정)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특이 사항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문장정비 - 제2조제5호: 시공계획 취업계획 → 시공계획 · 취업계획 • 띄어쓰기 - 제5조제2항: 있을때에는 → 있을 때에는 - 제5조제2항: 위원중 → 위원 중 - 재10조제2항: 주민중에서 → 주민 중에서 • 어법 - 제5조제2항: 자 → 사람 • 용어정비 - 제9조제1항: 기타 수입으로 → 그 밖의	
실현성	□ **이행** • 리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일부에서 리 자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나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현행 유지를 결정함	
실효성	• 조례의 규정에 따라 리개발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어 실효성 충족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2조(설치)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리별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5. ---------- 시공계획·취업계획 ----------	용어정비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 ① (생 략)	제5조(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중 사업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있을 때에는 위원 중 ---------- 사람 중---------- .	띄어쓰기 어법
제10조(서기) ① (생 략)	제10조(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 주민 중---------- .	띄어쓰기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확인

[76] 고흥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행정과		시행일	2020. 08. 03.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해당 없음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출향인의 지위 ④출향인과의 교류·협력사업 ⑤예산확보 및 교류활성화 지원 ⑥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⑦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기능 및 역할 등 ⑧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운영 ⑨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해촉 ⑩포상 ⑪시행규칙			
	• 목적 -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출향인과 고흥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출향인과의 교류·협력사업 - 군민의 날 행사, 군 축제, 출향공직자와의 간담회, 향우 고향방문 행사 등 - 지역 농수축산물 판매 및 홍보 - 관광, 문화, 체육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 그 밖의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 예산확보 및 교류활성화 지원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향우 고향방문 행사계획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기관 교류 또는 협력체계 구축, 포상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0. 02. 26. ~ 03. 17.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고향방문 행사: 2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향우회 회원 식비 및 숙박비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table>
<tr><td rowspan="3"></td><td>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종합 의견</td><td colspan="2">• 출향인 교류협력을 통해 출향인과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교류 · 협력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됨</td></tr>
<tr><td colspan="3">3. 입법평가 결과</td></tr>
<tr><td>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일반정비
• 띄어쓰기
- 제3조: 있지않는 한 → 있지 않는 한</td></tr>
<tr><td>실현성</td><td colspan="2">□ 2025년 주요업무계획
• 출향향우 네트워크 구축으로 협력관계 강화
- 출향향우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확대
· 전국 고흥군 향우회 회장단 등 간담회 추진
· 고흥군 향우회 게시판(군 홈페이지) 활용, 상호 정보 교류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고흥출신 출향인 지속 발굴
- 출향인 우대정책으로 고향에 대한 자긍심 고취
· 향우회 유대강화 및 고향사랑 실천의지를 다지는 고향방문 행사 추진
· SNS 등을 통한 군정 소식 공유 등 정기적인 소통채널 운영
• 지역별 고흥군향우회 현황
<table><tr><th>구분</th><th>향우회</th></tr><tr><td>광역자치단체(7)</td><td>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td></tr><tr><td>기초자치단체(20)</td><td>경기(고양, 부천, 성남, 시흥, 안산, 의정부, 안양), 강원(원주, 춘천), 경남(창원), 전북(군산,전주), 전남(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강진), 제주(제주시, 서귀포시)</td></tr></table>
□ 이행
• 향우 고향방문 행사계획 수립
• 5년간 출향인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해왔음(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table><tr><th>회계연도</th><th>세부사업명</th><th>통계목</th><th>예산액</th><th>비고</th></tr><tr><td>2021</td><td>인적네트워크 관리</td><td>향우 고향 방문 행사 지원</td><td>10,000</td><td>5,000,000원*2회</td></tr><tr><td>2022</td><td>인적네트워크 관리</td><td>향우 고향 방문 행사 지원</td><td>10,000</td><td>5,000,000원*2회</td></tr></table></td></tr>
</table>

회계연도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비고
		출향인 우리고장 바로알기 행사	20,000	10,000,000원*2회
2023	인적네트워크 관리	향우 고향 방문 행사 지원	10,000	5,000,000원*2회
		출향인 우리고장 바로알기 행사	20,000	10,000,000원*2회
2024	인적네트워크 관리	향우 고향 방문 행사 지원	10,000	5,000,000원*2회
		출향인 우리고장 바로알기 행사	18,000	9,000,000원*2회
2025	인적네트워크 관리	향우 고향 방문 행사 지원	12,000	4,000,000원*3회
		향우 공무원과 만남의 장 행사	8,000	-
		출향인 우리고장 바로알기 행사	18,000	9,000,000원*2회

실효성

□ **성과**

• 고향사랑기부제(고흥군청)

- 2023-2024년 고향사랑기부제로 적립된 기부금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등에 사용

- 2025년 시행

• 매년 고향 방문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언론보도**

• 고흥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프로젝트 가동(전남일보, 2025. 2. 25.)

- 건전한 기부문화를 위해 5개 분야의 고흥군만의 차별화된 전략 마련

: 기부자 맞춤형 홍보, 범국민 기부 참여, 특색있는 답례품 개발, 고흥형 기금사업 추진, 기부자 예우 시책

- 고액 기부자 명예의 전당 추가 설치, 고흥 출신 출향인 네트워크 강화 등 20개의 시책 확대 추진

https://www.jnilbo.com/76241788776

• 고흥군, 재경고흥군향우회 제24차 고향방문 성료(이뉴스투데이, 2025. 6. 13.)

-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향우 간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

- 16개 읍면 재경향우 임원진을 비롯하여 400여 명이 참석

- 고향사랑기부금 2억원 전달 및 향우회 임원 대상 명예 군수 부군수 읍면장 홍보대사 등 위촉패 수여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968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않는 한 고흥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출향인의 지위) ---------- ---------- ---------- 있지 않---------- ---------- ----------

[77] 고흥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행정과		시행일	2017. 06. 27.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군수의 책무 ④군민의 책무 ⑤관계기관의 협조 ⑥홍보 및 교육 ⑦재정지원 등 ⑧시행규칙			
	• 목적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 • 관계기관의 협조 -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 가능 - 위의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함 • 재정지원 등 -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 가능			
총괄평가	종합의견	• 현행 유지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충족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법정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기관 교류 또는 협력체계 구축, 허가·승인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7. 04. 11. ~ 05. 02. (20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필요경비 일부보조 - 2017년 이후부터 매년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제7조(재정지원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table>
<tr><td rowspan="2"></td><td>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종합 의견</td><td colspan="2">• 특이 사항 없음</td></tr>
<tr><td colspan="3">3. 입법평가 결과</td></tr>
<tr><td>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충족
• 소관부서에서는 위임조례로 분류하였으나 상위법령에 직접적인 위임 문구가 없어 자치조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도 자치조례로 분류하고 있음</td></tr>
<tr><td>실현성</td><td colspan="2">□ 2025년 주요업무계획
• 주민행복 UP, 공익 UP!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법정사회단체(7개소, 단위: 천원)
<table>
<tr><th rowspan="2">단체명</th><th colspan="3">교부결정액</th><th rowspan="2">지원근거</th></tr>
<tr><th>계</th><th>사업비</th><th>운영비</th></tr>
<tr><td>계</td><td>303,226</td><td>173,736</td><td>129,490</td><td>-</td></tr>
<tr><td>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흥군협의회</td><td>53,400</td><td>28,400</td><td>25,000</td><td>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td></tr>
<tr><td>고흥군새마을회</td><td>157,336</td><td>95,536</td><td>61,800</td><td>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td></tr>
<tr><td>바르게살기운동고흥군협의회</td><td>32,490</td><td>12,800</td><td>19,690</td><td>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td></tr>
<tr><td>한국자유총연맹고흥군지회</td><td>36,000</td><td>13,000</td><td>23,000</td><td>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td></tr>
<tr><td>범죄피해자지원센터</td><td>10,000</td><td>10,000</td><td>-</td><td>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td></tr>
<tr><td>지방행정동우회</td><td>9,000</td><td>9,000</td><td>-</td><td>지방행정동우회법</td></tr>
<tr><td>재향경우회</td><td>5,000</td><td>5,000</td><td>-</td><td>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td></tr>
</table>
· 주민자치센터(3개소)
□ 이행
• 5년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사업명: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table>
<tr><th>구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r>
<tr><td>예산액</td><td>10,000</td><td>10,000</td><td>10,000</td><td>10,000</td><td>10,000</td></tr>
</table>
- 10명에게 법률상담 지원 10회 제공
• 재정 지원
- 2017년 이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음</td></tr>
<tr><td>실효성</td><td colspan="2">□ 성과
•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실효성 충족</td></tr>
<tr><td colspan="3">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td></tr>
<tr><td colspan="3">• 해당 사항 없음</td></tr>
</table>

[78] 고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행정과		시행일	2019. 12. 23.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④지원대상 ⑤지원범위 등 ⑥협의회 설치 ⑦협의회 구성 등 ⑧협의회의 운영 등 ⑨시행규칙			
	• 목적 - 고흥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계획 미수립 사유 - 북한이탈주민(14명) 조사결과 안정적인 정착으로 군민들과 동일한 혜택지원으로 생활 안정화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교육이나 홍보, 추진실적 성과평가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9. 11. 14. ~ 11. 28. (20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미지원 사유 - 소수인원 거주로 전담예산 편성이 어렵고, 법정사회단체 프로그램 참여 유도(민주평통, 자유총연맹) - 경찰서와 합동으로 안부살피기 및 명절 위문품 전달 행사 추진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특이 사항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용어정비 - 제3조제2호: 애로사항 → 고충사항 - 제5조제1항: 조기 정착 → 일찍 정착 - 제5조제1항: 강구에 → 마련에 □ **소관부서에서는 위임조례로 분류하였으나 상위법령에 직접적인 위임 문구가 없어 자치조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도 자치조례로 분류하고 있음**	
실현성	□ **이행**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미수립 - 조사결과, 북한이탈주민 14명 모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군민들과 동일한 생활 안정화에 이르게 되어, 계획 미수립 • 교육 및 홍보와 추진실적 성과평가를 이행하고 있음 • 재정 미지원 - 소수인원 거주로 전담예산 편성이 어렵고, 법정사회단체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민주평통, 자유총연맹) - 경찰서와 합동으로 안부 살피기 및 명절 위문품 전달 행사 추진 □ **공정성** • 제7조에서 협의회 구성 관련하여 성별 균형 고려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반영 필요	
실효성	□ **성과** • 고흥군 내 북한이탈주민 14명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고흥경찰서와 안보자문협의회가 협력하여 고흥군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 지원을 돕고 있음 □ **언론보도** • <미담> 고흥경찰서, 북한이탈주민과 아름다운 동행(대한경제, 2024. 11. 12.) - 고흥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고흥군 대표행사인 고흥유자축제장에 초정	

	- 고흥경찰서가 후원한 기념품 전달 및 협력단체인 안보자문협의회의 중식 제공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111111362431502l0 • 고흥경찰서-안보자문협의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논의(강원종합뉴스, 2024. 11. 26.) - 고흥경찰서-안보자문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총19명 참석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추진 등 논의 - 고흥경찰서-안보자문협의회, 매년 명절 위문금 지원, 문화행사 체험,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돕고 있음 https://www.kwtotalnews.kr/31566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2. ---------- 고충사항-----------	용어정비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범위 등) ① 고흥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강구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등) ① ---------- ---------- ---------- 일찍 ---------- ---- 마련---------- ----.	용어정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2. 정책 제안 사항

- 제7조제3항제3호의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위원구성 조항에 성별균형 문구 추가
- 고흥군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단서조항이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문구 추가가 필요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② (생 략)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3. ----------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성별 균형 문구 추가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79] 고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행정과	시행일	2019. 12. 23.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 출연금의 지급 등 제4조 국유재산 · 공유재산의 대부 등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보조지원 ④지원신청 등 ⑤예우 ⑥준용 ⑦시행규칙		
	• 목적 -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 • 보조지원 - 고흥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 운동조직의 운영, 고흥군이 권장하는 새마을사업,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새마을조직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법정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센터 또는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추진실적 성과평가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5. 01. 01. ~ 01. 21. (20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새마을회 운영비 및 주요사업 추진비 지원 - 2015년 이후부터 매년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table>
<tr><td rowspan="2"></td><td>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종합 의견</td><td colspan="2">• 특이 사항 없음</td></tr>
<tr><td colspan="3">3. 입법평가 결과</td></tr>
<tr><td>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일반정비
• 용어정비
- 제3조: 기타 → 그 밖의
- 제5조: 사기진작을 위하여 →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 제5조제3호: 고취 → 북돋움
- 제8조: 관하여 → 생략
• 소관부서에서는 위임조례로 분류하였으나 상위법령에 직접적인 위임 문구가 없어 자치조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도 자치조례로 분류하고 있음</td></tr>
<tr><td>실현성</td><td colspan="2">□ 2025년 주요업무계획
• 주민행복 UP, 공익 UP!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법정사회단체(7개소, 단위: 천원)
<table><tr><th rowspan="2">단체명</th><th colspan="3">교부결정액</th><th rowspan="2">지원근거</th></tr><tr><th>계</th><th>사업비</th><th>운영비</th></tr><tr><td>계</td><td>303,226</td><td>173,736</td><td>129,490</td><td>-</td></tr><tr><td>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흥군협의회</td><td>53,400</td><td>28,400</td><td>25,000</td><td>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td></tr><tr><td>고흥군새마을회</td><td>157,336</td><td>95,536</td><td>61,800</td><td>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td></tr><tr><td>바르게살기운동고흥군협의회</td><td>32,490</td><td>12,800</td><td>19,690</td><td>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td></tr><tr><td>한국자유총연맹고흥군지회</td><td>36,000</td><td>13,000</td><td>23,000</td><td>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td></tr><tr><td>범죄피해자지원센터</td><td>10,000</td><td>10,000</td><td>-</td><td>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td></tr><tr><td>지방행정동우회</td><td>9,000</td><td>9,000</td><td>-</td><td>지방행정동우회법</td></tr><tr><td>재향경우회</td><td>5,000</td><td>5,000</td><td>-</td><td>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td></tr></table>· 주민자치센터(3개소)
□ 이행
• 추진실적 성과평가 이행 중
• 5년간 예산 편성(새마을사업 육성 지원, 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table><tr><th>구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r><tr><td>예산액</td><td>195,968</td><td>198,768</td><td>167,888</td><td>151,504</td><td>181,504</td></tr></table></td></tr>
</table>

	• 재정 지원 - 2015년 이후로 매년 새마을회 운영비 및 주요사업 추진비 지원
실효성	□ **성과** • 매년 편성되는 새마을회 운영 및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흥군 새마을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캠페인 참여, 자원봉사, 기부 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어, 이를 통해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확인 가능 • '22년 민·관협력 인적자원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고흥군청) - 고흥군새마을회는 고흥경찰서, 고흥소방서,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 등 15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복지위기가구 전수조사 추진 □ **언론보도** • 새마을회, 포두면에 이웃사랑실천으로 생수 증정(고흥군청 보도자료, 2024. 8. 12.)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2633&boardId=BD_00029&pageId=www192 • 고흥군, 국민 안전의 날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고흥군청 보도자료, 2024. 4. 16.)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 군수, 고흥경찰서, 고흥군 새마을회 등 100여 명이 참여 - 현수막, 광고지 등을 활용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2649&boardId=BD_00025&pageId=www102 • 고흥군, 여름철 이웃사랑 현물기탁 행렬 이어져(고흥군청 보도자료, 2021. 8. 3.) - 고흥군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수해피해지역 긴급구호 생활용품 전달식을 진행 - 고흥군 새마을회는 관내 김 가공업체 케이푸드의 후원으로 도시락 김 250박스를 기탁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9676&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5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제5조(예우) ---------- ---------- 사기를 북돋우기 ---------- ----------	용어정비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 북돋움을 ----------	용어정비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준용) ---------- 필요한 ----------.	용어정비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 필요한 -------.	용어정비

2. 정책 제안 사항

• 해 당사항 없음

[80] 고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행정과	시행일	2016. 05. 25.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해당 없음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이장의 임무 ③복무 ④실비변상 ⑤편의제공 ⑥사기양양			
	• 목적 -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장의 임무 -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 마을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 마을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마을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복지이장 역할 수행 - 기타 마을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 실비변상 -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 지급 가능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6. 01. 13. ~ 02. 01.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특이 사항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띄어쓰기

- 제2조제2항제3호: 마을 주민간 → 마을 주민 간

- 제3조제3항: 타지역 출타등으로 → 타지역 출타 등으로

실현성

□ **이행**

• 5년간 예산 편성(사업명: 이장 사기진작 및 관리, 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연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비고
2021	이장 사기진작 및 관리	일반수용비	19,950	-
		운영수당	2,000	-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	58,911	514명
		이장단 선진지 견학	8,000	-
		이장 한마음 대회	30,000	-
2022	이장 사기진작 및 관리	일반수용비	19,848	이장 업무일지 530부 제작 역량강화 리더십 교육
		운영수당	1,000	리더십 교육 강사료 500,000원*2명*1회
		이장·부녀회장 워크숍	22,000	11,000,000원*2회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	50,600	514명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30,000	-
2023	이장 사기진작 및 관리	일반수용비	19,950	업무일지 530부 제작 역량강화 리더십 교육
		운영수당	2,000	리더십 교육 강사료 1,000,000원*2명*1회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	50,600	514명
		이장·부녀회장 워크숍	22,000	11,000,000원*2회
		이장단 선진지 견학	10,000	-
		이장 한마음 대회	30,000	-

	2024	이장 사기진작 및 관리	일반수용비	19,950	업무일지 530부 제작 역량강화 리더십 교육
			운영수당	2,000	리더십 교육 강사료 1,000,000원*2명*1회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	55,000	514명
			이장·부녀회장 워크숍	20,000	10,000,000원*2회
			이장단 선진지 견학	8,000	-
			이장 한마음 대회	32,000	-
	2025	이장 사기진작 및 관리	일반수용비	19,950	업무일지 530부 제작 역량강화 리더십 교육
			운영수당	2,000	리더십 교육 강사료 1,000,000원*2명*1회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	58,911	514명
			이장단 선진지 견학	8,000	-
			이장 한마음 대회	30,000	-

- 매년 이장 업무일지 제작 및 배부, 역량강화 리더십 교육, 상해보험 가입, 이잔단 선진지 견학, 이장 한마음 대회 등의 지원을 통해 이장의 적극적 활동을 도모하고 있음

실효성

□ **성과**

- 이장 기본수당 인상(https://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581)

- 기존: 기본수당 월 30만원, 회의참석 월 4만원, 상여금 연 60만원

- 2024년부터: 기본수당 월 40만원, 회의참석 월 4만원, 상여금 연 60만원

□ **언론보도**

- 고흥군, 마을안전지킴이 구성 운영으로 인명피해 예방에 앞장(이뉴스투데이, 2025. 6. 24.)

- 집중호우와 태풍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마을안전지킴이의 효율적 활동을 위해 역량강화 교육 추진

- 마을안전지킴이는 자율방재단, 이장,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으로 구성되어, 123명이 활동 중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4002

- 고흥군 저장 강박증 취약 가구 쓰레기 수거(노컷뉴스, 2024. 6. 25.)

- '저장 강박증'이 있는 취약가구 지원

- 이장, 부녀회장, 고흥군 희망복지지원단 등 20명이 참여

https://www.nocutnews.co.kr/news/6166576?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625122423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생 략)	제2조(이장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마을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 주민 간 ----------	띄어쓰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3조(복무) ①·② (생 략)	제3조(복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 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③ ---------- 출타 등----------.	띄어쓰기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81] 고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보건소		시행일	2015. 01. 01.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 요청 가능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군수의 책무 ④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⑤사후관리 ⑥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⑦관련정보의 제공 ⑧비밀준수의 의무 ⑨시행규칙			
	• 목적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고흥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 헌혈에 관한 교육, 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총괄평가	종합의견	• 헌혈 권장을 위한 홍보문구 추가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충족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주민 헌혈 참여를 위한 홍보 및 안내 - 매분기 1회/ 연간 4회 실시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교육이나 홍보, 추진실적 성과평가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0. 11. 02. ~ 11. 2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헌혈 참여 및 참여자 홍보물품 지원: 300명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헌혈 홍보 및 참여자 보상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table>
<tr><td rowspan="4"></td><td>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종합 의견</td><td colspan="2">• 빈번한 재난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혈액수급이 부족하여 전 국민 헌혈 권장을 위한 홍보가 대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임.</td></tr>
<tr><td colspan="3">3. 입법평가 결과</td></tr>
<tr><td>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일반정비
• 띄어쓰기
- 제2조제2호: 대가없이 → 대가 없이
• 용어정비
- 제9조: 관하여 → 생략</td></tr>
<tr><td>실현성</td><td colspan="2">□ 이행
• 매년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 등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매 분기 헌혈 참여 홍보 등을 시행하는 등 헌혈 권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
- 홍보 매분기 1회/ 연간 4회 실시
• 추진실적 성과평가 이행하고 있음
• 헌혈 캠페인 등을 시행
• 5년간 헌혈 장려를 위한 예산 편성(시업명: 의약업소 등 지도관리, 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table><tr><th>구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r><tr><td>예산액</td><td>2,000</td><td>2,000</td><td>3,000</td><td>3,000</td><td>6,000</td></tr></table>※ 2025년 연 진행횟수 2회 → 4회로 증가하여 예산 증가
- 헌혈장려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
• 재정 지원
- 헌혈 참여 및 참여자 홍보물품 지원: 300명</td></tr>
<tr><td>실효성</td><td colspan="2">□ 성과
• 2025년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고흥군청)
- 군민, 공무원, 의료기관 종사자 등 81명 참여</td></tr>
</table>

	- 헌혈 행사를 연 3회에서 연 4회로 확대 • 2024년 생명나눔 헌혈 행사 개최(고흥군청) - 연 3회 개최 - 헌혈참여자: 8개의 항목 검사 가능, 봉사활동 인정, 헌혈증서 제공, 소정의 기념품 증정 등의 혜택 - 군 홈페이지,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관·기관단체 방문 등을 통해 헌혈 행사 홍보 진행 □ **언론보도** • 고흥군, 헌혈사업 유공으로 대한적십자사 기관 표창 수상(고흥군청 보도자료, 2024. 11. 19.) -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년을 맞아 그간 헌혈사업에 적극 동참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고흥군이 대한적십자사 기관 표창을 수상 - 꾸준한 헌혈과 캠페인 활동을 인정받음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3634&boardId=BD_00025&pageId=www102 • 고흥군 보건소, 2월 12일 '사랑의 헌혈 캠페인' 추진(고흥군청 보도자료, 2025. 2. 4.) - 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고흥군청 정문 앞 등 3곳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 추진 - 헌혈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물 배부 등 - 2025년은 연 4회로 캠페인을 확대할 예정으로, 2월 12일, 5월 8일, 8월 27일, 11월 13일로 계획되어 있음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3977&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 ---------- ---------- 대가없---------- ---------- ----------.	띄어쓰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	제9조(시행규칙) ----------	용어정비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필요한 ---------- ----------.	

2. 정책 제안 사항

- 헌혈 권장을 위해 상시적인 홍보가 필요
- 제7조 관련정보의 제공에 홍보 문구 추가
- 「경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제14조제2항은 헌혈권장활동 홍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② 도지사는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및 방법을 통하여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도 누리집(홈페이지)
  2. 도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
  3. 도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도지사가 헌혈권장활동과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에 용이하다고 판단하는 방법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헌혈 홍보 및 정보 제공) 군수는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홍보 문구 추가

[82] 고흥군 홍보대사 및 명예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기획실		시행일	2019. 02. 22.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해당 없음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임무 ③위촉 ④ 해촉 ⑤보상 ⑥시행규칙			
	• 목적 - 고흥군의 위상과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흥군 홍보대사 및 명예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임무 -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관한 사항 - 농·수·축산물 및 지역특산품 등 브랜드 홍보활동 -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활동 - 그밖에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용어정비 등 일반정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별지 미첨부 되어 있음, 첨부 요청 필요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교육이나 홍보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2. 10. 17. ~ 11. 05. (20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해당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띄어쓰기 - 제1조: 홍보대사및 → 홍보대사 및 - 제2조제1호: 활동에관한 → 활동에 관한 - 제2조제5호,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제4호: 그밖에 → 그 밖에 • 용어정비 - 제6조: 관하여 → 생략 □ **사이트 정비** • 문서 첨부 - 제3조제2항: 별지 미첨부 → 별지 첨부	
실현성	□ **이행** • 고흥군 홍보대사 및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있음 • ‘25. 7. 기준 고흥군 홍보대사(고흥군청) - 남진, 엄홍길, 진성, 조항조, 김태연, 조승환, 임호균, 김성환, 배동성, 전영록, 정수라, 최홍림, 현진우, 김용임, 우연이, 김양, 진이랑, 한수영, 이미리, 김다현 - 배우, 가수, 운동선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들이 위촉되어 있음	
실효성	□ **성과** • 가수 남진 - 트로트 기념관 건립 - ‘내 사랑 고흥’ 노래 발표(고흥군청 보도자료) □ **언론보도** • 고흥군, ‘개그맨 최홍림 등 10명’ 홍보대사 위촉(고흥군청 보도자료, 2024. 12. 27.) - 가수와 개그맨 10명은 홍보대사로 위촉 - 기존 홍보대사와 함께 우주, 드론,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군정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3817&boardId=BD_00025&pageId=www102 • 고흥군, 배우 김성환과 야구인 임호균 홍보대사 위촉(고흥군청 보도자료, 2024. 3. 27.)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2554&boardId=BD_00025&pageId=www102 • 고흥군, 방송인 ‘배동성’ 홍보대사로 위촉(고흥군청 보도자료, 2024. 7. 5.)	

	https://www.goheung.go.kr/boardView.do?movePage=1&searchSn=13034&boardId=BD_00025&pageId=www102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위상과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흥군 홍보대사및 명예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홍보대사 및 -------- ---------- ---------- ---.	띄어쓰기
제2조(임무) 고흥군 홍보대사 및 명예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임무 및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임무) ---------- ---------- ---------- ---------- -.	
1.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관한 사항	1. ---------- ---------- ----- 활동에 관한 ----- -------	띄어쓰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밖에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 ----------	띄어쓰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 - 필요한 ---------- ----------.	용어정비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83] 고흥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행정과	시행일	2019. 12. 23.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해당 없음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정의 ③군수의 책무 ④금융회사의 책무 ⑤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⑥피해 방지 등 지원 ⑦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⑧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⑨위원장의 직무 ⑩협의회의 운영 ⑪간사 ⑫의견 청취 등 ⑬운영세칙			
	• 목적 - 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 피해 방지 등 지원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총괄평가	종합의견	• 현행 유지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충족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9. 11. 14. ~ 11. 28.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종합 의견	• 특이 사항 없음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충족	
실현성	□ **이행** •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안내문 부착 및 전단지 배포, 캠페인 시행 등을 하고 있음	
실효성	□ **언론보도** • 고흥 풍양농협, 금융사기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 홍보 캠페인(뉴스박스, 2025. 5. 4.) - 대포통장 근절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문 부착 -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 안내 전단지 배포 https://www.newsbox.co.kr/contents/68175b8bfb9867e5586a4b19 • 흥양농협,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교육 실시(농수축산신문, 2025. 2. 27.) https://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512 • 녹동농협, 여성대학 개강(농민신문, 2024. 3. 6.) -‘제8기 여성대학 개강식’ 개최, 조합원 91명 참여 - 전기통신 금융사기 교육 진행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306500463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 현행 유지		

[84] 고흥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행정과	시행일	2019. 11. 29.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해당 없음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지원 ③업무의 위탁 ④확인 등 ⑤파견 ⑥규칙			
	• 목적 - 지방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지원 - 남북교류 협력사업비 - 협의회의 운영비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총괄평가	종합의견	• 특이 사항 없음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조례의 실현성	• 이행		
	조례의 실효성	• 충족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기관 교류 또는 협력체계 구축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20-2021년 각 30,000천원 • 2022-2024년 각 20,000천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제2조(지원) 1-3호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table>
<tr><td></td><td>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종합 의견</td><td colspan="2">• 특이 사항 없음</td></tr>
<tr><td colspan="3">3. 입법평가 결과</td></tr>
<tr><td>법적
정합성</td><td colspan="2">□ 일반정비
• 용어정비
- 제2조: 예산의 범위안에서 → 예산의 범위에서</td></tr>
<tr><td>실현성</td><td colspan="2">□ 이행
•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 창립연도인 2003년 이후로 남북교류사업 중단 시기였던 2015년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음
- 매년 출연금 지원안을 올려 심사를 받고 지원하고 있음
• 5년간 지원계획(출처: 고흥군의회)
(단위: 천원)
<table>
<tr><th>구분</th><th>출연기관</th><th>출연금</th><th>출연사업내용</th></tr>
<tr><td rowspan="3">2021</td><td rowspan="9">(사)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td><td rowspan="3">30,000</td><td>평양 발효콩 공장 지원 등</td></tr>
<tr><td>의료품 지원사업</td></tr>
<tr><td>남북 농업·어업 산림분야 기술교류</td></tr>
<tr><td rowspan="3">2022</td><td rowspan="3">30,000</td><td>평양 발효콩 공장 지원 등</td></tr>
<tr><td>의료품 지원사업</td></tr>
<tr><td>남북 농업·어업 산림분야 기술교류</td></tr>
<tr><td rowspan="4">2023</td><td rowspan="4">20,000</td><td>취약계층분야 협력사업</td></tr>
<tr><td>보건 의료분야 협력사업</td></tr>
<tr><td>남북 농업·문화 분야 협력사업</td></tr>
<tr><td>통일기반 구축사업</td></tr>
<tr><td rowspan="2">2024</td><td rowspan="2">20,000</td><td>통일문제 정책 연구, 통일의식 고취</td></tr>
<tr><td>평양 발효콩 공장 지원 등</td></tr>
<tr><td rowspan="2">2025</td><td rowspan="2">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td><td rowspan="2">20,000</td><td>남북교류협력사업(취약계층, 보건의료 북 지원사업 등)</td></tr>
<tr><td>통일기반 구축사업(DMZ 평화통일 캠프, 남북기후변화협력사업 모델 구상 등)</td></tr>
</table></td></tr>
<tr><td>실효성</td><td colspan="2">□ 성과
• 최근 5년간 지원 실적
- 2020-2021년 각 30,000천원
- 2022-2024년 각 20,000천원
• 전라남도 22개 전 시군이 공동 출연하고 있는 사항으로, 남북교류사업이 중단되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가결된 지원안에 따라 꾸준히 지원이 이어져 오고 있음</td></tr>
</table>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2조(지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지원) ---------- ---------- ---------- 범위- ---------- ----------.	용어정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2. 정책 제안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85] 사단법인 고흥영상문화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table>
<tr><th colspan="5">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th></tr>
<tr><td colspan="2">소관부서</td><td>기획실</td><td>시행일</td><td>2013. 07. 31.</td></tr>
<tr><td colspan="2">조례 구분</td><td colspan="3">■ 자치조례 □ 위임조례</td></tr>
<tr><td colspan="2" rowspan="2">관계 법령</td><td>법령명</td><td colspan="2">관계 내용</td></tr>
<tr><td>해당 없음</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주요 내용</td><td colspan="3">• 구성
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 ④정관 ⑤사업 ⑥기본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 ⑦공유재산 사용 등 ⑧사업연도 ⑨사업계획 승인 등 ⑩결산서 제출 ⑪지도·감독 ⑫업무의 위탁 ⑬준용 ⑭시행규칙</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3">• 목적
- 지역 내 영상문화·교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영화제 개최 및 운영을 위한 모든 사업과 영상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고흥영상문화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사업계획 승인 등
-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td></tr>
<tr><td rowspan="5">총괄평가</td><td rowspan="2">종합의견</td><td colspan="3">• 영화제 개최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13년 이후 개최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례</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3">□ 현행 유지 ■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td></tr>
<tr><td colspan="2">조례의 법적 정합성</td><td colspan="3">• 일반정비</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현성</td><td colspan="3">• 미충족</td></tr>
<tr><td colspan="2">조례의 실효성</td><td colspan="3">• 미충족</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집행기관 답변)</th></tr>
<tr><th>분석항목</th><th>세부항목</th><th>척도, 의견 및 자료</th></tr>
<tr><td rowspan="5">조례의 실효성</td><td>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 colspan="2">• 계획 미수립 사유
- 2013년 이후 ‘고흥군 주최 영화제’ 미개최</td></tr>
<tr><td>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td><td>■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 교육이나 홍보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3년 이후 '고흥군 주최 영화제' 미개최	
주민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3. 06. 21. ~ 07. 09. (20일간 시행)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3년 이후 '고흥군 주최 영화제' 미개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의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고흥군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3년 이후 '고흥군 주최 영화제' 미개최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사단법인 고흥영상문화위원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미구성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2013년 이후 '고흥군 주최 영화제' 미개최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고흥군 문화예술진흥 위원회	
종합 의견	• 2012년~2013년 2회 개최한 이후, 고흥군에서 주최하는 영화제가 없어 조례의 유지 필요성 없음. ※ [참고] 유사한 기능(해당조례 제5조)의 조례: 「고흥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참고] 2012년~2013년 고흥군 주최 영화제 개요 – 행 사 명: 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2012년-제1회, 2013년-제2회) – 행사기간: (2012년) 8. 14. ~ 8. 18. / (2013년) 4. 18. ~ 4. 21.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정합성	□ **일반정비** • 용어정비 - 제7조: 대부하거나 → 빌려주거나
실현성	□ **미이행** • 본 조례는 고흥군 주최 영화제 개최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2013년 이후 영화제가 개최되지 않아 이행되지 못함
실효성	□ **성과** • 2012년-2013년 각 1회씩 영화제 개최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없어 성과 없음 - 고흥대종상단편영화제(2012-2013) • 현재 사단법인 고흥영상문화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지 않아,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지 않음 • 사단법인 영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는 고흥군을 제외하고 제천시와 순천시에서만 시행하고 있음

4. 조례 개선방안 제시(안)

1. 일반정비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사유)

제7조(공유재산 사용 등)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 사용 등) ---------- 빌려주거----------	용어정비

2. 정책 제안 사항

• 폐지 권고